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2003. 12

연구주관기관  
한국수산업회

 해양수산부

#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12월

주 관 연구 기 관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이	광	남
연 구 원 :	정	영	태
연 구 원 :	김	규	태
연 구 원 :	이	훈	종

<목 차>

<b>제1편 조업구역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b> .....	1
제1장 필요성 및 업종별 쟁점 .....	1
제2장 조업구역 조정협의회 운영현황 .....	13
<b>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b> .....	21
<b>제1장 동경128도 이동조업</b> .....	21
<b>제1절 주요 협의내용</b> .....	21
1. 대형트롤어업 .....	21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25
<b>제2절 회의록</b> .....	28
1. 1차 회의록('03. 8. 7) .....	28
2. 2차 회의록('03. 8. 9) .....	37
3. 3차 회의록('03. 9. 25) .....	52
4. 4차 회의록('03. 10. 14) .....	62
5. 5차 회의록('03. 10. 24) .....	77
6. 6차 회의록('03. 11. 6) .....	81
<b>제2장 기선권현망 조업구역</b> .....	84
<b>제1절 주요 협의내용</b> .....	84
<b>제2절 회의록</b> .....	88
1. 1차 회의록('03. 8. 11) .....	88
2. 2차 회의록('03. 9. 29) .....	97
3. 3차 회의록('03. 10. 21) .....	107
4.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자율협의회 1차 회의록('03. 8. 28) .....	113
5.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자율협의회 2차 회의록('03. 10. 16) .....	123

<b>제3장 소형선망 조업구역</b> .....	125
<b>제1절 주요 협의내용</b> .....	125
<b>제2절 회의록</b> .....	128
1. 1차 회의록('03. 8. 8) .....	128
2. 2차 회의록('03. 8. 27) .....	137
3. 3차 회의록('03. 10. 15) .....	143
<b>제4장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b> .....	147
<b>제1절 주요 협의내용</b> .....	147
1.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147
2. 대형선망어업 .....	150
3. 근해안강망어업 .....	153
<b>제2절 회의록</b> .....	156
1. 1차 회의록('03. 8. 12) .....	156
2. 2차 회의록('03. 9. 2) .....	164
3. 3차 회의록('03. 10. 20) .....	173
<b>제5장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b> .....	178
<b>제1절 주요 협의내용</b> .....	178
1. 잠수기어업 .....	178
2. 근해(기타)통발어업 .....	182
<b>제2절 회의록</b> .....	186
1. 1차 회의록('03. 8. 14) .....	186
2. 2차 회의록('03. 9. 30) .....	194
3. 3차 회의록('03. 10. 22) .....	205

<b>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b> .....	<b>213</b>
<b>제1장 분과협의회</b> .....	<b>213</b>
<b>제1절 업종별 분과협의회</b> .....	<b>213</b>
1. 1차 개최결과('03. 8. 7~14) .....	213
2. 2차 개최결과('03. 8. 27~30) .....	217
3. 3차 개최결과('03. 10. 14~24) .....	221
4. 4차 개최결과('03. 11. 6~7) .....	225
<b>제2절 분과위원장회의('03.10.2)</b> .....	<b>230</b>
1. 회의개요 .....	230
2. 추진상황 .....	230
3. 회의결과(2003.8.7~9.30, 연 223명 참석) .....	230
4. 분과위원회별 회의추진 현황 및 금후계획 .....	232
<b>제2장 총괄협의회</b> .....	<b>235</b>
<b>제1절 1차회의('03. 7. 31)</b> .....	<b>235</b>
1. 개최결과 .....	235
2. 회의록 .....	237
<b>제2절 2차회의('03. 12. 11)</b> .....	<b>244</b>
1. 개최결과 .....	244
2. 회의록 .....	246
3. 협의사항 .....	251
<b>[별첨]</b>	
① 울산지역 권현망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261
②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262
③ 제주주변수역 등의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263
④ 근해안강망어선과 제주지선어선간 합의서 .....	264
⑤ 서해특정해역 등의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265
⑥ 보도자료 .....	266

## 제1편 조업구역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1장 필요성 및 업종별 쟁점

#### 제1절 조업구역조정의 필요성

##### 조정 필요성

- ◆ 근해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당시부터 설정('76년 수산자원보호령 제정으로 일원화)되어, 그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업종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잠재되어 있음
- ◆ 최근 한국·중국·일본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에 의해 기존의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 '94년부터 추진한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의 감소 등 어업여건이 변화되어 현재의 조업(금지)구역으로는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어업발전의 장애요인임
- ◆ 따라서, 기존의 어업별 조업(금지)구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종간 조업분쟁 및 갈등을 해소

- WTO뉴라운드 협상전개, 신국제어업질서 형성 등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감소 및 어업간 분쟁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 마련, 추진(2002년도)
  - 조업(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26개 세부과제를 수립·추진
- 현행 조업구역에 대한 조정요구 의견 수렴('02.11~'03.5)
- 업계로부터 제시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의견에 대한 대립(반대)의견 및 대안 등 의견수렴('03.6) 완료

제2절 어업별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쟁점

어업별	조정요구의견	대립의견
<p>대형트롤어업 · 대형기저쌍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허용 (부산트롤 · 대형기저업계)</li> <li>- 조업어장 축소로 경영악화</li> <li>- 오징어만 어획(TAC설정)</li> <li>- 어법상 연안어업 피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 조업반대(동해안 채낚기 등 전 어업인)</li> <li>- 어려운 어업여건은 모든 어업의 공통사항이며, 오징어 가격폭락으로 동해안 어업붕괴</li> <li>- 오징어 등 수산자원 고갈</li> <li>- 다른 어업과 어구분쟁 우려</li> <li>○ 제주주변 금지수역 확대(제주)</li> </ul>
<p>대형기저외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과 경북도계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까지 조업허용 (부산지역 대형기저)</li> <li>- 중형기저와 어선규모가 비슷하나 노후어선으로 경영열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수역 추가조업 불가(동해지역 서남구기저 어업인)</li> <li>- 어장이 협소하여 분쟁이 심한 수역으로 허용시 조업장소 상실</li> <li>- 연안어업과 분쟁 발생</li> <li>○ 제주주변 금지수역 확대(제주)</li> </ul>
<p>서남구기저어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주변 금지구역을 확대 (제주어업인)</li> <li>- 제주주변 금지구역내에서 야간 및 기상악화시 불법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 중 · 일간 어업협정으로 조업어장 축소로 더 이상 조업구역 축소불가(서남구기저업계)</li> </ul>
<p>기선권현망어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1구와 제2구 조업구역을 유지하되, 3개구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공동조업구역 설정(경남 제1구 권현망어업인)</li> <li>- 양식어장 확대개발, 자원변동 등으로 조업장소 축소</li> <li>- 공동조업구역 설정시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어장 분산 효과 있음 (연안 30마일 외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어선 진입시 경영위축 및 연안조업 증가로 소형멸치잡이 어업도산(제2구권현망,전북,전남들망, 낭장망, 안강망어업인)</li> <li>- 고급어종의 먹이사슬 파괴</li> <li>- '82년 전남어선 경남지역 침범방지를 위해 3개구로 구분된바 재통합은 부담</li> <li>- 그간 1구는 124건으로 특혜(전남은 16건임)</li> <li>- 다른 어업과 어구분쟁 우려</li> </ul>

## 제1편 조업구역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어업별	조정요구의견	대립의견
대형선망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주변수역의 불빛사용 금지구역 축소(대형선망업계)</li> <li>- 수출용 고급전갱이 어획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400m를 5,000m로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거문도, 태안 등 금지구역 확대(제주, 전남, 충남어업인)</li> <li>- 야간에 금지구역 위반조업으로 지선 연안채낚기와 분쟁</li> <li>- 치어 다량혼획, 수산자원 고갈</li> <li>- 거문도 영세 갈치채낚기 조업시기 중복으로 분쟁예방</li> <li>- 태안반도 산란 성육장 보호</li> </ul>
소형선망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 불빛사용 금지구역 축소(경북 소형선망업계)</li> <li>- 소형어선으로 연안 6마일외측 조업시 안전 및 어획물의 선도저하 등 문제 해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소 반대(강원 연안어업인)</li> <li>- 오징어, 멸치 등을 대량어획, 자원남획</li> <li>- 연안 정치망 등과 분쟁 및 연안어업 어장이 축소됨</li> </ul>
근해안강망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반도 및 제주연안 조업금지(충남, 제주연안어업인)</li> <li>- 연안어업과 마찰이 잦음</li> <li>- 치어의 산란 성육장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어업협정에 의한 조업어장 축소와 어업불황으로 조업구역 축소 불가(근해안강망업계)</li> </ul>
근해통발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허용(경남 통발업계)</li> <li>- 중국 양쯔강수역 등 꽃게통발의 조업어장 상실, 대체어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업종 추가진입 불가(인천지역 어업인)</li> <li>- 자망, 낭장망 등이 밀집조업, 꽃게남획 및 어구분쟁 상존</li> <li>- 통발어구에 의한 오염심화</li> </ul>
잠수기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 자원이용을 위해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충남 잠수기어업인)</li> <li>○ 전북해역을 4.5구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충남, 전남잠수기)</li> <li>- 잠수기 어업인간 반목과 갈등 해소(양지역 어업인 합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특정해역에 다른 업종 추가진입 불가(인천지역 어업인)</li> <li>- 자망, 낭장망 등이 밀집조업, 어구분쟁 상존</li> <li>○ 제5구인 전라북도해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전북)</li> <li>- 동수역은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자율관리로 전환</li> </ul>

### 제3절 어업별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따른 세부내용

#### 1) 대형트롤어업

현행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령도~흑산도~제주도~홍도내측 수역은 조업금지</li> <li>▶ 동경 128도 이동수역(남해일부 및 동해안)에서는 조업금지</li> </ul>
-------	---

조 정 요 구 의 견		대 립 ( 반 대 ) 의 견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금지된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하되, 금지구역은 경남이동 연안에서 현행 동해안의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중간선까지의 내측으로 조정(대형기저수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WTO-DDA 협상, 수입수산물 유입,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노동력감소로 어업경영 악화</li> <li>○ 오징어는 단년생으로 자원감소의 우려가 적고 수산물 수급차원에서 국가적 이익창출</li> <li>○ 동 어업은 중층망어법이므로 대륙붕이 적고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서 조업시 연안어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 이동수역 조업 및 채낚기어선과 협업조업 금지(선망, 서남구기저, 채낚기, 자망, 연승, 홍계통발, 동해구기저수협, 경북, 강원)</li> <li>○ 자원량에 맞게 어업별감척을 해야함(강원)</li> <li>○ 대형기선저인망 조업허용여부와 연계 검토(경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어려운 어업여건은 대형트롤만이 아닌 전 어업의 문제임</li> <li>○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및 채낚기어선과 협업조업은 모든 업종과 마찰이 예상됨</li> <li>○ 또한 허용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바다가 황폐화되며, 대다수 어업은 조업장소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오징어 어가하락으로 동해안어업 붕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 128도 이동수역(금지수역은 현행 동해안의 대형트롤금지구역 준수)에서 근해채낚기어선과 협업조업으로 오징어를 포획할 경우 오징어에 대한 TAC실시 및 자동위치발신기 부착(부산시)</li> </ul>	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해채낚기어선과 협업조업을 삭제하고, 오징어에 대한 TAC 및 자동위치발신기 부착을 조건으로 허용(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요구의 사유와 동일</li> </ul>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현행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령도~흑산도~제주도~홍도내측 수역은 조업금지</li> <li>▶ 동경 128도 이동수역(남해일부 및 동해안)에서는 조업금지</li> </ul>
-------	---

조 정 요 구 의 견		대 립 ( 반 대 ) 의 견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 128도 이동수역(단 경남이동연안에서 현행 동해안의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중간선까지의 내측은 금지구역으로 설정)에서 9월~익년2월중 오징어를 포획할 경우 허용(대형기저수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간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로 어기가 짧고, 어기종료시 선원해산으로 출어시 선원확보 곤란, 관리비 부담가중 등 경영에 어려움</li> <li>○ 국민식량공급 등을 감안할시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여 채낚기어선과 협업으로 오징어의 대량생산 체계구축이 타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 이동조업 및 채낚기어선과 공조조업 금지(선망, 서남구기저, 채낚기, 자망, 연승, 홍계통발, 동해구기저수협, 강원, 전남, 경북)</li> <li>○ 연안어선과 분쟁이 예상되므로 전문기관의 연구분석후 검토(경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바다가 황폐화되며, 대다수 어업은 조업장소를 상실하게 되어 공멸됨</li> <li>○ 오징어 어가하락으로 중소형 어선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li> <li>○ 저인망어업은 중·표층의 어류를 남획하므로 어구·어법기준을 정하여 선망과 분쟁이 없도록 해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기저수협 의견과 같이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되, 협업조업으로 오징어를 포획시 오징어에 대한 TAC 실시 및 자동위치발신기 부착(부산시)</li> </ul>	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해채낚기어선과 협업조업을 삭제하고, 오징어에 대한 TAC 및 자동위치발신기 부착을 조건으로 허용(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요구의 사유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안 금지구역을 근해트롤어업 금지구역선까지 확대(제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주변 금지구역내에서 야간 및 기상악화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바, 이를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유지하고 불법어업은 철저단속(경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된 현실을 감안해야함</li> </ul>

### 3)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현행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령도~흑산도~제주도~홍도내측 수역은 조업금지</li> <li>▶ 동경 128도 이동수역(남해일부 및 동해안)에서는 조업금지</li> </ul>
-------	---

조 정 요 구 의 견		대 립 ( 반 대 ) 의 견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과 울산교점 방위각 107도선까지 연안 일부수역을 제외하고 허용(대형기저수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노후어선으로 동중국해 및 서해조업시 어업경비 상승 및 해난 사고 발생위험이 큼</li> <li>○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형기저어선과 어선규모가 비슷하나 선령이 노후되어 어획강도가 더 낮으므로 동 어업과 동일하게 조업구역을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유지(부산 지역 서남구기저, 울산지역 채낚기, 자망, 연승)</li> <li>○ 연안어업과 조업분쟁이 예상되므로 전문기관의 면밀한 연구분석 등 신중히 검토(경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바다가 황폐화되며, 대다수 어업은 조업장소를 상실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기저수협 의견과 같이 허용하되, TAC실시 및 자동위치발신기 부착(부산시)</li> </ul>	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안 금지구역을 근해트롤어업 금지구역선까지 확대(제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주변 금지구역내에서 야간 및 기상악화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바, 이를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유지하고 불법어업은 철저단속(경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협정 등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된 현실을 감안해야함</li> </ul>

4) 기선권현망어업

<p>현행 규정</p>	<p>▶ 3개구로 구분된 각 조업구역내에서만 조업 가능</p> <p>○ 1구 : 울산, 부산, 경남 ○ 2구 : 전남해역 ○ 3구 : 전북해역</p>
--------------	---

조 정 요 구 의 견		대 립 ( 반 대 ) 의 견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p>○ 현행 3개구로 구분된 조업구역을 유지하되, 3개구 어선들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공동조업구역 설정(경남도)</p> <p>- 3개구 연안 일정 수역(약 30마일) 외측</p>	<p>○ 부산, 경남은 어장면적에 비해 많은 수의 어선이 조업하는 반면, 양식어장 확대개발, 어초시설, 모래채취 등 각종 보호수면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자원감소로 경영이 악화됨</p> <p>○ 해황변동으로 어군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조업구역 한정으로 어장협소 및 어획부진시 타해역 침범조업 우려</p> <p>○ 따라서 연안에 편중된 조업장소를 외해로 분산함으로서 정치망, 구획어업, 연안선망 등 멸치를 포획하는 연안어업과 어업분쟁 조정이 가능하며, 주포획대상어종이 소멸, 중멸이므로 대멸을 포획하고 있는 자망어업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음</p>	<p>○ 울산지역을 권현망 금지구역으로 추가(울산 지역 정치망, 구획어업, 전연안어업인)</p> <p>○ 현행유지(충남·전북·전남, 제주지역 연안어업 및 안강망, 소형선망, 들망, 조망, 구획어업, 선인망협회, 여수수산인협회, 전남 연안시군의회)</p> <p>- 단, 현행 제3구(전북)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삭제(전북)</p> <p>○ 경남지역 어선을 감척을 통해 구조조정(전남, 여수산인협회)</p>	<p>○ 울산지역 일부수역은 권현망어업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매년 권현망어선들의 연안조업으로 어구손괴 및 자원이 남획되고 어업분쟁이 빈발하고 있음</p> <p>○ 공동조업구역 설정시 자원보호 취지에 어긋나며, 멸치를 따라 회유하는 갈치 등 고급어종의 먹이사슬 파괴되고 서해안은 소형선망, 양조망 등이 멸치를 어획함</p> <p>○ 그간 1구(경남, 부산, 울산)은 허가정수 124건으로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렸고, 또한 1982년 전남어선의 경남지역 침범예방을 위해 현행 3개구로 구분된바,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사회 문제화(전남)</p>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5) 서남해구중형기선저인망어업

현행 규정	▶ 경북·울산교점 방위각 107도 이남에서만 조업하고 격렬비열도~흑산도~제주도~홍도내측수역은 조업금지
-------	--

조 정 요 구 의 건		대 립 ( 반 대 ) 의 건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 남해안 금지구역을 근해트롤어업 금지구역선까지 확대(제주도)	○ 제주도주변 금지구역내에서 야간 및 기상악화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바, 이를 방지	○ 현행 조업구역 유지(부산, 서남구기저)	○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조업장소가 축소되고, 5년 전에 비해 어획량이 절반('98: 14,250톤→'02: 6,455톤)으로 줄어 금지구역 확대시 동 어업 도산 및 분쟁이 더욱 가중됨

### 6) 소형선망어업

현행 규정	▶ 동해안(경북도 연안 5,500m내지 16,600m이내)에서 불빛사용 조업금지
-------	--

조 정 요 구 의 건		대 립 ( 반 대 ) 의 건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 현행 불빛사용 금지구역을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조정(경북도)	○ 현행 불빛사용 금지구역은 동 어업의 어선규모 또는 조업형태로 보아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므로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함	○ 현행유지(강원지역 채낚기, 자망)	○ 선망어업의 특성상 치어 및 대량생산 가능성이 많아 연안채낚기 등과 조업구역 중복으로 경쟁조업에 의한 분쟁발생

7) 대형선망어업

현행 규정	<p>▶ 다음해역에서는 불빛사용 조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 125도 50분이동(서해중부해역), 남해 및 동해연안 11,000m이내해역. 다만, 소형선망은 경북도 연안의 경우 5,500m내지 16,600m이내 해역</li> <li>○ 제주도 본도, 추자도와 전남 거문도 7,400m이내</li> </ul>
-------	---

조 정 요 구 의 건		대 령 ( 반 대 ) 의 건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주위 7,400m 불빛사용 금지구역중 5~8월사이는 예외 인정(선망수협)	○ 어업간의 분쟁최소화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고려, 매년 5~8월에 한하여 불빛조업 허용	○ 수출용 고급전갱이 성어기에 1~2개월 조업 허용(대형선망)	○ 조정요구의 사유와 동일
○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주위 불빛사용 금지구역중 5~8월은 5,000m로 조정(부산시)	상 동	○ 금지구역을 거문도 10,000m로 확대(전남) ○ 제주도 주변 및 추자도 영해 조업금지(제주)	○ 거문도지선의 영세 갈치채낚기 조업시기이므로 관련 어업간 분쟁최소화 및 수산자원 보호 ○ 갈치 치어(풀치)의 다량혼획 및 남획으로 수산자원(특히 갈치)이 고갈되고 지선 연안어업인과 분쟁이 심함
○ 제주도 주변 영해내 조업금지(제주)	○ 야간에 조업금지구역내에서 조업으로 지선 연안채낚기어업과의 조업분쟁이 빈발	○ 금지구역을 조정하고 위반시 철저히 단속(대형선망)	○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타국EEZ와 같이 우리해역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태안반도 연안해역(164해구) 조업금지(충남도)	○ 멸치 등을 연안에서 포획하여 치어의 혼획율이 높고, 연안어업과 마찰과 분쟁이 잦음 ○ 동 해역은 치·자어의 산란성육 장소로 세망을 사용하는 선망류의 어구설치시 남획 우려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8) 근해안강망어업

현행 규정	▶ 경남연안 1,000m내지 3,000m이내해역 및 동해의 북위 35도40분 이북해역 (울산이북) 조업 금지
-------	--

조 정 요 구 의 건		대 령 ( 반 대 ) 의 건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 태안반도 연안해역(164해구) 조업 금지(충남도)	○ 멸치 등을 연안에서 포획하여 치어의 혼획율이 높고, 연안어업과 마찰과 분쟁이 잦음 ○ 동 해역은 치·자어의 산란성육 장소로 중요한 해역이나 세망을 사용하는 안강망 등 어구 설치시 남획 우려	○ 현행유지(인천 지역 안강망, 충남, 전남, 경남, 안강망수협, 안강망협회)	○ 근해안강망어선은 어구통수를 제한(5통)하고 있으나 오히려 연안어선들이 무분별한 어구사용으로 자원을 남획하고 있음 ○ 연안어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존치(충남) ○ 어업협정으로 기존어장이 축소된 점을 감안, 어업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함
○ 제주도 연안 8해리내에서는 6~12월중 20: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조업금지(제주도)	○ 연안에서 갈치치어 남획 및 지선 영세채낚기어선과 조업장소를 둘러싼 조업분쟁 심각	○ 현행유지(인천 지역 안강망, 전남, 안강망수협)	○ 근해안강망어선은 어구통수를 제한(5통)하고 있으나 오히려 연안어선들이 무분별한 어구사용으로 자원을 남획하고 있음 ○ 제주연안은 과거부터 안강망어업의 주 조업장소로의 금지는 일부 특정어업인에 의한 지역이기주의임 ○ 이미 안강망업계와 제주어업인간 자율합의한 바 있어 이를 이행

9) 잠수기어업

현행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거 서해특정해역에서는 조업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강망, 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만 조업허용 → 덕적도서방 어업구역</li> </ul> </li> <li>▶ 5개구로 구분된 각 조업구역내에서만 조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강원), 2구(경북), 3구(부산, 경남), 4구(전남), 5구(인천, 경기, 충남, 전북)</li> </ul> </li> </ul>
----------	---

조 정 요 구 의 건		대 립 ( 반 대 ) 의 건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 서해특정해역(153해구) 조업허용 (충남도)	○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유지(인천 지역 자망, 안강망, 낭장망, 형망)</li> <li>○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을 허용하고 북위 36도이남 전북수역은 제4구와 제5구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충남 및 전남 잠수기어업인)</li> <li>○ 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여부와 연계 검토(경남)</li> <li>○ 제5구중 전북해역은 조업구역 제외(전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어업 추가진입 불가 - 자망, 낭장망 등 밀집조업으로 어구분쟁 상존</li> <li>○ 잠수기어업인간 반목과 갈등을 초월한 잠수기어업 발전을 위해 제4구(전남)과 제5구(서해안) 잠수기어업인간 합의한바, 전북연해를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충남 및 전남잠수기어업인)</li> <li>○ 어업인 스스로 지역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묘방류, 어초시설, 육성수면 지정 등 자율관리형어업을 추진중이므로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북수역은 조업구역에서 제외</li> </ul>

10) 근해통발어업

<p>현행 규정</p>	<p>▶ 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거 서해특정해역에서는 조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강망, 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만 조업허용 → 덕적도서방 어업구역</li> </ul>
--------------	--

조 정 요 구 의 견		대 립 ( 반 대 ) 의 견	
조 정 요 구	사 유	대 안	사 유
<p>○기타통발어업 서해특정해역에서 8.16~11.30까지 허용(경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양쯔강수역 등 꽃게통발의 조업어장 상실 및 이동조업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경쟁적 밀집조업과 생산성 저하로 경영악화에 처해 있음</li> <li>○서해특정해역내 조업어선과 다소 분쟁이 예상되나 우선 한시적 조업을 허용하되 어구사용 규모 및 TAC실시</li> </ul>	<p>○현행유지(인천 지역 자망, 안강망, 낭장망, 형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수역조업이 허용된 자망도 어장이 좁아 포화상태로 업종간 대립이 되고 있으며,</li> <li>○통발어구 미회수로 바다오염 및 꽃게자원 남획</li> </ul>
<p>○제주도 주변 영해내는 조업금지(제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 및 추자도연안에 근접하여 어구(장어통발, 게통발 등)를 부설하고, 지선 정착성 어류의 치어까지 포획하여 자원고갈 조장</li> </ul>	<p>○현행유지(경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중국어선의 침범조업과 어구도난 등 어려움에 직면한 통발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지구역 추가는 곤란</li> </ul>

## 제2장 조업구역 조정협의회 운영현황

### 제1절 조업구역 조정협의회 구성

#### □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 설치(<표 1-1> 참조)

- 정부, 수산단체, 업계대표, 학계, 시·도공무원 등 31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어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근해어업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기할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 총괄협의회 아래에 「업종별 분과협의회」 구성(<표 1-2> 참조)

- 동경 128도 문제, 기선권현망 등 5개 분과협의회를 설치
  - 위원은 당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대표 및 공무원을 시·도로부터 추천 받은 자와 전문가로 구성(협의회별 9~15명)
  - 위원장은 당해 문제에 대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
  - 간사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및 어업정책과장으로 함

#### □ 협의회 기능

- 총괄협의회
  - 시·도를 통하여 수렴한 조정요구와 이에 대한 반대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조정 필요성 등을 토의하여 「업종별 분과협의회」에 회부
  - 업종별 분과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및 미해결된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도출
- 업종별 분과협의회
  - 총괄협의회에서 회부된 조업구역 조정요구 및 반대의견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대립되는 업계간 심층 논의, 결과를 도출함
  - 조정에 따른 자원관리 등 보완대책 등을 마련, 총괄협의회에 회부

#### □ 운영계획

- 우선 제시된 조정의견 및 반대의견 등을 감안 총괄협의회 개최
  - 제1차 총괄협의회 개최 : '03.7.31(목) 14:00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 총괄협의회에서 회부된 사항에 대해 분과협의회에서 전문가, 업계간에 집중 논의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표 1-1>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계	34명		
위원장	박규석	한국수산회 이사장	어업전반
위 원	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어업전반
"	김민중	전해양수산부 국장	어업전반
"	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어업전반
"	김영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어업전반
"	박영철	수산과학원 어업자원부장	수산자원
"	이주희	부경대학교 교수	해양생물
"	김동수	여수수산대학교 교수	어 장 학
"	김용방	수협중앙회 지도관리상무이사	어업전반
"	조효식	대형선망수협장	대형선망
"	조동길	대형기선저인망수협장	대형트롤
"	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장	중형기저
"	정세현	기선권현망수협장	권현망
"	서원열	근해통발수협장	장어통발
"	소수웅	근해안강망수협장	안강망
"	황윤욱	울산시수협장	수협장
"	김삼만	영열군수협장	수협장
"	김용하	속초시수협장	수협장
"	염창선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채낚기
"	김광익	인천닷자망협회	닷자망
"	최영향	여수수산인협회장	권현망
"	김성남	전남정치망수협장	정치망
"	김종래	여수들망어업협회장	들망어업
"	오복권	성산포수협이사	연승어업
"	권영찬	부산시 수산행정과장	수산
"	김종만	인천시 수산과장	수산
"	남덕우	울산시 항만수산과장	행정
"	이일원	강원도 수산개발과장	수산
"	고석준	충남도 수산행정담당	수산
"	정만균	전북도 수산과장	수산
"	이인곤	전남도 어업생산과장	수산
"	김병목	경북도 해양수산과장	수산
"	김석상	경남도 어업생산과장	수산
"	김수완	제주도 해양수산과장	수산

## 제1편 조업구역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표 1-2> 조업구역조정 업종별 분과협의회 구성

협의회명	구분	지역	성명	소속 및 직위	종사분야	이해관계
동경128도 이 동 조업 분과협의회 (15명)	위원장		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위 원	부 산	조동길	대형기저수협장	조합장	요구업계
	"	부 산	이정길	대정수산	쌍끌이어업	요구업계
	"	부 산	장외주	대형트롤협회장	대형트롤	요구업계
	"	부 산	김삼룡	외끌이협회사무국장	외끌이어업	요구업계
	"	울 산	박 청	서남구기저수협장	서남기기저	대립업계
	"	강 원	염창선	전국채낚기연합회장	채낚기어업	대립업계
	"	강 원	김의남	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채낚기어업	대립업계
	"	경 북	김삼만	영일수협장	채낚기어업	대립업계
	"	경 북	이재길	경북홍게통발협회장	근해통발	대립업계
	"	부 산	권영찬	부산시 수산행정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강 원	이일원	강원도 수산개발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경 북	김병목	경북도 해양수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전문가	박영철	수산과학원 자원부장	공무원	
	"	전문가	김병호	부경대학교 교수	교 수	
	간 사		김영규	어업자원국장	공무원	
	서 기		정용균	어업정책과 근해담당	공무원	
		협의할 사항		○ 대형트롤 및 대형기저쌍끌이어업 동경 128도 이 동수역 조업허용 문제 ○ 대형기저외끌이 울산과 경북도계까지 조업허용 문제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표 1-2> 조업구역조정 업종별 분과협의회 구성(계속)

협의회명	구분	지역	성명	소속 및 직위	종사분야	이해관계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11명)	위원장		오순택	KMI 연구위원		
	위원	경 남	정세현	기선권현망수협장	권현망어업	요구업계
	"	경 남	진장춘	기선권현망권우회장	권현망어업	요구업계
	"	경 남	공인찬	기선권현망수협이사	권현망어업	요구업계
	"	전 남	최영향	여수수산인협회장	권현망어업	대립업계
	"	전 남	조남선	포창수산대표	권현망어업	대립업계
	"	전 남	김경옥	기선선인망협회장	권현망어업	대립업계
	"	전 남	이인곤	전남도 어업생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경 남	김석상	경남도 어업생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전문가	김진영	수산과학원 과장	공무원	
	"	전문가	신영태	KMI 연구위원	연구원	
	간사		김이운	어업정책과장	공무원	
	서기		정용균	어업정책과 근해담당	공무원	
	협의할 사항	○ 기선권현망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문제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12명)	위원장		김민중	전 해양수산부 국장	수산	
	위원	부 산	박상호	금영수산 대표	대형선망	요구업계
	"	충 남	정온영	어업인	연안자망	요구업계
	"	전 남	김길생	거문도수협장	수협장	요구업계
	"	충 남	정지인	보령안강망협회대표	근해안강망	대립업계
	"	전 남	김재현	목포안강망선주대표	근해안강망	대립업계
	"	제 주	정상철	제주대학교교수	수산자원	대립업계
	"	제 주	오복권	성산포수협이사	연승어업	대립업계
	"	충 남	고석준	충남도 수산행정담당	공무원	관련시도
	"	전 남	이인곤	전남도 어업생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제 주	김수완	제주도 해양수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전문가	고태승	남해연구소 과장	공무원	
	간사		김이운	어업정책과장	공무원	
	서기		조종학	어업정책과 직원	공무원	
협의할 사항	○ 근해기선저인망어업 제주주변 금지구역 조정문제 ○ 대형선망 제주 및 거문도주변 금지구역 조정문제 ○ 안강망어업 충남 태안 및 제주주변 금지구역 확대문제					

## 제1편 조업구역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표 1-2> 조업구역조정 업종별 분과협의회 구성(계속)

협의회명	구분	지역	성명	소속 및 직위	종사분야	이해관계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9명)	위원장		오순택	KMI 연구위원		
	위원	경북	오진운	소형선망협회장	소형선망	요구업계
	"	경북	천준철	소형선망협회 총무	소형선망	요구업계
	"	강원	김용복	강원수협장협의회회장	유자망.통발	대립업계
	"	경북	김선봉	정치망협회장	정치망	대립업계
	"	경북	정동학	정치망협회총무	정치망	대립업계
	"	강원	이일원	강원도 수산개발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경북	김병목	경북도 해양수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전문가	류정곤	KMI 부연구위원	연구원	
	간사		김이운	어업정책과장	공무원	
	서기		조종학	어업정책과 직원	공무원	
	협의할 사항	○ 동해안 불빛사용 조업금지구역 완화문제				
서해특정해역 등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12명)	위원장		김민중	전 해양수산부 국장	수산	
	위원	충남	양석우	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잠수기어업	요구업계
	"	전남	최승만	잠수기수협장	잠수기어업	요구업계
	"	경남	서원열	근해통발수협장	장어통발	요구업계
	"	경남	유정호	기타통발선주협회장	기타통발	요구업계
	"	인천	김광익	어업인(인천수협)	근해자망	대립업계
	"	인천	김용현	어업인(옹진수협)	근해자망	대립업계
	"	인천	장성모	어업인(안강망수협)	근해안강망	대립업계
	"	인천	김종만	인천시 수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	충남	고석준	충남도 수산행정담당	공무원	관련시도
	"	전북	김광철	전북도 수산자원담당	공무원	관련시도
	"	경남	김석상	경남도 어업생산과장	공무원	관련시도
	간사		김이운	어업정책과장	공무원	
	서기		정용균	어업정책과 근해담당	공무원	
협의할 사항	○ 잠수기 및 기타통발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문제 ○ 잠수기어업 전북해역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					

## 제2절 조업구역조정 협의회 운영 현황

- 협의회별 조업구역조정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총괄 및 분과별 협의회별로 그동안 위원 324명, 방청자 114명, 해수부 69명 등 총 504명이 참여하여 운영되었음

<표 1-3> 조업구역조정 협의회 개최 현황

회차	협의회명	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계	위원	방청자	해수부
1	총괄협의회	'03.07.31	해양수산부 회의실	35	30	-	5
2		'03.12.11	원양협회 회의실	45	30	15	3
1	동경 128도 이동조업	'03.08.0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48	16	29	3
2		'03.08.29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	17	-	3
3		'03.09.25	경북경주한화리조트	38	17	18	3
4		'03.10.14	동해수산연구소	28	15	10	3
5		'03.10.2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9	8	-	1
6		'03.11.06	해양수산부 회의실	19	16	-	3
1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03.08.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4	12	19	3
2		'03.08.28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4	11	-	3
3		'03.09.2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4	11	-	3
4		'03.10.16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4	11	-	3
5		'03.10.21	전남 구례 한화리조트	14	11	-	3
6		'03.11.07	해양수산부 회의실	13	10	-	3
1	소형선망 조업구역	'03.08.08	영덕수산기술관리소	21	9	9	3
2		'03.08.2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2	9	-	3
3		'03.10.15	울진종묘배양장	12	9	-	3
1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03.08.1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8	13	12	3
2		'03.09.02	남해연구소목포분소	18	15	-	3
3		'03.10.20	전라남도청 회의실	16	13	-	3
1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	'03.08.1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7	12	2	3
2		'03.09.3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8	15	-	3
3		'03.10.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7	14	-	3
계				504	324	114	69

## 제1편 조업구역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다음으로 조업구역조정 협의회 일자별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총괄협의회 2회, 동경128도 이동조업 6회,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6회 등 총 23회 협의회를 진행하였음

<표 1-4> 조업구역조정 협의회 일자별 개최 현황

회차	협의회명	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계	위원	방청자	해수부
1	총괄협의회	'03.07.31	해양수산부 회의실	35	30		5
2	동경 128도 이동조업	'03.08.07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48	16	29	3
3	소형선망 조업구역	'03.08.08	영덕수산 기술관리소	21	9	9	3
4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03.08.11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34	12	19	3
5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03.08.12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28	13	12	3
6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	'03.08.14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17	12	2	3
7	소형선망 조업구역	'03.08.27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12	9		3
8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03.08.28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14	11		3
9	동경 128도 이동조업	'03.08.29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20	17		3
10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03.09.02	남해연구소 목포분소	18	15		3
11	동경 128도 이동조업	'03.09.25	경북 경주 한화리조트	38	17	18	3
12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03.09.29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14	11		3
13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	'03.09.30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18	15		3
14	동경 128도 이동조업	'03.10.14	동해수산 연구소	28	15	10	3
15	소형선망 조업구역	'03.10.15	울진종묘 배양장	12	9		3
16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03.10.16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14	11		3
17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03.10.20	전라남도 도청회의실	16	13		3
18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03.10.21	전남 구례 한화리조트	14	11		3
19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	'03.10.22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17	14		3
20	동경 128도 이동조업	'03.10.24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9	8		1
21	동경 128도 이동조업	'03.11.06	해양수산부 회의실	19	16		3
22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03.11.07	해양수산부 회의실	13	10		3
23	총괄협의회	'03.12.11	원양협회 회의실	45	30	15	3
계				504	324	114	69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제1장 동경128도 이동조업

## 제1절 주요 협의내용

## 1. 대형트롤어업

## 가. 현 황

 어업허가 및 척수

- '90년대말이후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어선세력 대폭 감소

구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허가(건)	90	87	87	85	60	△30
척수(척)	90	87	87	85	60	△30

 생산동향

- '80년대말까지 쥐치(총생산량의 90%이상)를 대상으로 조업, '90년대중반이후는 오징어로 총생산량의 64~75%차지
- 생산은 연간 10만톤이상으로 안정상태이며, 척당생산량 증가된 반면 '99년이후 어선감척에 의해 총오징어 어획량은 감소

구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생산량(톤)	101,952	166,185	99,714	134,064	123,412	+21,460
- 오징어 (%)	1,268 (1.2)	3,502 (2.1)	64,220 (64.4)	100,399 (74.9)	90,359 (73.2)	+89,091 (7,126%)
척당생산	1,133	1,910	1,146	1,577	2,057	+924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나.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 경북 울릉군 동단 동경 130도, 북위 35도 수계, 제주도 어관남동 15해리, 전남 무안군 흑산도 서단 등을 금지구역으로 설정('53.9.9)
- 조업구역은 수산자원보호령상 전국수역이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으로 동경 128도 이 동수역을 조업 금지('76.11.10)
-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 경북도 울릉군 동단, 북위 35도, 동경 130도,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 홍도 남단을 연결한 선과 제주도 남부해역을 금지구역으로 확대('82.12.31)

### 다.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의견

#### 대형트롤업계 의견

- 동해안(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하되, 금지구역은 경남이동연안에서 동해안 트롤금지구역선 중간선 내측으로 조정
  - 어업협정으로 어장축소, WTO-DDA협상, 수입수산물 유입,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노동력 감소로 어업경영 악화
  - 오징어는 자원감소의 우려가 적고, 수산물수급에서 국가적 이익창출
  - 동 어업은 중층망어법이므로 대륙붕이 적고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서 조업시 연안어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음

#### 다른업계 의견

- 동해안 이동수역 조업 및 채낚기어선과 협업조업 금지(경북, 강원 및 선망, 서남구기저, 채낚기, 자망, 연승, 홍계통발, 동해구기저)
  - 현재의 어려운 어업여건은 대형트롤만이 아닌 전 어업의 문제임
  -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 및 채낚기와 공조업조업은 모든 업종과 마찰
  - 또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바다가 황폐화되며, 대다수 어업은 조업장소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오징어 어가하락으로 동해안어업 붕괴됨

라. 검토사항

□ 한·중·일간 어업협정 전후 조업(금지)구역의 변화

- 협정이전에는 제주도 주변수역 및 부산·울산 부근수역을 조업금지수역으로 확대(82.12)되었으나 조업구역은 확보된 상태임
  - 중국, 일본영해이외의 수역과 우리수역의 금지구역이외의 서·남해안 및 동해안수역이 조업구역임. 다만, 동해안은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상 연안 일정구역이외의 수역은 조업구역이나 부령(어업허가규칙)의 허가처분시 제한조건으로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있음
  - 이와관련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은 동경 128도 이서수역중 제주남방주변과 양자강·동중국해의 수역이 사실상 조업구역에 해당되어 왔음
- 협정이후에는 우리의 관할수역이 대폭 축소되어 조업장소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일본, 중국수역 조업은 대방국의 EEZ 입어허가를 받아 조업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전통적 조업수역이 제외되어 입어실적이 없고 매년 입어교섭 형태로 보아 수년내 입어가 곤란할 것으로 보임
  - 우리 EEZ수역은 대부분 조업금지구역이거나 허가처분시 제한조건에 의해 동해안(동경 128도 이동) 조업이 금지되어 사실상 조업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임
-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양국간 어업관할 경계선과 현 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간에는 불합리한 구역이 상존
  - 현 조업금지구역중 일부가 대마도부근의 일본 EEZ관할수역을 침해하게 되어 현상태 존치시 불합리성 상존

□ 채낚기·트롤등 어업과 오징어자원 이용관계

- 연근해산 오징어의 어획량은 '90년대중반 이전에는 연근해채낚기어업이 약 72%, 그 외 어업은 미미한 수준임
  - '90년대중반이후 채낚기와 대형트롤어업이 대부분 어획(약 80%이상)하고 있으나, 최근 동해구트롤(선미식)어업에서 상당량을 어획하고 있는 실정임
  - 대형기저(외·쌍끌이)어업의 생산량은 1%미만으로 미미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어업별 연근해오징어 생산동향]

(단위 : 톤, %)

년도별	'85(A)	'90	'95	'99	'02(B)	증 감 (B-A)
계	42,879	75,293	200,897	249,991	226,656	+183,777
연근해채낚기	31,483 (73.4)	53,956 (71.7)	101,112 (50.3)	96,272 (38.5)	84,690 (37.4)	+53,207 (269%)
대형트롤	1,268 (3.0)	3,502 (4.7)	64,220 (32.0)	100,399 (40.2)	90,359 (39.9)	+89,091 (7,126%)
동해구트롤	26 (0.06)	55 (0.07)	20 (0.01)	337 (0.13)	14,998 (6.62)	+14,972 (57,685%)
대형기저(외)	441	240	476	479	519	78
대형기저(쌍)	1,975	4,294	1,253	2,106	4,948	2,973
기 타	7,686 (17.9)	13,246 (17.6)	33,816 (16.8)	50,398 (20.2)	31,142 (13.7)	23,456 (405%)

- 어업별 어획량으로 보아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을 현수준 이하로 제한이 필요
  - 연근해오징어 생산량은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자동조상기 등 장비의 생력화로 '90년대비 '95년도에는 어획량이 2배 증가
  - 대형트롤어업은 오징어의 특성(추광성)을 이용하지 않은 한 단시간에 대량어획이 어려울 것 이나 생산량은 채낚기어업과 비슷한 수준임
  - 대형기저(외·쌍끌이)어업의 현 조업방식으로는 현 생산량을 유지할 뿐 어획을 증가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기타 동해안의 소형선망, 정치망 등에서 생산되는 오징어 어획량은 당해 어업의 어선수 등으로 보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동해구트롤어업은 매우 주시되는 업종임

### □ 연근해 어선감척과 오징어생산량과의 관계

- 근해채낚기 및 대형트롤어선은 구조조정이후 대폭 감척(채낚기 250척, 대형트롤 30척)되어 척당 어획량은 증가하고 전체 어획량의 감소로 바람직한 현상임
- 연안어선의 감척은 그간 일부업종에 국한되어 업종별 구조조정이 미흡, 2004년이후 추진계획임
  - 현재 어업경영 등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검토, 오징어의 적정어획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척계획 수립 필요

##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가. 현 황

## □ 어업허가 및 척수

- '90년대 중반이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국제규제 감척에 의해 대형기저(외끌이, 쌍끌이) 어선세력 대폭 감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쌍끌이	허가(건)	185	190	190	136	58	△127
	척수(척)	370	380	380	272	116	△254
외끌이	허가(건)	91	90	90	87	51	△ 40
	척수(척)	91	90	90	87	51	△ 40

## □ 생산동향

- 대형기저쌍끌이는 총생산량이 '85년대비 26.8%가 감소한 반면, 통당생산량은 대폭증가(234%) 하였음
  - 어선감척에 의한 대폭적인 어선세력의 감소와 '90년중반이후 어선현대화에 의한 어획능력 향상으로 사료됨
- 대형기저외끌이는 총생산량이 '85년대비 48.1%감소, 척당 생산량은 7.7% 감소 하였음.
  - 다만, '95년이후 척당생산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어선세력의 감소에 따른 단위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로 보임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쌍끌이	생 산 량	108,260	110,663	114,486	105,221	79,219	△29,041 (△26.8%)
	통당생산	585	582	603	774	1,366	781 (234%)
외끌이	생 산 량	18,900	10,668	13,540	12,765	9,816	△9,084 (△48.1%)
	통당생산	208	119	150	147	192	△16 (△7.7%)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나.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서해 및 남해서부와 제주도 주변해역에 금지구역 설정('53.9.9)
- 제주 동남방 및 남해남방 일부해역까지 금지구역 확장('67.2.2)
- 단, 백령도와 북격열비도를 잇는 삼각형의 해역은 9.1일부터 10.31일까지 대하포획을 위한 저인망은 사용가능('76.7.9)
- 동경 128도와 북위 33도30분, 동경 128도 북위 33도30분 동경 129도 50분의 점을 잇는 선의 이남 및 이서해역을 조업구역으로 신설('76.7.9)하고, '85.12.31 조업구역 일부를 축소

### 다.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의견

####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쌍끌이) 업계의견

- 동경 128도 이동수역(단 경남이동 연안에서 현행 동해안의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중간선까지의 내측은 금지구역으로 설정)에서 9월~익년2월중 오징어를 포획할 경우 허용(쌍끌이)
  -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로 어기가 짧고, 어기종료시 선원해산으로 출어시 선원확보 곤란, 관리비 부담가중 등 경영에 어려움
  - 국민식량공급 등을 감안할시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여 채낚기어선과 협업으로 오징어를 포획하되, 오징어자원 관리를 위한 TAC실시
- 경북과 울산경계까지 조업허용(외끌이)
  - 대부분 노후어선으로 동중국해 및 서해 조업시 어업경비 상승 및 해난사고 발생위험이 큼
  -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형기저어선과 어선규모가 비슷하나 선령이 노후로 어획강도가 더 낮으므로 동 어업과 동일하게 조업구역을 조정

#### 다른업계 의견

- 남해안 금지구역을 근해트롤어업 금지구역선까지 확대(제주)
  - 제주도주변 금지구역내에서 야간 및 기상악화시 불법조업 자행
- 동해안 이동조업 및 채낚기어선과 공조조업 금지(선망, 서남구기저, 채낚기, 자망, 연승, 홍게통발, 동해구기저수협 등)
  - 허용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바다가 황폐화되며, 대다수 어업은 조업장소를 상실하게 되어 공멸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오징어 어가하락으로 중소형 어선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
- 저인망어업은 중·표층의 어류를 남획하므로 어구·어법기준을 정하여 선망과 분쟁이 없도록 해야함
- 연안어업과 조업분쟁이 예상되므로 전문기관의 면밀한 연구분석 등 신중한 검토 필요(경남)

### 라. 검토사항

#### □ 한·중·일간 어업협정전후 조업(금지)구역의 변화

- 협정이전에는 제주도 동쪽수역과 전남·경남도 경계선부근의 일부수역이 금지구역으로 확장('67.2)되고, 동경 128도 이동수역은 조업구역에서 제외('67.7)
  - 중국, 일본(동경 128도 이서)영해이외의 수역과 우리수역의 금지구역 이외의 수역('76.7월이 전에는 동해안수역도 조업구역임)
- 협정이후에는 조업수역이 대폭축소되어 조업장소가 감소
  - 일본, 중국수역 조업은 대방국의 EEZ입어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으나 각종 입어제한으로 조업활동이 위축
  - 우리 EEZ수역은 대부분 조업금지 구역에 해당됨

#### □ 어선감척과 어획량과의 관계

- 대형기저쌍끌이는 어선감척사업에 의해 대폭 줄어(190건→58건으로 132건 감소)들어 전체 어획량은 감소된 반면, 통당어획량은 대폭 증가되어 바람직한 상태임
  - 다만, 유류비, 인건비 등 어업경비 비중이 커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
- 대형기저외끌이는 어선감척사업에 의해 대폭 줄어(40척)들었으나 전체 및 척당어획량이 동반 감소되고, 그 어획량으로 보아 다른 업종에 비해 영세한 수준임
  - 다만, '95년이후 척당생산량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조업장소, 조업방법이 열악한 실정임

## 제2절 회의록

### 1. 1차 회의록('03. 8. 7)

□ 일 시 : 2003.8.7(목) 14:00~16:00(제1차)

□ 장 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6명(부경대 김병호교수 불참)

※ 동해지역 수협장(8) 수협중앙회, 동해안 어업인 등 29명 배석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래된 수산업의 현안으로 본인이 논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였음. 평생 어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발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해수부의 부탁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였음.
- 그간 동경 128도 문제는 양측에서 볼 때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서 몇 번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음. 역사적으로 긴 시간동안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음. 현재 국제어업환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EEZ체계에 따른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어장이 축소된 것이 현실임. 또한 WTO 아젠다 등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수산물의 가격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FAO는 책임있는 어업을 요구하고 자원의 관리보호와 현 자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제정책이 있음. 한 국가의 수산업 정책은 어업관리, 어장관리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관리와 직결되고, 자원량이 문제임. 자원을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획노력량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업구역 제한 등을 1953년 수산업법으로 제정되었음.
- 우리나라는 80년대말 350만톤을 생산하는 10대 수산국이였음. 이후 자원이 남획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실시하였음. 우리는 350만톤 생산의 성공에 매달리어 국내외적 변화와 여건에 무감각하였음.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자세가 필요함
- 즉, 변화되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성공에만 집착한다면 깊은 늪에 빠지고 말 것임. 우리 수산업계는 자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함. 어업은 수지에 맞는 경영보장이 필요함.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수지맞지 않는 어업이 되면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부정어업은 돈이 남으니 이를 하고 있는 것임. 어업을 어떻게 이끌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동경 128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슬기롭게 공약수를 찾아 어업의 발전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차분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오늘 이문제의 결론을 내지는 않음.
- 앞으로 많은 시간과 고통이 수반될 것이나, 업계의 이해 간격을 좁혀가면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함. 끈기있게 회의를 지속시키고, 진행중 불참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함. 오늘 많은 방청인이 있음. 회의를 기꺼히 공개함. 숨기지 않겠음. 다만 회의진행 분위기를 위해 진지하게 방청해 주기를 바람. 우선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어떤방식이든 진행권을 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으면 함

### ◇ 박청(서남구기저수협장)

- 맞은 편에 있는 분들은 128도를 풀어 달라는 입장이니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측은 풀 수 없다는 논리이니 우리가 답변하고 그 다음에 발언권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그림 먼저 대형트롤 등 업계에서 동경128도 이동조업 허용요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장외주(대형트롤협회장)

-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는 전국해역임. 그러나 일본측의 요구에 의해 1976년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됨. 90년대이전에는 일본의 오끼제도에서 쥐치를 많이 어획함. 90년대이후 이것이 완전소멸되어 경영이 악화되었음.
- 우리는 그간 중충망으로 128도 동쪽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음. 어구피해나 어가하락 시비도 잘 알고 있음.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128도 이동조업금지는 무의미하여 졌음. 1999년, 2000년 어장이 축소되어 많은 어선이 감척을 하였음. 동해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함. 어려운 시기에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하는 넓은 아량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대형기저조합장임. 동경 128도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님. 풀어야 한다것은 128도 자체에 문제도 있으나, 1960년대 일본이 우리 외교문서 부속서에 128도 이동조업 금지를 명문화하고 정부에서 1976년 입법화함. 당시 트롤세력은 매우 약했음. 모든 조업구역은 1953년 일본 것을 받아 제정되었음. 어려운 때에 일본의 요구에 의해 정부가 이를 수락한 것임.
- 이후 일본 자신이 협정을 파기하였음. 따라서 그대로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임. 128도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요구하고 장시간 지나다 보니 원래 있는 것으로 알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우리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동해 어민들도 논리가 있을 것임. 이것은 어업을 걱정하고 먼 장래를 보고 어느 틀보다 현실을 직시하여 받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함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대형기저수협이사로서 대형트롤어업을 하고 있음. 동경 128도 조업금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음. 1969년과 70년사이 수산청 시절 트롤어업허가를 처음 내주었는데 왜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 당시 저인망, 선망어업이 있었고, 밖의 공해에 기선저인망, 새우트롤이 있었음. 독도 주변의 800~1,000m와 대마도 남쪽 500m에는 자원이 많은데 이를 잡을 수 있는 어법이 없어 연근해트롤을 허가해줌, 우리는 1971년 11월 허가를 득했음. 그 목적은 일본 오끼섬 주변에서 독도북방까지의 어장에서 새우를 잡아 수출할 목적이었음.
- 그 당시 쥐고기가 일본근해에서 엄청나게 많았음. 이후 4. 5년간 쥐고기를 주로 잡음. 일본 본토에서 대마도사이 오끼섬 사이에서 조업을 많이 함. 때론 몇척씩 일본에 나포되어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음. 정부측 외교부에서는 급기야 1976년 일시적으로 이를 제한한 것임
- 128도 이동조업금지는 어업허가증 조건에 있음. 분명히 허가시 전국근해에서 5년간 조업을 하라고 했는데 76년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한 것임. 제한조건에 단서로 넣었음. 이렇게 동경 128도가 탄생됨. 이후 무수히 관계기관에 청원과 탄원을 함. 24내지 25회를 함. 정부에서 일본과 마찰이 없으면 풀겠다는 답변을 받음. 그와중에 1991년 쥐고기가 사라지고 전관수역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침범하지 않고 마찰이 없으니 푼다고 입법예고를 함.

- 그러나 동해안의 반발로 무산됨.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음. 업계측에 기존 권리를 돌려달라는 것임. 조업구역을 옹기라는 것이 아님. 이점을 인식하시고 동해안과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함

### ◇ 박칭(서남구기저수협장)

- 현재 대형트롤측은 1976년 일측의 요구로 되었다고 함. 그 당시 고기가 많이 났음. 반면 일본은 고기가 적게 났음, 그래서 일본어선이 우리수역에서 조업을 하였음.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트롤뿐이다 해서 강선으로 교체하여 트롤이 생긴 것임.
- 과거 논리를 들어 풀라는 것은 맞지 않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함. 50여년전 이야기에 매우 불쾌함.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자원이 감소함. 어장분쟁이 문제임. 128도는 모든 어업에 문제가 있음. 1998년 IMF 국가위기때 일본이 차관을 상환하라하여 줄속으로 협정을 체결함. 그 지역이 우리수역인데 IMF 때문에 일본에 빼긴 것임.
-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자원은 날로 감소함에 따라 치어를 많이 어획함. 94. 93. 92해구는 자망이 깔려 있음. 서남구기저는 19척이 조업함. 자망 때문에 투망할 장소도 없음. 어구분쟁이 일어나면 보상문제가 따름. 서남구에서 주로 가자미를 잡고 있으나 봄철에는 연안 낮은 데로 오는데 이를 알가자미라고 함. 현재는 알가자미가 없음.
- 수산정책의 잘못으로 자원이 감소되고 조업구역이 축소됨. 128도에서 트롤이 조업을 하니 선장까지 서로 공조조업을 하여 고소, 고발을 하고 있음. 트롤한테 그간 시달림을 많이 받음. 바다에도 예의가 있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업할 수 있는 예의가 필요함. 자망의 훼손 등 마구잡이로 조업을 함. 동경 128도를 풀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나 환경이 이지경에서 동해안은 다 죽음. 트롤과 같이 죽을 수 없다는 입장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트롤어업의 역사에 대해 잘 들었음. 본인은 128도 이동조업 반대를 해수부장관에 건의하였음. 1961년 5.16이후 우리가 못살아 어선을 도입하였음. 동해구트롤은 25척에서 16척이 늘었음. 현재는 43척임. 당시 새우를 잡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새우를 5~20%잡았음. 70년대에 대형트롤이 들어옴. 좋은 어장에서 명태를 잘 잡았음.
- 동해안에 오징어가 많아 우리가 살만하니 넘어오려고 함. 어떤방법 및 어법으로 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음. 89.1.31일 개정되고 91.12.12일 법률 11721호와 92년 7호에 개정하였고, 91.1.28일 회의시 당시 강력히 반대하여 대형트롤이 주춤하였음. 또 한다는 의도는 무엇이며, 어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결론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임. 행정부가 이것을 마지막에 선택할 것임. 어떤방법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많은 시간을 토론해야 하고 행정부의 의도를 모르겠음. 이런 회의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함
- 작년 12월 발행한 책자 27페이지에 의하면 오늘회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 관련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합의조정이 어렵고,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은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니, 조업금지구역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어업인간 합의를 전제로 서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취지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자기 소신껏 의견을 주면 이것을 토대로 토의하는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지난 4.1일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128도를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웠음. 전자에서는 합의에 의해 한다고 하고, 후자는 4.1일 정권이 교체후 강제적으로 열겠다는 것임. 또다시 오늘 회의는 작년 12월의 이야기를 함. 여기에서 합의가 안되면 안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정부가 하려는 의도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함.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으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다음 회의에서 큰 공약수를 찾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위원장직을 맡았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트롤어업은 아무 이야기를 해도 부담이 없으나 우리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사안임.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정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함. 찬성 및 반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수결로 할 것인지, 재판식으로 조절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해수부가 밝혀주기 바람.
- 그렇지 않으면 대화 없이 서면으로 하면 됨. 트롤선주 협회장은 법률적 주장이니 상황적 주장이니 하면서, 법률적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음. 일본이 128도를 폐기하였으니 우리가 이것을 묶는 것은 맞지 않으니, 받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형기저수협 이사는 트롤어업은 전국적이니 권리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동 제한을 풀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런 권리를 주장한다면 허가는 5년인데 어장이 축소된 만큼 정부에 요구를 해서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임.

### ◇ 이재길(경북 흥계통발협회장)

- 동해안의 어구어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음. 대형트롤 및 쌍끌이어업을 개방하면 동해안 어업은 할 수 없음. 동해안에서 트롤어구어법으로 조업하면 수산자원이 없어짐.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해 동해안 어민은 죽으라는 것임. 이것이 열리면(동해안 어장의 조업이 허용되면) 모든 어업인은 죽음. 차라리 어선감축을 해야 함.
- 동해안 어민은 억울함. 기름값이 상승하고 고기값은 하락하고 있고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수출할 고기가 없음. 어장을 개방하면 다 죽는데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 대형트롤의 어구어법으로 하면 못 푼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야기가 나고 있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조업방법부터 조사를 해야 함.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대형트롤어업은 128도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음. 동 어법은 오징어채낚기어선과 야간에 오징어를 대상으로 공조조업을 하고 있음. 오징어어선은 어선마다 180~210kW로 집어를 하고 있으며, 집어를 하면 초저녁에 새우, 명태, 고등어 치어 등 수많은 어종의 치어가 배밑에 집어가 되고, 공조조업으로 조업하고 있음. 강원도에서 연어 치어를 방류하면 대형트롤의 한방 끝 것도 되지 않음.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조조업 보장 없이 128도를 푼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
- 해마다 독도근해에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 그 결과 어민들은 매우 힘이 듦. 이런 상황에서 대형트롤과 정부가 합작으로 풀라고 하고 있음. 결사 반대함. 오징어채낚기는 러시아에 가고 있음. 기름값은 상승하고 공조조업을 피해 러시아에 감.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저층바닥이 썩었음. 128도 이동조업을 필사 반대함. 강도 높은 어업이 넘어오면 안됨. 현실적으로 법의 잣대로 금지하여도 조업하는데 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대형트롤에 어장을 개방하면 저층고기가 대상이 아니고, 문제는 오징어임.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해수부임. 대형트롤에서 오징어를 잡는 방법이 합법이나가 정리되어야 함. 현재까지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개방은 더욱 불법을 조장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문제부터 정리되어야 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동해안에 쌍끌이, 외끌이가 다 넘어 온다고 함. 128도는 조업 금지선 인데 속초, 묵호까지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고, 조업을 허용하면 거진, 고성까지 좁은 어장에서 저층, 중층 다 조업을 할 것임. 그러면 동해구트롤과 기저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실컷 잡아먹고 더 잡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동해안의 심정을 모르고 있음. 빗이 얼마인지, 어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함. 어민이 56,250명, 선장이 1,700명임. 이런 상황에서 몰상식하게 조업을 할려고 하고 있음. 우리 어종을 관리해야 하는데 동해안으로 조업이 허용되면 안됨. 어구어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오늘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음. 말씀하실 것 다 해주시기 바람. 이런 식의 토의는 진행상 문제가 있고 도움이 안됨

### ◇ 이정길(대정수산 대표)

- 오늘 회의에 감사 드림. 우리는 WTO, EEZ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간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 GNP 5,000불 시대에는 잡는 어업에 사활이 걸려 있었음. 당연히 시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현실과 괴리가 있음. 시책이 복잡하고 이 문제를 거론할 여건이 적합하다고 봄. 준법과 불법의 영역문제에 있어 다수가 불법어업을 하고 있음. 어업인은 정부에 원망만 하고 있음. 정부는 어업정책에 노하우를 갖고 있으나 어업인은 정책을 잘 모르고 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분과위원회가 되었으면 함.
- 이 문제는 수십차례 시도되었으나 그간 성과가 없었고 어업은 계속 몰락하고 있음. 속내를 모두 트고 신축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함. 어업은 가변수가 큼. 회의석상에서 즉답을 하기 곤란한 점도 있음. 양쪽의 주장을 글로 써서 하고 회의석상에서는 보충질의 등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 대형트롤에 채낚기가 불을 밝혀주니 Win-Win인가?. 이것이 해수부의 이야기임. 해수부도 책임이 있음. 해수부 측에서는 불을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불을 주니 채낚기가 공지에 몰려 있음. 어법자체가 트롤에게 유리함. 채낚기와 선망은 불이 있음. 선망이 집어를 하면 대형트롤이 조업을 함. 결국 돈을 받고 오징어를 뺏기는 것임.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어업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 이정길(대정수산 대표)

-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름. 전체를 보면 부분적인 것을 알 수 있음. 국가적 차원의 틀 안에서 공존해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차관보께서 트롤어선을 사라고 했음. 해수부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임. 대형트롤에게 풀어준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저는 조선 조합장임. 정부정책의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님. 해수부에서 전반적으로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 것임. 법 절차를 보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정책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함. 트롤어업의 어구어법이 크게 변화됨. 사실 어구앞의 그물은 23,000mm(2m30cm)이고, 중간은 12,000~13,000mm(1m20cm~1m30cm)임 이것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협의를 잘 해보자는 것임. 해수부의 생각은 이해됨. 이 문제는 트롤과 채낚기간 문제로 생각함.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동 문제는 어장개방 요구측과 반대측 모두에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음. 대형트롤어업의 128도 이동조업 자체가 조업구역 위반임. 이것으로 볼 때 요구가 맞지 않음. 위반업체와 성실업체간 상대가 되어야 협의를 하는 것임. 해수부에서 어느 틀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임.
- 반대측 위원의 의견은 모두 반대임. 128도 이동에서는 조업구역 위반, 공조조업 자체가 위법임. 동경128도 이동조업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는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 함. 어업인은 납득을 못함. 해수부와 트롤 측에서의 주장에 동해안 어업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임. 이 점부터 어업인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함.
- 불법을 못 막는 게 아님. 안 막고 있음. 결론은 안 된다는 것임.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장을 개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손실 등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하고 설득이 되어야 함. 조업구역 분쟁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공청회를 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함.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정부의 정책을 분명히 알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람. 정부는 어업인의 고질적인 민원을 검토할 의무가 있음. 최근 수산전반에 대해 구조개편을 하고 있음. 현재 26개 과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그중 하나이고, 조업구역 문제는 10개 어업에서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임. 이것이 어업현실임.
-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하면서 과반수 운운하고 또 다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하는 등 신뢰성이 없음
- 우리는 컨센서스 방식을 베이스로 하여 협의하는 것임. 이것은 만장일치가 아님. 국제회의 등에서도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음. 시험은 10월말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무한정 늘려 한다하여도 합의에 도달된다는 보장은 없음. 열린 마음으로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측에서 정부를 의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취지는 모든 문제를 내 놓고 토의를 하자는 것임, Win-Win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개념임. 동해안 어업인도 만족하고 요구업체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Win-Win 게임인 것임.

### ◇ 박청(서남구기저수협장)

- 다수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대형트롤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음. 대형트롤이 철선으로 고기를 많이 잡고 있을 때 서남구는 목선으로 조업을 하였음. 쥐고기로 모두 부자가 되어 영도에 빌딩이 있으면서 현재는 오징어를 잡아 부자가 되겠다는 것임. 여건이 나쁘다고 아우성임. 지금도 동해안 조업을 묵인하고 있음. 내 자리에서 왜 합법을 할려는 것인지.
- 대통령보고 때 용역으로 풀겠다고 보고함. 해수부는 꼭 풀려고 하여 KMI, 부경대에 8억으로 용역을 하고 있음. 오너가 풀려고 하는데 오너의 기분에 따라 용역결과가 나올 것임. 꼭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들러리 갈아 비애를 느끼고 있음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어망의 그물코가 크다고 하나 어불성설임. 대형트롤 어망이 아무리 커도 바다에서는 적어짐. 인정하지 못함. 128도를 풀면 동해안은 2년안에 파산될 것임. 정책적인 잘못이니 책임을 져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차관보가 분명히 Win-Win한다고 했음. 동해가 대형트롤을 모두 사라고 했음. 피해가 없고 이익이라면 좋겠음. 이 방법을 학자나 정부가 내 놓아야 함.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근해어업 전체에 문제가 있음. 조업구역은 50년만에 처음 조정하는 것임. 잠수기, 권현망, 선망 등도 조정을 할려고 함.
- 이 자리는 128도 문제임. 제주도는 대형기저어업의 금지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것임. 이것이 시대적 흐름임. 서로 만나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좋게 가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함. 다수결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임. 계속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음. 중간 입장에서 들으니 생소한 이야기도 많이 있음. 이번에는 각 시도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음

### ◇ 권영찬(부산시청 수산행정과장)

-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님. 상호간 감정의 대립은 앓됨. 이러면 기본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음. 128도 금지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봄. 다만 동해안 어업인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어떻게 마련하는냐를 전제조건으로 해야함.
- 부산시의 의견은 그간 밝힌 바와 같음. 해수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기대함. 소모적 회의를 계속 한다하여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님. 동해안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한 후 대안을 제시해야 함. 해제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 ◇ 김영학(강원도청 수산개발과 사무관)

- Win-Win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나 무엇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앓됨. 접근방법이 잘못되었음. 자원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잡는가, 어구어법은 가능한 가를 보고, 사회학적 측면에서 몇 사람의 이득으로 영세어업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법률적 측면으로 공공연히 조업을 한다는데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음.
- 강원도는 오징어가 대부분임. 이를 활복, 가공, 회, 건조 등으로 이용하며, 1997년 40,000톤, 1999년 27,000톤, 2002년 20,500톤으로 5년사이에 절반이 줄었음. 금년 현재에는 3,000톤으로 연말까지 10,000톤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형트롤어선 60여척을 위해 1,075척의 채낚기어선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지를 고려해야 함. 물론 어려우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강원도는 25%가 오징어채낚기로 막대한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에까지 조업을 함. 대형트롤은 자구책으로 감척, 해외어장 개발 등을 해야함. Win-Win보다 이것을 냉철히 판단해야 함.

### ◇ 김병목(경북도청 해양수산과장)

- 수산업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수산물 수입개방, 적조, WTO/DD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겪고 있음. 경북도 총 생산량 12만톤 중 8만톤이 오징어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트롤 어업에 의하여 어획된 오징어와 채낚기어업에 의한 오징어와의 kg당 가격의 비교, 공조조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측에서 검토해야 함. 우리도의 입장은 도지사의 결심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동경128도 개방은 안 된다는 방침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토론했음. 궁금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위원 개인의 소신보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배되어 있음. 지금까지 의견은 기록해서 정리될 것임. 동해안 쪽의 말씀을 들으면 역시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 트롤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 흑·백을 가리는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됨. 법률 등을 거론하면서 흑백논리로 몰고 가면 회의가 되지 않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인지, 다수결로 하는 것인지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모든 것을 흑백의 논리로 접근하면 회의가 안 됨. 여러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의에 논의할 것임. 다음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함.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이 방청객을 의식하게 됨.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임. 회의결과는 공표하도록 하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우리의 입장은 동경128도 조업구역을 개방한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님. 해수부는 Win-Win을 원론적으로 하고 있음. 비공개 보다 열린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음. 방청허용을 고려했으면 함. 해수부에서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음. 총괄협의회 5명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자는 의견임. 앞으로 여건 변화가 올 것임. 면세류 중단 등의 상황이 올 것임.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 백철인(수산과학원 어업자원부장)

- 바다의 자원은 육상의 자원과 달라 자율갱신성 자원임. 즉, 잘 관리하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자원임. 수산업의 특성상 잘 관리하면 영구한 자원이 되는 것임.
- 동해안의 해황은 계절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 찬물과 더운물이 교차하여 먹이생물인 플랑크톤이 많음. 이러한 여건으로 오징어 자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또한 먹이사슬 관계도 양호함. 오징어는 플랑크톤 등을 주로 섭취하는 잡식성임.
- 자율갱신성 자원을 잘 관리해야함, 오징어자원이 영구히 보장되는 것은 아님. 서로 현재의 이익만 생각지 말고 대를 이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985년과 1986년에는 베링해에 고기가 많았으나 지금은 소형어 뿐임. 술안주로 이용하는 명태가 없음. 눈앞의 이익보다 오징어 자원을 영구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를 잘 해야 함

### ◇ 이정길(대정수산 대표)

- 위원장은 양측 편을 들 수 없을 것임. 각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함. 동경128도 이동조업 찬성이유와 반대이유를 문서로 해서 논의해야 함. 연속성 있는 회의를 위해 방청객은 피하는 것이 좋겠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이 다음 회의는 8.29일 9월 2일이나 3일쯤 하는 것이 좋겠음. 강원도나 포항에서 하는 것이 어떤지(대부분 포항에 동의). 그럼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회의는 8.29일 또는 9월 2일이나 3일 중 택일하여 포항에서 개최하겠음
- 회의종료

## 2. 2차 회의록('03. 8. 9)

일 시 : 2003.8.29(금) 14:00~17:30(제2차)

장 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참석자 : 협의회위원 17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지난 회의시 참석하지 못한 부경대 김병호교수를 소개함. 지난 8.7일 울산회의시 쌍방의 견해를 밝힌 바 있음. 나름대로 입장을 열심히 들음. 절벽같은 느낌이었음. 하지만 우리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함. 지난회의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하였음.
- 동해쪽의 주장은 128도 개방을 반대한다는 것임. 과거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고, 불법·합법을 떠나 공조조업은 트롤부터 시작되었고, 공조조업시 동해의 많은 자원이 남획되고, 불법자행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으며, 개방시 더 과격해질 것이라는 입장이었음. 결정방법에서 다수결로 할 것인지, 이후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인지를 입장을 밝혀 달라는 의견도 있었음. 동해의 어업을 안다면 개방은 안 되고, 독도주변의 자원이 고갈되고 또한 러시아에 까지 조업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양쪽에서 불을 주고 돈을 받고 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채낀기어선 주변을 무작정 끌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자원학적, 어구어법적, 사회학적 측면에 대한 토론도 있었음.
- 트롤측에서는 법적으로 조업구역이 전국근해이며, 128도 금지는 전관수역 침범을 빌미로 1965년 한일어업협정 부속서에 의해 금지되고 1976년 법으로 이를 금지하였다 하고, 그간 24회 정도 탄원을 하고 전관수역 침범을 하지 않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무산된 바도 있다 하였음. 이때는 GNP 5,000불 시대에 들었고 시대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양측의 주장은 글로 써서 보충설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일측이 폐기하였으므로 128도 금지의 명분이 해소되었으니 원래대로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어구피해, 어가문제가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협의하고, 128도 이동조업시 오징어에 한정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의견도 있었음.
- 동해안 오징어어업에 대해 정리를 하여 보았음. 오징어의 어획량은 85년도 42,800톤, 95년도 200,800톤, 99년도 249,900톤, 2000년도 226,300톤, 2001년도 225,600톤, 2002년도 226,600톤으로 95년이후 오징어 어획량이 연간 20만톤 수준임. 이중 트롤은 90년도 3,502톤, 99년도 10만톤, 2000년도 89,700톤, 2001년도 87,300톤, 2002년도 90,300톤(전체 오징어 어획량의 39.8%)을 점유하고 있음. 채낀기어업은 90년도 53,900톤, 95년도 101,200톤, 99년도 96,200톤, 2000년도 97,500톤, 2001년도 87,800톤, 2002년도 84,690톤(전체 오징어 생산량의 37.3%)을, 동해구트롤은 90년도 55톤, 95년도 20톤, 99년도 337톤, 2000년도 641톤, 2001년도 19,687톤, 2002년도 14,998톤(전체 오징어 생산량의 6.6%)을, 대형기저쌍끌이는 95년도 1,253톤, 99년도 2,106톤, 2000년도 2,079톤, 2001년도 2,635톤, 2002년도 4,948톤(전체 오징어 생산량의 2.2%)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오징어의 어가를 보면 2001년도 강원도의 경우 kg당 2,293원, 경북은 1,393원, 부산이 853원, 2002년도는 강원도 2,990원, 경북 1,456원, 부산 911원, 월별로 보면 2001년도 강원 1월에 1,937원, 5월 4,026원, 7월부터 11월은 2,000원대, 12월은 1,863원임. 경북은 정월에 1,327원, 3월에 4,326원, 이후 3,000원대에서 1,000원까지 떨어짐. 12월은 1,518원임. 부산은 2001년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정월에 763원, 3월 1,647원, 5월 1,536원, 7월 952원, 9월 759원, 11월 1,218원, 12월에 1,118원 임. 평균적으로 매년 약간의 상승세임.

- 국가전체 공급수요 문제에서 2000년도에 원양에서 약 11만톤이 생산되어 총생산 404천톤, 2001년도 388천톤, 2002년도 368천톤임. 2000년도의 경우 수입이 18,000톤이므로 총공급은 422,631톤, 2001년도는 403,996톤, 2002년도는 385,782톤이 공급되었음. 이중 수출이 2000년도에 117,000톤, 2001년도 75,000톤, 2002년도 72,000톤임. 총공급에서 수출을 빼면 내수인데 2000년도의 경우 305천톤, 2001년도 328천톤, 2002년도 313천톤임. 협의에 참고하기 바람. 이것은 8.7일 회의이후 정리한 자료이며, 한 어종이 30~40만톤을 국민에게 공급한다면 대단히 큰 비중임. 따라서 사실상 오징어어업은 대단히 중요한 어업임. 자료로서 수렴한 것임.
- 지난회의 이후 동경 128도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하였음. 1965년도 한일어업협정 부속서에 기인된 것임. 부속서에 의하면 부속서 본조 2 저인망부분에서 트롤이외의 것은 30톤이상 170톤이하이며, 트롤은 100톤이상 550톤이하로 규제하고, 단 50톤이상의 저인망(60톤미만의 새우저인망 제외)은 동경 128도 이동의 수역에서는 조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제하는 근거가 마련됨. 1965년 협정에서 근거가 있고 1976년에 이를 설치하였는데 왜 많은 공간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 실제 그당시 저인망은 2. 3. 5. 6구의 저인망구역이 있었고 4. 5. 6구는 128도와 관계가 없는 어업이며, 1976년 근해트롤어업이 새롭게 허가되어 협정의 부속서와 관련 128도를 그은 것으로 추정됨.
-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본 분과협의회의 과업은 3가지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근해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할 것인지 즉. 128도 금지 철폐, 둘째 대형기저쌍끌이의 128도 이동조업 허용문제, 대형기저외끌이의 128도 허용문제임. 3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어려우니 먼저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 허용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대형기저어업에 대하여 논의하면 어떤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대형트롤어선이 128도 이동에서 조업하는 사실과 채낚기어선과 공조조업을 인정하고 있는지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견해가 다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동해안 전체 채낚기어업쪽에서도 그러한지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대형트롤어선들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묻는 것이 넘어오는 어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8도를 허용하는 취지에서 묻는 것인지.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다 넘어오고 있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현재 동경 128도는 열쇄를 잠그고 있음. 공해와 울릉도를 거쳐 들어옴. 죽변앞까지 조업을 하고 있음. 개방을 하면 대문을 열어 놓는 것임. 모든 업종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계속 협의할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벌써 판단을 했어야 함. 우리가 고수를 하고 있으므로 끝내어야 함. 동해로 넘어오는 배는 고기를 잡으로 넘어 오는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지난 회의시 거의 토론한 것임. 분명히 김삼만조합장은 틀림없이 불법이므로 먼저 따지고 넘어가야 하고, 정부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었으니 이를 검토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했고, 불법문제를 떠나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음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트롤쪽에서도 128도 이동조업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의 공조조업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동해측도 이부분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국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분과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토론으로 끝내는 것인지. 우리가 풀고, 닫고 하는 것인지.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최종 결정은 아님. 위원장님은 사실관계를 묻고 있는 것임. 현실문제에 있어 법테두리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하고, 동해안 어업인이 우려하는 것을 논의하고, 트롤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 객관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양측에서 연구하여 방안을 내놓아야 함.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놓고 토론을 해야 함. 말싸움으로 이기는 것은 아님.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해수부로부터 받음. 위원장도 해수부에서 위촉함. 여기에서 서로의 이견을 모아 합의사항을 도출해 달라는 것임. 그러면 장관께 보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5개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기 모양이 다름. 통일안이 나오지 않음. 한쪽은 열어라, 한쪽은 안된다 하고 있음. 권력으로 풀든지 말든지 해야지 여기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날 것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임. 이런 상황에서 무슨 토론을 하나, 권력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어업을 배우는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겠음. 협의해서 반대, 찬성을 민주적인 다수결로 결정해야 함.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다수결 방식이 아닌 콘센서스 방식으로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앞으로 분과협의회 토론을 총괄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끝남.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가 필요함. 염려 안해도 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위원장께서 한일어업협정의 조항에 대하여 말씀하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바다는 궁극적으로 육지에서 몇마일 이외는 해수부의 권한임.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트롤어업의 금지구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음. 울릉도는 배로 12시간 소요됨. 이러한 바깥쪽 어장까지 연안어업이 한다면 근해어업은 어디에서 조업해야 하는지. 해수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함. 우리 앞에 어느 누구도 못 온다면 혼자 살아야 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당시 일본의 차관이 급해 우리가 불모로 잡힘. 지금 협정은 일본이 파기를 하고 EEZ로 가고 있음. 중간선도 그어져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이 정한 조항을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함. 채낚기와 트롤간에 묵인하여 공조조업을 하고 있음. 양어업의 어획량은 통계상 비슷함. 대화는 긍정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함.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임. 여기에서 명백히 되면 좋으나 안되면 해수부가 판단하면 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위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름. 권한 없는 학술 토론이 불편하다는 것임. 분과협의회에서 100% 찬성을 해도 총괄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안 할 것인지. 문서로 제시해 주어야 함.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총괄협의회도 콘센서스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임. 반드시 만장일치가 아니고 거의 전원 합의제임. 대체적으로 수긍하면 받아 드리는 것임

### ◇ 이정길(대정수산대표)

- 해수부의 결정은 어민들의 의사를 듣고 결정했으나 시행착오가 있어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임. 우리 어업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음. 김조합장은 답변을 강요하고 있음. 128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음. 쌍끌이어업은 1963년이전 조업구역이 동해구 조업구역을 빼고 전국이었음. 국제규약으로 어업여건이 변화됨. 어업인이 다 같이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함. 동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의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128도 문제를 접근했으면 함. 현재 128도 조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님. 어업인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Win-Win임. 128도를 풀면 다 죽는다라는 단순한 집착으로 접근하면 결정이나 토론이 어려움. 서로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생각하고 반대이유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토론을 해야 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대형트롤어선은 월선,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고 있음. 돈으로 채낚기어선과 작업을 함. 요즘 채낚기어선의 선장이 이를 안 들어주고 있음. 그러나 망고가 80m 이고 속력이 빠른 트롤이 채낚기 배밑에서 끌어 낚시, 씨앵카 등을 파손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있음. 자기들 통장으로 거래되어 선주는 모름. 공조조업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되는데 해수부의 직무유기임. 해마다 탄원을 내고 있으나 메아리임. 해수부의 정책에 불신함. 레이더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막고 있음. 풀어주면 자원이 고갈되고, 어가가 하락되어 생계에 위협이 있음. 현재 속초지역 어업인은 40%가 신용불량자임. 긴급출어자금으로 어느정도 구제는 되나 통계상 지난해 오징어는 2만톤이었으나 현재는 6천톤 정도임. 잘은 모르나 수온관계로 자원이 없어짐. 대형트롤에 열면 2~3년안에 남해안의 쥐취자원 같이 자원이 없어지고 같이 도산하게 될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원인이 없으면 공조조업은 없다는 것임. 공조조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공조조업은 현행 법령상 불법임. 제도적으로 공조조업을 허용할 수 없음. 이것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되기를 부탁함.

### ◇ 이재길(경북통발협회장)

- 공조조업이 안되는 것이면 간단함. 도둑놈을 놓고 협의를 할 수 없음. 위원장께서 오징어 생산에 대해 설명함. 울산청에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조업방법을 연구해 주기를 부탁함. 우리는 어구를 10세트 사용함. 엔진마력이 좋은 트롤이선이 끌면 어구자체가 없어짐. 트롤은 조업방식이 오징어임. 통발어구의 부표, 줄 등이 모두 터져 버림. 오징어에 대한 논리만 펴면 안 됨. 연승, 통발, 자망어업을 연구하면 왜 터서는 안 되는 지를 알 것임. 오징어 숫자도 중요하나 동해안은 여러 업종이 있음. 트면 어업유지가 불가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인정됨. 국가는 어업관리와 자원관리를 고려하고 있음. 어업을 고려할 때 각 어업인들이 공평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트롤은 오징어채낚기어선과 문제가 있음. 만약 트롤 어업이 아니라도 동해구트롤이 오징어를 잡고 있음. 92. 93. 95해구에 자망이 깔려 있으나 동해구트롤의 조업구역임. 다만 트롤어업은 금지구역, 어기조정 등이 있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동해구트롤어선이 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긍정적 생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함. 위원장은 역할만 하고 상호 위원간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함. 부드럽게 해야 함. 국장님은 공조조업은 불법이니 이의 전제 하에 논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 합의되면 현재 공조조업은 합법화해 줄 의사가 있는 것인지.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국가는 어민이 편하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임. 어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어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대상 자원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책무임. 현재 어업제도는 허가방식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으로 공조조업 허용시 어업의 기본제도가 와해되는 것임. 허가는 어구중심임. 어구, 어법,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선망은 불을 비취 집어를 함. 기선권현망도 같은 취지임.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하여 어업조정이 되고, 복리가 되면 국가는 이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개방을 해도 불법을 하는 부분이 있음.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어업인의 자세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심문하듯 하면 안 됨. 국장님이 즉답을 못 함. 자신의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임. 보상문제는 법적문제이고 나홀로 작업이외에 완벽한 보장장치는 없는 것임. 우리는 채낚기어선으로부터 100m, 200m 등 접근금지를 생각하고 있음.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면 미래의 문제는 풀 수 없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현재 문제이고 동시문제임. 공조조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트롤어업은 필요가 없음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현재 트롤어업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하여야 함. 동해안 어업인이 지역 정서상 전체가 죽는다는 사고로 접근하면 어려움. 우리가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부분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히 말씀드림. 128도 이동조업은 92. 93해구에서 오징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음. 당시 중층망이 개발되었으나 주로 저층망을 사용하였음. 당시는 집어도 안되고 공조조업도 하지 않았음. 90년대 초반까지 잡어를 잡음. 1998년부터 저층망을 없애고 중층망을 사용함. 작년에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잡어의 어획이 전무함. 잡어된 고기는 모두 오징어임. 다만 밀복이 몇상자 포함됨. 다른 고기는 한 마리도 없음. 실제로 어구를 끌면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옛날에 가끔 있었음. 현재에도 그렇다는 문제가 있다면 동해안 어업인들이 고발 등의 사례가 있을 것이나 현재 문제가 없음. 협업문제는 초창기 그런 적이 있음. 근 1년간 단 한차례도 없으며 있다면 바로 고발당했을 것임. 협업조업은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무조건 대형트롤이 싹쓸이로 자원을 없애고 있다는 사고는 가지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함. 이런 바탕 하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지 동해안 전체 어업인에게 피해가 있고 다 죽는다는 식의 토론은 안 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과거 트롤은 오징어를 잡지 않았음. 북해도에서 명태와 노가리를 잡음. 명태새끼까지 잡아 덕장에 팔아 자원이 고갈됨. 1~2년 오징어를 잡으면 새끼고기는 모두 없어짐. 쥐치자원이 없어진 원인과 같음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쥐치자원이 없어진 이유는 당시 부산에서 제주까지 콩알쥐치가 엄청나게 많았음. 방질을 못할 지경이었음. 그러나 그해 가을부터 쥐치가 않남. 무조건 트롤이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아님.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자원이야기만 하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음. 자원을 무조건 보호한다면 어업은 되지 않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어업인 스스로 알고 있는 사항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배이사는 공조조업의 불법해결은 어업현실에 맞기자는 것임. 요는 열거나 안 열거나 하는 취지로 받아드림. 현재까지 공조조업에 의한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없다. 고발하고, 처벌받고 그것에 대하여는 반대함. 128도 이서에서의 공조조업 문제와는 다름. 월선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함. 공조조업이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권력자와 타협이 안 됨. 법으로 3번 승소를 한 것이 있음. 그 부분은 법원에 가서 할 이야기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차후 검토하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때까지 넘어오지 않으면 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동해구트롤에도 오징어를 잡는데 다른 고기도 많이 들어오는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대형트롤어선이 동경 128도에서 조업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오는 것임. 열어도 저층고기를 잡지 않으면 자원은 지킬 수 있고, 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낮에 조업을 한다면 오징어를 잡다 다른 것도 잡을 수 있음. 오징어는 증층으로 밤에 잡고 낮에는 저층을 조업하여 1~2개월 조업함. 그때 잡어를 잡을 것임.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토론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 불안함. 오징어만 잡는다고 하는데 선미트롤이 끄는 층은 오징어만 들어옴. 먹이사슬 이야기를 하는데 3년전까지 싹쓸이를 하여 현재 오징어만 남아 있음. 눈에 보이지 않게 자원이 고갈됨. 대형트롤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음.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우리는 속초에서 러시아까지 가서 조업함. 2000년부터 기름을 싣고 가는 것이 다름. 채산성이 계속 떨어짐.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본인은 선장출신인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욱할지 모르나 지역 고기가 365일 거기서 나는 것은 아님.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수온에 따라 러시아에서 동해쪽으로 남하하여 6~7월부터 어장이 형성됨.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대형트롤은 새벽 5시경에 공조조업을 하고 있음. 18시경에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집어를 하면 고기가 그대로 채낚기에 걸려 올라옴. 그러나 회유성 고기를 집어하면 그것만 들고 다른 치어는 어디로 가는지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허락한다면 추석이후 저의 배에 승선을 하여 현실을 보면 좋겠음. 상대를 트집내기 보다는 현실을 보아야 함. 트롤어업의 요구에 대해 역사성을 설명하였음. 상대방의 주장은 일리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있다고 봄. 무조건 동해안 밥그릇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님.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트롤어업의 작년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협업비를 경비에 포함하여 약 20~27억을 매출함.

### ◇ 이정길(대정수산대표)

- 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통계를 바탕으로 회의를 해야 함. 다시 제의하겠음. 해당 라는 입장에 대해 레포트를 제출하고, 반대쪽도 말을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해야 함.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문제를 협의하고 있음. 실제 내용있는 토론이 되어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대형트롤어업의 동해안 조업이 안 됨. 트롤은 서해안부터 조업을 함. 9월이후부터 12월까지 3~4개월 동해안에서 조업함. 대형트롤은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에서 1년내내 조업을 하고 동해구트롤은 몇 달만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음. 이는 맞지 않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집중토론을 하자는 주장으로 알고 있음. 이후 타협안을 내어놓아야 함. 전체회의를 하면 말싸움만 되고 있음. 효과가 없음. 동해쪽이 3명, 부산 2명, 공익적으로 대학교수 1명 모두 6명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이의있음. 시간이 없음. 열라는 쪽에서 수단을 내어 놓아야 함.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이를 계속 교환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음.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동해에 트롤을 오지 말라는 논리라면 우리는 간다는 논리임. 양쪽에서 같은 의견만 계속 펴면 해결책이 없음. 동해를 양보한 역사적인 문제,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고자 하나 역사적 문제가 있음. 위원장의 제안은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위원장님은 역사에 남을 큰 일을 하기 위해 주재하고 계시니 자기주장만을 또는 내업종만 주장하면 안 됨.

### ◇ 박청(서남구기저수협장)

- 지금까지 1시간 30분을 토론함. 앞으로 남은 문제가 쌍끌이, 외끌이 문제도 있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오늘은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문제를 먼저 한다고 했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트롤은 20억원을 잡는다 했음. 동해안 냉동채낚기어선의 4배를 더 잡음. 이들 어선은 약 100톤으로 4억원을 잡는데 20억원은 엄청난 숫자임. 채낚기 어선도 생각을 해야 함. 문을 열면 몇 배를 더 잡을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동해, 서해, 남해에는 연안어업이 있는데 트롤은 모든 해역을 갈 수 있는 큰 어업이므로 조업금지구역이 있음. 끌어업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도 수천톤이 있음. 어선이 크니까 울릉도 안쪽은 들어오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음. 기업도 대형, 중형, 소형기업이 있는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그런 식의 질문은 대답밖에 되지 않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회함(15:40 정회)

(회의 속개 15:50)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동해쪽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없음. 트롤측은 문서로서 서로 교환하면서 협의를 하자 했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보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봄. 되도록 먼저 3자간에 동해 3, 부산 2, 공익 1명 등 총 7명이 만나 대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음.

### ◇ 김병목(경북도 해양수산과장)

- 당시 노무현장관 방문시 우리도의 입장인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음.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했으면 함. 우리는 불법 고데구리가 없음. 동해안은 자원이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60척을 위한 개방을 반대함. 회의는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빨리 끝내어야 함.

### ◇ 박칭(서남구기저수협장)

- 김영규국장과 차관보의 말이 틀림. 동해쪽 조합장 22명이 장관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차관보를 만남. 차관보는 일방적으로 풀지 않는다고 했음.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총괄협의회로 넘긴다고 했음. 업계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차관보는 절대 일방적으로 풀지 않는다고 했음. 분과협의회에서 안되면 총괄협의회에서도 안되는 것임. 풀든 안풀든 그중 결정을 해야 함. 결론은 이미 났음. 조정위원회에 안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음. 동경 128도 이동을 트롤어선이 항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단지 조업을 하니 문제임. 대형트롤은 대기업이고, 중형기저는 중소기업임. 어선의 크기, 기름 싣는 것 등 게임이 안 됨. 과거 트롤은 양심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음. 이후 오징어가 없어지면 잡어를 잡을 것임. 정부에서 128도를 풀면 영세어민은 죽기로 막을 것임. 분과위원회는 소모성임. 적조대책을 안하고 이런 협의를 하면 안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소모적이라는 것은 자기 잣대임.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우리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음.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음. 70년대 128도 진정서 제출시 정부의 답변은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없으면 해준다고 정부 책임자가 말함. 동경 128도 이동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 4년간만 조업하고 이후 조업금지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학자 입장의 의견으로 김병호교수의 견해는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김병호(부경대학교 교수)

- 본인은 수산경제와 어업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음. 여기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임. 교육자로서 또한 정책 참여자로서 책임감이 있음. 김조합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나 전체적인 메모를 준비했음.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바람.
- 트롤어업은 기본적으로 태생부터 잘못된 어업임. 그러나 22년간 업을 계속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1차적인 책임은 행정쪽임. 제대로 규제를 안 함. 제도와 다른 실태를 받아드렸고, 업자는 불법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간 경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선의의 경쟁자는 약 60척임. 초창기의 선주는 모두 바뀜. 불법이나, 조업구역을 트느냐 등은 이 업종의 도태문제임. 이해관계가 상반되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함. 이러한 갈등은 행정의 무책임함이 큼. 합의의 걸림돌은 대형트롤이 단속, 규제 등에 대해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고 동해쪽은 이에 대한 신뢰감이 없음. 어떤 타협안은 무의미함. 지난 회의시 Win-Win 전략으로 간다고 했다하나 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음. 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으면 손해보는 자도 있음. 어떤측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과감한 지원이 있다면 손해가 없을 것임. 행정쪽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함.
- 5개분과위원회의 토론자료를 검토하였음. 한마디로 어장의 지역주의임. 제주도, 선망 등 모두 그러한 추세임. 5년전 도입된 EEZ제도하에서는 어장이 누구 것도 아니고 서로 공동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아야 함. 국가간 분할이유는 관리의 문제임. 경제측면보다는 EEZ는 어장이 국가간 분할 즉, 지역주의임. 이런 개념을 국내어업에 도입하여야 함. 지방자치의 개막으로 지역주의는 상승작용을 함. 우리의 어업역사는 그간 효율성만 강조하였음. 경제논리보다 분배, 공정성 문제, 사회정의의 판가름 등.
- 오징어를 누가 잡느냐, 트느냐 문제는 경제성을 생각해야 함. 어장과 자원은 공유물이라고 하나 이것만으로 보기는 힘들. 어장, 자원의 인접지역 어민은 그것을 대상으로 삶을 존재하고 있음. 보수적이고 사회보장적이며 지역적 정서를 가지고 있음. 자원과 어장은 경제성 논리와 사회보장적 논리 중 우선순위를 가려야 함. 과거 22년전 대형트롤이 탄생한 근거 2가지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었을 것임. 행정은 합의를 주문하고 있으나 그간 소신있게 한 적이 없음. 과거 무소불위에서 현재는 없음. 어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어업발전의 저해 요인이 됨. 소신있게 정책을 못하는 것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어민을 설득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함. 2가지의 논의는 서로 비교할 수 없고, 이질적임. 행정의 고도의 판단이 문제임.
- 계속 이런 테이블 같은 논의는 언제나 평행선일 것임. 결국 타협안에 이르지 못할 것임. 이런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업계로서 고사한다는 것은 같은 어업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임. 타협안은 있다고 봄. 동해에서 염려하는 것은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나 자체 시스템이 있을 것임. 다수인 20여명이 중구난방식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으니 제약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께서 소수위원모임을 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자고 했음. 그 안에서 토의를 하고 다시 실무작업반이 정리하면서 수차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해 볼만 하다는 안이 나올 것 같음. 실무작업반 구성을 제안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행정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인지. 분쟁이 있어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간에 공정하다고 믿기 어려울 것임.

### ◇ 김병호(부경대학교 교수)

- 공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현실적 문제로서 그대로 두고 방치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현 상태로 동해안은 아름다움. 이것을 깨란 것인가. 어업을 과학적 기초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비과학적 부분이 많이 있음. 비과학적의 대표로 박성쾌 박사의 오징어정책 경제학을 보면 흑이고, 모순의 논리로 표현하고 있음. 박성쾌는 열어주어야 된다는 학자임. 신영태박사도 마찬가지임. 최근 10년간 자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개방해도 된다고 했음. 그러나 1999년도에 249천톤, 2000년도 226천톤, 2001년도 225천톤으로 줄었는데 자원이 증가되었다고 했음. 또한 자율판매로 그 양도 많음. 학문만으로 학자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면세유가 없어지면 그때가서 자리를 마련하면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과국상태에 가서 논의하면 그때는 늦는 것임.

### ◇ 이정길(대정수산대표)

- 김삼만조합장은 통계상 어획량을 말함. 감척이 22척임. 최근 10년간 증가하였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각론을박을 계속하면 소모적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말씀 부탁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의논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일본에도 연안에서 하는 대형트롤이 있는지

### ◇ 김병호(부경대학교 교수)

- 일본에는 소형기선저인망이 있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자기구역에서 잡는 것은 상관없음. 일본은 대형트롤이 없음. 우리는 정부에서 돈이 없다 하여 감척을 못 함. 한척당 2억2천만원이라 함. 저런 배가 있어 자원이 고갈되는 것임.

### ◇ 이재길(경북홍계통발협회장)

- 경북, 강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임. 서해, 남해에는 고데구리(소형기선 저인망)가 많이 있음. 그러나 경북, 강원은 없음. 자원수준에 맞게 낮추었는데 대형트롤이 오면 자원이 파괴되는 것임. 정부는 자율관리와 TAC를 하고 있는데 한번에 이를 파괴하면 안됨. 정부정책이 자원관리 정책을 하면서 일부 대형트롤에 128도를 푸는 회의를 하는 것이 의심스러움. 오징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자체 어업이 문제임. 중용한 것은 동해안의 어업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임.

### ◇ 이정길(대정수산대표)

- 일본의 어장조건상 트롤어업이 안되고 있음. 대만과 중국은 많이 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는 트롤 등 끌이어업이 활발함. 우리는 자원을 위해 TAC를 하고 있음. 고데구리 문제에 있어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동해안 어장의 조건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음. 회의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이 다음 회의날짜를 정하고 5일전에 양쪽의 견해를 주면 어떠한지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해수부의 지침대로 조업을 하여 허용을 하여도 어민들은 믿지 않을 것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128도 개방하여 울릉도 밖(이원)에서 조업을 한다 하나 불신만 더 키우게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불법을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나 어민들의 책임도 있음. 128도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님. 최대공약수를 찾아보자는 것임. 트롤어업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하나 현존하는 어업임. 불법을 하여도 60척, 개방을 하여도 60척임. 무슨 방법을 찾아 다스려야 함. 어업은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여야 함. 이런 사유는 이렇게 하고, 피해는 어떻게 막고 등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면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동해안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나오면 문제는 다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있겠는가. 각자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음. 말꼬리를 잡는 의견은 안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동해안 쪽에 대체적인 몇 개안에 대해 먼저 제안할 수 있는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업종간 조정협의 이전에도 128도를 개방하면 동해안 어업을 대형트롤들이 차지하게 되니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음. 개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좋다는 것임.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실제 현실적인 합의를 위해 이해당사자끼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자망, 통발, 연승 등 모든 업종이 피해어업인데 채낚기만 빼내어 협의하면 안 됨. 만약 토론을 거쳐 정부가 개방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하더라도 어떤 경우도 공조조업은 안된다고 했으므로 그때도 불법조업임. 전국 무허가 어선이 3,000천인데 동해안은 1척도 없음. 이런 부정어업이 없어진 노력을 알아야 함. 같은 조합장으로 도와주고 싶으나 정부가 이를 막아주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고 있음.

### ◇ 김삼용(외끌이협회사무국장)

- 대립업계의 반대사유에 대해 문서로서 전달하여 답변을 들으면 좋겠음. 염창선회장과 이정길위원이 제안한 2가지 중 하나를 결정했으면 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문서로 협의하고 문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까지 줄 것인지를 넣자는 것임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동해안 어업인이 보상을 받고 열어 준다는 것이 아님. 할 이야기는 다 했음. 이것을 다시 서면으로 교환하면 무의미함. 동해안 어업인 전체적으로 보면 반발하니 반발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중앙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고, 업계가 책임질 부분이 있음. 업계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임.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이재길(경북홍계통발협회장)
  - 행정에서 불법을 일괄적으로 막아주면 되는 것임.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동해안과 트롤 양쪽에서 모든 조건을 집행부에 제출하라면 하는데 양쪽간만 문서로 교환하는 것은 안 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염회장 의견에 트롤쪽이 보상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해수부에서 이 회의를 끝내야 함.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우리는 오늘 회의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싶음. 그러나 동해안은 문서로서 안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음. 어떤 방식이든 피해보상을 내놓아야 함. 또한 조업구역 위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어놓으라는 것임. 협의방식에서 소위원회는 안된다 했음. 무질서하고 피해가 있으니 보상하는 대안을 내어 놓으라는 것임.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 과거 원양어획물이 들어와 연근해 어업인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음
- ◇ 이정길(대정수산대표)
  - 해수부는 조정이 안되는 동질성 어업에 대해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이 정도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것임.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것은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함. 안을 말들어 추석 전에 회합을 하는 게 어떤지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업계의 책임이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을 것임. 동해쪽의 요구가 무엇인지 요구업계와 동시에 내어 놓아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위원장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내어 놓아야 함.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견만 나오면 다음 회의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쌍방이 같이 내어놓아야 함. 이 정도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야 함.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만 내어놓으면 안 됨.

### ◇ 김병호(부경대학교 교수)

- 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를 다듬어 가야 함. 제3의 조직이 안을 다듬으면서 하면 효율적임.

### ◇ 박청(서남구기저수협장)

- 상대방이 받아 주지 않을 경우 초안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함. 조합원에 대한 설득문제, 트롤만 하면 안 됨. 대형쌍끌이, 외끌이도 있음. 모든 업종과 협의를 거쳐 보상문제를 다루어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은 3개 어업임. 동시에 의견을 내라는 것임. 흥정도 조정이 있어야 함.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트롤이 안을 내는 것이 좋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동해권은 반대투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 과거 분쟁이 많이 있었음. 조합장은 뒤에서 지원을 함. 이번에는 조합장이 면전에 나옴. 논리에서 지면 지는 것이라 했음. 이미 결정해 놓은 것임. 동해에서 멍처 대형트롤을 사라고 했음. 정부의 보상감정가로 대형트롤 58척을 살려고 생각함. 우선 적당히 조업을 하다 손익분기점을 감안, 감척을 하려고 함. 어업이 되면 그대로 하고 안되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결정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동해구기저 42척도 모두 정부에서 감척하면 됨. 현재 2억2천만원인데 이것을 한일어업협정 가격으로 채낀기어선 구조조정같이 모두 사면 됨. 그러면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음.

### ◇ 장외주(대형트롤협회장)

- 트롤은 당사자인 채낀기와 협의하는 쪽으로 생각하였음. 동해안 전체 어업인을 상대로 하면 힘들.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통발, 자망 등을 제외하려 하는데 안됨. 채낀기만 피해가 있고 다른 업종은 피해가 없다는 것인지. 동해구트롤, 저인망도 어구를 파손하고 있음. 현재의 14척은 덜함. 앞으로 58척이 오면 더 다침. 왜 정부에서 선미식과 현측식을 규제하는 지. 이것이 풀리면 전체 100척이 조업함. 통발, 자망이 다침. 그 다음이 채낀기어업 문제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모든 업종의 분쟁은 현실임.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이나 만약 128도를 개방하면 국가의 어업 관리가 달라짐. 현재 정직하게 단속하여 부정어업이 없어졌나 의문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공약을 하고 다른 자세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임. 트롤은 일방적으로는 못 내겠다는 것인지(그렇습).
-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9월17일, 18일경 다시 개최하겠음. 다음회의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안을 낼 생각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강원도의 정서도 있으니 다음회의는 강원도에서 개최하면 어떤지? 대다수(경주에서 하는 것이 좋겠음)
- 회의종료

### 3. 3차 회의록('03. 9. 25)

□ 일 시 : 2003.9.25(목) 14:00~16:30(제3차)

□ 장 소 : 경북 경주 한화리조트 세미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7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지난 태풍으로 인해 수산피해가 1조원이 이르고 있다고 함. 선박, 양식, 기타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의 피해가 있는 지 궁금함. 여러분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어업인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마음으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어업의 많은 발전을 위해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함. 오늘 회의에 경북, 강원지역의 조합장들이 방청함. 우리 협의회는 공개, 비공개에 특별한 원칙은 없으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방청객의 협조가 필요함. 그간 두 번의 회의경험으로 발언자가 방청객을 의식함. 발언에 대한 무형, 유형의 부타이 될 수 있음. 회의진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방청객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된다면 박수를 치고, 좋지 않은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림.
- 지난번 포항회의시에는 갑논을박을 하였음. 지금까지 회의진행은 2/3정도를 하고 있음. 그간 회의진행에서 조정안을 가지고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어 동해측에서는 트롤측이 우선 조건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시 이를 반복한바 있음. 이후 양측이 적절한 자기주장을 서면화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진행하지는 의견도 오고감. 나중에 사정에 따라 양쪽이 서로 안을 내어 놓는게 좋겠다하고 회의를 종료하였음.
- 저의 생각은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건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면 좋겠음.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이 복잡다단하여 내어놓기 힘들 것임. 해수부에서 부산 대형트롤측과 동해측에 각자 주장하는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보를 한 것 같음. 이후 나온 것이 부산측의 안이 서면으로 해수부에 도착했음. 동해측은 반대입장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하여 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음. 위원장 입장에서 제안에 대해 1차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 트롤측에서 제시한 안을 거론하고 논의하고자 함. 해수부는 부산쪽 제시안을 각 위원에게 오늘 회의를 대비하여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함. 먼저 제안한 측에서 제안취지, 동기 등 부연 설명 할 기회를 드리겠음. 부산측에서 설명 부탁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나름대로 동해안 채낚기어업인과 128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현재 동해안 채낚기어업인의 어려움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회 참석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현재 우리는 트롤측과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하고 있음. 현재 회의진행 중인데도 트롤어선들은 러시아수역, 북한수역, 일 본EEZ까지 조업을 하고 있음. 현재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자제를 하면 모르나 회의진행중인데도 러시아 수역까지 조업을 하고 있음. 채낚기는 1년내내 고생을 하여 오징어 어군을 발견하는데 2달이 걸리나 그렇게 어군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트롤이 올라오고 있음.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임.
- 지난 1주일간 우리는 하루에 300~400팬을 잡고 있는데 트롤어선이 조업한 후 고기가 분산되어 오징어가 없음. 트롤이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연안으로 오징어가 옴. 이것은 바다 선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장들의 이야기임. 이러한 어선들의 불법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과정중에 있다고 함. 트롤어선들이 울산, 부산앞에서 조업을 한다면 모르나 우리 채낚기 주 조업장소에서 작업을 하여 고기가 없음.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해수부에서 져야 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듣고 회의참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현재 52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함.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마찬가지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 부탁.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북방지역인 러시아, 북한해역 등 오징어자원이 많은 해역에서 몽땅 트롤이 잡고 있다. 내려오지 않으면 연안조업이 어렵다는 취지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현재 대형트롤은 58척임. 비조합원 어선 2척까지 하면 60척임. 대형트롤만 이러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대형트롤인지, 동해구트롤인지 밝히지 않겠음. 트롤어선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추석이후 우리어선도 대형트롤을 따라 올라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음. 우리도 대형트롤과 같이 조업함.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를 못하도록 지시하였음. 양해를 부탁함.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회의가 진행중인 중이라도 자제를 해야함. 정부에서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함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불법어업의 단속에 대한 정부입장을 확고함. 불법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임. 이러한 어선이 있으면 즉시 고발을 부탁드림 바다는 육지와 달리 그 범위가 넓음. 현재 그러한 어선들이 있는 위치를 대략 밝힐 수 있는지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러시아 수역인 332. 323. 965. 957해구인데 소위 연해주 수역임. 트롤들이 불법조업을 한 후 우리가 러시아 수역에서 철수를 하여 내려오고 있음. 현재는 대화퇴수역에 있음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림.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인정만 하지 말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림.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우리 회의는 일반논리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함. 128도를 푸느냐, 풀지 않느냐 하는 것 등 지금 같은 불신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결정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음. 가령 그냥 두어 불법조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됨. 이를 철폐한후 기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소용이 없을 것임. 우선 128도를 푸느냐, 풀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대조건이 따라야 함. 내가 업자라도 염회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것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우리는 논의를 거치면 염회장이 거론한 문제도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임. 이런 전제하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임. 우선 부산측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큰 의제로 대두될 것임.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현재 이러한 상태로는 어업인에게 참석하는 명분을 줄 수가 없음. 이러한 불법을 인지하고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없음. 현재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음. 그러나 어업인들도 위반 조업하는 개연성이 있음. 구체적 정보를 주면 행동이 따름.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음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교섭지도과에 전화하면 몇 건 적발한지 알 수 있음. 조치 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함.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림.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우리 회원들은 질서를 먼저 잡고 회의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음. 우리 어업인들이 부탁한 몇 가지를 받아 왔음. 첫째, 대형트롤들이 실제 북대화되, 일본 EEZ, 러시아, 북한수역에서 조업함. 야간에는 집어를 하여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등 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음. 그로 인해 동해 낚시어업인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음.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대형트롤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는 채낚기어선의 책임은 아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책임임. 허장관은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범칙어획물을 위판한 수협도 제재를 한다는 9.1일자 어민신문 기사를 보고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음.
- 아침에 출어를 하여 저녁에 입항하는 어선이 아니고 야간에 조업을 하는 트롤은 모두 범칙어선임. 범칙어획물을 위판해 주고 있는 수협을 정부에서는 묵인하고 있음. 이것은 직무유기임. 범칙어획물을 위판하고 장물을 파는 수협도 과감히 제재를 해야함. 이렇게 하면 효과가 상당한데도 정부에서는 이를 안해주고 있음. 강릉수협은 공조조업을 한 어선은 1년간 위판을 안해주고, 면세유를 중단하는 결의를 했음. 이것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 수협을 제재하지 않으면 200~300명의 어민 소요가 예상됨. 조합에 대해 실행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이러한 것을 강력히 해결하고 협의해야 함. 어민의 살길을 먼저 터주어야 이후 회의의 진행이 가능함. 트롤측의 의견에 대해 어민들은 실망하고 있음. 오징어 길을 막아 속초연안은 2년간 한 마리도 잡지 못함. 러시아부터 길을 차단하고 있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속초수협의 신용불량자는 140명임. 신용금고의 긴급자금으로 막음. 이 자리에 수협장들이 참여하고 있음. 내년에는 다 죽음. 신용불량자로 불이익이 되면 수협장들이 책임을 져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당연한 말씀임.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님. 다 한다고 하나 오늘날 이렇게 되었음. 월선을 하여 트롤이 조업을 하고 있음. 주범, 종범, 공범이 따로 없음. 우리 다 책임임. 이러한 여러 문제는 어쨌든 정부의 정책실패임. 이 실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상호 신뢰임. 국가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업인은 그것을 지켜야 함. 지금 이야기를 국장이 긴급 행정지시로 단속을 실시해야 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염회장님과 김회장님의 의견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어업인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면 안될 것임.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나와야 됨. 같은 어업인끼리 좋은 길을 모색해야함.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만들고 방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음.

### ◇ 이재길(경북홍게통발협회장)

- 현재 트롤들은 정해진 법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자는 것인지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본 협의회의 취지는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임. 지금 위원들은 당장 당하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받을 것은 받는 것이 마땅함. 다만, 상대방을 공격만 하면 협의가 불가함. 앞으로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모두 논의될 것임. 동해쪽의 어려운 문제를 국장이 긴급 지시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공동의견으로 전해 주자는 것임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채낚기쪽에서는 공조를 안하고 있음. 우리의 통신시설로 러시아 국경수비대 함정과 통화가 가능함. 선장들은 트롤어선이 조업을 하는데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하지 말라고 했음.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김국장에게 회의 진행중에 하고 있는 그런 불법행위의 단속을 특별히 강화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음. 부산측 제안에 대해 설명부탁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사실대로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겠음. 우리는 1991년부터 오징어를 잡음. 대화회에서 동해안까지 공조조업을 함. 공조조업 부분에서 트롤이 막무가내로 대화되, 러시아에 가지 않음. 오징어어선과 서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오징어 어선에서 연락이 와야 감. 트롤은 확신없이 올라가지 않음.
- 트롤입장에서 볼 때 협업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음. 현재 수지가 맞지 않음.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한 후 협업비 이야기가 나와야 됨. 김국장님께 문의를 하고 싶음. (트롤어업 허가장을 제시하면서) 허가장을 보면 조업구역은 전국으로 되어 있음. 제한조건에는 선박검사에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조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월선하여 조업하면 안되고, 1척에 2가지 어업을 하면 안됨.
-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무인으로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됨. 1987년과 1989년 당시 일본과 마찰이 없으면 128도를 푼다는 답변을 3~4번 받음. 이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봄. 검사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임. 외교적 마찰이 없으면 해제를 해야 맞음. 신 어업협정이후 묶을 이유가 없는 것임. 현재 128도를 묶을 이유가 없으니 이것을 풀어야 함.
- 처음 허가시 구역을 제한한다는 권한이 없었으며, 71년 허가시에도 제한조건이 없었고, 4년 후 제한을 시켰음. 현재는 협업관계가 대두됨. 수산청 시절부터 답변을 많이 받음. 풀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동해안과 분쟁이 있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동해안 측도 현실 자체를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협의를 해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지금 발언은 제안 설명인지, 부탁하는 사항인지 묻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지금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토의를 집중해야지 협정의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 안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러시아, 북한수역은 국가간 문제로 대형트롤이든 동해구트롤이든 보다 신중해야 함.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봄. 우리도 즉시 내려오라고 요청했음.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음. 김의남회장, 염창선회장, 이재길회장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 아님.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해수부도 어려울 것임.
- 여러 가지 어업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죄송스러움. 트롤협회장의 이야기는 동경 128도는 일 본국과 외교문서로 된 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동해측은 합법으로 알고 있음. 저희 조합의견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충족하지 못할 것이나 동해측 불평인 질서의 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조업구역을 지키는 것에 제도적 장치를 하겠음. 우리어업의 자체가 저층어법이 아닌 중층어법임. 저층어종을 잡는 연안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어떤 일정기간만 조업을 하고 또한 99% 오징어를 잡으므로 오징어만 국한하겠음. 외끌이는 끌리어업이 아니고 후리어법임.
-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만 한시적으로 조업하겠음. 홍게 등 어구피해는 필연적일 수 있음. 조속한 피해조치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보상을 하겠음. 어가하락 부분은 동해쪽에서 일절 판매를 하지 않겠음.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도록 하겠음. 우리의 어선 세력은 많을 때 500척이고 현재 180척임.
- 인천쪽을 제외하면 부산쪽의 어선은 외끌이를 포함하여 약 140척임. 외끌이를 빼면 100척이고 트롤은 58척임. 정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여 자원관리를 위해 감통을 하여 그간 일반감척과 국제감척 포함하여 250척을 감척함. 향후 자원문제를 감안하여 합당한 감척이라면 20~30%의 감척을 제외함. 상식적인 논리로 조합장들은 풀려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임. 공동으로 염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수산업을 관리해야 하므로 설득은 어렵겠지만 현실을 인정하여 다소 길이 있다면 찾아야 함. 질서를 잡아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트롤측에서 제안을 설명함. 국장께서 답변이 필요하면 하여주기 바람.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당장 이를 법제화 하기는 힘들. 현실문제와 오랜 고질적인 문제 등 복잡함. 트롤어업의 제한조건은 상위법과 충돌되는 모순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한 것임. 정부에서는 어업조정측면에서 제한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임. 수산행정은 예술과 같은 점이 있음. 공통점을 찾지 못한다면 어업조정과 어업관리 측면에서 현 수준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정부측의 답변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음. 배이사의 발언은 일본측과 충돌이 없으면 부관을 풀라고 했음. 일본측과 충돌이 없다고 하나 충돌이 현존하고 있는 것임. 지금 묶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임. 이번 회의는 제한조건을 푸느냐, 풀지 않느냐 하는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임.
- 수산업법으로 전국구역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조정, 자원문제, 기타 필요한 경우 부관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을 붙일 수 있는 것임. 당시 합법적으로 일본과 분쟁이 있어 묶였으나 이제는 분쟁이 없다고 하고 있음. 이것은 일리가 없는 것임. 이후 국내에 분쟁이 없으면 풀어야 되나 새로운 분쟁이 생김. 그것을 국가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임.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풀겠다고 한 것이 중요함. 묶은 자체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이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묶어야 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저인망에서 1988년도에 "저"자를 삭제하여 인망이 됨. 트롤허가는 저층이며, 중층허가는 아님. 당시 수산청장이 삭제를 하였음. 동해구에서도 중층을 함. 명태를 작업했으나 명태가 없어 하지않음. 우리도 당시 "저"자의 삭제를 요청하였음. 1허가 1어업이며, 쌍끌이, 외끌이가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는 다는 것임. 트롤을 저층에서 중층으로 변경하고 역지식으로 제한하고 있음. 128도를 풀면 동해안 어업은 말살됨. 중층, 저층을 다 하는데 오징어만 잡을 수 없음. 이러한 두가지 어업의 욕심을 버려야 함. 동해안에서 조업하려는 것에 이해가 안감. 위원장은 어느 편을 들으면 안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본인의 발언은 양쪽에 모두 걸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다 걸림. 이것을 제재하면 회의가 안됨. 중요한 것은 먼저 128도가 생성된 것과 넘어 갔을 때 이를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사건이나 지난 회의때 어업협정에 대한 부속서를 낭독하여 주었음. 그 부속서의 저인망속에 트롤이 들어 있음. 일본법에는 트롤이 없고 저인망속에 트롤이 있음. 원양트롤과 저인망이 있고, 이서트롤도 저인망속에 있음. 규칙에는 없으나 행정예규에는 있음. 오끼야이트롤은 오타보드에 대한 것이 없고 기준도 없음. 지난 회의시 1971년11월에 처음 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당시 트롤어업의 허가는 없고 동해트롤이 있었으므로 이 어업인 것 같음.
- 동해구트롤과 60톤이상의 저인망은 128도이서, 북위 33도이남을 조업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그래서 71.11월에 동해구트롤의 조업구역을 확장하고, 60톤이상으로 하여 128도이서로 허가한 것으로 보임. 이를 1976년 제한조건이 발의되어 지금과 같이 된 것 같음. 편견으로 듣지 말고 양심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대로 해석한 것임.
- 1965년 협정당시 128도 이동은 50톤에서 140톤의 저인망의 조업이 없고 당시 채산성 있는 어업도 없었음. 70년대에 들어 생산정책으로 하여 배를 늘리고 어장을 확대하여 트롤이 허가된 것 같음. 그리고 128도 이동에서는 조업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조건을 붙인 것임.
- 이와 관련 행정처분은 하자라고 생각함. 이유는 한일어업협정은 무한정인데 불구하고 128도 조업금지는 행정처분으로 하고 있는 것임. 이는 어업허가가 성립될 수 없는 제한조건으로서 위헌임. 가령 1년간 조업을 하라고 허가하였는데 5개월은 조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것임. 이러한 문제들도 좀더 심도있게 해야 함. 제도적 측면에서 이렇음. 헌법 120조에 의해 국가는 어업관리, 자원관리를 하는 것임. 어업관리와 연계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임. 어업관리는 자원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다음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이 어업관리임. 어업관리와 자원관리는 천적관계에 있을 수 있어 그물코를 제한하고 조업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정해 놓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위원장님의 발언은 이 회의의 본질이 아님. 정부의 허가는 전국구이나 제한은 부관임. 부관은 붙일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제한을 한 것임. 배이사는 해제할 이유가 생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졌는데 정부가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함. 그것은 아님. 현재 동해안과 분쟁이 있어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회의를 진행하면서 트롤측의 주장은 한일어업협정과 관계가 있다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인간적으로 서로 잘 살자고 의논을 하는 것임. 정부는 반대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것 같음. 또한 반대하면 귀찮다는 것임. 법률로 이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음. 우리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위원장은 대형트롤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동해측은 없다고 했음. 원래 서면으로 주고 받자고 했으나 부산쪽에서 반대를 했음.
- 부산쪽에서 제출한 제1항을 보면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허용될 경우 관계법령에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법조업으로 어로분쟁 방지 및 자원관리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음. 어떤 방법으로 조업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준법을 하면서 조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대형트롤이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공조조업은 불법임. 공조조업 없이 오징어를 잡지 못함. 그러니 합법적 조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수산업법을 시대에 맞게 어법 등을 다시 고치는 방법이 있을 것임. 본인의 견해는 방법이 합당하면 공조조업도 합당한 방법으로 나가자는 것임.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어민이 필요하면 고쳐 주어야 한다는 생각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동해를 개방한다 하여도 공조조업은 불법임. 국장님은 공조조업은 안된다고 답변을 하였음.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개방이 불가하면 못하는 것임. 128도가 묶여 있으니 공조조업도 불법이나 우리는 이를 부정하니 합법적으로 하여 달라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두가지 문제임. 조업구역과 공조조업 문제임. 조업구역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공조조업을 절대 안된다고 국장님이 밝혔음. 우선 공조조업이 합법이란 법을 만들고 논의를 해야 함. 이것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현재 공조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노무현대통령은 법률가임. 김삼만의 말이 맞다고 함. 해수부에 무지한 분들이 있으면 모르나 밝은 분들이 있다면 내 이야기가 맞다고 할 것임.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여기에 많은 조합장님들이 참석하였음. 좋은 의견이 나와야 함. 쌍끌이가 중층망, 저층망을 하느냐 하는데 원래 저인망으로 발전함. 1990년도말 노르웨이에서 하는 어법과 비슷하게 중층망을 개발함. 현재 선체의 구조는 중층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음. 합법적 문제가 대두되어 부경대, 과학원의 확인을 받음.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음. 현재 제주도는 금지구역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음. 국내에서 어장확보가 안되면 어디에서 조업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더 좋은 방법으로 어업인끼리 맞대어 방법을 찾자는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여기 참석한 위원들은 모두 이론가임. 동해안 조합장들은 이 회의를 끝내자고 하고 있음. 우리는 동해안 어업인의 대표임. 이 회의를 계속하면 할수록 좋은 의견을 찾지 못함. 채낚기선주들의 입장은 피를 말리는 것임. 공조조업을 합법화 시켜놓고 회의를 해야 함. 우리 분과위원회는 불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음. 이것은 안됨. 동해안 어업인들이 탈퇴를 해라하여 탈퇴를 하겠음. 왜 이런 회의를 정부가 개최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15:40)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16:00) 회의를 속개함. 우리 협의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음. 정부의 시책에 따라 양쪽의 대립부분이 있으니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협의를 하여 보자는 것임. 이러한 정부의 입안으로 출발됨.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면 회의진행이 불가함.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어 철수하려 했음. 그동안 해수부에서 업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협의회를 마치는 것이 좋겠음. 더 이상의 진행은 불가함. 앞으로 공청회, 해수부 주관 회의 등 다른 방향에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나 128도 분과협의회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회의의 종결보다 일단 한번 더 시도를 하여보는 것이 좋겠음. 반대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음. 개방을 주장하는 측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불쾌한 태도에 대해 미안함.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른 분과협의회는 조업구역을 좁히느냐, 넓히느냐 하는 문제로 합법안에서 협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공조조업이란 불법으로 대립되어 있음. 이에 대해 합법으로 한다고 함. 현실적으로 공조조업 없이 효과적인 어업은 불가능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 먼저 공조조업을 풀어야 함. 그것은 논의하는 것은 일리가 있음. 그러나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이야기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김조합장은 불법 공조조업을 합법화하면 이야기가 된다고 했음. 이 문제는 국장이 표명을 했음. 우리의 협의과정에서 공조조업 문제를 인정한다고 논의하여 합의되면 협의(안)으로 정부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불법을 합법화하되, 이에 대한 많은 제약을 두고 합법화한다면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조업구역 문제보다 조업방법을 먼저 논의하면 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분과협의회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예의상 인사하려 다시 참석하였음. 조업방법에서 채낚기어선에서 1마일 떨어지면 된다고 했음. 그러나 오징어 불배 없이 조업이 안됨. 오징어배 없이 트롤이 끌어보고 조업이 되면 그때 논의하면 됨. 그러나 결국 채낚기어선을 이용한 공조조업을 필요한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조동길 조합장에게 묻겠음. 공조조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하지 않으면 어획고가 떨어짐. 오징어 생태상 불을 따르고 불이 없으면 흠어짐. 공조조업을 하지 않으면 저녁에 100m까지 올라옴. 공조조업과 관계없이 조업이 가능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조업방법에 있어 동해의 어선들도 중층을 함. 저층만 끌면 자망 등의 어구를 해침. 조조합장은 오징어 조업에 있어 중층이 불가하면 저층은 가능하다고 함. 동해안 어업인들에 있어 저층의 분쟁이 더욱더 심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동해안의 오징어 조업선은 수백척임. 이들 어선은 200m이상 내려갈 수 없음. 불이 꺼지면 밤에 오징어는 상승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오징어배 없이 영업이 안됨. 양쪽에서 테스트를 해서 결론이 나면 배를 없애자. 해수부도 짐작을 할 것임. 어업방법이 안되면 나도 배를 없애고 트롤어업도 다 없애면 됨. 이러면 김교수의 의견과 같이 태생이 잘못된 어업의 문제는 해결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위원으로 참석하는 여부는 자유이나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조조업에 대한 여러 문제를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음.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것임. 우리는 모든 현실을 인정해야 함. 이 때문에 정부에서 어려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중층으로 100m내려 가면 새우가 없어진 원인과 같음. 중층의 씨가 마를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조조합장은 공조조업은 하지 않을 수 없어 한다는 것이고, 김조합장은 공조조업 없이 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바다에서 오징어의 생태는 낮에 바닥에 붙어있고 밤에 불을 밝히면 중층으로 뜬. 낮에 바닥에 붙은 고기를 잡기위해 저층을 어망으로 끌면 오징어가 잡히는데 어민들 사이에서 이를 양발이라고 함. 이런 조업을 하면 게자망, 통발이 모두 훼손됨. 포항 앞에 이러한 어구가 많으며 낮에 끌어 박살남. 오징어를 자력으로 잡고 또한 밤에 중간 50~100m에 뜬 오징어를 집어하여 잡음. 불이 있으면 오징어는 오징어배 쪽으로 감.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공조조업이 없으면 트롤은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인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렇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결국 공조조업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임. 이런 세밀한 방법까지 논의하여 현재는 결국 불법이나 장래에 합법이 되는 방법을 찾자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러나 정부는 공조조업을 풀려는 의지가 없음. 지난 회의시 공조조업이 합법화는 안된다고 했음. 또한 위원장은 두 업종의 분쟁이나 모든 업종 때문에 공조조업은 안된다고 했음. 대형선망의 등선, 부속선은 필요가 없게 됨. 또한 정치망의 부속선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임. 따라서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현재는 자제를 해야 함.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안 풀어도 대화되나 러시아까지 가는 것이 현실임.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님. 우리의 반대로 넘어오면 안되는 상태에서 넘어오는 등 불법으로 동해의 선장이 돈을 받고 있음. 그러나 풀어 합법화되면 어업방법상 이길 수 없음. 막아진 상태에서 공조조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노대통령이 장관시설 회의에서 약속하기를 어획강도가 높아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약속을 했음. 정부를 불신하고 믿지를 못하겠음. 적발어선은 몇일이 되면 각 시도에 내려가 조업구역 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또 조업함.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구책으로 대형트롤의 공조조업을 서로 감시하고 범칙어획물을 위판하면 2년간 면세유를 중단하는 제재를 하려고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자구책을 말씀하시는데 공조조업을 안하면 트롤은 오징어를 못 잡는데 그러면 열어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이 문제는 좀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고자 10.10~13일 사이 소집을 하려고 함. 장소는 속초에서 하면 어떤지. 오늘회의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음.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무언가 찾아야 함.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공약수를 찾기를 바람.
  - 회의종료

### 4. 4차 회의록('03. 10. 14)

□ 일 시 : 2003.10.14(화) 14:00~16:35(제4차)

□ 장 소 : 동해수산연구소(강원 강릉)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5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경북홍계통발협회 이재길위원 및 부산시청 권영찬위원 불참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3회에 걸친 지난 회의까지 양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하였음. 특히 지난회의 마지막에 공조조업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단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음. 금일은 진일보된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되기를 원함.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그간 원칙적으로 방청을 불허하였으나 오늘 또 동해안 조합장 몇 분이 참석을 하였음. 이를 허용할 것임. 다만 종전과 같이 예를 갖추어 회의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청하시기 바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온다 하여 반발을 하는 등 방해를 삼가 하시기 바람.
- 본론으로 들어가겠음. 트롤의 이동조업 문제, 채낚기어업과의 관계를 먼저 토의하여야 함.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할 이외의 문제 즉, 아직까지 미 논의된 부산 외끌이 문제, 상대는 서남구기저가 되며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않았음. 따라서 트롤문제를 다시 논의 시 그 이외의 문제는 장외손님이 됨. 의장 생각으로 외끌이와 서남구 문제는 바로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함. 그 내용으로 서남구쪽에서 2명, 부산측에서 2명,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고 그 명단을 금일 회의직후 연락을 하면 10. 20일을 전후하여 부산이나 울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 이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 ◇ 박청(서남해구기저수협장)

- 참여를 거부함. 128도 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공식, 비공식으로 10여차례 이상을 회의함. 이 시점에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음. 현재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였나.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하지 못함. 그간 외끌이 부분에 대해 토의가 늦어진 것에 이해를 바람. 이것은 당사자끼리 논의하였으면 함.

#### ◇ 박청(서남해구기저수협장)

- 반대함.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쪼개는 것은 맞지 않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이것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 이해를 부탁함.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서남구조합장의 의견이 맞음. 외끌이, 쌍끌이를 떠나 모두 128도 문제회의임. 이 회의를 진행하여 종료된 후에 그때 가서 하면 됨. 본 회의를 먼저 속개하기를 바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외끌이 문제는 이것보다 간결하다고 봄. 그럼 본 회의 의제중 하나인 외끌이 문제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떤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동경 128도 문제에 대한 제안중 새로운 제3의 안이 있는지, 또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쪽이 있는지 등을 들은 후 분리를 논의하여야 함. 회의진행 중에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이를 나중에 나누면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지난 회의까지 계속하여 트롤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외끌이 문제는 왜 논의를 않느냐는 제의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왜 동해구는 빠지는 지, 할려면 3개조합이 같이 해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대형트롤과 쌍끌이는 묶고, 외끌이는 따로 토의를 하자는 것인데, 2파트는 합당하지 않음. 동해구트롤, 저인망, 오징어채낚기도 이해관계가 있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이해관계가 있으니 대형트롤과 채낚기를 대표로 하여 논의하고 외끌이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동해에는 많은 어업인이 있음. 요구사항이 많음. 다시 쪼개는 것은 문제가 있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이것도 공식적인 회의로 결의하여 논의하자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매우 답답함. 우리가 동해의 대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동해 어민에 대한 권한문제임. 우리의 권한을 모름. 해수부가 결정을 하는데 양 업계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회의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동해어민 전부를 대표로 할 수 없는 것임.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이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당국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 지방은 어민의 의사를 표현할 대표로 여러분을 추천하였음. 내가 볼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어민생각을 위원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법적으로 권리, 권한 등을 거론하면 회의진행이 어려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여기에서 논의될 것은 해수부가 결정을 해야 하고 만족을 해야 하나 해수부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음. 그간 대형트롤부터 먼저 하기로 했음. 이것을 마무리한 이후에 외끌이문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현재 논의되는 문제를 놔두고 왜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외끌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언급이 없으니 기다리고 다음에 하기로 하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럼 먼저 트롤어업에 대하여 하고, 외끌이는 나중에 한다는 것인지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외끌이는 동해안 일부 수역을 허용하여 달라는 것임. 오늘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보다 소위를 구성하여 별도로 하자는 것임.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임. 성격이 다르니 소위를 구성하여 논의하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방법론임. 트롤문제를 의논하고 그중 외끌이는 뽑아서 별도로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해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다른 위원은 모르겠으나 해수부에서 나의 임명은 외끌이, 쌍끌이 모두 논의할 자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임해야 함. 경북, 경남도계에서 무엇을 잡고 있는지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가지미를 잡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것이 서남구저인망만의 문제라고 보는지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전체 위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동해구기저 하조합장도 해당되지 않고, 박청조합장과 김국장만 의논을 하자는 것인지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전부터 조업하던 장소로서 우리는 솔직히 불법으로 하고 있음.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임. 새로운 선을 그어 달라는 것이 아님. 40년동안 불법으로 하였음. 그러나 국제조약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됨. 당시는 서남구와 친구처럼 조업하고 일본 12해리까지 같이 조업을 하였음.
  - 한일어업협정으로 새로운 선이 그어지고 조업구역이 좁아짐. 좁은 어장이 우리가 들어가 문제임. 유자망, 통발이 있으니 어선감척 후 협의를 하자고 했음. 외끌이는 절반으로 감척을 함. 서남구는 현재 여건이 좋고 우리는 어려우니 요청을 하는 것임.
- ◇ 박청(서남해구기저수협장)
  - 대형기저는 생긴 이후로 불법어업을 한다 했음. 옛날에는 우리와 조업방법과 시기가 같았음. 6월에서 8월은 철망을 하니 약 9개월을 조업함. 대형기저 외끌이는 우리구역에서 조업을 앓 할려 했음. 어장마다 특성이 있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대형은 9월에서 익년 2월까지 제주근해에서 조업함. 그 수역은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은 어장형성이 안됨. 우리는 12월에서 4월이 성수기임. 대형기저는 제주근해에서 노랑조기, 백조기를 잡음. 5천만에서 7천만원을 함.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남의 수역에서 잡고자 함. 고맙다고는 못해도 밥그릇을 내어 놓으라 함. 특정어업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것임. 트롤은 128도를 풀라하고, 외끌이도 풀라하고 하고 있음. 3년간 조업이 부진하다 하여 그리하고 있음. 말이 안됨.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우리의 연간 어획고는 4억이나 서남구는 8억임. 같은 어구어법이고 같은 규모의 선박임. 명칭만 대형임. 우리는 한일어업협정이후 도산 상태임. 먹고 살라고 조정하여 달라는 것임. 어획고가 절반이나 차이남. 서남구는 9월에서 익년 5월까지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함. 우리의 요구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임. 1개월 또는 2개월이 겹침. 우리가 107도 이서에서 조업할 때 서남구는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함.

### ◇ 박청(서남해구기저수협장)

- 일본 EEZ에도 고기가 많남. 쿠파가 2,880톤인데 10월이전까지 43.9%를 소진함. 고기가 나지 않고 있음. 그때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이 불가피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양쪽이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음. 안되면 끝에 협의하는 것이 좋겠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것은 안됨. 대형트롤부터 협의하자고 했음. 외끌이는 더 어려우니 쉬운 트롤부터 하자는 의미임. 대형트롤의 조업구역선은 동해까지 전국임. 수산자원보호령과 허가규칙에 있는 것을 풀어 트자는 것임. 그러나 대형외끌이는 수산자원보호령에 128도까지 조업구역임. 이를 풀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임. 그래서 반대함. 또한 보다 쉬운 것부터 풀라는 의미로 알고 있음. 본인은 오징어채낚기 선주이면서 왜 가담을 하는냐 하고 있음. 우리조합은 자망어업인이 많이 있음.
- 외끌이는 삼천포까지 하고, 동해에 오지 않으면 어선수가 적으니 우리수역은 조업이 됨. 도계까지 오면 배 숫자가 늘어남. 경상북도 도계까지 왕래하는 것은 아님. 칠조망을 설치하여 못가게 하면 경북은 안감. 그러나 경남고기는 경북, 울산까지 옴. 다 잡으면 경북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과거 외끌이, 쌍끌이, 트롤은 돈을 많이 벌음. 돌 벌 때 아무말 하지 않고 현재 여건이 변화되었으니 어장을 내어 놓으라는 것임. 도덕성도 없음.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한가지만 물겠음. 김조합장과 박조합장님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두 분의 허위성에 대해 이야기를 함. 대형외끌이는 60톤이상이고 중형은 60톤미만임. 두 어업에서 어느 것이 연간 어획고가 많은지. 외끌이 선주 28명중 0.1평의 작은 공간의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20명임. 그러나 여러분은 차를 타고 다님. 이것은 사실 그대로임. 외끌이 선주는 차도 없이 다니고 있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우리 동해구는 어획고가 1억2천이며, 많은 어선이 3억2천의 어획고를 올림. 일본 EEZ에 2척이 입어하고 이 어선들은 4억원을 하고 있음. 서남구에서 잡고 있는 가자미는 남해에서 올라오고, 명태는 내려옴. 감포에 있는 동해구는 어디에서 조업을 하나.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107도를 깨고 동해구가 서남해구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일방적으로 우리만 풀라고 하면 어찌하나. 구역을 나누는 것은 자원관리임.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됨. 대형기저가 4억을 한다는데 우리는 1억2천내지 3억을 함. 우리도 자선장이 10명 있음.

### ◇ 박청(서남해구기저수협장)

- 대형기저는 정식조합원이 28명이고 모두 50명임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서남구는 56척이 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19척이 128도 이동에서 조업을 함. 우리업체도 불법어선이 20여척 있으나 불법어업을 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선은 없음. 이외 어선은 전남에서 불법으로 오타를 달고 조업함.

### ◇ 박청(서남해구기저수협장)

- 풀면 비조합원도 같이 조업을 할 것인지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20여척은 전남에서 제주근해까지 오타를 달고 불법으로 조업함. 우리가 파악도 할 수 없음. 서남구는 30여척이 넘음. 모두 조합원임. 107도선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절반이 되지 않음. 풀면 그 배들은 사용 못 함. 어선형태가 다름. FRP로 구조가 다름. 오타를 달고 조업하고 있어 이를 개조하여 조업이 불가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동해구도 오타를 달도록 해야함. 오타를 달면 6명이면 되나 현재는 8명으로 조업을 함. 법을 바꾸어 주어야 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대형외끌이는 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는 부정어업을 하는 어선은 조합원에 가입을 시키지 않음. 궁극적으로 해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트롤어업도 불법임. 서남구 어선도 업종을 변경하여 조업을 하는 실정임. 그러하니 정부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함.
- 외끌이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은 부산에서 많은 시간을 걸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음. 한 업종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외끌이는 이해당사자가 협의를 하자는 것임. 찬성하는 조합장은 없을 것임. 토론을 해 보자는 것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동해구기저도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토론하여 보자는 자리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내 이야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음. 외끌이와 서남구는 트롤과 분리하여 소위에서 토론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임. 대형트롤과 채낚기도 소위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 소위에서 이야기하여 결단을 내린 후 본 회의에 보고한 후 끝내자는 것이 본인의 생각임. 외끌이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님. 지금까지 오해가 있으면 미안함.
- 먼저 소위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트롤에 대해 토론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있음. 반상회도 아니고 의장의 체면도 있는데 내 뜻을 믿어 주기 바람. 2대2로 만나 음성을 낮추고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음. 당초 3개 파트로 나누고자 했음.
- 어업이 큰 대형트롤과 채낚기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대형기저외끌이 문제도 해소될 것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했음. 지금까지 거론이 되지 않은 외끌이 문제에 대하여 미안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여 결론이 안되니 서로 머리를 맞대어 협의를 하자는 것임. 모든 위원이 다 모여 협의하면 중구난방식이 되니 진행이 어려움. 그래서 기능을 분리하여 하자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설득해 보겠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음. 소위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위원을 참여 시켜야 함. 2대2는 섭섭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사람이 많으니 직접 당사자만 하자는 것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자망, 통발도 이해당사자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소위를 구성하면 행정공무원 등 많이 줄어 들 것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합의도출이 어려운 문제임. 여러번 회의를 하였으나 외끌이는 거론을 하지 않았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음. 조합에서 많이 나가지 않겠음. 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떤지

### ◇ 박청(서남해구기저수협장)

-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님. 대형기저의 옛날 황금시대부터 이야기임. 대형기저는 선주선장임. 옛날에는 대형기저를 고발도 함. 현재 협조하고 있는데 왜 공식적으로 풀어 달라는 것인가.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거론하는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오징어채낚기와 행정공무원을 제외하고, 통발과 하조합장, 박조합장, 본인 4명이 나가겠음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우리는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것임.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그러면 쌍끌이는 어디에서 협의하는 것인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쌍끌이는 동해까지 오려는 것이므로 외끌이만 소위를 구성하는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동해측 의견을 받아 들여 4명, 외끌이는 4명 이내로 하여 10.20일 전후로 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장소는 어디로 하나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김삼만(영일수협장)

- 경주가 좋겠음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대형기저외끌이어업 문제에 대해 소위 구성을 합의하고 논의하고자 결의를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함. 연세도 있으신 위원장님께 고생을 시켜 죄송함. 정부의 어려움은 국론이 분열되는 것임. 바람직한 방향에서 빨리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임. 인내를 하고 기다리겠음. 소위구성은 결과적으로 잘된 것임. 상호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최종 의견을 128도 분과협의회에 보고를 하여 전체적으로 이를 조정하면 됨.
-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임. 이러한 회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음. 생각보다 불법과 불신의 뿌리가 수산전반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음. 연근해어업을 개편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함. 신정부가 아니라면 감히 불법에 대하여 테이블에 앉아 토론을 할 수 있겠는지. 앞으로 소위를 통해 여기에서 못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면 좋겠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 트롤과 채낚기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한 문제를 제기하면 견해가 또 다름. 그러하니 지금부터 합법, 불법을 떠나 공조조업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함. 공조조업의 필요성 등 현재 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부탁함.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부탁함.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외끌이와 서남구기저는 별도 소위원회가 구성됨. 대형트롤과 채낚기어업에 대해 그간 2. 3차 협의하였고 재론이 되나 열면 안되는 것임. 공조조업 문제에 대해 2차회의시 김삼만 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였음. 대형트롤이 자력으로 오징어를 잡는지 보자고 했음. 결과적으로 열어도 불법을 하는 것임. 열려면 원칙이 서야 함. 핵심을 협의하여야 함. 열되, 공조조업을 안된다는 단서를 붙임. 지금까지 분과협의회를 통해 공조조업 문제가 수면위에 뜬. 등선 없이는 오징어를 못잡음. 트롤에서 오징어를 잡아 각 항구에서 위판함. 이런 제도가 확실히 정리되면 대형트롤의 요구는 수용이 가능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대비 방법이 무엇인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간단함. 대형트롤의 제안이 오징어만 잡는다고 했음. 실제 우리는 대형트롤에 당하고 있음. 이를 제도화하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불법조업을 하지 않으면 열어도 좋다는 것임. 그 방법은 무엇인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그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염회장과 견해가 다름. 대형트롤은 조업구역 및 조업방법을 불법으로 하고 있음. 조업방법 불법은 더 악질임. 조업방법의 불법을 해결 할려면 어선을 모두 없애야 함. 법질서를 바로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잡기 위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연다, 못연다를 전제로 이야기 하지말고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조조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된다는 식의 견해를 부탁함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공조조업에 있어 이동하는 어류는 불빛으로 결집함. 이런 고기를 동해에서 조업하므로 우리 자원은 멀지 않아 물만 있는 소양강 끝이 됨. 따라서 채낚기 입장에서 볼 때 공조조업은 두려운 상대임. 불빛에 모여든 오징어만 잡는 것이 아님. 모든 것을 다 잡음. 옛날 바다는 물 반, 쥐치반이었음. 이후 트롤이 끌어 쥐치가 없어짐. 조업구역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조조업임. 기성세대는 후손에게 자원을 남겨 주어야 함.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공조조업을 두려워하는 것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은 각 지역의 책임자임. 이를 어민에게 홍보하여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자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공조조업은 영향이 있다는 것임. 트롤측에서 공조조업의 성격과 현실조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부탁함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당시 쥐고기 자원이 없어진 이유는 1991년 그해 콩쥐치가 부산연안에서 제주까지 많았으나 그해 가을부터 잡히지 않았음. 연구자료도 있음. 트롤이 잡아 멸종된 것은 아님. 공조조업에 있어 트롤입장에서 보면 모든 어업자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장려하고 지원을 해도 업계에 수익성이 없으면 소멸됨.
- 하지만 자원문제의 거론은 가능함. 같은 어종을 잡을 경우 생산원가 측면에서 생각할 때 매우 좋다고 봄. 1991년초 오징어 공조조업 자체가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싫어하고 관계가 불편하여 말썽이 있었음. 10년 동안 흘러 현재는 오히려 채낚기쪽에서 원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함. 이것은 채낚기도 자체 생산외에 공조 조업비에 의한 이익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 실제 초창기 오징어 어획에 의한 이익이 많았음.
- 그러나 공조조업비가 상승하였고 실제 선주의 순이익 절반이 공조조업비로 지출되는 것이 현실임. 선망 33통도 오징어를 잡음. 오징어채낚기와 하는 공조조업과 동일한 어법임. 현재 까지 채낚기와 트롤간 분쟁이 전혀 없음. 잘하고 있는 실태임. 앞으로 인력 등을 감안할 때 같이 공조조업을 해야 수익을 낼수 있고 채낚기도 살아 남을 수 있음.
- 자원문제는 앞으로 TAC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됨. 트롤이 128도 이동에서 오징어를 못잡으면 부산항에 고철로 묶어 놓아야 함. 업종 자체가 공조조업을 하더라도 10년을 지탱하기 어려움. 트롤어업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을 한다면 트롤을 없애야 함. 트롤은 연간 6~7개월 조업함. 옛날같이 연안에서 잡어조업을 안함. 수지가 맞지 않음. 트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하나 오징어만 그러함. 우리는 99%가 오징어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참고로 묻겠음. 실제 채낚기어선과 공조조업시 선박자체에 위험은 없는지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초창기 응하지 않을 시 그냥 끌고 감. 조상기까지 끌려 감. 당시 공조조업은 현찰이 안되어 오징어만 골라 채낚기어선이 갖고 갔음. 오징어 이적을 위해 선원이 올라가 위험하였음. 이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후 돈이 오고감. 지금은 대부분 공조조업이 줄었음. 20~30톤급 자선장 배는 공조하여 선원에서 얼마를 줌. 일부 육지에서 선장을 고발하는 사례도 있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트롤측에 묻겠음. 공조조업시 선박선택은 기술적 선택인지, 인간관계 선택인지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관행적으로 자기 짝이 있음. 한 척에 7~8척임. 몇 년간 지속됨.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음. 선주앞으로 가고 있음. 바다에서 스스로 정착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염회장, 냉동선의 경우도 대상이 되는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대상이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통상 공조조업을 하는 어선은 몇톤급인지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냉동선은 100% 하지 않음. 갈수록 늘고 있으나 50%정도로 추측됨. 다른 채낚기어선은 99% 다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9월부터 익년 2월사이 기록이 있는지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시작하면 바로 함. 9월 초창기는 불빛없이 땅발이를 함. 많이는 700~800개를 잡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원점으로 돌아가야 함. 법부터 하고 기술적으로 작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좋겠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동해구기저는 땅발이로 오징어를 못잡는지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땅발이를 얹으면 오징어를 잡음. 아침에 출어하여 100개정도 잡음. 모든 어업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두 채낚기선주협회장은 대형트롤이 합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하다면 열 수 있다는 것인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김삼만조합장은 채낚기자격인지, 영일조합장 자격인지 묻고 싶음. 영일조합장은 냉동선이 있음. 다 알면서 왜 묻는 것인지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무슨 자격인지 모르겠음. 염회장의 발언에 의문이 있음. 그래서 묻는 것임. 트롤이 합법적으로 하면 공조조업 없이 열어 주자는 것인지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공조조업은 모호함.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음. 검찰을 불러도 못 밝히고 있음. 매우 애매함. 해수부의 해석은 당해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와주는 것이 공조조업이란 견해를 밝힘. 채낚기가 트롤을 도와주면 불법임. 그러나 이것을 따지기가 어려움.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 부탁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스스로 실토를 얹하면 잡지 못함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원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말고 좀더 진전이 있어야 함.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이 많이 축소됨.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불법이라고 단정하면 처음부터 협의가 필요 없는 것임. 이것은 불법을 논의하지는 것임. 우리 의견을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도출해야 함. 정부에 도와 달라는 식의 협의가 되어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채낚기가 오징어 자체를 잡는 것은 합법임. 트롤도 낮에 오징어를 잡고 있음. 500~600개 잡음. 이는 합법임. 그러나 낮에 조업할 경우 자망어구 훼손이 심각함. 어구를 다치면 돈을 주고 있음. 자망어업 자체를 못함. 그래서 열면 안된다는 것임. 열수 있는 시점은 채낚기어선이 트롤어선과 숫자가 같을 때 가능함.
- 7척 1선단으로 자망어구를 훼손하여 않됨. 등선 1척에 트롤 1척이면 돌아다니지 않으니 가능함. 현재 동해안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 (사진제시) 구룡포 방파제 앞에 표박하고 있는 대형선망 선단임. 현재 새로운 분쟁이 발생됨. 대형선망의 불배위에 집어등을 달고 밑에는 수중집어등을 달고 있음.
- 채낚기어선이 집어를 하면 대형선망쪽으로 감. 채낚기에는 고기가 없음. 선망이 동해안을 다 죽이고, 채낚기를 죽이며 전쟁을 하고 있음. 항의한다고 큰배로 채낚기어선을 박고 있음. 새로운 시비가 발생된 것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공감함. 지난번 대형선망은 트롤 등이 동경 128도를 못오도록 시위를 함. 선망은 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 해수부도 여러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국가로서 모든 어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감히 이야기를 못하겠음. 앞으로 WTO/DDA, 어어용유류 가격 등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국가는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동경 128도 이동에서 조업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1개월임. 업종별로 해수부가 기준을 정하고 있음. 여수쪽에서 오타를 달고 조업하는 어선은 1년간 허가취소임.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어업질서를 잡고, IUU도 채택되었으니 후손에게 좋은 질서와 자원을 물려주려고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 모두 잘잘못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토론을 해 주기를 부탁함 (10분간 정회)  
(회의 속개 15:50)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많은 시간을 통해 공조조업 이야기를 했음. 공조조업은 불법이나 안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임. 선박의 충돌 등 선박안전 차원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물었고 이는 이미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음. 법 이전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정부측은 참고를 해야 함. 그간 많은 이야기를 함. 내 생각으로 대형트롤과 채낚기어업간 소위구성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음.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시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니 소위를 구성하면 김병호 교수도 나름대로 안을 제시한다고 했음. 그러면 대형트롤도 안을 내놓고, 채낚기도 속내를 이야기할 분위기가 될 것 같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현재까지 트롤과는 대화할 만큼 했음. 공무원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 소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필요한지.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지금까지 포괄적인 대안은 내어 놓았음. 그러나 새로운 안이 안나옴.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김병목(경북도 해양수산과장)

- 경북도 입장을 말씀드릴. 그간 협의를 통해 양쪽 업계의 어려움은 알고 있음. 어획고가 15% 감소함. 금액으로 볼 때 매년 10%씩 감소함. 물론 어업협정, 수입자유화, 적조, 태풍, 고수온, 냉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경북도에는 채낚기, 동해구기선저인망 등 4,700여척이 있으나 그중 5톤미만어선이 3,000여척임.
- 경북도에는 불법어업이 거의 없음.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는 영덕대계 쪽에서 약간 불법이 있음. 암수관계 및 채장관계임. 또한 야간조업 신고가 몇 건 있음. 지도선이 필요 없는 실정임. 동해안 128도를 풀면 소형채낚기어선 1,000척과 소형어선 4,000여척이 문제임. 이를 참고하여 협의를 해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본인도 자기모순을 가짐. 우리는 128도를 푼다, 안푼다는 회의임. 128도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좋은 의견을 받자는 것인데 김과장의 말씀은 도 수산책임자로서 당연한 이야기임. 지역적 문제도 있으나 해수부는 국가적인 입장임. 자원상태, 어업경영, 어업질서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그 부분의 하나로 협의하고 있는 것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시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제의함. 이러한 본인의 제의를 받아 주기를 부탁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트롤측에 제의하겠음. 심정은 이해를 함.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임. 오징어는 10월10일되면 흉도, 삼천포로 감. 10월에서 12월까지 채낚기어선이 동해에 있음. 겨울철, 연말이면 남쪽으로 감. 12월에는 흉도까지 내려감. 트롤구역에서도 오징어 잡이가 가능하나 채낚기어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채낚기어선을 사서하면 가능하지 않겠는지.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오징어는 낮에 저층에 있고 밤에는 수심 절반위에 있음. 오징어배의 불로 가니까 채낚기어선만 없으면 충분히 조업이 가능함. 채낚기어선이 있어 그곳으로 오징어가 가서 조업이 않 됨. 그러니 오징어배 옆으로 올려는 것임. 정부에서 감척을 다 하면 모르나 채낚기어선을 사서 현실적으로 트롤구역에서 조업을 하면 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저의 제안에 대해 위원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끝까지 가겠음. 128도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 위원장 판단으로 소위를 구성한다는 의견을 받는 것에 동의함. 다만 소위가 열리는 것은 아님. 위원장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128도를 푼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무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음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소위를 구성한다면 참석범위는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해수부는 참여하지 않고 위원장이 중재를 하고, 기록만 해수부에서 하면 어떤지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김병호교수도 참여를 하고, 내 생각으로는 부산에서 2명, 동해안측은 의논하여 3~4명으로 하면 어떤지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제주도주변수역 분과협의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음. 거기는 조업구역 문제로서 연근해어업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분위기가 좋으나 여기는 단지 128도만 협의하니 경직됨.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차원에서 협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협의가 쉬울 것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조업구역 조정문제이나 알기 쉽게 동경 128도로 표현한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128도 분과협의회는 조업구역이 128도 하나로의 문제임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동경 128도는 부관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제주도 주변수역 금지구역 문제는 밖에서 조업을 하라는 것임. 이 문제도 결국 조업구역 문제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외끌이 문제는 그간 다루지 않아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소위는 일리가 있음. 트롤과 채낚기문제는 그간 수차 토론하여 나올 것은 다 나왔음. 의혹이 있음. 이런 소위는 하지 않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것이 좋겠음. 지금 논란 것은 동해안 어민은 막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합법이면 풍다는 의견이 나옴. 동해안 어업인의 주장은 128도를 풀면 안된다는 것임. 합법이고, 불법이란 이야기가 아님.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대안이 합법으로 나올 수 있음

### ◇ 염창선(전국채낚기연합회장)

- 128도를 연다고 해도 불법조업은 계속 따라 다님. 따라서 등선을 가지고 잡는데 합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임. 128도를 열어도 불법조업임. 등선을 가지지 않으면 조업이 안된다고 조조합장과 김조합장은 이야기를 했음. 불을 안키고 조업을 한다는 명분을 주는 것임. 낮에 잡는다는 것은 명분임. 과연 공조조업 없이 조업이 가능한 것인가. 김조합장은 선미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임.

### ◇ 김병호(부경대학교 교수)

- 김삼만조합장은 트롤에 대해 이야기를 다 했다 했음. 그러나 절대 다하지 않았음. 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음. 3차례의 회의를 했으나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음. 128도를 푸는 문제와 공조조업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트롤이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3가지 관점에서 불법임. 첫째 조업구역 위반, 둘째 수산자원보호령상 금지구역 위반, 셋째 어업방법인 공조조업 문제임. 오징어 조업은 이 세가지와 불과분의 관계임. 같이 되어야 오징어 조업이 가능함. 따로 협의하면 현실성이 없음.
- 제도적 측면에서 이 세가지의 허용은 국가 기본법 체계를 흔드는 것임. 이의 해결방법으로 특별허가제를 생각해 보았으나 더 혼란스러움. 2주전 일본교수로부터 일본에서 자원이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많은 경우 현재 허가제도로 이를 못잡아 허가어업 틀이외 어업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협의로 시험어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음.
- 시험어업은 제도적으로 계속하는 어업이 아니라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이 있다면 연장을 함. 시험어업허가는 기존 허가를 초월하여 기존의 허가규제를 받지 않음. 우리도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현행 수산업법 제42조 제2항의 내용으로써 가능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행규정에 의한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어업자·제1항의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간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독립법인체를 트롤업계, 채낚기, 동해안어업인 대표로 한시적으로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 어획고중 직접 참여하는 채낚기와 트롤이 경비를 가지고 가고 일정부분은 대형트롤의 감척기금 조성. 이를 동해안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대형트롤이 10년이내에 소멸하는 한시적 법인체를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음. 현재는 허황될지 모르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다소 현안의 돌파가 가능함. 현행제도는 그대로 두는 것임. 허가규칙상 128도 이동조업 금지도 그대로 살리고 시험어업이란 허가이외의 어업으로 가면 됨. 이런 생각을 다 들으면 절묘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우리도 시험어업 제도가 있음. 일본과 같음.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어구·어법의 개발임. 현재 하고 있는 어업을 가지고 숭통을 트자는 명목이 아님. 새로운 어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시험어업을 하는 것임. 이상적일 때 본 허가 이전에 전초 방법으로 하는 것임. 김교수는 3가지이어야 조업이 가능하다고 했음. 이것은 조업구역을 풀어 달라는 것임. 공조조업은 말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도 하지 말라는 것임. 김교수의 논리는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다름.

- 대형트롤을 위해 서울의 모 학자가 한 것을 전달하는 것 같음. 이것은 아님. 받아 드릴 수 없음. 어법문제가 아니라 128도를 열어서 오징어를 잡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임. 그간 논리에서 졌음. 이제는 끝나는 것임. 저쪽에서 대변하는 논리는 박성쾌의 오징어 경제학에 다 들어 있음. 그 교수에게 4번에 걸쳐 반박을 하는 등 7번 했음. 그러나 박교수는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전화 한통 없었음. 논리에서 졌음.

### ◇ 김병호(부경대학교 교수)

- 논리에서 졌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이제 정부를 믿어도 되겠음. 손들 생각은 없는 것 같음. 열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꼴을 3꼴 넣었을 것이나 우리꼴에는 들어오지 않았음. 논리에서 성공하였다 하는 김조합장은 해수부장관 위에 있는 것 같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쪽 주장과 논리에 대해 우리가 반박을 하였음. 이후 거부함.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써 왔음. 이것을 오늘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소위구성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그렇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우리는 찬성함.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협의회 구성원이 여러명 있어 구체적 협의를 않되니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임.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진지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동해측에서도 그것에 대한 무드가 있다고 생각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해수부가 동해개방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나, 논의 대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수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에 반가움. 128도를 연다고 결정한 상태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이면 좋으나 우리는 반대를 하니 또다시 소위원회 구성을 필요하지 않음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128도를 묶을 당시 동해안이 반발하고 피해 때문에 묶은 것이 아님. 따라서 동해쪽에서 이를 푸느냐 안푸느냐 할 필요가 없는 것임. 왜 이를 묶고 왜 풀어달라고 하느냐 하는 기초를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두고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양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에서 나옴. 128도는 국가간 분쟁 때문에 부관으로 이를 묶음. 수산업법에 자원보호 또는 분쟁해소를 위해 부관을 달 수 있음. 일본과 소리가 없었으면 그때 풀면되었으나, 안푼 상태에서 5년간 허가를 갱신함. 그러다 1988년부터 15년간 새로운 분쟁이 시작됨. 1991년부터 공조조업을 하여 새로운 불신이 생겨 정부에서 안풀어줌. 이를 정부가 풀 수 없는 것임. 배이사의 주장은 일리가 없음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1965년 일본이 요구하여 1976년 정부가 이를 받아드려 부령에 정함.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니고 전관수역 시절임. 일본의 요구에 의해 128도를 묶었으나 남의 주권을 침해한 것임. 합법적 조건으로 일본이 협정을 파기함. 일본 스스로 이를 무시함 것임. 이는 다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 정부가 이를 풀어주고 싶어 1998.3월에 이 자리와 같이 동해개방 문제를 협의에 부침. 분쟁해소를 위해 정부가 인정한 것임. 당시 하두조는 풀라고 했음. 동해는 아무 언급이 없었음. 내가 주장하여 4.9일 문서를 보냄. 이것으로 풀어주지 않았음. 이제 와서 정부가 분쟁이 없다고 하면 않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소위구성을 제안하였으나 상대가 않하겠다 하면 못함. 철회함. 트롤과 채낚기문제에 대한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음. 오늘회의는 외끌이어업 문제에 대한 소위구성을 합의하고, 트롤과 채낚기문제의 해결방법은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하여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음. 소위원회 회의소집은 별도로 통보하겠음
- 회의종료

## 5. 5차 회의록('03. 10. 24)

- 일 시 : 2003.10.24(금) 14:00~16:35(대형기저외끌이소위원회)
- 장 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참석자 : 협의회위원 8명(해양수산부 정용균사무관 배석)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소위원회 개최 배경 및 대형기저외끌이측에서 경북, 울산 경계인 방위각 107선까지의 조업 구역 조정요구와 서남해구기저측의 의견을 설명한 후 양 업계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함
- 현재 대형기저외끌이 어선척수(48척)와 시도간 분포내용, 조합원수, 107도선이남에서의 조업 척수 등을 설명함.
- 대형기저외끌이가 동경 128도 이동인 동 수역에서 약 40여년간 위법으로 조업한 사실과 서남해구기저의 전개판 부착 조업 등 위법문제를 언급함.
- 92. 93. 94해구에서 중형기저인 서남해구기저어선과 대형기저인 외끌이간 조업한 사실을 설명
- 서남해구기저 어선의 시도별 분포척수, 조합원수, 일본 EEZ를 포함 해역별 조업척수 등 일 반사항을 설명
- 사실상 서남해구어선의 92. 93. 94해구 조업척수는 적으나, 일본 EEZ 입어, 어획할당량 등으로 보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을 설명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불법어업자를 단속하지 않고 조업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서남구기저어선의 전개판 부착 조업은 위법사항이나 단속을 않함. 따라서 동해구기저도 전개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박청(서남구기저수협장)

- 당초 중형기저는 남해구, 서해구, 동해구로 구분된 것을 서남해구로 강제 통합한 것으로 원래 전개판 부착 조업이 허용된 어업임. 또한 대형기저외끌이어선도 전개판을 부착한 경우가 있음. 수십년전에 전개판이 부착된 것이고 어느날 갑자기 이를 부착한 것은 아님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일부 비조합원이 전개판을 부착하고 있으나 대형기저 조합원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힘. 현재 대형기저외끌이 조합원은 30척으로 전개판을 부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음. 전개판을 부착한 어선은 동해안에서 조업채산성이 없어 들어 올 수 없음.

### ◇ 박청(서남구기저수협장)

- 대형기저외끌이어선이 92내지 94해구 입어 요구는 시기별로 보아 제주근해 조업이 어려운 시기에 오려는 것임. 비조합원은 전개판을 부착한 어선으로서 동해안에서는 조업을 하지 않으나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용할 경우 이러한 어선도 같이 조업을 하게 될 것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현재 조합원 어선중 일부가 일본 EEZ에 입어를 하고 있으므로 동해안 수역에서는 20여척보다 적은 어선이 조업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어업경영이 어려워 요구하는 것이므로 도와주기를 바람.

### ◇ 박칭(서남구기저수협장)

- 최근 서남구기저어선 18척이 조업을 하고 있으나 통발, 자망어업과 경쟁조업으로 어구훼손이 심하여 피해배상 등 분쟁이 심함 상태임. 수십년간 같이 조업을 한 대형기저외끌이 어선에 대해 지금까지 조업을 허용한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기 보다는 동반자살을 하자는 것으로 허용이 불가함.
- 현재 일본측에서는 우리업계를 일본 EEZ에서 퇴출을 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일본 쌍끌이와 우리업계간 조업분쟁이 있기 때문임. 우리 어선이 먼저 투망을 하고 있어도 일본측에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임. 장래 일본측에서는 계속 우리어선의 입어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업계가 이러한 처지에 있음.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저인망어선이 전개판을 부착하는 것은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권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개판 부착 문제를 묵인하면서 논쟁을 한다는 것이 문제임. 지금까지의 수산정책은 대부분 경남, 부산어업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자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우리조합은 수산업법상 명확한 어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아닌 경우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음. 서남구기저에서 전개판을 부착한 어선은 대부분이 전남쪽 어선임.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위법으로 조업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 동해안의 서남구기저는 위법조업을 앓함.
- 대형기저외끌이어업은 매출액이 평균 3~4억원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통발업계에서도 어구훼손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조업구역 위반 조업을 함으로써 도주할 때 어구를 훼손하는 것임.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접근이 필요함. 어선의 수가 많다면 이는 국가에서 어선감척사업으로 풀어야 하는 것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최초 저인망어선은 200척이었으나 수산업법 개정시 이를 동, 서, 남해로 구분하였음. 이러한 것을 이제 다시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현재대로 조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앞으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선의 수를 반으로 감척한 후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인공어초사업은 그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러한 예산으로 저인망어선에 대하여 현 시가로 보상하여 줄 것을 3개조합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함.

### ◇ 박칭(서남구기저수협장)

- 동해구수협장의 제안은 개인적인 요구로서 우리는 이를 반대함. 대형기저외끌이어선중 4억7천 또는 4억8천을 하는 어선이 많음. 이러한 매출액중 반이 경비로 소요되고 선주는 1억4천이되므로 어렵다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 아님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이재길(경북홍계통발협회장)

- 중간수역에서의 통발조업은 지난 '99년부터 시작하였고 홍계에 대한 TAC를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함. 현재 일본은 중간수역에서의 어구틀수를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그간 14차 회의를 진행함. 통발 270~280개가 1세트이며 보통 35~38세트가 소요됨. 어구 값만하여도 5~6억원임. 저인망어선이 요구하는 수역은 자망과 통발어선이 어구가 대단히 많은 수역임.
- 어업특성상 저층에 어구를 설치하므로 저인망어선이 조업시 어구훼손은 불가피함. 개통발과 장어통발은 일본 EEZ조업이 불가함. 현재는 92해구 아래쪽이 이들 어선의 주 조업장소임. 그러나 우리는 상호 정보교환으로 어구피해는 많지 않음. 그러나 대형저인망어선의 조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많은 어구피해가 발생될 것임.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잘못임. 자망, 통발업계의 입장에서 대형기저외끌이어업의 조업허용은 불가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정부에서 자망, 통발어업에 대한 검토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서남해구와 동해구의 전개판 부착문제는 정부에 이에 대한 해소문제를 건의 할 수 있을 것임. 정부에서 어선을 감척한다 하여도 잔존 어업인이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최근 감포, 구룡포의 자망업자와 의견을 교환한바, 동해구트롤어선이 107도선을 남쪽으로 넘어오면 조업여건이 다소 좋아짐. 바다에 고기가 없어 어업경영이 어려우므로 서로 조업구역을 확대하여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형기저외끌이의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임. 과거 저인망어선은 끌이어법이므로 자망, 통발어구를 훼손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교통사고 또는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발생시 상호 분쟁을 해소하고 있음. 따라서 어업에 있어서도 어구훼손 등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소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대형기저어선과 서남구어선간에 어선규모, 선령, 마력 등으로 모아 대형기저외끌이가 서남구기저보다 열악한 실정임. 아울러 과거의 현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를 현실에서 바라보아야 함. 따라서 대형기저외끌이의 동해안 조업 허용을 요망함.

### ◇ 박청(서남구기저수협장)

- 대형기저외끌이어선의 어려운 입장을 알고 있으나 동 어선에 대한 92. 93. 94해구 조업허용 반대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 즉, 우리 서남구어선이 앞으로 일본 EEZ수역에서의 조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 부정어업에 대한 단속은 해수부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동해구업계의 연간 매출액은 120억원임. 이는 척당 2~3억원임.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서남구어선의 조업구역에 대한 조업허용 요구를 하지 않고 있음. 어선감척사업 실시중 보상액이 적어 취소하였음. 그러므로 조업구역은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현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은 주변국의 200해리 설정전이 문제이므로 전체적인 조정문제는 정부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금번 협의회는 업종간 분쟁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전갑출(외끌이협회 운영위원)

- 서남해구어선은 40척이, 대형기저외끌이어선은 20척이 전개판을 부착하고 조업을 하고 있음. 너무 범위가 넓은. 어선을 우선 감척해야 함. 또한 바다는 협소한데 비해 자망, 통발어업의 어구수가 과다함. 불법어업은 생업문제로 이해를 해야 함. 우리업계 어선은 정부에서 대폭 감척으로 하여 현재척수로 조정된 것임.
- 불법을 하다보니 자망, 통발어선들과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어구가 훼손되는 것임. 우리는 50년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임.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를 당부함. 당해 구역은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할 수 없는 구역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전개판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님. 동해안인 107도선까지 조업허용 여부만 논의되어야 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대형기저외끌이 어선에 대한 107도선 허용은 이를 먼저 허용한후 트롤, 쌍끌이어선이 넘어 오기 위한 작전임.

### ◇ 김삼룡(외끌이협회 사무국장)

- 우리는 명칭만 대형임. 중형기저보다 못함. 정부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이 회의를 계속하여도 자기 입장만 계속 주장하므로 불필요함. 해수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수산업법 등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계획조선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냉동선 80척중 현재는 3척이 남아 있음. 모두 부도된 실정임. 본인도 채낚기어선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선망어업으로 생존하고 있음. 대형기저는 채낚기어선이 태어나기 전의 어선으로 감척 등 근본적인 어업정책이 필요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연구가)

- 결국 쌍방간 이해관계 입장만 확인함. 다만 오늘 논의과정중 좋은 방안도 제시된 것이 있음. 이는 어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함. 다음 회의는 11월초 전체회의를 소집하겠음 (회의종료). 끝.

## 6. 6차 회의록('03. 11. 6)

- 일 시 : 2003.11.6(목) 14:00~16:30(제6차)
- 장 소 : 우리부 회의실(8층)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6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부산시청 권영찬위원 불참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본 위원회는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고 지금까지 본 위원회 개최시 방청인에 대한 의식으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음. 또한 위원회의 어업인은 본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을 것임. 따라서 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동해안측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수협장, 어업인 등은 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동해측의 방청인은 지금까지 발언하지 않았으므로 본 회의 진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임. 또한 지금은 열린 행정을 하므로 방청을 제한 할 필요는 없을 것임.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최초 본 회의시부터 동해측의 방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러나 지금까지 회의에서 위원간의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것도 사실임. 아울러, 우리측에서도 본 회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위원회의 어업인은 방청하지 않았음. 이런 점에서 동해측의 방청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회의 분위기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방청인은 퇴장하여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트롤측 어업인의 방청문제는 트롤측에서 결정하여야 함. 동해측의 어업인은 동 조업구역 조정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방청하는 것이며, 방청인은 대부분 수협장이므로 별다른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도 하지 않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방청인을 참석시키지 않으나 본 회의시 방청한다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그러나, 위원장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장의 뜻을 받아 주는 것이 바람직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방청한 조합장의 자존심도 존중하여야 함.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위원장의 자존심도 존중하여 주어야 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함이 타당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그림, 회의 진행중에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이동을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람.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위원의 발언 제지 등 문제가 아님. 그간 위원들의 발언시 분위기로 보아 자유로운 발언이 어렵다고 느껴지므로 퇴장함이 타당함.

### ◇ 김삼만(영일수협장)

- 본인은 이번 회의시 동해안의 조합장이 있는 곳에서 트롤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 하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였는데.....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방청석에서는 다른 분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여 주시고 방청하시기 바람. 아울러, 본 협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양측의 입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서로 상반된 입장이므로 조업구역의 조정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어 그간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양측의 입장을 총괄협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본 정리된 내용은 초안이므로 수정할 수 있음. 정리된 협의결과를 낭독.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오늘 정리된 협의결과로 본 위원회를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건은 없는지, 정리된 결과에 대한 오징어 채낚기업계의 입장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음. 다만, 방청하신 동해의 조합장들은 본인의 오늘 발언을 듣고자 함. 그 이유는 우리 업계에서만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한다는 오해에 의해 동해안의 많은 어업인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음. 이로 인하여 11월3일 동해안의 조합장 등 전체 업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음.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할 경우 동해안의 모든 어선을 동원하여 부산항을 봉쇄하기로 하였음. 이와 별개로 우리 업계에서는 동해구 트롤어선중 현측식 어선을 선미식으로 개조발주 허가에 따른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심각한 사항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조업구역 조정에 있어서 동해안 트롤어선의 현측식이 선미식으로 되는 것을 감안하고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총괄 협의회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본 위원회에서 동해구트롤어선의 현측식 29척중 15척이 선미식으로 하게 될 것이나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여기서는 대형트롤어선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함이 타당함.

### ◇ 김의남(속초채낚기선주협회장)

- 염창선위원이 어렵게 이야기 하였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분과협의회, 총괄협의회, 정부에서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할 경우 그 시점에서 동해안 채낚기어선은 총 쫓기할 것임. 부산항에 10일간 계류하고, 1척씩 파괴(화재)할 것임.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염창선, 김의남 위원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음. 이는 정부에 협박 또는 압포 등으로 본 협의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다른 분과 협의회에서 대형기저(쌍), 서남구 기저는 조업구역에 대하여 양보하였음, 또한 우리측에서 동해안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적 이기적인 것임.

### ◇ 김삼만(영일수협장)

- 위원장이 제시한 협의결과의 안은 동해안 업계 주장이 위협하게 적시되어 있음. 본인은 트롤어선의 동해안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8개항을 제시함.(낭독)

### ◇ 배정규(대형기저수협이사)

- 본 회의가 대단히 불만스럽다. 트롤어선이 동해안 조업시 마치 동해안 전체 어업인이 못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임. 즉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제외한 전체 어업인을 대표로 하여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함.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회의를 하여야 함. 즉 본 회의시 동해안 조합장의 방청을 배제하도록 주장한 것은 현실 그대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위장되어 전달되고 있음.
- 동해안에서는 트롤선과 채낚기선간의 공조가 600~700척(동해구트롤선은 제외)정도임을 알아야 함. 과거에는 트롤측에서 공조를 제기하였으나 지금은 채낚기에서 스스로 교신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위장되게 동해안 어업인 전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임. 선명을 말할 수도 있음. 따라서 회의를 이런식으로 하여서는 안됨. 또한 계통발·자망어선의 어구를 훼손한적이 없음. 아울러 구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한된 구역이므로 동해안의 어업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한다면, 동해구기저·트롤어선의 107도선도 해제하여야 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좋은 제안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해구 기저 조업구역인 107도선 뿐만 아니라 다른 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하여도 안된다고 한 적이 없다. 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제한 없이 전부 허용하자. .... 이후, 논쟁은 종결. 15분간 정회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각 업계의 최종 입장을 수정 제출도록 하였음.

### ◇ 위원장(한규설 어촌문제전문가)

- 그간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각 업계가 최종으로 정리하고 서명하였음. 본인은 본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음. 본인은 협의회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 동해안 어업인, 대형트롤 어업인 등 많은 어업인을 접촉하고,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녔음.
- 그러나 본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고, 어떤 일부 어업인은 이런 말씀을 하였음. 우리의 수산자원이 모두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체계가 정립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분도 있음. 이러한 우리 어업의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임.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어업인은 어업이 안될 때 자신의 잘 못보다는 다른 어업에 의해, 정부에 의해 안된다는 시각은 매우 잘 못된 것임.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침

## 제2장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 제1절 주요 협의내용

#### 1. 현 황

##### □ 어업허가 및 척수

- '90년대이후 자체정비,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어선세력 감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허가(건)	132	114	108	104	101	△31
척수(척)	870	812	688	597	543	△327

- 조업구역 설정·운영

- '60년대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160건 허용, '76년 전남, 전북에 40건을 확대, '82년이후 현 조업구역별 허가정수를 유지
- 전북도는 '88년이후 허가가 소멸되어 처분건수 없음

구 분	계	제1구	제2구	제3구
조업구역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허가정수	150건	124건	16건	10건
처분건수	101건	85건	16건	-

※ 제1구의 허가는 어선감척, 선복량제한, 자체허가정비 등에 의해 39통이 축소됨

##### □ 생산동향

- 총생산량 약 90천톤중 멸치생산량이 97%이상임

- 어선세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85년이후 멸치생산량은 안정적이며, 최근 통당생산량은 '90년대중반 이전보다 대폭 증가되었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생산량(톤)	89,663	86,154	140,170	94,173	90,492	+829
- 멸치 (%)	86,935 (99.0)	85,831 (99.6)	139,714 (99.7)	91,772 (97.5)	90,080 (99.5)	+3,145 (104%)
통당생산	679	756	1,298	906	896	+217

## 2.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경남 남해안연안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63.12.16)후, 전남연안을 금지구역으로 추가설정(67.2.2)
- 경남 동부연안 및 남해도 내만(진주만)을 금지구역으로 추가설정하고 전남연안의 금지구역을 일부축소(71.7.21)
- 조업구역을 경남 및 전·남북 연안으로 구분(76.7.9)하고, 전남 및 전북연안을 추가구분(82.11.13), 현재의 3개구를 유지

## 3.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의견

### □ 경남 권현망업계 의견

- 현행 3개구로 구분된 조업구역을 유지하되, 3개구 어선들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공동조업구역 설정(3개구 연안 약 30마일)
  - 연안에 편중된 조업장소를 외해로 분산함으로써 연안선망 등 멸치를 포획하는 연안어업과 어업분쟁 조정이 가능하며, 대멸을 포획하고 있는 자망어업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음

### □ 다른업계 의견

- 현행유지(충남·전북·전남, 제주지역 연안어업 및 안강망, 소형선망, 들망, 조망, 구획어업, 선인망협회, 여수수산인협회)하고, 현행 제3구(전북)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삭제(전북)
  - 공동조업구역 설정시 자원보호 취지에 어긋나며, 멸치를 따라 회유하는 갈치 등 고급어종의 먹이사슬의 파괴됨
  - 1982년 전남어선의 경남지역 침범예방을 위해 현행 3개구로 구분된바, 공동조업구역의 설정은 부당함
- 울산지역을 권현망 금지구역으로 추가(울산지역 정치망, 구획어업, 전 연안어업인)
  - 권현망어선들이 울산의 일부연안수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정치망 및 연안어업의 어구손괴 및 자원이 남획되고 어업분쟁이 빈발
- 경남지역 어선은 감척을 통해 구조조정(전남, 여수수산인협회)

### 4. 검토사항

#### 현 조업구역별 허가정수의 구분에 관한 사항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은 전국수역이나 잠수기, 형망 및 권현망어업은 동일업종이면서 구역을 구분하여 조업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동일업종은 조업구역을 별도 구분하기 보다는 동일조건에서의 조업활동이 바람직하나, 구역구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
  - 다만, 동일업종간에 별도 조업구역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는 당해업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조업구역별 허가정수는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조업구역의 면적에 비해 조업척수간에 불균형 및 조업구역의 명확성 결여
  - 제2구역인 전남해역은 16통이 조업을 하는 반면, 제1구역인 부산·울산·경남해역에서 85통이 조업
  - 제3구인 전북해역은 허가정수는 있으나 처분건수 없음. 이와 관련 수산자원보호령 개정(2003.8.27)으로 정수 삭제
  - 조업구역이 전남, 경남 등 시·도별 해역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별 관할수역의 한계표시가 없는 실정임

#### 기선권현망등 어업과 멸치자원의 이용관계

- 연근해산 멸치 어획량은 '90년대중반이후 20만톤~27만톤 유지
  - '90년대중반이전에는 총어획량의 50~60%를 권현망어업이 점유하였으나 이후 약 38%를 점유하고 있음
  - 최근 안강망, 연안들망 등 어업에서 멸치어획량이 증가추세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어업별 연근해멸치 생산동향]

(단위 : 톤, %)

년도별	'85(A)	'90	'95	'99	'02(B)	증 감 (B-A)
계	143,512	168,101	230,679	238,934	236,315	+92,803
권현망어업	86,935 (60.6)	85,831 (51.1)	139,714 (60.6)	91,772 (38.4)	90,080 (38.1)	+3,145 (104%)
자 망 어 업	26,978 (18.8)	32,528 (19.4)	38,714 (16.8)	46,704 (19.5)	49,388 (20.9)	+22,410 (183%)
안강망어업	4,524 (3.0)	3,230 (1.9)	4,268 (1.9)	9,185 (3.8)	23,569 (10.0)	+19,045 (521%)
정치망어업	7,014 (4.9)	14,513 (8.6)	17,882 (7.8)	34,346 (14.4)	19,140 (8.1)	+12,126 (273%)
기 타 어 업	18,061 (12.6)	31,999 (19.0)	30,101 (13.0)	56,927 (23.8)	54,138 (22.9)	+36,077 (300%)

- 멸치자원은 풍부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요가 확충되지 않는한 현 어획량을 상회하는 어획은 바람직하지 않음
  - 어선현대화 및 생력화로 권현망어업의 어획효율은 상당수준이나 대량어획보다는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생산조절이 중요함
  - 어업별 척(통)당 멸치생산량은 '95년중반이전대비 이후에 어선감척을 감안할 경우 2배이상 증가

#### □ 권현망어업의 멸치생산과 연근해어선 감척과의 관계

- 권현망은 다른 업종에 비해 멸치 의존비율이 97%이상(총 멸치어획의 점유율은 38%수준)으로서 어업경영의 기본구조가 취약
  - 단일어종(멸치)을 주로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어선의 규모가 크고 선단당 50~60명의 인력이 필요
- 권현망어선은 제1구역에서 총 39통이 정리, 통당 생산량은 증가되는 등 바람직한 현상이나 서해안 등에서 다른 업종의 멸치 어획량이 증가되어 총 멸치어획량은 감소되지 않음
  - 연안어선중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업종을 대폭 감척하여 권현망어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있음

## 제2절 회의록

### 1. 1차 회의록('03. 8. 11)

□ 일 시 : 2003.8.11(월) 14:20~17:30

□ 장 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남산동 별관)

□ 참석자 : 협의회원 12명

※ 수협중앙회, 전남지역 수협장, 어업인 등 19명 배석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만나서 반가움.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조정하고자 5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중 하나가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문제임.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관주도 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회의를 함. 양 업계의 자율적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1999년 한일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었음.
- 현재 이러한 협정의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임.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새로운 사고인 WTO/DDA의 발효가 예상되고, 보조금과 관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될 것임. 이 파도를 잘 못타면 않됨.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비하고 수산업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조조정은 통상적으로 배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업구조 조정이란 조업구역의 조정문제, 어구규모 조정, 자원관리 및 어업경영조정 등이 있음. 협정과 관련하여 감척은 많은 진전이 있음. 근해어선은 내년에 완료되고, 이후 연안어선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양업계가 처한 입장, 앞으로 서로 살아가는 방법, 효율적 자원관리, 어업경영의 이익최대화 등을 업계간 의논하는 자리임.
-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감정대립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리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함. 이전에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였으나 현재 소속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 유연하고 중간자의 자세로서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음. 협조를 부탁함. 협의회의 성격은 지난 7.31일 총괄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회의성격에 대하여 분명히 위원장인 박이사장이 언급하였음.
- 특정그룹을 위해 다수결로 진행하는 것은 아님.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서 가능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임. 일방적인 피해사태가 없도록 할 것임. 이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토의에 임해 주시기 바람. 동해안의 소형선망 조업구역 문제도 맡고 있음. 회의진행중 감정적 대응 사례도 있었음.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님. 자기의사를 분명한 요점으로 전달해 주기 바람.
- 오늘의 주제는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문제임. 이는 권현망어업 당사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직에 있을 때에도 현안사항이었음. 정치망 등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침. 충분히 논리적인 대응을 부탁함. 먼저 제의자인 경남의 권현망수협장의 입장 표명을 듣도록 하겠음. 회의 성패는 각 위원의 시각에 달려있음. 무조건이란 시각이면 않됨. 생산적인 회의진행이 되기를 부탁함. (의원소 개후) 이 자리에 수산과학원의 김진영과장이 참석함. 우리나라 멸치자원의 권위자임. 또한 신영태박사는 자원관리 부분에 독보적인 존재임. 행정기관으로 경남, 전남, 해양수산부가 참석하였으나 협의 당사자는 아님. 이들로부터 토의과정중 조언을 구할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우선 당사자가 경남권현망수협이니 조합장님께서 기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분과위원회 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만나서 기쁨. 사실 여수에 오면서 서두에 어떤 말 씬을 드려야 하는지 무척 고민하였음. 현실에서 현상유지가 좋으면 되나 현재 그렇지가 못 함. 우리의 연근해어업은 지리적, 국내외적 여건으로 보아 재편이 불가피함. 경쟁력이 떨어져 존립기반의 문제가 발생함. 권현망어업도 예외는 아님. 대화를 통해 업계의 앞날을 걱정 하고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대외적으로 WTO가 문제가 되고 있음. 연근해어업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서로 머리를 맞 대고 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1구는 허가가 많고 장소가 협소하여 넘어 오겠다는 생각을 마시고 기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와 공동조업구역 등 대안을 찾는 등 좋은 의견을 교환했으면 함.
- 현재 울산지역의 요구는 정치망 등 어장외측 500m안쪽을 금지구역으로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 문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금번 협의사안과 성격이 다른 문제 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1구와 2구 조업구역 문제에 국한하고, 현재 자율협 의를 하고 있는 울산어민의 요구는 분리해서 협의할 것을 부탁함.

### ◇ 공인찬(기선권현망수협이사)

- 1999년 조남선조합장과 최영항회장과 자율적으로 논의함. 당시 조합장님은 경남 통수가 60 통이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했음. 우리는 자체감척으로 16통을 줄였고, 정부감척으로 열 몇척을 함. 내년에는 그 수준으로 됨. 감통은 거의 마무리 단계임. 전남어업인의 피해문 제는 해수부에서 방안을 찾으려 함. 현 조업구역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음. 경남과 전남의 구 분선이 불분명함. 멸치어업간에 단결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제품을 개발하여야 함. 현재 구 분된 상태에서는 어려움. 멸치는 12개 업종에서 잡음. 경남과 전남의 선인망이 힘을 합쳐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멸치어업이 살기 위해 대안으로 자원관리, 구역구분보다는 합쳐서 하고, 그 과정문제는 다 른 어업에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분의 공통된 의견은 구역을 합쳐야 한다는 것과 감통문제를 주로 하였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들겠음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의회장)

- 먼저 오위원장님과 경남 권현망업계 오시느라 수고하였음. 해수부는 자율협의를 무산되었다 고 하나 처음에는 참여함. 전남이 양보할 것이 무어냐 했음. 이후 앓한 것이고, 피한 것은 아님. 무산된 것이 아님을 이해바람. 해수부는 WTO-DDA, 협정이야기를 했음. 권현망은 관 계가 없다고 생각함. 반대하는 입장을 모두 알 것임. 먼저 먹이사슬 문제임. 경남에서 전남 이 멸치를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선을 긋고, 이제 필요하니 합치자고 하고 있음. 전남어업인 은 가만이 있는데 이를 막았음. 어업이 발달되어 이제 기계로 조업을 함.
- 어획강도에서 볼 때 400~500마리의 어선임. 현재는 조류에 관계없이 조업을 하고 있음. 입 장을 바꿔 문앞의 고기를 경남에 양보하라는 것임. 먹이사슬이 문제임. 삼치새끼까지 잡아 새끼가 없음. 멸치가 많아야 삼치가 있음. 갈치가 없던 자리에 갈치가 있음. 이것이 먹이사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슬임. 우리는 금지구역이 많고 통수는 적음. 124통이 조업을 하면 전남은 어찌되나, 전남에서는 쌍끌이, 트롤이 오면 막고 있으나 경남은 거제부근에서 산재하여 멸치를 잡고 있음. 경남도 전남처럼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함. 124통의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 처음 124통의 조업장소는 있었음. 기르는 어업으로 양식장이 되어 설 자리가 없다.

- 그러면 경남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함. 자체해결을 해야지 전남 어장터를 내놔라 하는 것은 맞지 않음. 1구에서는 30마일밖을 공동조업구역으로 하면 연안어업에 피해가 없다고 하고 있음. 그것이 가능한가, 128도 이동에도 중층을 안했으나 이후 중층망으로 조업을 하고 있음. 전남은 영세어민임.
- 전남어업허가는 40,100건임. 권현망 16건, 근해어업578건, 연안어업 22,176건, 신고어업 13,100건, 구획어업 4,802건임. 이러한 어업들로 통발, 주낙, 장어통발 등이 바다 밑에 깔려 있음. 16통도 과한데 124통이 오면 불보듯 뻔한 것임. 이것 때문에 과연 30마일을 지킬 수 있나, 행정선 단속으로 될 일이 아님. 남의 어장터를 빼길러 하는가, 이 문제를 몇 년을 끌고 있음. 대안을 내어 와라, 할말이 없을 것임.

### ◇ 김경옥(기선선인망협회장)

- 건설적이고 좋은 자리이어야 하나 입장은 반대자리임. 매우 어색함. 반대 입장으로서 타 업종도 고려하여야 함. 먼저 권현망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소속위원회 불만임. 경남도는 허가정수가 많고 전남은 적음. 아무 대안 없이 시대상황에 맞게 구역을 조정해라 하고 있음. 조정도 양쪽이 이익이 수반되어야 말씀드릴수 있는 것임.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대상황이라 했음.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또다시 거론 할 수 없는 것임. 협의회 자체를 반대함.

### ◇ 조남선(포창수산 대표)

- 김진영과장이 먼저 멸치회유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 ◇ 김진영(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멸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오래동안 연구를 하였음. 과학적인 접근으로 볼 때 삼치, 갈치 등의 먹이를 위해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자원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있음. 멸치의 서식해역은 넓음. 최근까지 어획량이 유지되는 것이 멸치임.
- 그 이유는 광범위하게 산란, 회유하고 멸치생산어업인 권현망이 금어기, 금지구역 등으로 자원을 보호하기 있기 때문임. 멸치의 경로는 12월에서 2~3월 제주도를 중심으로 월동하고, 남해안외측, 서해, 황해중앙에서도 12월에서 3월까지 월동함. 수온이 변화하는 5~6월 접안하여 산란하고 7~8월 동해안 등 높은 위도까지 올라감 가을철에 남하하여 겨울철에 월동장으로 회유함.

### ◇ 조남선(포창수산 대표)

- 월동후 연안에서 산란하는 것이 멸치임. 난류가 있는 기장 대변과 달리 여수쪽은 수온이 낮아서 접근을 빨리 못함. 따라서 금어기가 보호령으로 묶여 있음. 한국 수산의 틀을 다시 짤 때임. 어장협소 등의 문제만이 아님. 일본도 모래바다임. 이후 국가, 수산인이 힘을 합쳐 자원조성이 힘써 자원이 대폭 성장하여 인건비, 경비를 절약하면서 조업함. 한국수산의 100년 대계를 위해 틀을 재편하는 시점에 있음. 전남 바다를 지키자는 생각에서 참석하였음.
-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의 조업구역은 합헌으로 결론이 남. 조업구역을 1. 2구로 구분한 것이 맞다 했음. 경남이란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해 수산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행임. 경남은 바다가 좁고, 자원이 없다. 경남은 멸치를 많이 잡아 가격이 형편없이 하락함. 소비촉진을 위해 대정부 건의 등 살 생각은 않고 전남 바다를 나누어 달라고 함. 이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해수부와 권현망의 요구임. 김대중 대통령시절 뽕뽕뽕쳐 표를 줄테니 트라고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했음. 노무현 대통령도 많은 이야기를 함. 전남은 20통이 정한수 였으나 그간 도산되어 16통임. 당시 수산청에서 82년도에 조정하였음. 노무현 대통령은 경상도와 전라도 어디나, 지금은 지구촌 시대라 했음. 그러나 경남과 전남은 정서가 다름. 이 자리에는 여러지역, 여러업종이 참석함. 우리의 책임은 막중함. 연안어업에 피해가 있으면 않됨. 생계가 달려 있음. 심각한 상황임.

- 양보를 해서 연안 30마일 외측이라면 오동도에서 소라도 끝은 21마일인데 이곳은 우리의 어장터임. 우리어선이 어장을 터주라, 공동조업구역으로 하자, 이러한 요구가 말이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되겠는지. 경남어민 방문시 대접으로 통수가 많은데 이야기가 되나, 통수를 줄이고 적당할 때 이야기 하자고 한바 있음. 제안을 하고자 함. 한꺼번에 힘들게 하지말고 1차적으로 경남과 경북을 통합하고, 전남과 전북을 통합한 이후 1. 2구를 합치는게 순서임.
- 경남은 자원이 많음. 전남에게 달라는 것은 놀부가 흥부한테 더 달라는 것과 같음. 1차적으로 그렇게 통합한후 1. 2구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함. 수산정책은 누가 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판으로 짜야 함. 권현망 뿐만아니고 모든 것을 다시 짜야함. 한일, 한중어업협정이 된 이 시기가 좋음. 30마일외측의 공동조업구역은 해수부가 넘어 갔다는 이야기가 있음. 1. 2구로 나누고, 연안 30마일을 소리소끝 30마일이면 모르겠음. 오동도 앞바다는 황금어장임. 지금은 공단으로 멸치를 생산 못함. 특정해역에서 조업한다고 검거만 하고 있는 실정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경남은 권현망이 너무 많은데 조업구역을 트면 해결되지 않는다. 자체적 감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6통도 정치망, 다른 연안어업과 분쟁이 있다. 결국 같이 조업하면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 등 있었음

### ◇ 김경욱(기선선인망협회장)

- Win-Win게임은 한쪽이 희생될 소지가 많음. 시대상황이 변하고, 경영이 어려워니 조업구역을 통합한다는 것은 않됨. 조남선 위원도 수산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음. 획기적인 제안이 없음. 한꺼번 보다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함. 경남과 경북문제를 해결하고 전남과 전북을 통합한 후 어업인의 정서를 감안, 종합적으로 말씀하여야 함. 공동조업구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것 자체가 불신이 곁들어짐.

### ◇ 신진호(울산수협 당사어촌계장)

- 우리는 1. 2구 통합문제와 관계 없음. 권현망조합과 울산조합간 자율협의를 함. 여기는 별도로 복잡한 문제가 있음.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할 것인지 경북도계까지 조업하는 권현망 때문에 3,000여 영세어민은 한숨뿐임. 자원보호령은 어족보호와 지속생산을 위해 수산자원보호령이 생겨났음.
- 이 보호령은 영세어민에게 적용되고 권현망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모든 수역중 2,000m내측은 권현망 조업이 않됨. 그러나 울산지역에서는 조업을 하고 있음. 이러한 조업형태로 어구와 어선이 위협받고 생명에 위협이 있음. 2마일도 못나가는 어선이 권현망이 지나가면 배가 뒤집혀짐. 멸치가 있어야 연안으로 큰 어군이 들어옴. 최대한 양보한다 하여도 연안어업인을 보호해야 함. 해수부의 답변을 부탁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울산과 경남간 엇힌 문제를 앞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신진호(울산수협 당사어촌계장)

- 더 이상의 자율협회는 곤란함. 금년 9월까지 해결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충돌함. 생존권을 위해서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 것은 1, 2구 통합문제와 성격이 다른 문제임. 여기에서 논의하면 집중토의에 어려움. 그 문제만 당사자간 안 되니 중재자로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임. 두가지 사안을 동시에 협의하면 협의가 어려움.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일방적이면 안 됨. 이 문제가 1, 2구 조업문제에 추가됨. 회의진행이 어려움. 자율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 문제를 합쳐서 협의하든, 분리해서 하든지 또는 별도로 새로이 하는 방법 등 회의 끝난 다음에 당사자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 최영향(여수수산업협의회장)

- 전남도는 거의 도서지역임. 섬마다 모두 금지구역으로 하면 어떻게 조업하나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성격이 다른 문제를 같이 토의하면 회의진행이 어려움. 양쪽에서 입장표명을 충분히 함. 전남도에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권현망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음. 지금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음. 질문이후 입장을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현재까지 이야기에 대해 이해를 함. 권현망은 수십년간 이루어짐. 같이 조업하는 어르신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역지를 쓰는 것은 아님. 새로운 여건 변화를 정리하여 같이 살자는 것임. 수산업의 100년대계를 찾자는 것임. 권현망어업을 우리 후세대까지 물려주어야 함. WTO의 진행은 심히 우려되고 있음. 소위 미국 등 선진국이 수산보조금을 감축내지 폐지하고, 자동차 등에 교차보복을 하려는 것임. 9월 멕시코에서 5차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면세유, 영어자금 문제에서 면세유는 현재 6만원에서 12만원이 될 것임. 권현망이외 전 어업의 문제임. 같이 논의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임.
- 이런 이유로 조업구역을 할애하여 달라는 것은 아님. 우리 업계의 현안으로 보면 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동안 57통이 도산함. 조합원이 81년 115명, 91년 88명, 2002년에 58명임. 이런 현상임.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 증양식시설이 증가하고, 오페수, 환경변화, 각종 항만시설과 매립에 의한 산란장 파괴, 조업할 자리가 없음. 범범자만 양산함. 생존을 위해 조업하고 있음. 한번쯤 집어볼 문제임. 공동조업구역은 안 된다면 제2, 제3의 대안을 찾자, 합의점을 찾아야 함.
- 선배님들이 어민들과 협의하여 주시고 우리주장은 관철하자는 것은 아님. 2002년도의 멸치 수입은 360억원임. 위판은 1,100억원. 1/3이 수입되고 있음. 금년 8월까지 240억원이 수입됨. 우리는 공멸할 수 있고 도미노현상이 발생될 것임. 우리가 책임있게 이러한 문제까지 협의하자는 것임. 히로시마를 예를 들면 1, 2, 3해역으로 나누고 있음. 조업구역 분쟁이 발생되면 이례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고 어느 일정부분은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조업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어선도 일정수로 제한하고 있음. 멸치잡이 어업인의 구심점이 되어 주어야 함. 공동운명체로서 멸치소비, 수입대책 등에 대하여 정부에 대해 함께하고 어획량 조정 등도 생각해야 함. 어려운 것을 때를 쓰는 것은 아님.

### ◇ 조남선(포창수산 대표)

- 수산자원보호령 7조14항에 멸치는 4~6월중 어망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권현망만인데 권현망의 어획량은 변화됨. 연안안강망이 변형된 어구어법으로 남획을 하고 있음. 이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어기조정을 제한조건에 집어넣어 남획을 못하게 해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WTO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음. 수입관세, 보조금 문제는 2004년까지 일괄타결 예정이었으나 시기적으로 연기 가능성이 있음. 그 내용도 완전 무관세에서 부분완화 조짐이 보임. 2004년말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임. 협상 진행상황으로 보아 조금 연기될 것임. 문제는 시간문제이지 언젠가 타결됨. 이 경우 상당히 영향을 받음.
- 정부에서 서두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선인망이 영향이 없다하나 큰 문제임. 정조합장은 어려우니 조업구역을 트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걱정하고 논의하자.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업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자는 것으로 이해됨.

### ◇ 진장춘(기선권현망권우회장)

-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함. 경남과 전남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실감함. 멸치는 수산물인 조미료 역할을 함. 우리의 필수적인 식품임. 전남의 공유수면 권리를 인정함. 회의전 밖에 시위어선을 보니 어선규모가 우리보다 큼. 충분히 협력을 해서 멸치잡이 업계가 단결을 했으면 함. 동서화합 차원에서 획기적인 안이 있을 것 같음. 전남도를 침입한다는 선입감을 갖지 않았으면 함.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의회장)

-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으로 척수를 줄이는 것임. 1. 2구 멸치보다 현재 서해안에서 많이 나고 동해안에도 멸치가 남. 권현망이 4. 나머지가 6임. 현재 멸치 수입업자는 다 망했음. 수입 이야기는 맞지 않음. 해수부는 권현망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음. 전남도를 트면 된다는 생각임. 멸치가 과잉생산되고 있음. 전남이 안잡아도 포화상태임. 124통에서 조업구역을 트면 가격이 폭락함.
- 전남의 16통이 잡으면 가격이 유지됨. 현재 멸치는 포화상태임. 조업구역이 없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함. 통합하면 가격이 내려감. 면세유가 없으면 같이 죽음. 이것은 그때가서 논의해야 함. 왜 멸치를 자기들만 잡느냐고 연안어업자들은 권현망에 시선이 곱지 않음. 이 모임 자체도 정서적으로 힘들.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과잉생산 문제는 감척을 한 이후에 해결해야 함. 전남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경남어선을 자체적으로 감척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같음

### ◇ 신진호(울산수협 당사어촌계장)

- 울산 보호구역 문제는 2002.12월 해수부장관과 간담회시 울산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2,000m로 한다고 했음. 이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 부탁.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 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음. 이제 양쪽 도의 과장의견을 들겠음

### ◇ 김석상(경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조업구역 문제는 구조개편 뿐만아니라 바다에서 많은 민감한 사항임. 수산자원보호령의 정한수를 보면 부산, 경남 124건, 전남 16건으로 이는 1976년에 정해짐. 현재 1구의 허가는 부산 2, 경남 82건 총 84건임. 6통이 조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가 조업함. 연해에서 멸치가 잘 잡히면 문제가 없으나 1구에서 안나고 2구에서 난다면 문제는 다름.
- 업종간 조정을 해야 하나 행정 실무자로 볼 때 멸치를 생산하는 대표업종은 권현망만 아님. 236천톤 생산에 제1. 2구 권현망이 9만톤임. 38%임. 연안어업은 계통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나 약 30%임. 권현망은 조업구역이 남해안만 있음. 서해안은 안강망, 동해안은 선인망이 조업하고 있음. 경남해역은 어선어업의 발상지로 서해안까지 출어함. 이전에 권현망 정한수를 124건 하였으나 그 이유를 모르겠음.
- 당시 조업어선 척수로 한 것으로 추측됨. 경남지역은 기르는어업 정책으로 계속 발전하였으나 양식장이 70년대와 차이가 없음. 73년도에 굴양식장의 신규면허 금지, 79년에 피조개양식장 및 어류양식 면허를 억제하고 이후 신규가입이 없음. 다만 외해로 이설을 하고 있음. 살포식어장에서는 시설물이 없어 조업을 할 수 있음.
- 피조개가 개발되어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멸치와는 분쟁이 없음. 양식어장 개발과 어장축소는 문제가 되지 않음. 권현망어업은 생력화되어 외해에서 조업함. 어초시설이 문제가 있음. 또한 신한강개발에 따른 모래채취 해역이 문제가 있음.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업인간 Win-Win전략이 필요함. 다만 행정은 도와주는 것으로 관여함.

### ◇ 이인곤(전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멸치생산량이 전남은 377천톤, 경남은 750천톤임. 1998년도 멸치 총생산량 249천톤중 전남이 51,757톤, 경남이 136,106톤, 기타어업이 61,656톤임. 권현망은 10%이하임. 작년도는 2%이하였음. 우리도는 타어업의 멸치생산량이 많음. 권현망의 권익 같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 문제와 관련 동향을 보면 지난 5.28일 멸치어업인 등 205명이 여수에 모여 전남어장절대사수 어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철회를 요청하였고, 끝까지 투쟁한다는 다짐을 하였음. 또한 권현망어업인들은 여수시 및 해수부를 항의방문하고, 의회에서는 5.2일 반대결의 7.2일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해수부에 보내고, 신인군 및 여수시의회, 시군의장단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민주당 도지부는 5.3일 철회를 촉구한바 있음. 먹이사슬의 최초단계인 멸치가 고갈된다는 각종 언론 보도 35건이 있음. 우리도의 기본입장은 4만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으므로 절대 반대하는 것임. 연안수역을 공동조업구역으로 할 경우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1차적으로 외곽에서 형성되는 삼치, 갈치, 조기 등이 변동되고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침. 조업구역 구분의 경위는 1953년 이래 조정이 없었으나 82년 경남도에서 전남어선이 침범하여 기득권 확보를 위해 선을 그었음.
- 이제 다시 플라는 것은 않되는 것임. 1999년 3월 경남업계의 제기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조업구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 어선어업은 경영압박을 받고 멸치자원을 고갈됨. 이것은 들망, 낭장망, 정치망, 연승, 양조망에 파급효과가 있어 사회문제가 예상됨. 연안어업은 47,500명임 이중 멸치잡이 어업인은 42%를 점유하고 있음.
- 본 문제의 대안으로 경남도는 당초 124건의 권현망어선을 일정수준으로 자율 감척을 해야 함. 필요하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함. 멸치잡이는 권현망 뿐만아니라 타 어업에도 영향이 있으며 1차적으로 먹이사슬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조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전남도의 16통도 많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경남은 어려움을 전남은 다른 어업과 상생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그럼 자원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인 신영태박사와 김진영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 신영태(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님. 목표가 분명해야 함. 이 시점에서 다루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WTO협상이외에 채산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함. 제1구가 제2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경영이 개선되고, WTO시대에 살아 남을수 있는 것은 아님.
- 결국 권현망어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없음. 대책에는 한계가 있음. 중요한 관건은 어선 감척임. 1구는 상대적으로 많음. 1구쪽이 큼. 경남은 자체감척을 16통함. 정부는 2004년까지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을 완료함. 이후 연안어업을 감척할 것임. 협정으로 근해어선은 많이 감척을 하였음. 트롤어업의 128도 문제, 권현망어업은 내부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감척이 필요함. 협상등 외부요인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잔존자 부담원칙으로 감척을 검토해야 함. 멸치 수급문제등 양측의 갈등이 있으나 결국 얼마를 잡아 얼마를 받는냐에 신경을 써야 함. 양업계가 자율적으로 TAC등을 하여야 함.
- 또한 전체어업의 어업관리 입장을 생각해야 함. 정치성구획어업, 양조망 등 허가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야 멸치어업이 살아 남음. 권현망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함. 권현망은 근해어업중 등치가 큰 업종임. 결국 휴어제 등도 생각해야 함. 어선감척이 바람직하나 자금이 많이 듦. 장기적으로 감척하면서 휴어제를 도입하여 완화시켜야 함. 1구어선을 충분히 감척하고 장기적으로 균형이 맞으면 1, 2구의 설정이 필요 없을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가 감척, 2004년까지 근해어선의 감척을 연장하고 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임. 권현망에서 멸치를 다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멸치대상 어업의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은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결해야 하나 자체 감척도 필요함. 어선규모도 적정하게 하고 휴어제의 실시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임

### ◇ 김진영(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멸치를 잡는 어업은 15개업종 정도가 있음. 멸치자원의 위기임. 멸치는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는 경향이 있음. 어획량이 수요에 넘쳐 소비를 못함. 적정하게 잡으면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함.
- 여러분께서 이점을 인식하고 심각히 생각해야 함. 구역조정 문제는 왜 상호 Win-Win 전략이 필요한가 수산자원 관리측면에서 Win-Win도 생각해야 함. 자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임. 이를 위해 적정 생산조절, 척수, 금어기, 금어구 등 모든 수단을 쓰고 있음. 조업구역이 완화되면 어획노력량만 가중될 것임. 경제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야 함. 자원을 생각하여 권현망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절적 어획으로 Win-Win을 하여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앞으로의 협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임. 먼저 멸치자원에 위기가 있다는 점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임. 자원관리 수단을 사전에 관리한후 이런 문제를 논의하여야 함, 수은 상승문제, 산란할 어미가 없어짐.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알맹이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움. 이 문제는 수십년간 잠재되어 왔음. 오늘 결론을 내기는 힘들. 권현망만 멸치를 잡는 어업이 아님. 전남의 많은 어업인을 배려할 경우 않된다고 했음. 2차회의때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겠음. 오늘 건설적인 부분은 두 업계가 멸치의 30~40%을 차지하는데 이를 공유하는 두 업계가 건의부분, 개선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함. 소비촉진 부분 등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다음 회의에서 조업구역 문제 이외에도 협의할 것인지

### ◇ 조남선(포창수산 대표)

- 멸치 소비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해야 함. 경남과 같이 해야 함, 비축사업, 군부대 공급, 학교급식 등 정책적으로 빨리 요구해야 함. 업계가 어려우니 탈렌트 등 TV광고도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하면 국민의 인식이 달라짐. 소비촉진이 될 것임. 이것은 경남과 전남의 선인망협회 모두가 바라는 공통점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좋겠음

### ◇ 최영향(여수수산인협의회장)

- 회의가 거꾸로 가고 있음. 쟁점사항은 30마일밖의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임. 권현망조합장의 의견은 30마일외해 공동조업구역 설정 타이틀을 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임. 다른 업종도 멸치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 다른 업종을 배려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임. 다음에 결과가 없는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시간이 많이 됨. 의미있는 회의인 것 같음. 해수부 근무시절 여러차례 논의하였으나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않함. 자신의 입장이 70~80%이였음. 선인망업계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진전임. 구체적인 제안은 없으나 감척, 자원관리의 중요성은 서로 인식함. 공통사항으로 권현망어업의 모든 현안문제도 곁들여 논의하자는 것임. 우리업계가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조금씩 진전될 것임. 집행부에 일임하면 8월말 또는 9월초로 하여 2번째 회의를 하겠음. 개최장소와 시기는 우리에게 맞기고 다음 회의에서는 상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조업구역, 소비촉진, 홍보문제 등 곁들여서 했으면 함. 시야를 넓혀 협의를 했으면 함. 끝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했으면 함. 오늘 회의를 마치겠음. 수고하였음
- 회의종료. 끝.

## 2. 2차 회의록('03. 9. 29)

- 일 시 : 2003.9.29(목) 14:00~16:40(제2차)
- 장 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4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전문가인 김진영 남해수산연구소 자원관리과장 불참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태풍에 의한 피해복구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협의하는 조업구역 조정문제도 중요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시 기본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함.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지난 회의를 토대로 경남쪽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 전남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서로 대립되어 있음.
- 내년의 상황을 예측할 때 내년 중반쯤이면 같은 배를 타고 같이 노를 저을 입장이 될 것임. 현재 WTO-DDA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앞으로 이 문제의 파고가 빨리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그때가 되면 이런 회의와 관계없이 동지의 입장에서 회의를 해야 될 것임. 앞으로 동반자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내년, 내후년에는 더 어려워 질 것임.
- 현재 서로 다른 입장이나 우리의 협의는 서로 조율하여 조정하는 것임.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음. 감정을 먼저 표출하면 결과도출이 어려움. 우리 수산업은 현재보다 사정이 나빠질 것임. 조금씩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함. 여러분은 업계의 리더임. 중심을 잡아야 함.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회의임. 그럼 먼저 정조합장이 경남쪽의 생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설명을 드리겠음(자료배포). 우리는 전례 없는 태풍으로 큰 재앙을 겪고 있음. 조합의 본소와 지소, 통영, 마산에 큰 피해를 당함.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격려의 말씀이 있어 감사를 하고 있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원함. 협의방향을 보다 축소하기 위해 우리의 방안을 만들었음. 결정적 합의가 될지는 모르나 먼저 현황, 필요성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조정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음.
- 먼저 기본방향으로서 기선권현망 동일업계간에 조업구역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하고, 동일업종간의 조업구역을 별도로 구분, 운용하는 것은 기선권현망어업 전체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제1구와 2구를 통합하고, 제2구 기선권현망어업인 및 전남지역 어업발전을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멸치자원의 적정한 이용방안 모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적정어선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방향임. 제1안으로 제1구와 제2구의 통합방안임.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지원방안을 생각하고 있음. 제2구 권현망어업인 및 전남지역 어업발전을 위해 용어가 마땅한지는 모르나 통합부담금형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겠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있는 감척을 통합 구조조정임. 현행 어업허가정수 조정에 따른 어선 감척사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현재 멸치자원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음. 멸치자원의 보호, 관리 및 양질의 멸치를 적정하게 생산하는데 노력하고, 멸치어업 허가로만 자원관리가 어려우므로 어가 유지를 위한 TAC도입으로 자원남획을 방지하면서 조업하겠음. 이것은 차후 문제이나 1. 2구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위반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하도록 하겠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제2안은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임. 현행 1구와 2구의 조업구역을 유지하되, 연안으로부터 일정해역의 도서를 연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밖으로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조업구역이 설정되면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법조업으로 어로분쟁 방지 및 어족자원 보호에 노력하겠음. 불의의 어로분쟁이 야기될 경우 합리적으로 원만한 수습을 위해 어로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수습에 노력하겠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정조합장이 생각한바를 자세히 설명하였음. 여기에 대해 코멘트 하기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부탁함.

### ◇ 최영항(여수수산업협회장)

-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했음.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임. 지치고 있음. 우리는 지금 어장, 어장막에 대해 사고를 당했음. 정조합장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던지며, 정 조합장의 의견은 부당함. 위원장께서는 변화된 여건을 말씀하십시오. WTO-DDA가 조업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임. 면세유, 보조금과 조업구역이 왜 관계가 있는가. 없으면 같이 없어지고, 농어민이 같이 없어짐.
- 조업분쟁을 예방하는 문제는 현재 전남 16통이 잘 해오고 있음. 분리되어서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님. 수산물물 지속적으 안전공급을 한다 했음. 금년도 멸치는 과잉생산되어 사료용으로 사용됨. 울산지역에서 멸치가 많이 남. 전국의 멸치는 포화상태임. 감당을 못하고 있음. 멸치의 안정공급은 되지 않고 있음. 멸치자원 문제에서 전남은 통합을 반대하고 조업금지구역으로 자원을 보호하고 있음.
- 구역통합은 자원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음. 전남은 동업종간 잘 하고 있음. 그러나 멸치자원에 대해 공동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동감함. 이의가 없음. 지속적인 감척문제인데 작년에 자율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림. 경남의 권현망은 너무 많음. 지금 어선세력은 더욱 강화되어 있음. 1통에 5척이 어획함. 방법은 경남이 통수가 많으니 경남도에서 통수를 조정하면 됨. 통합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했음. 이것이 가능한지. 정부가 이것을 준다는 것인지. 경남 어업인이 조성한다는 것인지 모름. 16통에 한하여 주는 것인지, 전체 어업인에게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음. 위원장이 들으면 솔깃할 것임.
- 자원관리에서 금지구역 설정으로 양호함. 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어업의 형태나 어선의 구조로 불가능함.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님. 타당하지 않은 의견임.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도면에 있는 이선은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장소임. 또한 전남의 바다는 도서밖에 금지구역이 있음.
- 결국 조업을 같이 하자는 것임. 선이 있어도 월선을 하는데 경남어선이 이를 지킬수 있는 것인지. 멸치가 나는데 앓들어 오겠는가. 이해가 않감. 총괄적으로 우리는 그간 수차 반복함. 방법은 경남선단을 줄이는 것임. 5선단을 1선단으로 줄이는 것임. 현재 10척이면 옛날 50척임. 현재 멸치를 사료로 준다하고 가져가지 않고 있음.
- 환경차에 운반료를 주고 수거해감. 비용조성의 가능성은 없고, 주면 누구에게 주겠는가. 입장을 바꾸어서 황금어장을 내어 놓으라는데 누가 내놓겠는가. 4만여 전남 어업인이 문제임. 영세민임. 경남은 기업형이고 전남은 부부간이 하는 영세어민임. 지역감정을 부추키는 것 같으나 천부당 함. 멸치는 먹이사슬임. 처음에 경남에서 막음. 명분이 없음. 현재 남. 서해안에서 멸치를 잡는 어선은 30~60%가 무허가임. 과잉생산을 하고 있음. 이것이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를 생각하여야 함.
- 어군형성이 되어 50만발이면 한국인이 1년을 먹는 량임. 5만포대를 열흘만 잡아도 공급과잉임. 이런 배 100여척이 하루만 잡으면 한국사람이 먹고 남음. 현재 이런 상황임. 동반자살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하자는 것임. 결국 경남어선을 줄여야 함.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자기어장에 적정선을 유지해야 함. 반복된 협의로 도저히 합의도출이 어려움. 여기에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정치 망업자가 참석함. 전남바다는 권현망어민의 바다가 아님. 왜 권현망업자 3명만 위원으로 하느냐고 우리가 당했음. 우리는 최소한 잡음이 없어야 한다고 봄. 이것은 않되는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남쪽 제안에 대해 질문만 부탁하였는데 의견을 결들여 말씀하심. 의견을 개진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음. 최회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조업구역 조정을 논의하는데 WTO-DDA 문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유가 적합지 않다는 것임. 또한 수산발전기금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조성이 되어도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치 않다.
- 감통을 통한 구조조정은 뉴앙스로 볼 때 양측 공히 하자는 것인지 경남인지 불명치 않음. 자동위치발신기 부착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임. 제2안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사실상 공동조업구역이 아니고 전면 개방과 같다는 것임. 지금도 지키지 않는데 이것을 지킨다고 누가 담보를 하느냐, 또한 준법조업 확행을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구체적 의미가 미약하다는 것임. 이러한 의문제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현실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임. WTO-DDA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멕시코에서 5차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수산쪽은 협의가 미약했다는 여론이 있었음. 수산분야는 수산보조금 감축, 영어자금과 연계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면세유 부분임. 면세유는 3만원, 4만원에서 현재 6만원이나 그래도 현재는 유지됨.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구체화되고 FTA 대두, 무관세, 자유무역 등 외세의 파고가 있어 우리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함.
- 조업구역만 가지고 협의를 하지 말고 이런 문제까지 진지하게 협의를 하자는 것임. 이러한 외세의 압력으로 개방되면 1. 2구는 공멸함. 우리 같이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야 함. 경남의 조업구역을 현재대로 하자고 하나 이는 1953년 제정되어 1976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1. 2구로 나눔. 30년전 당시는 지금처럼 조업구역 문제가 피부로 와 닿지 않았을 것임. 문전 옥담에서 집안끼리 조업을 하여도 멸치가 많은 시절이었음. 앞으로 심도있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면세유가 없다면 어업에 우려는 되나 개방은 필연임. 왜 이것을 조업구역조정문제와 연계 시키는지.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그것은 인식의 차이임. WTO-DDA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이유는 충분히 들었으니 간략히 말씀을 부탁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멸치생산, 생산조절 등 서로 협의하고 양질의 멸치를 공급하기 위해 TAC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임. 또 다른 여러 공통문제에 대해 살길을 모색해야 함. 이런 파고가 있으니 협의를 하자는 것이고, WTO는 모두 연관되는 것임. 발전기금에 대하여 2구의 권현망, 전남도 등과 협의하고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등을 조업구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는 것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 2구만 트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역인 1구도 트는 것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일방적으로 터 달라는 것은 아님. 전남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 이를 위해 전남업계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임. 이것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임. 우리 업계는 현재 매우 어려움. 그래도 영원히 해야 하는 것이 어업이므로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봄. 연차적으로 자주 조성을 한다는 생각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척부분에 있어 현재 어선세력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함. 2구의 16통도 많다는 생각임. 지역갈등 부분을 인정하여 불법어업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측에 요구하는 것임.
- 멸치자원 관리 부분에 있어 양질의 멸치를 생산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기 위해 TAC를 도입하여야 함. 또한 WTO-DDA와 연계를 해야함. 우리업계 특히 멸치를 잡는 업종과 어업인이 양질의 멸치를 생산하여 적정어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계자료가 불분명함. 우리는 다른 지역의 멸치유통, 시장형성 등에 대하여 모름. 공멸하지 않고 공생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 어획량 규제도 필요함. 자동위치발신기는 현 상태에서의 부착이 아니고 협의하여 통합이 되면 조업구역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붙이지는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구조조정은 경남쪽만 아니고 경남, 전남이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임.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수산자원보호령에 부산·경남 64건, 전남 16건임. 여기에 도달되도록 2004년에 감척이 끝나니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기금문제는 당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양측이 원만한 합의가 되면 구체적인 거론 대상, 액수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자원관리 문제에서 너무 과잉생산되고 있으니 어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TAC실시, 어획량 제한 등으로 서로 살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는 것임. 위치발신기는 자꾸 불법어업을 한다하니 이를 없애겠다는 담보로 하겠다는 것임.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WTO-DDA를 자꾸 거론하는데 면세유가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이는 같이 없어지는 것임. 선을 튼다고 하여 면세유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님. 유가보전 문제는 정부가 할 일임. 총괄협의회시 멸치수입 이야기를 했음. 그러나 멸치를 수입한 업체는 모두 도산됨. 멸치수입은 안되는 것임.
- WTO는 1. 2구 트는 문제와 무관함. 양질의 멸치를 생산한다고 했음. 통합이 된다 하여 좋은 멸치가 잡아지는 것이 아님. 옛날에 권현망이 멸치의 60%를 잡음. 그러나 지금은 역전되었음. 권현망어선이 아닌 어업에서 더 많이 잡음. 합의되어 통합된다 하여도 양질의 멸치를 생산하지 못함. 이것은 같이 도산하자는 것임. 1. 2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 미사여구이고 과잉생산도 조절이 되지 않음. 전남이 원하는 것은 경남의 어선을 줄이는 것 뿐임. 경남 70통, 전남 20통 등 90통이 멸치가 많이 나는 청산도해역 조업시 동반자살할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최회장님은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선 경남측 배가 많은게 문제이니 경남측에서 감척을 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임.

### ◇ 진장춘(기선권현망권우회장)

- 여수회의에서 최회장님이 분위기를 주도하였음. 전남 권현망을 대표하는 것보다 전남 전체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어업인을 대표하는 것 같은 분위기임. 우리는 전남의 면허어업을 충분히 보호함. 경청을 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임. 바다는 공유의 개념임. 1. 2구 구분은 않되는 것임. 세계는 하나로 오픈되는데 수산정책은 규제만 하고 있음. 자율경쟁으로 나가야 함. 이것은 수산발전 전에 기여되지 않음.

- 멸치를 잡아 고급 조미료로서 가격을 받아야 하나 사료용으로 잡고 있음. 소비자가 원하는 멸치를 생산해야 함. 경남, 전남은 산업화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 조미료용으로 양질의 멸치를 잡아야 함. 20년전 구분된 것을 고집하면 같이 죽음.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함. 우리의 협의는 1. 2구 통합문제로 최회장님은 전남 어업인을 대표로 나오신 것이 아님. 기업형으로 잡는 것은 멸치권현망임. 1. 2구 통합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협의를 해야 함.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바다는 공유의 개념이라 했음. 그러면 경남과 전남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으로 가면 않되나, 영세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두고 인근의 지역민이 조업을 하고 있음. 우리는 2차례 모임. 경남쪽도 이를 터서는 않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목포지역은 현재 갈치가 와야 할 시기인데 삼치가 잡히고 있음. 바다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임. 전남 지역 조합장들은 회의에 같이 가자고 했음. 이것을 우리가 경과를 보고 하자고 막았음. 여기에 권현망업자 몇 명만 참석하는데 대하여 우리가 많은 욕을 먹고 있음. 이제 목표가 설정되었고, 태풍피해도 있으니 결론을 짓고 마치는 것이 좋겠음(15:05 정회)
- 15:20 회의속개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회의를 속개 하겠음. 최회장님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함. WTO-DDA가 조업구역 조정과 무슨관계인지 의문이 된다 하였음. WTO논의가 본격화 되면 우리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음. 전체 업계에 영향이 있을 것임. 따라서 사전에 여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정지작업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배경으로 하여 설명한 것임. 오해 없기를 바램 이 자리에는 양쪽업계 뿐만아니라 도, 해수부, KMI 등이 참석하였음. 다른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음.

### ◇ 신영태(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 토론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리가 있는 말씀들임. 1구에서 조업 구역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유는 경영이 어렵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니 이를 트자는 것임. WTO는 1. 2구 권현망어업 뿐만아니라 모든 업종의 문제이고 공동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현재 이를 각자 해결하려는 것보다 정세현 조합장의 말씀처럼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됨. 1구가 어려워진 원인은 실질어획노력량이 증강되고 양식장, 공단조성 등으로 서식장이 나빠진 것이 이유임. 1구쪽 문제에서 트자는 원인은 복잡함. 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 문제는 1구쪽에서 어선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말씀임.
- 조업구역 조정 이전에 감척이 필요함. 권현망은 근해어업임. 1976년에 정해진 조업구역을 그대로 가는냐는 생각을 달리함. 유엔해양법에서 국가간 자원이용은 잉여자원이 있을 경우 제 3국 어선의 입어를 제한할 수 없음. 당연히 어획량을 할당해야 함. 2구쪽은 이를 트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함. 조업구역 자체가 고정될 수 없는 것임. 바꿀수 있는 것임. 좁은 나라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을 구분한 것 자체가 너무한 것임. 현재 그어진 상태로 볼 때 1구보다 나음. 조업구역의 협의는 끝이 없을 것임. 양쪽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함. 양쪽에서 어선감척에 노력을 해야 함. 멸치는 13개 업종에서 생산된다고 했음. 그러므로 다른 업종을 빼면 이야기가 않됨. 이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따라서 권현망이외에 멸치를 잡는 다른 업종의 대표도 참고인으로 의견을 들을 것을 제안함. 멸치가 없으면 연안어업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2구쪽은 막기만 하면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인지. 연안어업의 감척 필요성 등 여러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 무리가 없으면 그때가서 조업구역을 협의해야 함. 연안어업은 자율관리가 가능함. 여건이 호전되면 같은 업종에서 공동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요약을 한다면 핵심은 회의진행 방법론임. 조업구역 문제를 한정하면 어려우니 양 업계간 공동 현안사항을 같이 협의하면 보다 쉽다는 것임. 또한 영향을 받는 다른 업종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임.

### ◇ 김석상(경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1. 2구 통합문제에 있어 선행된 문제가 어업구조정이 대두됨. 어느 문제보다 구조조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권현망은 1선단이 7척임. 그간 부속선이 많아 본선만 감척에 포함하다 보니 구조조정이 어려웠음. 이후 부속선이 포함되어 9개선단이 감척을 하였음. 또한 권현망수협의 자구노력으로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조합 자체노력으로만 않됨. 현재 트롤, 저인망, 안강망에서도 멸치를 잡음. 수산자원보호령의 정수에 따라 64톤까지 구조조정이 필요함.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근해어업 10개업종에 대하여 업종별로 금지구역조정을 논의하고 있음.
- 여기에서 자기의 이익주장은 당연함. 그러나 장래 전개될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업종간 합의를 도출해야 함. 양쪽에서 원만한 의견을 제시하여 권현망업계의 단일안을 내어 놓아야 함.

### ◇ 이인곤(전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이것은 권현망어업만의 문제가 아님. 이것만을 한정하니 해결이 않되는 것임. WTO-DDA는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의 문제임. 이 회의에서 논할 필요가 없음.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전남에서 멸치생산은 권현망의 비중이 적음.
- 연안생산의 43%가 멸치이며, 권현망은 10~30%임. 들망, 정치망, 낭장망 등 12개업종의 비중이 큼.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면 수천, 수조원이 듬. 비현실적임. 조업구역이 원래부터 지금과 같이 구분된 것이 아님. 전남어선을 막기 위해 1982년 경남에서 요구하여 설정된 것임. 마치 우리가 막은 냥 하고 있고 앓터주면 도산된다고 함. 전남의 어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참석을 하지 않은 업계를 대변하여 말씀을 하심. 분명히 할 것은 일방적으로 1구어선이 2구의 조업구역을 허용하여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공히 조업을 같이 하자는 것임.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함.

### ◇ 김경옥(기선선인망협회장)

- 위원장님께서 내년에는 공히 한배를 탄다고 했음. 이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함. 현재 서해안에서 멸치를 많이 잡고 있음. 유사업종에서 멸치를 잡는 것이 합법인 경우도 있으나 불법도 많음. 해수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규제하고 우리를 이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함. 우리는 현재 조업을 해도 경비도 못함. 서해안은 쉬운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수지 맞고 있음.
- 1구에서 서해안쪽 멸치사업을 조장함. 조업구역을 공동으로 하자면서 협의하고 있는데 불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하고 불만임. 다른 위원은 전남 전체의 대표이나 본인은 권현망어업 대표임. 먼저 우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함. 권현망 관계자가 서해안에 건조시설을 함. 제살까기임. 이런 상황에서 조업구역을 트자고 함.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방침 없이 통합조정을 이야기하여서는 않됨.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회의는 끝내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내년 중반 공동으로 배를 타서 해결할 문제는 WTO-DDA문제임. 앞으로 계속하여 FTA 등의 문제도 있으나 이것이 담보상태이면 양자간 협상을 진행해야 함. 여러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됨. 보조금, 면세유, 수입개방, 관세문제 등 여러분은 다 같은 수산인임. 협상에 따라 수입제한, 유통, 어획쿼타 등도 같이 논의할 수 밖에 없음. 살려고 하면 그래야 함.
- 저희 연구기관은 FTA, WTO등 회의에 참석함. 정보가 비교적 빠름. 그래서 앞서 걱정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임. 이것이 조업구역 조정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현안에 앞서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것임. 여러분은 업계의 리더임, 리더이므로 큰 문제를 알아야 함.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임.

### ◇ 조남선(포창수산대표)

- 지난 회의에서 토론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서 불참하려 했음. 오늘도 감시 감독 비슷하게 따라옴. 지난회의에서 내가 배가 고파 배를 불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했음. 이는 단순히 권현망만 보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임. 본인은 협동운동을 오랫동안 했음. 영세어민을 대표하여 온 것인데 그렇게 표현함. 지금은 왜 권현망만 하느냐 하고 있음. 새겨 들으면 영세어민 입장에서 이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것임. 또 당신이 무엇인데 경남, 전남 합치고, 전남, 전북 합치고 통수를 줄인 연후에 협의 하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정부에 밀어 붙이면 전남, 전북이 합쳐지는 것으로 오해함.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선을 그은 것에 잘 알고 있음. 제가 선을 합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님. 생산적인 협의를 해야 함. 어기를 6.1~1.30일로 조정후에 맛이 없는 큰 멸치를 잡지 말고 좋은 멸치를 잡아야 함. 현재 어기의 조업은 7월에 어가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7조10항에 4~6월중 어망사용금지가 권현망만 됨. 옛날에는 들망도 있었음. 1985년 개정시 제가 일조를 하여 들망이 빠짐. 현재 13개업종에서 멸치를 잡고 있으니 모두다 7조10항에 집어 넣어야 함. 변형어구로 조업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임.
- 연안안강망의 어획물에 왜 멸치를 넣나, 왜 트롤이 수만상자씩 잡도록 방치하는지. 불법어업을 단속해야 함. 멸치소비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 보상할 돈이 있으면 생산적인 곳에 써야 함. TV파트타임을 이용하여 유명한 탈렌트로 광고를 하든지 광고에 노부부를 등장시켜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하든지 의사를 통해 광고를 하면 이것이 좋을 것임. 또한 멸치는 북아 먹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유명한 요리사를 초빙하여 참기름에 말아 먹는 등의 광고를 하면 멸치소비의 촉진이 될 것임.
- 현재 이북에 김, 미역을 보내는데 멸치도 재고조사를 하여 함께 보내고 적당한 가격에 멸치 보내기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조합장이 앞장서서 하면 좋겠음. 이런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멸치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음. 한때 경남멸치를 선호한 때가 있었음. 현재는 생활수준이 높아 하얀 것, 깨끗한 것을 찾아 전남멸치가 더 소비됨. 일본인이 화양멸, 광양멸을 알아 주었으나 공단이 조성되어 현재는 아님. 각종 어류의 산란장인 광양만이 공단조성으로 버려짐.
- 이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힘을 합쳐 논의를 해야 함. 지난번 대안제시에서 경북과 경남을 합치고 전북과 전남을 합치고 통수를 조정후 그때 재조정 하자고 했음. 나머지 강원과 충남이 남음. 차리리 전국구로 통합하는 것에 소신이 있음. 이런 것들에 맞추어 논의하였으면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대표로 지명되어 회의참석에 따른 어려움을 말씀하심. 조업구역 조정문제와 더불어 생산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다른 문제도 같이 협의하자는 것임. 전남쪽의 입장을 들었으니 경남쪽에서 코멘트를 부탁함.

### ◇ 공인찬(기선권현망수협이사)

- 현재 1. 2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문제도 않되는데 전국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경남의 어선세력은 15년된 것이 10척, 15~20년의 배가 30척, 30년 이상된 것이 40척으로 매우 노후됨. 앞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임. 그러나 지난 여수회의시 보니 전남어선의 세력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음.
- 현재 통영지역의 어업인이 전남도지사 어업허가를 사가지고 경남어선과 어선을 대체한 후 전남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결국 전남도 밖에 조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임. 경남과 전남은 게임이 않됨. 경남이 어려움.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결국 감척을 전제로 통합을 하여야 함. 전남어선은 30억이상을 하고 있으나 경남은 5등안에 있는 어선이 30억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경남쪽의 어려움을 이야기 함. 정조합장이 마지막 코멘트를 부탁함. 전남쪽의 최회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감척한후 열여 주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함. 또한 조희장님은 생산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 금어기 등 다른 문제도 더불어 논의하자는 방법론을 제시함. 일관성 있는 주장은 감척을 한 후에 조업구역 통합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의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인의 생각으로는 합의 성패에 관계 없이 가능한한 이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기분에 따라 접근하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참여를 하는 것이 업계의 리더로서 덕목임. 적극 참여를 해야 함. 경남측의 제안은 너무 포괄적임. 물론 단계적 이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나 좋게 생각함. 그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임. 경남측도 하나의 바람직한 통일된 안을 주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음.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전남선단이 경남선단보다 좋다고 하고 전남은 30억, 경남은 20억으로 못산다 했음.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될려면 20억인지, 30억인지, 30억이 정상임. 20억으로 않되면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함. 공멸을 하면 않됨. TAC를 모든 위관장에서 한다면 좋음. 멸치포획 업종인 소형선망과 서해안의 연안안강망은 20~30통씩 깔아 놓고 멸치만 털어냄. 또한 충남쪽은 석조망, 양조망을 가지고 멸치를 잡음. 보령은 수익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다하여 불법어업을 단속 않함.
- 또한 건조기를 800만원에 지원함. 무조건 허가만 가지고 있으면 멸치를 잡음. 요즘 석조망은 1척이 운반선인데도 2척으로 조업을 함. 권현망이 30%이고 그밖에 멸치를 포획하는 업종이 70%임. 현재 임의상장제인데 이것으로 TAC가 되겠는가. 전국의 멸치를 TAC로 해서 위관하면 됨. 그때 가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음. 모든 부정어업을 하는 것을 TAC에 넣어 부정어업을 하지 못하게 한후 협의해야 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해수부는 이 회의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음. 권현망어업이외 멸치를 잡는 어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임. 어류 등 상태계가 변화됨. 조기 등은 감소하였으나 온난화 등의 현상으로 연안에 멸치가 많이 생성됨. 멸치를 잡는 업종은 13개업종으로 많음. 충남의 연안선망, 석조망, 양조망은 끄는 어법이 아니며 7.15~8.15일까지 금어기임. 우리는 지도선을 파견하여 불법어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업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

- 특히 충남의 양조망은 인망이 아니나 어포부만 늘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200여명의 어업인이 올라오는 등 건의를 하나 불법이므로 않된다고 확실히 하고 있음. 들망에서 멸치를 못잡는 것은 아님. 또한 연안안강망의 통수는 5통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근해안강망의 경우 3통 이내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통상 어구를 실으면 4통이상을 적제할 수 없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해제한바 있음.
- 그러나 연안에서 멸치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형태로 바뀌어 이를 다시 규제하였음. 2003.7월부터 15통, 2004.7월부터 10통, 2005.7월부터는 5통으로 제한하였음. 업종간 어업조정에 대하여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님. 이번 논의는 어업별로 5개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별 특성을 감안, 조정에 임하고 있음. 경남에서도 연안선인망을 허가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도 다른 어업과의 조정에 있어 않된다고 했음.
- 우리부는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지도선을 25척 보유하고 실질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음. 열심히 하고 있음. 현재 TAC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꽃게 등 9개어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릴 것임. 멸치에 대한 TAC는 전체 멸치 자원량에 맞게 적정어획량으로 TAC를 해야 하며 TAC는 선박별로 할당량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임. 연안어선 또는 정치망까지 멸치 TAC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방법론임. 앞으로 멸치와 오징어를 추가하려고 수산과학원에 검토를 지시하였음.
- 임의상장제를 강제상장제로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시장 형성을 위해 임의상장제를 채택하고 있어 어선이 어느 항구이나 위판이 가능한데 이를 다시 강제상장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움. 다만 이러한 효과를 위해 TAC 어종은 지난 8.27일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지정된 항구에서만 위판하도록 하였음. 그곳에 TAC 업서버가 어획량을 확인하고 있음. 확인후 초과되면 조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를 메기고 있음. 어가유지, 자원보호 측면에서 TAC 논의는 가능함. 협의되면 TAC로 할 수 있음.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한도를 넘어 조업을 못하면 선급금을 준 선원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TAC는 총괄규제, 어선규제 등 여러 방법이 있음. 산정방법도 업종마다 달리 적용이 가능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13개의 멸치잡이 업종이 있으나 멸치를 잡는 주체는 1. 2구 권현망임. 조업구역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힘들게 모였으니 조업구역 조정문제가 제2의 대상이 되더라도 멸치업계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논의되기를 바람. 우리가 협의하지 않으면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넥타이를 풀고 1박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람. 위원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중앙의 보도에 의하면 불교계 큰스님이 돌아서 가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하였음. 이왕 협의를 시작하였으니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한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가라 앉히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을 하도록 하겠음. 빠른 시일내에 경남측에서 진일보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좋겠음. 경남측의 안에 대해 받아드리고 안받아 드리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최영향(여수수산업협회장)

- 여기 모인 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잘 알고 있음. 다음 회의시 전남의 권현망업계는 빠져야 될 것 같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일임하고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로 만나는 것이 좋겠음. 자구노력도 필요하므로 다음회의는 10월중순경 다시 모이는 것으로 하겠음.
- 회의종료

### 3. 3차 회의록('03. 10. 21)

- 일 시 : 2003.10.21(화) 14:40~17:20(제3차)
- 장 소 : 전남 구례 한화리조트 세미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1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울산수협 당사어촌계장 신진호 위원 불참.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제3차회의를 개최하겠음. 항공편이 여의치 않아 늦었음. 양해를 구함. 오늘 지리산 자락을 회의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공기도 좋고 협의과정중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이러다 보면 난제 라면 난제인 조업구역 조정문제도 좋게 접근이 될 것같아 선택한 것 같음. 이런 분위기이면 서로 한발 물러날 여유로 있을 것 같음. 앞으로 몇시간 토의과정중 한발씩 물러서서 제안을 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함.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생각할 것임.
- 본인은 이 회의 이외에 울산지역 권현망 문제, 동해안 소형선망 금지구역 문제 등 3가지를 다루고 있음. 다행히 이 문제이외에 나머지는 지난주 원만히 타결됨. 유일하게 이 문제만 남아 있음. 조금씩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한다면 절망은 아니라고 봄. 회의 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음. 2번의 회의를 통하여 각자 기본입장은 주고 받음.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 개별로 전남쪽과 경남쪽 분리를 하여 이야기를 하여 의견조율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저의 중재안을 내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음. 이견이 있는지(상호 이견없음). 결과에 관계 없이 제안을 드리는 것임. 개별회의를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보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겠음. 제안에 따라 주어서 감사함. 먼저 경남쪽과 회의를 진행하겠음

#### (경남 권현망업계와 개별회의 진행)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함. 전남쪽에서 받아드릴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전체 통합이나, 푼다면 어떤조건으로 하겠다는 등을 제시해야 함.

#### ◇ 진장춘(기선권현망권우회장)

- 우리는 권현망대표임. 그러나 전남의 대표들은 전남의 다른 업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함. 참고하여 협의를 해야 함. 우리는 단지 1. 2구 통합문제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현재 전남쪽의 다른 연안어업 업계도 이 자리에 왔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우리는 멀치어업을 대상으로 협의하는 것은 아님. 권현망어업의 1. 2구 통합문제임. 물론 다른 어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임. 이에 따라 권현망어업 이외의 다른어업의 대표로 전남도의 이인곤과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임. 영향문제는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임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2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음. 이를 넓은 의미로 접근하면 곤란함. 협의 범위를 축소하여 토의를 해야 함. 먼저 일정금액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있음. 일시불도 좋으나 10여년이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걸릴 것 같음. 100억정도 기금조정을 생각함. 다만, 현재까지 어디를 주체로 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음. 둘째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남에 명분을 주기 위해 조업구역이 통합된다면 본소를 여수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생각임. 구체적인 것은 통합후 생각을 해 보겠음.

- 멸치의 과잉생산이 문제라면 이는 TAC를 활용할 수 있고 좋은 멸치를 생산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음. 이것들은 현재의 조업구역을 통합하는 경우에 하는 것임. 결국 양쪽 어업인이 조합원이 되는 것임. 조합을 새로 신설하는 것임. 흡수통합하여 본소를 옮기고 통영과 마산을 지소로 하겠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즉, 전체를 통합하면 다른 업종에 문제가 되니 그런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임. 전남의 멸치생산은 권현망이 30%, 나머지가 70%임. 이런 부수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업구역의 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완도에서 동경 129도까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이러면 전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이미 연안부분은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염려는 없을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전남의 생각을 다름. 밖에서 잡으면 안쪽에서는 못잡는 다는 것임.

### ◇ 김진영(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권현망은 나로도, 소리도, 청산도까지 조업을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서해쪽 조업은 많이 하지는 않을 것임.

### ◇ 진장춘(기선권현망권우회장)

-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해결의 난제는 권현망어업 멸치비율이 60~70%이면 문제는 없으며, 또한 전남은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현 위원은 포션이 좁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임. 다시 생각한 이후 공동조업구역도 생각을 해야 함. 처음부터 다한다면 전남쪽은 감당하지 못함.

### ◇ 진장춘(기선권현망권우회장)

- 권현망어업의 1. 2구 통합이라면 쉽게 풀릴 것 같으나 전남은 다른 쪽을 너무 생각하고 있음. 차선책의 작품이라도 만들어 내야 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멸치 TAC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 공인찬(기선권현망수협이사)

- 법대로 시행한다면 가능함. 더 잡을 용량도 없음. 합친다면 가능하나 현 상태로는 불가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권현망만 대상으로 하면 의미가 없음. 다른 업종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 공인찬(기선권현망수협이사)
  - 우리의 건멸치 생산이 70%임. 현재는 우리가 40%, 전남이 15~20%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TAC를 한다면 건멸치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음. 먼저 TAC를 한다면 저쪽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
- ◇ 김진영(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연안어업쪽도 먼저 TAC를 한다면 해결하기 쉬울 수 있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있으면 좋겠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전남의 공통적인 생각은 한쪽은 16통이고 한쪽은 84통으로 경쟁이 안된다는 것임. 어장성이 같다면 일리가 있는 것임. 5배의 차이가 남. 이 부분을 전남쪽에서 제기할 것임. 세력의 불균형 해소문제임. 잘못하면 지역감정으로 흐를 수 있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의지표명 필요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아님. 업계가 동의를 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임.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감척을 현실에 맞게 해주면 할 것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제1구 어선의 정수는 64척임. 예산소요 파악시 희망자가 많이 없었음. 예산확보는 우선 어업인의 감척희망이 있어야 가능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현재 3억정도인데 10억정도이면 빠른 감척이 가능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본선만 하였으나 부속선을 포함하였고, 폐업보상비를 55% 추가함. 감척은 특정어업만 하는 것은 아님.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정부감척이외 자체감척은 못하는 것인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진장춘(기선권현망권우회장)

- 7. 8년전 자율감척을 하였음.

### (전남 권현망업계와 개별회의 진행)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경남쪽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음. 조업구역의 통합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조합을 여수로 이전한다는 것임. 통영과 마산을 지소로 하고 본소를 여수로 이전하는 것임. 1. 2구의 통합을 원하지만 전남쪽에서 어렵다면 공동조업구역도 고려한다고 했음. 예를 들어 전체를 하자면 어려우니 양쪽이 공평하게 위도로 분할하는 것임, TAC는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임. 감척문제는 본인이 거론함. 16:84이므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임. 경남쪽에서 제안을 하였으니 이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남쪽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임. 서로 의견을 타진하는 것임.

### ◇ 조남선(포창수산 대표)

- 감척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반대할 이유는 없음. 100억원도 좋음. 그러나 영세어민에게 50억이든 100억이든 먼저 보상을 해야함. 1,000억이 든다하여도 선보상을 해야 함.

### ◇ 이인곤(전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 조남선(포창수산 대표)

- 본소를 여수로 이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사업장은 모두 통영에 있음.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우리구역을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사실 오늘회의는 끌려옴. 조업구역 조정에서 일제시대부터 금지구역이 있었음. 경남쪽에서 요구하는 30마일은 유조선 좌표를 따옴. 현재 우리도 그 안쪽은 조업을 못하는 구역임. 옛날 5통이 현재는 1통임. 4만명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 현재 다른 업종에서도 멸치작업을 함. 멸치는 포화상태임. 권현망어선 70. 80척을 위해 협의하는 것은 부당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문제는 경남쪽에 어선이 많다는 것인지.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자원은 있어도 보호를 해야 함.

### ◇ 조남선(포창수산 대표)

- 우리의 안을 내보겠음. 먼저 조업시기를 조정해야 함. 수산자원보호령 7조10항을 보면 권현망은 4~6월까지 멸치를 못잡도록 되어 있음. 권현망만 되어 있는데 모든 업종을 넣어야 함. 둘째로 멸치소비 촉진을 위해 북한에 멸치보내기, 군납, 학교급식을 하고 셋째 TV를 통해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이라도 협의를 해야 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런 부분은 어떠한지, 경남경계가 남해 소리도로 되어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 인접지역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거제도에서 거문도까지 공동조업구역으로 하고 많은 어선이 한꺼번에 조업을 하면 않되니 동시 최고 출어척수를 각각 16척으로 하는 것임.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정치망은 보호구역이 있음. 그간 전남 배는 이해를 하고 지나 갔으나 경남배가 몰려오면 문제가 다름

### ◇ 김진영(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경남도 정치망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실제 법령으로 연안조업 금지이지만 경남쪽은 금지구역이 좁음.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경남선단까지 온다면 정치망과 문제가 심각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모든 멸치잡이 어업을 개방한다 생각하지 말고 권현망만 생각해 보기 바람. 거문도에서 거제도까지 공동조업구역으로 하고 동시 최고출어척수를 16척으로 하는 것임.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각각 16척으로 하면 출어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선이 다른 어선은 오지 못하도록 지켜줄 수도 있는 것임. 권현망만 생각하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음.

### ◇ 김진영(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현재 금지구역선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금지구역 밖에서 조업을 하면 문제는 다름. 엄밀히 말하면 왕래조업 하는 것이 어업채산성에 좋을 것임.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7월은 조금 가까이에서 하고, 9~10월은 멀리 감.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권현망어업 하나만 놓고 보면 공동으로 조업하는 것이 좋을 것임. 다만, 정치망 등 다른 어업이 문제가 되니 이는 기금조성으로 해소하자는 것임.

### ◇ 김경옥(기선선인망협회장)

- 우리가 경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GPS로 나의 위치는 확인되나 바다에는 선이 없음. 우리는 다 넘어가도 16통인데 경남은 84통임. 감시가 된다고 하나 가제는 계편임. 않되는 것임. 기금조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임.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현재 어장터를 양보한다는 것인데 속내가 있을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확인을 부탁하겠음. 어느정도 수준이면 대등하게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김경옥(기선선인망협회장)

- 경남쪽을 16통으로 줄여서 1:1로 해야함. 전남어선은 경남쪽에서 조업 자체가 되지 않음. 1/3을 감축한후 다시 논의해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그렇다면 전남 어업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모양새를 갖추어 안된다는 입장의 피력이 필요함. 제일 큰 문제는 더불어 조업이 안된다는 것임. 경남쪽에서 제안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우선 전남쪽에서 안된다는 논리를 찾기 바람.

(경남 권현망과 개별조정)

(전남측 대표간 개별회의)

(전체회의 속개 17:00)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전체회의를 속개하겠음. 경남쪽의 제안에 대해 전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경남쪽의 제안에 대해 양측과 장기간 교차회의를 하고, 업계쪽에서도 서로간 의견 조율을 하였음. 경남쪽의 의견에 대해 전남쪽은 첫째, 통수를 동수로 하자. 둘째 기금조성은 480억원+a, 480억원은 권현망, a는 타 업종을 위한 기금임. 셋째 현재 금어기인 4.1~6.30일을 2.1~5.30 4개월로 조정하고, 넷째 멸치소비 촉진문제를 거론함. 다섯째 금어기 대상도 전 업종으로 해야 한다는 5가지임. 금후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믹서해서 생각해 보면 될것임. 다음회의는 오전부터 시작하고, 서울에서 하겠음. 오늘 인내를 가지고 협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함.
- 오늘 여러 의견이 나왔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피차 알고 있을 것임.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다른 분과위원회는 많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각 분과협의회는 11월초 완료하고, 이를 11월 중순에 총괄협의회에 상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1개과제 중 현재 전망으로 9개는 완료되거나 또는 다음주중 타결될 것으로 보임. 2가지 문제 동경 128도 문제와 이 문제가 남음. 다음 11월초까지는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어 총괄협의회에 상정할 것임.
- 우리는 이러한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서로 등을 돌리면 다음에 다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 각자 금일 논의된 내용을 생각하고, 11월초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음. 그때는 우리의 (안)을 가지고 오겠음. 가능한 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잡겠음. 포기하지 말고 협의에 응해주기를 부탁함.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으나 본질은 조업구역 문제임. 그 외 문제도 논의되어도 좋으나 본질 문제를 도외시되는 느낌이 되면 안됨. 다음 회의에서는 다른 문제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없음).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음. 수고하셨음(박수)
- 회의종료

#### 4.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자율협의회 1차 회의록('03. 8. 28)

- 일 시 : 2003.8.28(목) 15:00~18:20(제1차)
- 장 소 :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회의실(부산)
- 참석자 : 자율협의위원 11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수산쪽의 조업구역 조정은 지역간, 업종간 오랜문제임. 다른 어려운 큰일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낭비됨. 안타까움. 빨리 해소하여 매듭 희망. 어업협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많이 이루어짐. 이젠 WTO-DDA를 논의할 시점임. 경우에 따라 면세유, 보조금 중지, 수입시 무관세 될 경우 살아 남을 업종은 소수임. 이젠, 이러한 문제를 모두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임. 수산만의 문제라면 가능하나 다른 산업도 있음. 오늘 이러한 상황을 염두해 두고 협의 요망. 이 문제는 그간 상당히 논의함. 가능하면 감정대립 자제부탁. 상대방을 설득하는 자세 필요. 자율협회가 무산되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 유리함.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합의도출 부탁. 모범적인 자율협회가 되기를 기대함.(참석위원 소개)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현재까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음. 양측에서 큰 틀의 문제는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진행 방식에서 그간 협의된 내용으로 하느냐, 또는 새롭게 처음부터 할 것인지부터 협의 부탁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몇차례 자율협의를 통해 몇가지 문제 관철됨. 그러나 현재 결렬을 통보하였음. 새롭게 회의를 시작했으면 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지난 7.31일 총괄협의회시 자율협의를 하기로 했음.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황윤욱조합장의 의견을 박규석 위원장이 받아 드림. 그래서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임. 새롭게 하면 그간 1년 논의가 단절됨. 자율협회에 분과협의 형식이 가미됨. 현재 진행중이 것중 요구부분이 2~3가지임. 이 부분에 오늘 답변을 드리면 빨리 진행될 것 같음. 그간의 중복은 피하는 것이 좋음. 우리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협의하여 매듭되어야 함. 그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했으면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황조합장은 새롭게 시작, 정조합장은 그간의 핵심사항만 토론하자는 의견임. 저의 생각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생산적이지 않음. 효율적 측면에서 그간의 협의를 토대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의견을 내겠음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그간 울산쪽의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음. 파기를 통보했음. 위원장이 주관을 해주니 감사함. 분과협의 형식으로 중요사항을 새롭게 토의해야 함. 지난 자율규약은 생각 않함. 새로운 쟁점은 새롭게 시작 해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핵심사항이 몇가지 있음.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조업금지구역의 선을 긋는 것. 피해 배상 문제, 비조합원 참여문제임. 이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음.

### ◇ 황윤옥(울산시 수협장)

- 울산지역의 요구는 금지구역 설정문제임. 권현망은 부산, 경남연안은 금지구역이나 유독 울기등대에서 경북까지 없으니 이를 그어 달라는 것임. 지난 협의회시 500m로 양보했으나 받아드리지 않았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중간자의 입장에서 진행하겠음. 법에 반영하더라도 어디까지 설정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를 먼저하고 뒤에 선을 긋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음.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이 문제의 시작 동기를 이해못하는 것 같음. 위원장과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함. 우리가 선을 그으라는 이유를 알고 논의를 해야 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핵심사항이 4가지임. 순서대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됨. 울산쪽에서는 못 믿겠다는 불신이 있는 것 같음. 그럼 조업구역 문제부터 논의하겠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지금까지의 협의내용은 회의록 등을 통하여 잘 숙지하고 있음. 어떤 문제에 대해 다시 모두 듣고 하면 시간만 낭비됨. 이 회의는 5개 분과협의회의 한 파트임.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핵심사항만 협의하면 될 것 같음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2002.9.16 선을 그어 달라는 요구에 대해 11.9일 수산자원보호령에 삽입됨. 이후 개정안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 부탁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어떤 법령이 입안되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의 초안에 울산지역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였음.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을 감안하여 다시 안을 만드는 것임. 그간 다른 쪽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이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임. 정부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입법예고하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이해관계인간 협의를 하는 것임. 이러한 입법절차를 모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됨.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공청회안에서 빠져 있었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어업조정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자원의 보호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대립관계 업종에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 지는 것임. 예를 들어 자원보호만 생각하여 현재 10m인데 5m면 반드시 자원이 보호된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그러나 어업조정은 양쪽을 조정하는 것임. 조정은 일방적이어서는 않됨. 양쪽의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하자는 것임.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정부는 권현망 편입. 노무현장관 시절 울산에 오셔서 고데구리를 자진 철거하여 자망, 통발 허가를 받음. 그리고 권현망의 선을 그어달라고 하여 시안에 들어감. 우리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권현망이 반대한다 하여 일방적으로 시안에서 빠짐.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것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다른 어업도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어업조정 측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처음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으나 입법예고시 문제가 있어 반영을 못함. 이후 자율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양쪽이 대립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자는 것임.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11개어촌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짐. 자율협의회에서 제안한 어장에서 500m을 관철하려고 설명하였음. 특히, 어업인들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임. 정부에서 안을 다 만들어 놓고 협의하면 않됨. 우리는 일보의 양보도 할 수없다는 입장임. 참석위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법과 시행령 등 법령 입안과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음. 특히 자원보호령은 모든 어업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임. 모든 업종에 이해관계가 많음.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음. 최대공약수를 발췌하는 것이며,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보함. 이것을 거론하면 입법을 못함.
- 해수부 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심의과정에서 빠지는 것도 많음.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음.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협의하겠음. 4가지 문제에 대하여 중점 협의하고, 이것을 담보하는 방법, 즉,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함.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담보문제는 이후에 협의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금지구역선을 경남도지사나 부산시장이 관할수역에 대해 그을수 있는 것인지. 울산연안을 경남도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울산시 단체장이 할 수 있나.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문제는 해수부장관의 권한임. 시도지사 마음대로 선을 그을 수 없음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금지구역선이 유독 울산지역만 빠져있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근해어업에 대한 금지구역은 1963년부터 현재까지 그어짐. 이는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측면에서 설정한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자원보호를 위해 금지구역을 처음 만들 때 당시의 어업실태와 관련이 있음. 1963년대에는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권현망이 울산지역에 가지 않았음. 전라북도는 허가건수가 있으나 금지구역이 없음. 금지구역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갖는 것임.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1995년에 소형기저를 자진 철거함. 이후 정부로부터 어업허가권을 획득하였고 우리는 자망, 통발, 정치망, 구획어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조업하나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그린 어업은 전남, 경남 등 다른 시도에도 있음. 울산만 있는 것은 아님. 자망, 통발어업을 위해 다른 어업을 금지하라는 것은 수산업법의 기본을 흔드는 것임. 전남에서 자망, 연안안강망이 있는데, 왜 근해안강망을 하는냐와 같은 이치임. 다만 자율협의를 협의통하여 피해를 좁혀가자는 것임. 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임. 전체 수산업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됨. 어촌계가 자기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한쪽만 보고 생각하면 안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오해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간 몇차례 협의를 하고 5.27일 마지막 회의시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함. 핵심은 500m문제, 비조합원 참여문제, 분쟁조정 방안임. 다시 협의회에서 즉답이 어려워 그간 의견을 수렴함. 마산, 통영의 조합원과 사천의 비조합원 동의를 얻고 어느정도 결론이 나옴. 이후 시간이 지연되어 어촌계원들이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침. 오늘 답변의 기회를 주고, 상호 협의를 하는 등 원만히 진행되기를 원함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회의도중인데도 8.25일과 26일 6개선단이 정자앞에서 그간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어장을 쓸고 횡포를 부림. 방어진어촌계는 350명임. 식구까지 합치면 1,000여명임. 협약이 잘못되면 몽둥이를 맞음. 우리는 격분하고 있음

### ◇ 최용만(울산 정자어촌계장)

- 기선권현망 6개선단의 명단을 제시하겠음. 어장이 두동강 남. 선명까지 있으며 모두 권현망이 피해를 입힘. 해경에서는 법보다 자율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음. 연락을 하였으나 6개선단은 발뺌을 함. 현재 유보상태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양쪽의견중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음.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쟁점의 끝이 없음. 자율협약을 진행하면서 어구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며, 자꾸 격양되면 진행이 안됨. 핵심사항부터 협의하겠음. 먼저 선을 긋는 문제임. 해수부로부터 그간 협의과정 자료를 받음. 정치성어장 바깥쪽에서 500m인데 이를 평균하면 약 1마일임. 권현망에서 제안한 이선부터 울산측에 설명을 부탁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자율규약 제8조제2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동 조항은 광범위하고 개괄적임. 전복, 가리비어장이 있는데 정확한 좌표를 찍어야 함. 그간 어려웠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득한 결과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금지구역선은 정치성어장 최 바깥쪽에서 500m외측임. 선을 긋는 방법은 울산과 경남관계자에게 위임하면 될 것 같음. 이에 대한 울산측의 의견은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선을 긋는다면 이의없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음
- ◇ 신진호(울산 당사어촌계장)
  - 우리의 요구는 정치성어장 500m 직선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정치성어장의측 500m로하되, 선을 긋는 것은 상호 어려우니 울산시, 경남도, 해수부 관계자간에 3자가 긋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만약 조정을 한다해도 거의 비슷한 선이 될 것 같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도면상 구체적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함(정회 16:05)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속개 : 16:20) 정치성어장 외측 500m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정치성어장에 대한 이의 없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정치성어장 최외측으로부터 500m로 한다. 여기에 의견이 다름. 울산쪽은 정치망을 포함하여 정치성구획어업, 피조개, 가리비양식어장 포함 500m를 생각하고 있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피조개어장 등이 겹침. 가리비수하식 어장부분은 조업을 할 수 없음. 우리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짐. 보상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을 지겠음. 만약 양식장부근 작업시 파도에 넘어질 수도 있음. 누군지 모르나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정치성어장의 정의문제임. 울산은 가리비, 전복, 피조개 먼허어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권현망은 정치망만을 생각함. 양식어장까지 포함하여 500m로 하면 어떤지
- ◇ 진영록(기선권현망수이사)
  - 당초 협의시 정치망을 기점으로 하였음. 그렇게 받아 드림.
- ◇ 신진호(울산 당사어촌계장)
  - 우리가 제시한 것은 정치망만이 아님. 경북부근의 우성수산 어장까지 의미하였음. 피조개어장을 제외하더라도 옆에 멩게수하식어장이 있음. 최초 울기등대를 기점 500m로 논의함. 이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것과 우성수산 어장을 기점으로 논의함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마지막 협의시 울기등대 1,000m에서 500m로 양보함. 오늘 안은 정치성 마을어장 최외측으로 권현망에서 만든 안임. 500m로 통일해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최북단어장 500m와 하위 500m면 가운데 점은 어느 것인지.

### ◇ 진영록(기선권현망수이사)

- 이득등대를 직선으로 하면 협의가 않됨. 그쪽은 권현망의 조업구역임. 울산시는 우리를 도둑놈이란 어감을 받음. 1963년에 정해진 구역이며, 경남, 전남연안은 양식장으로 어장이 잠식됨. 울기등대와 이득등대 기점 500m면 어려움

### ◇ 김정원(기선권현망수이사)

- 어촌계장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함. 우리는 자율협의를 하고 있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님. 영구히 갈 것임.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다시 협의하는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내 뚝만 챙길 수 없음. 선을 긋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됨. 정치성어장에서 500m로 함. 3자가 협의를 하여 선을 그어야 하며, 긋는 원칙적 방법을 정해주어야 함. 위원장으로 제안을 하겠음. 원칙적으로 정치성어장 500m로 하고, 정치성어장이란 정치망, 정치성구획어업, 시설성 양식어업으로 하고, 이러한 어장을 기점으로 하여 500m이면 문제가 없겠음.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시설성 양식어장의 위치를 잘 모르니 선을 그어가지고 협의했으면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권현망측 의견은 시설성양식어장으로 하면 너무 밖에 있다는 의견임. 문제는 수하식어장인 것 같음. 정치망을 기준으로 선을 그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권현망의 의견임. 단, 수하식어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문제에서 해결하면 될 것임.

### ◇ 김대원(울산 신명어촌계장)

- 권현망의 요구를 수용못함. 시설성양식어장은 포함되어야 함. 8개 어촌계장간의 논의는 어장외측으로부터 500m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협상에서 절대 양보하다하면 협의를 하지 못함.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우리는 1마일에서 500m로 양보함. 실제 어장깃발을 끈고 있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양측이 합의가 되면 보상예상금액의 적립 등 담보문제가 진행될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권현망은 어탐을 하고 계산하여 조업함. 피해보상보다 어구를 끌고 있음

### ◇ 진영록(기선권현망수이사)

- 협의는 양측의 주장만 가지고 되지 않음. 당해해역에서 권현망이 보상을 하여 주는 것도 허가없이 조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협의를 하자는 것임. 권현망의 피해없이 다른 어업에 의한 피해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음. 조금씩 양보해야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젠 원칙이 합의되었으니 공무원이 선을 긋기 위해 정리하겠음. 신명항 정치망어장 2145호서 무조건 500m, 이득등대사이 수하식양식어장 250m점을 연결, 선을 그으면 당초보다 약간 들어감. 이득등대 500m, 미포앞 조선소 맨안쪽 점, 울기등대 동쪽 500m의 점. 이를 정리하여 울산 시지정 공무원, 경남도 담당공무원, 해수부 3자간 선을 긋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함.

### ◇ 이중호(기선권현망수이사)

- 복합어장을 250m로 했으니 울기등대도 250m로 하면 어떤지. 울기등대부근은 어장이 없으니 받아주면 좋겠음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권현망쪽에서 양보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않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감정이 대립되면 협의가 않됨. 이견이 있으면 상호 협의를 하는 것임. 자꾸 추가하여 요구하면 협의가 않됨. 이것으로 권현망의 조업이 않되는 것은 아님. 양쪽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것이니 수용해 주기 바람.

### ◇ 진영록(기선권현망수이사)

- 500m이면 권현망이 조업하는데 엄청난 거리임. 울기등대 500m와 250m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 부근조업에서 어촌계는 문제가 없다고 봄

###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육안상 250m, 500m기점은 거의 같음

### ◇ 김정원(기선권현망수이사)

- 울기등대쪽은 권현망어업의 아킬레스건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동업자 정신으로 조금씩 양보해야 함. 울산은 생존문제, 권현망어업은 존립문제로 주장하고 있음. 상호 양보를 해야함. 큰 영향이 아니라면 양쪽이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드리면 좋겠음. 상호 원칙적으로 수용하였으니 어장을 다친다면 문제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울산쪽에서 받아드리면 좋겠음. 울기등대 돌출부에서 250m로 정리했으면 함.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울기등대쪽은 현재 2,000m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없던 선을 새로 긋는다는 의미로 받아 드리면 됨

◇ 김선호(울산 방어진어촌계장)

- 울기등대 250m보다 당해해역 어장에서 500m로 하면 좋겠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어장을 다치는 것에 우려하니 당해지역 어장에서 100m를 떨어져서 그으면 어떤지. 마지막 점인 울기등대쪽 울산1호어장을 확인한 결과 정치망인 대모망임. 협의한 원칙과 부합되어야 하나 배치되니 권현망쪽에서 500m를 받아 주었으면 함. 최종 정리하겠음. 처음 중재안으로 정치성어장에서 500m, 수하식어장 250m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 제안하여 거의 합의되었음. 그러나 울기등대쪽 문제 논의중 새로운 제안이 있었음. 정치성어장 외측 500m, 이득등대 500m를 직선으로 수정제안이 있었음. 수정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부탁.

◇ 신진호(울산 당사어촌계장)

- 신명 정치성어장 외측 500m와 정자항입구 정치망 500m, 복합어장 250m로 하면 정자항쪽에 들어오나 이득등대쪽은 많이 나옴. 이는 항로에 방해되고 그물을 끌고 있는 권현망이 배를 조정할 공간도 없으니 권현망은 손해날 것이 없음. 복잡하게 들쪽 날쪽하면 분쟁조정이 어려움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항로방해를 방지하고, 이행을 쉽게 하자는 요지임.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항로에 방해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않됨.

◇ 신진호(울산 당사어촌계장)

- 부표를 놓으면 자꾸 끌려 나오고 부표의 위치가 들쪽날쪽하다는 것임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결론이 거의 도출되었는데 수정제의에 혼란이 있음

◇ 반경식(기선권현망수이사)

- 당초 제안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음

◇ 신진호(울산 당사어촌계장)

- 이것이 우리의 최종안임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양쪽에서 사전조율이 된 것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람.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다른 선들은 거의 직선으로 그어져 있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수산자원보호령상 선은 곡선내지 직선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진영록(기선권현망수이사)

- 자율협의를 하여 결정을 한다해도 부표를 설치한다는데 권현망조업으로 인한 항해에는 지장이 없음. 직선으로 할 경우 권현망이 지장이 없다하나 그렇지 않음. 다시 원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 오늘 울산안대로 한다면 업계에 설명하기 힘들. 현재 동의를 받아온 사항이 있고 서로의 양보선이 있는데 힘들. 처음 제시안대로 했으면 함. 수정제안을 했으나 울기등 대쪽은 중요함. 이곳은 당초 울산쪽에서 동의를 했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결론적으로 저의 잠정안이 맞다는 것임. 양쪽 의견 확인이 됨. 이를 강제할 수 없음. 권현망 쪽은 절대 못한다는 것인지. 울산쪽의 결단은 어떤지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앞으로 더 이상 협의는 곤란함. 이 문제에 대해 수차 별도협의를 했음. 더 이상 협의를 하여도 진전이 없다면 현행대로 가는 것임. 현재 3시간을 협의하였는데 무산되는 것은 안타까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음. 양쪽이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서로 다시 한번씩 생각을 해보고 더 이상 않된다면 어쩔수 없음. 이것은 어업조정임. 자원보호를 위한 것 같이 한쪽만 들어주는 것은 아님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그간 1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함. 거의 타결직전까지 왔는데 서로 단절이 되면 어려움은 가중됨. 오늘 토의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기회를 갖기를 희망함. 다시한번 조합원들과 생각을 해보고 서로 접근해 나갔으면 함. 여기서 무산되는 것은 안타까움.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냈으면 함.

### ◇ 신진호(울산 당사어촌계장)

- 잘 들었음. 먼길을 오셨는데 기선권현망이 좋은 보따리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했음. 선조업, 후협상으로 무의미하니 협상을 끝내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더 진행을 하여도 되지 않을 것 같음. 권현망조합장은 한번더 생각해 보고 진행을 하자는 것임. 거의 다 되다 막혔는데 안타까움. 이러한 문제는 어업인 스스로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함.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기 힘들. 추석전에 양측에서 2~3명씩 대표를 구성해서 한번 더 만나 합의 도출을 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하면 좋겠음. 다른 문제는 크지 않음. 다만 선을 긋는 것이 문제임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조그만 어장을 가지고 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보기싫음. 권현망이 조금 양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임. 선을 긋는것에 의미가 있는 것임.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힘들. 협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을 긋는 것은 힘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다시 만나자는 것임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한계를 느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이런 형태로 모두 모이면 어려우니 대표로 울산 쪽의 신진호계장. 황조합장으로 하여 정조합장과 이사한분 서로 9.9일이전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음. 조업구역 조정문제만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문제는 다시 모두 만나 협의회를 갖기로 하겠음. 어업인을 생각해야 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마지막 2개안임. 2개안을 돌아가서 의견을 수렴하면 첫 번째안이 좋을 수 도 있음. 2개안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면 될 것 같음. 양측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협의하라는 것은 아님.

### ◇ 황윤욱(울산시 수협장)

- 울산은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임. 우리의 안을 받아주길 원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새로운 안은 아니고 현재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이를 정리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있을 것임. 현재 개략적으로 선을 긋다보니 자기의 유리한 쪽이 무언지 모름. 짐작으로 생각하고 이는 것임. 결론을 내겠음. 오늘 상호협의를 의해 정회하는 등 장시간 협의를 함. 9.10일이전에 양측에서 2명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람. 이후 필요하면 이런 모임을 다시 갖도록 하겠음.
- 회의종료

5.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자율협의회 2차 회의록('03. 10. 16)

- 일 시 : 2003.10.16(목) 15:00~18:30(제2차)
- 장 소 :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회의실(부산)
- 참석자 : 자율협의위원 11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새로 오신 울산측의 위원을 소개하겠음(일산어촌계장 정성광, 우가어촌계장 김작지, 각자 소개). 울산지역 권현망 조업구역 조정문제의 기본입장은 양측에서 지난회의시 의견을 피력함.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함. 회의를 두 번 개최하였으나 접근을 하였다가 조금 밀림. 해수부는 11가지의 근해어업 조업구역 문제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음. 전남과 경남의 권현망어업 조정문제와 동경 128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된 상태임. 어제 소형선망에 대한 조업구역 조정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되었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권현망, 소형선망이며, 다른 문제도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진행중 느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렵다는 것임.
- 의견을 모으는데 장애는 합의한다 하여 이행을 못한다는 불신이 전체에 깔려 있다는 것임.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함. 관료가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어떻게 수산정책을 입안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음. 대부분 상대가 있음. 의견 조율이 안될 때 관료가 중간자 입장에서 조정을 하면 이를 신뢰하여야 하는 것인데 신뢰가 없으면 실효가 없게됨. 되고 안되고는 나중의 문제임. 결정을 내리면 상호 지킨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해야 함. 어제의 예를 들면 기준선을 줄이는 문제인데 줄여야 결국 들어온다 왜 하느냐 하는 못믿는 불신이 있음. 선령 현재까지 그랬다 하여도 앞으로 신뢰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임. 제도적인 문제도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함.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임. 시행착오로 줄여 가는 것임.
-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됨. 이런 점을 감안, 상대방을 존중하고 같은 어업자 입장에서 협의해 주기를 부탁함. 조합원, 어촌계원간 상호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 현재 도면상으로 차이가 없음. 500m, 250m차이이며 최고 1,000m임. 바다에서 보면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됨.
- 바다에서 무시될 수 있는 거리임. 이 문제가 자원문제와 직결된다면 모르나 어업조정에 국한된 것임. 질서를 지키면서 조업을 하자는 것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림. 서로 입장을 충분히 나누었음. 양측 개별의견을 듣고 저의(안)을 가지고 이야기 한후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음. 먼저 울산측과 하고 나중에 권현망측과 하도록 하겠음. 소장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 양측을 분리하여 도면상 개별조정 : 15:15~18:00
- 18:05 전체회의 속개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음. 처음에는 합의에 의심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양측이 양보를 하여 합의에 이룸. 이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총괄협의회에 상정할 것임. 이와 별도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자율관리규약을 만들어 시행을 하게 되는데 협의결과 발표에 앞서 토의할 사항이 있음. 자율관리규약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대표 등 절차문제가 있으나 빠를수록 좋겠음. 10.25일까지 하고, 작성 대표자는 2명씩으로 하여 양쪽 조합장과 각각 1명씩 하면 좋겠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양측 : 이달 말까지로 하면 좋겠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그럼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겠음.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은 서로 믿고 지켜야 함. 이의가 있는 지

◇ 양측 : 이의 없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협의결과를 발표하겠음. (도면) 첫 번째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육지쪽은 기선 권현망어업의 조업을 금지한다. ①정치망(제2141호)어장 동단 북쪽 끝의 연장선으로부터 500m에 이르는 점에서 정북으로 경북·울산의 경계선까지 직선으로 이르는 점, ②정치망(제2141호)어장 동단 북쪽 끝의 연장선으로부터 500m에 이르는 점, ③이득등대에서 정동으로 500m에 이르는 점, ④울산 미포동 앞의 홍라도 외측에서 정동으로 250m에 이르는 점, ⑤울기등대외측 대왕암으로부터 정동으로 500m에 이르는 점. 둘째, 제1항의 조업자율규제 구역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쌍방 대표간에 「자율관리규약」 협약서를 작성하며, 동 협약서에는 기선권현망어업에 의한 울산어업인의 어업시설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와 어장표시 방법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상기 제1항의 구체적인 표시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상기 합의사항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기로 한다. 양해사항으로 구두합의에 의해 10.31일 이전에 양측이 자율관리 규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 황윤욱(울산시수협장)

- 제3항을 "구체적인 표시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하고, 제4항에 "이를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에 반영하기로 한다"로 넣으면 좋겠음

◇ 김정원(권현망수협이사)

-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넣으면 영원히 자율협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것은 어업조정이므로 자율협의를 중심으로 협의를 한 것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하였는데 서로 믿고 신뢰를 해야 함. 두 조합장님의 인품을 믿겠음. 서로 신뢰를 한다면 그런 규약도 필요가 없을 것임. 양쪽이 믿음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음. 그럼 양측 조합장님의 합의를 한 의미에서 서로 악수를 하겠음(악수후 상호 박수).  
- 오늘회의를 마치겠음. 그동안 장시간 수고하였음  
- 회의종료

## 제3장 소형선망 조업구역

## 제1절 주요 협의내용

## 1. 현 황

## □ 어업허가 및 척수

- '85년이후 선복량 제한 등으로 인해 어선세력 감소
  - '85년대비 어업허가 28.6%, 척수 19.1% 감소
- 어선은 대부분 20톤미만이며 부속선중 일부가 20톤이상

구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허가(건)	91	76	70	67	65	△26
척수(척)	178	143	145	145	144	△34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상 어선규모는 8~20톤미만임

## □ 생산동향

- '90년대에 전체 및 통당생산량은 안정상태이나 '00이후 감소
  - 전체생산량은 '90년대 15~20천톤이고, '85년대비 135% 증가
  - 통당생산량은 '90년대 232~315톤이며, '85년대비 188% 증가

구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생산량(톤)	6,886	18,066	22,020	15,514	9,310	2,424 (135%)
통당생산	76	238	315	232	143	67 (188%)

## 2.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경북, 전남, 충남 및 제주 일부연안의 900m내지 1,100m이내의 해역에서 삼치를 포획할 수 없도록 금지구역 설정('63.12.16)
- 선망어업은 당해어구를 일정기간 및 대상어종을 포획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91.3.28)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경상남도 통영시, 전남도 여수시, 완도군 소안면의 연안해역에서는 12.1부터 익년 2월말까지 삼치를 포획할 수 없음
- 경북도, 전남도, 제주도의 연안 1,000m내지 5,000m이내의 해역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수 없음
- 선망어업이 불빛을 이용하여 조업할 수 없도록 신설('91.3.28)
  - 전국연안 11,000m이내해역, 다만, 소형선망어업은 경북도 연안의 경우 5,500m내지 16,600m 이내 해역
  - 제주도 본도, 추자도와 전남 거문도 주위 7,400m이내 해역

### 3.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의견

#### 소형선망 의견(경북지역)

- 현행 동해안 불빛사용 금지구역을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조정
  - 현행 금지구역은 동 어업의 어선규모 또는 조업형태로 보아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므로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함

#### 다른업계 의견

- 현행유지(강원지역 채낚기, 자망)
  - 선망어업의 특성상 치어 및 대량생산 가능성이 많아 연안채낚기 등과 조업구역 중복으로 경쟁조업에 의한 분쟁발생

### 4. 검토사항

#### 어선의 규모와 해역별 조업실태 관련 사항

- 시·도별 허가 및 어선척수('02년말)

구 분	계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허가(건)	65	2	1	7	4	1	22	27	1
척수(척)	144	6	1	15	4	3	58	52	5

- 허가어선규모는 8톤이상 20톤미만으로 소형어선이며, '90년대이후 부속선이 제한됨에 따라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과 사용할 수 없는 허가과 구분됨
  - 등선 등 부속선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선망어업의 어구·어법에 반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으므로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허용 검토중

- 서·남해안에서는 고등어, 멸치, 전어, 전갱이 등을 주로 어획하고, 동해안에서는 오징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서해안, 남해안의 해황여건으로 보아 현 어선규모는 안전조업에 지장이 크지 않음
  - 동해안 등은 어선규모에 비해 조업장소가 멀어 안전조업에 지장 초래

### □ 현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제도의 합리성 여부

- 연안일정수역에서 선망어업의 불빛사용금지구역 설정은 불합리
  - 소형선망어선중 등선이 없는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존치
  - 동 규정은 불빛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야간에 조업을 하므로 위법행위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
  - 불빛사용 금지구역이 소형선망어업과 대형선망어업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선의 규모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규정임
    - 금지구역은 전국연안의 11,000m이내해역. 다만, 경북도 연안의 5,500m내지 16,600m이내에서는 소형선망어업 금지
    - 제주도 본도, 추자도와 전남 거문도 주위 7,400m이내해역
- 선망어구를 일정기간 및 대상어종을 포획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동 어업의 특성상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시 제한된 어종도 포획될 수 있음
  - 경남 통영시, 전남 여수시, 완도군 소안면의 연안해역에서는 12.1부터 익년 2월말까지 삼치포획 금지
  - 경북, 전남, 충남 및 제주 일부연안의 900m내지 1,100m이내 해역에서 삼치포획 금지
  - 경북, 전남, 제주연안의 1,000m내지 5,000m이내해역을 멸치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

## 제2절 회의록

### 1. 1차 회의록('03. 8. 8)

일 시 : 2003.8.8(금) 14:00~16:20(제1차)

장 소 : 영덕수산물기술관리소 회의실

참석자 : 협의회위원 9명

※ 수협중앙회, 소형선망, 정치망어업인 등 9명 배석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만나서 반가움. 한, 중, 일어업협정으로 수산업이 매우 어려움. 그간 정부에서는 감척 등 지원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 어업인을 위해 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지원에 대해 업계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세간에서는 이젠 한, 중, 일 3국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후 WTO-DDA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음. 당초 WTO에서 제기된 문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진행상태로 보아 내년까지 결론이 어려울 것임.
- 관세분야, 무관세 문제, 보조금 완화 문제 등이 어업인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함. 이것은 빠르냐, 느리냐 하는 시간적 차이임, 그 파도는 타야하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전체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모든 것이 무관세가 될 경우 살아남을 어업인은 없음. 물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함. 업계 스스로 노력하여 어업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이러한 시점에서 조업구역 조정문제가 있고 이를 정부가 직접 다루기는 어려움. 자율협의를 통해 고쳐보자는 것임.
- 이번에 5개분야에 대해 추진하고 있음.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함. 토의과정 중 서로 알고 있으니 이 문제를 보다 넓게 생각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토론을 접근했으면 함. 80년대만 하여도 우리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현재는 외국의 문화 때문인지 나만을 생각하고 있음. 한지역에 한 업종만 살면 다른 업종은 죽는 것임.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우리는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Win-Win게임이 필요함.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님. 계속 협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이 회의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임, 중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음. 회의성격은 양 업계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임. 그간 정부에서 마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과 오는 회의 주제에 대하여 이 협의회 간사인 김이운 과장이 간략히 설명하겠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오는 주제는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금지구역 조정문제임. 그간 양업계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우선 소형선망업계의 입장과 대안을 말씀하시고, 이후 반대쪽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 총무)

- 먼저 협의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고, 소형 선망은 동해안이 작업여건이 좋아 20여통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선망과 차이가 있음. 동해안 소형선망은 선령이 20년이 되었고 평균톤수는 7.93톤이며 큰 어선이 19톤임. 본선에서 그물과 어획물을 신고, 어획량은 그리 많지 않음. 현재 호미곶 3마일, 구룡포 6마일이 직선으로 그어짐. 직선을 따라 작업을 하면 먼데는 13마일, 강원도는 10마일을 나가야 함. 이 곳은 여건상 작업이 불가함. 물론 불법어업도 하고 있음. 10마일밖에서 목선이 어구를 신고 지탱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기점이 아닌 연안 3마일을 따라 하면 정치망 등에 손실이 없음.
- 강원도에서 멸치를 잡는 것은 양조망임. 강원도의 소형선망은 양미리를 잡는데 우리의 운영 방법과 다름. 현 조업구역에서는 작업이 불가함. 80%이상의 어선이 밖에서 작업을 못함. 작업일수는 연간 4개월임. 순작업일수는 80~90일로 강원도 30일에 20~10일 작업, 이후 죽면으로 하강하여 조업함.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해경의 어업정지 처분으로 타격이 큼. 수차 몇 년전부터 건의함. 90년도에는 모든 업계가 3마일을 수용하였음. 작년 자율협약에서도 기점 6마일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음. 나름대로 생각할 때 연안 3마일이면 정치망, 자망, 통발, 채낚기와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소형선망업계는 현재 금지구역선 밖에서 조업은 사실상 불안해서 수지 맞는 조업이 불가하고, 어선이 낡고 안전조업상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면 다른 어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안선 3마일로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그간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자율협약회 논의시 현재의 금지구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통 인식였다는 이야기임. 이에 대해 다른 업계의 의견은

###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구역을 넓혀 달라는 소형선망업계의 요구는 잘 알고 있음. 정치적으로 한일어업협정으로 바다가 좁아짐. 대형트롤어업에 대하여 해수부는 128도를 풀려고 하고, 연안어업에서 볼 때 정치망은 강원도까지 200여통이 있음. 자망, 통발까지 합치면 수천척임. 소수를 위해 대를 죽이려는 것인지, 128도를 열면 안됨. 물론 소형선망어업의 어려움은 알고 있음. 현재 6마일에서 3마일로 푼다면 정치망은 연안에서 4,500~5,000m임 6마일때에도 채낚기, 선망 등이 어장주변에서 조업함. 정치망은 들어오는 고기만 잡음.
- 선망은 불빛을 이용하는데 배가 물을 따라 이동함, 이를 따라 어장부근에 접근하여 조업을 함. 불빛을 받아 고기가 몰려 정치망에는 고기가 들지 않음. 1척이 10마리를 잡는 것과 10척이 10마리를 잡는 것 어느쪽이 자원보호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움. 업종간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여야 함. 정치망과 선망 모두 고기가 없음. 이것도 풀고, 128도도 풀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정부가 정치망을 가져가기 바람. 그래도 안되면 선망을 구조조정해야 함,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풀면 안됨.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선망은 불빛을 사용함. 6마일에서 조류를 따라 안으로 들어옴. 6마일이라도 정치망에서 볼 때 집어를 하여 고기가 없음. 정치망은 예년에 비해 10%를 어획함. 불빛을 사용하는 선망과 정치망은 떨어져야 함. 정치망의 경영이 어려움. 선망은 정치망보다 연안자망이 더욱 어려움. 밤에 어구를 끌고 감. 양식어장 주변에 불을 밝혀 조업함. 어장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됨. 자기어업에 맞게 조업을 해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회장)

- 조정요구안에 연안 6마일을 3마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박사는 찬성을 하는 것인지. 본인은 우리수협을 관장하는 장으로 정치망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선망어업의 힘든 것은 알고 있음. 그러나 어려운 것은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로임. 한중,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모든 업종이 굉장히 어려움. 축산남쪽 1~2마일에서 채낚기가 조업하는데 간혹 갈치가 있음. 이 장소에 선망이 포위하여 조업하고, 또한 유자망 부이를 잘라버림. 이것도 문제이지만 잘라버린 어망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임.
- 연안 1마일쪽은 동식물의 산란장임. 선망이 강원도 조업시 정치망 가까이에서 조업함. 뽕과 모래톱으로 조류에 따라 광어, 우럭이 연안으로 들어옴. 이것과 양미리새끼를 선망에서 짝쓸이하고 있음. 양조망도 역시 짝쓸이함. 어업인 모두 안타까운 심정임. 선망은 광어그물을 파괴하고, 정치망 입구를 막고 있음. 정치망은 고정식임 정치망이 작년도 100이면 금년은 20도 않됨. 고기가 고갈됨. 이것은 선망, 저인망 등 대형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때문임. 선망은 파도가 2~3m일 때 조업이 불가함, 잔잔한 시간에 나감. 어선의 노후화는 핑계임. 정치망어선은 더욱 노후되었음. 옛날에 어구가 유실되면 보조를 줌. 현재는 용자, 자담이 있음. 정치망은 어려워 보증인 없이 자금을 쓸수 없음.
- 유자망의 어구손실도 엄청남. 밤에 자기그물을 살리려고 남의 그물을 끈고 있음. 이것이 절도가 아닌가 생각함. 소형선망협회에서 섭섭해도 우리는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할 수 없음. 128도 회의에도 다녀옴. 소형선망은 20여척이라 했음. 강원도에 있는 정치망과 유자망 3,000여척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뜻이 있다면 해안선을 따라 6마일로 조정하는데 협의가 가능할 것임. 해안선 3마일은 1. 2. 3톤급어선의 어장임. 조업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함. 이 문제는 기존 연안어업인을 생각하면서 양보를 부탁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공통적으로 고기가 안잡혀 죽을 지경이고. 조정을 하면 자원이 남획되며, 어구피해가 더 많아 지는 등 분쟁이 빈발할 것임. 정치망도 피해가 심해진다. 황천조업과 소형선망의 조업구역 조정은 관계가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소형선망어업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음. 각 도에서 행정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지

### ◇ 김영학(강원도청 수산개발과 사무관)

- 강원도의 소형선망은 7통임, 현재까지 어느 목소리도 없음. 경북은 22통임. 경남은 27통인데 경남어업인도 목소리가 없는지.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 총무)

- 경남과 우리는 조업방법이 틀림. 동해바다만 조정해주는 배려를 부탁함.

### ◇ 김영학(강원도청 수산개발과 사무관)

- 이 문제는 안전조업, 어획부진, 선도저하의 문제임

### ◇ 류정곤(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유자망, 정치망의 피해해역과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있는지

###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회장)

- 선망은 3마일내까지 들어옴. 해경에 검거되는 등 불법을 알면서 조업함. 왕돌잠은 고기가 많음. 천혜의 요새임. 6마일 밖인 왕돌잠도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않됨.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선망어구의 섶은 50m임. 90~100m까지 펼침. 투망시 50m까지 줌. 불을 밝하는데 100~300kW까지 씀. 2척이 600kW까지 쓰며 적은배는 2척이 240kW정도를 쓰고 있음

### ◇ 류정곤(해양수산물개발원 연구위원)

- 안쪽에서 조업하는데 우려하고 있음. 현재 소형선망어구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음. 소형선망은 24,000톤에서 9,000톤까지 생산함. 정치망도 비슷한 수준임. 연안업계에서 수궁하기는 어려울 것임. 소형선망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대형선망은 1~2m파고에도 조업을 함. 소형선망은 6마일밖에서는 황천으로 조업을 못함. 종전에 정치망도 수궁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호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50m그물을 투망하면 양망은 약 1시간 20분임. 조류는 1~1.2노트가 있어 어망이 부이에 걸림. 이 경우 할 수 없이 부이를 침. 어망은 9절15합사로서 찢어짐. 채낚기도 자망 부이를 침. 그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함. 솔직히 저인망과 같이 끌어 흔적 없이 없애는 것이 문제임. 기껏 부이를 치는 것이고 수심 60~100m에 그물이 그대로 있음.
- 선망어업 때문에 정치망, 연안어업의 어획이 주는 것은 아님. 선망은 1989년 24,000톤, 96년도 24,000톤, 97년에 19,000톤, 98년에 19,000톤, 99년에 15,000톤, 2001년에 12,000톤, 2002년에 9,300톤임. 정치망은 98년에 72,000톤으로 매년 7~8만톤임. 우리가 고기를 못잡으면 어획량이 같이 내려감. 동해구트롤은 2000년이전에 5,000톤이나 2001년 24,000톤, 2002년에 18,000톤임. 선망 때문에 연안어업, 정치망이 죽는 것은 아님.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 총무)

- 선망은 끝는 어법이 아님.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연안유자망이 최근 어려움. 올들어 부산에서 양이 많으면 여기에서 조업을 않함. 이 어업도 오징어가 많으면 조업을 해야 함.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 총무)

- 해안선을 따라 3마일이 아니고 기점에서 3마일이면 월포앞 등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튀어나온 곳은 더 좁음. 정치망에서 최소한 2마일이 떨어지는 것임. 정치망주변에서 여건상 조업이 않됨. 3마일을 그으면 자망부이 있는 곳은 피해질 것임. 양미리는 잡지 않음.

###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소형선망은 동해, 임원, 죽변, 축산, 강구 장기곶까지 많이 함. 현재 연안기점 6마일에도 그 안에서 조업을 함. 선망의 3마일 요구는 6마일안에서 조업하면 불법으로 해경에 걸리니 이것을 3마일로 하라는 것임. 해경, 지도선에 걸리니깐 그것을 매년 방지하기 이해 사전에 축소하자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법치국가임. 이대로 조업하면 해경, 공무원도 필요 없다는 것임. 그러나 20통의 아픔보다 수만명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 안쪽의 유자망도 범법자임. 3중자망으로 범법자가 되어 50~1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있음 최소한 30내지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함.

###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소형선망은 과징금 없이 어업정지로 조업을 못함. 소형선망이 3~4마일 안쪽에서 어탐을 하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고 투망을 하여 최고 0.8~0.9마일 이동되면 포기함. 여기에 투망을 하면 안쪽으로 이동되어 양망을 못함. 법을 지키려 해도 1년에 90내지 100일 조업하는데 선원월급 1,300만원, 기름값 3,000만원임. 따라서 계속 조업을 하면 일찍 망하는 것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감척을 받아 주면 될 것 같음.

◇ 류정곤(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불법어업에 의한 충돌문제 말고 자원문제는 어떤지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회장)

- 6마일보다 3마일이면 고기가 많은지

◇ 천준철(소형선망협회 총무)

- 고기가 많은 것보다 작업여건이 맞지 않음. 현 조업구역은 조업자체가 어려움

◇ 류정곤(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6마일과 3마일은 대상어종이 다른지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91년이전에는 오징어, 정어리, 고등어, 잡어가 반반 이였음. 이후 역전되어 현재는 오징어가 90%임. 대형선망의 정어리도 TAC어종이나 1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멸치도 어획하고 있는지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어망은 30mm이고 9절을 쓰고 있음. 이 그물은 멸치는 다 빠져나감

◇ 류정곤(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강원도의 소형선망도 멸치를 잡고 있는지

◇ 김영학(강원도청 수산개발과 사무관)

- 최근 잡고 있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어획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정치망은 4,500m까지 나간다고 했음. 이것은 대부분 2마일 안쪽이 될 것임.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선망조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 해경이 잡지 않으면 우리도 앓잡음. 선박이 이전보다 매우 큼. 정치망은 5톤이나 유자망은 2~3시간 조업을 하는데 그물이 파손됨. 128도를 풀고 고기가 안나면 해수부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현재 논의하는 것은 128도와 관계가 없음. 특정기관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늘 회의는 이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좋겠음(정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 회의는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율협의임. 다수가결의 결정사항도 아님. 숫자를 가지고 될 것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 정 합의가 없다면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임. 또한 총괄협의회에서 걸러질 것임. 가능한한 소형선망 문제로 축소해서 심층 토론회 주기를 부탁함.
-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소형선망 이야기를 들었고, 정치망과 수협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중복하지 말고 다른 제안들을 듣도록 하겠음. 서로의 입장은 확인됨. 가능하면 여러번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고자 함. 차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끝에 가서 하는게 좋겠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 총무)

- 이 문제는 오래전 이야기가 나옴. 현재 128도 문제와 중복되는 것도 있음. 동해안 어업인은 흥분되어 있음. 분위기가 격앙되는 것 같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음. 모든 어업이 옛날과 다름. 변화됨. 타 업계에 피해가 가게 무식하게 요구하지 않음. 자망의 부이손상은 될 수 있는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협조를 하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음. 우리 욕심만 채기지 않겠음.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정치망은 열악함. 어업자체가 줄어들고 있음. 선망어업과 달리 정치망은 조용해야 조업이 됨. 불을 밝히면 정치망에 고기가 들어오지 않음. 오징어는 불빛에 예민함. 정치망이 어려움. 완화되어 안으로 들어오면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임.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 총무)

- 결국 정치망이 이해를 해주어야 함. 어획량이 선망, 정치망 서로 비슷함. 선망에서 어획이 없다면 정치망도 어획이 줄어듦. 동해구트롤이 중층망을 써서 어획이 줄어 들고 있는 것임, 선망과 정치망은 비슷함.

###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남의 업계의 약점을 잡는 것은 나쁘지만 정치망은 보호구역이 있음. 안쪽으로 550m임. 자망이 들어오면 선주가 고발하고 있음.

###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포항 신항만 북방과제 1,000~2,000m 떨어져 정치망이 있음. 신항만 보상에서 제외됨. 어장이 축소되고 영일만은 한류와 난류가 회유함. 지금 북방과제가 2,000m 놓여 있음. 용역시 조류, 파고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잘못되었음. 회유성 어종이라도 어장이 축소되고 128도를 풀라는데 모든 업종에 어려움이 있음. 될 수 있는대로 분쟁이 없도록 해수부가 조정을 해야함. 협의회를 하는 것이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임. 어렵지만 더 생각하여 어민이 어려울 때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말았으면 함.

###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강원, 경북이 22통, 경남이 27통이라는데 경남과 강원도 선망어업인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음. 우리구역에 들어오면 원덕까지 계속 조업할 것임. 이 문제의 제기는 경북임. 경남은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제1항 단서인 다만 경북 포항시 7천m의 점에서 5,500m, 11,000m에서는 소형선망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정치망, 소형선망간 협의해서 정치망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지 구지 우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리까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음. 경남업체와 같이 움직이면 좋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경북도에서 조정이 되어야 함. 정치망업체는 6마일 안쪽은 앓된다고 함.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해수부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적 문제는 지역에서 충분히 해결해야 함.

### ◇ 김병목(경북도청 해양수산과장)

- 우리도는 허가건수가 22건 있음. 현재 20건이 조업하고 있음. 1~2건은 타시도에서 조업을 하고 계절적으로 강원도에서 조업함. 우리도에서만 안되어 해수부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소형선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정치망은 120통에서 현재 100통이 남아 있음. 정치망어업이 어려워 현재 20통이 휴업상태임. 소형선망도 마찬가지임. 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단속 사례가 많음. 지난번 포항지방청에서 자리를 같이 하였고, 조금씩 서로가 양보한다고 했음. 전문적 문제도 제기됨. 우리도 자체적으로 협의한바도 있음. 강원도, 경북도, 울산시는 128도 입장에서 앓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 소형선망도 조업구역이 전국구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협의하는 것임.

### ◇ 류정곤(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불빛을 사용하는 소형선망은 65건중 25건임. 경남지역은 불빛을 사용하지 않음. 91년도에 부속선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였음. 동해안만 관계되나 불빛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이김. 이후 불빛사용어선이 8건에서 25건으로 늘었음. 업계의 어려움도 사실임. 정치망 및 연안어업에 피해는 앓됨. 불신은 지키지 않는데 있는 것임. 6마일에서 3마일로 들어간다면 소형선망업체는 이에 대한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자구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임. 더욱더 불법의 소지를 주면 어느 업체도 수용을 못하는 것임.

###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불빛을 사용하는 것은 채낚기어선도 동일함. 정치망 가까이에 채낚기가 조업함, 다만 채낚기는 낚시를 사용함. 그 밑의 자원은 모두 포획을 못함, 정치망은 고정식임. 외측에서 선망이 불빛으로 집어하면 모든 어군이 모여 이를 포획함. 선망이 투망하면 그것을 짝쓸이 하여 떡이사슬이 파괴되는 것임. 빠져 나가도 죽어 썩어지는 것임. 아침에 오징어가 이동하여 정치망에 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앓되니 정치망에 어획이 없음. 유자망도 마찬가지임. 주간에 고기가 없으니 고갈되는 것임.

### ◇ 류정곤(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선망이 자원을 고갈하는 사업이면 문제가 있음. 감척 등을 통해 없애야 함. 그전에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임. 조업어장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는 소형선망이 별로 없음. 4개월중 2개월 미만임. 거의 경북에서 조업함.

###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경북 동해 위쪽은 수심이 700~800m임. 고기가 분산되어 어장형성이 앓됨. 임원을 기점으로 왕돌잡에는 수심이 낮아 천혜의 자원 서식지임. 집어가 잘됨.

### ◇ 류정곤(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조업금지구역은 수심은 고려되지 않음. 동해안 평균수심이 193m, 경북지역은 80~190m임. 소형선망은 120m로 망고는 80~50m임. 소형선망은 60m밖에서 조업을 해야 함. 수심 700~800m는 조업어장이 아님. 30년된 업종을 나가라는 것은 앓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소형선망이 도저히 안되면 강원도 고성같이 특별감척을 해야 함.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 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정부의 감척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하여 근해어선의 경우 2004년에 마무리하고 연안어업에 대하여 감척을 할 계획으로 있음. 그간 연안어업의 감척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고기가 많고 경영이 안되어 감척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자원수준에 맞는 적정어선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척을 하는 것임. 근해어업도 경영이 안되어 감척한 것이 아니고 어업협정등 국제적인 문제로 감척을 하여 그간 9,000억원으로 감척을 하였음.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자를 위한 것인바, 그점 이해하기 바람.

### ◇ 김영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통계량으로 볼 때 선망과 정치망 양쪽이 40~50%를 보면 됨. 현재 수협입장에서 볼 때 임의상장제를 실시하고 있어 누가, 무엇을 얼마나 판매하였는지 모르고 있음. 어획고를 산출하기 위해 선망의 사매매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함. 통계청의 공인된 통계는 인정되나 어업인들은 믿지 않고 있음

###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소형선망은 비계통이 거의 없음. 1998년부터 조업일지를 작성하였음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소형선망은 그 관내의 어업자로 보아서는 않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정책의 기초가 통계인데 통계청의 통계를 그렇게 매도하여서는 않됨. 현재 수산통계는 해수부가 통계청의 업무를 이관받아 하고 있음. 통계는 정확해야 되므로 어업인들은 정확한 통계치를 제공해야 함. 통계는 위판량, 샘플조사, 조업상황 등을 일정한 조사방법에 의하고 있음. 다만, 보고가 정확치 않아 한계가 있음. 어업인이 잘 해주어야 함.

### ◇ 김영학(강원도청 수산개발과 사무관)

- 소형선망의 문제는 안전조업, 선도저하, 어획부진이나 안전조업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음. 고정된 정치망과 자망의 어업인 손실문제도 고려하여야 함. 원칙은 소수의 의견이 정당하다면 보장해주어야 하나 대다수를 보면 조정이 곤란한 것임. 선망측이 좀 양보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자원보호령 단서에 경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결국 경북은 이익을 보고 있음.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지 강원도를 이야기 하면 않됨. 경북도에서 조정하면 될 것임. 강원도는 조업실적이 적음. 통계는 강제상장제로 돌아가야 함. 감척시 손실보상에서 계통과 비계통의 차이가 많이 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소형선망의 감척문제는 업종이 어려우니까 한다는 것은 감척요인이 아니고, 자원관리 문제임. 특별감척이란 어장이 없어져서 하는 것임. 또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감척을 결정하는 것임. 소형선망이 어려우니 모두 감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이 문제의 접근이 어려움.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은 아님. 마지막 결정시 조정함.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로 일본의 동경과 나가사키 인근의 어촌을 방문함. 어선어업과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관리를 잘 하고 있어 부러웠음. 물론 불법어업 등 우리의 어업과 똑같음. 분쟁이 있고 어구 다툼도 있음.

- 그러나 해결방법은 자율관리 방법으로 하고 있음. 이를 지방정부 조례나 법령을 개정하여 해결하고 있음. 조정시한은 6개월 또는 1년임. 가식 없이 대화를 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것임. 이런 측면을 우리도 배워 도입해야 함. 양측의 의견은 상대방이 어렵다는 점을 상호 이해하고 있음. 어쨌든 토의는 진전시켜야 함. 소형선망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가 있다. 소형선망과 대형선망의 금지구역이 같다. 제도상 6마일 밖은 조류가 강하여 시기적으로 조업이 곤란하고 어구분실이 있다는 것임.
- 정치망과 연안어업은 선망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획량에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 서로 어려우므로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함. 오늘 당장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해하면서 논의를 해야 함. 몇 번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음. 오늘 회의를 토대로 이정도면 서로 이해되는 부분을 연구해야 함.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람. 남해안은 주간조업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음. 동해안만 국한하여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임. 시간을 8월말 또는 9월초에 충분히 생각해서 다음 회의시에는 진전된 사항이 있기를 기대함. 더불어 시는 대안을 찾아보기 바람. 다수가 절대의 선은 아님. 다수 때문에 소수가 죽을 수도 있음.

### ◇ 이상로(최남길 소형선망협회장 대리인)

- 경북의 일반감척은 3통임. 강구항에 6통이 있는데 선령이 6년임. 관계기관에서 배려를 하여 감척을 선령 6년이하도 해주기 바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소형선망업계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진전된 대안을 다시한번 제안하고 정치망과 연안어업도 다시 생각을 정리해 주기 바람.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람. 다음 회의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함. 정부가 128를 푼다는 것을 정해놓고 소형선망도 마찬가지로이다 하는데 그것은 아님.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오해가 있으니 정확히 인식해 주기 바람. 다음회의의 시기, 장소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음. 감사함
- 회의종료

## 2. 2차 회의록('03. 8. 27)

- 일 시 : 2003.8.27(수) 14:00~16:00(제2차)
- 장 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9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난 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평가함. 서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됨. 상세한 제안은 없었으나 구체적인 부분까지 토론을 하였음. 오늘 회의도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함. 이점을 염두해 두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토론 부탁.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함.
- 강구를 예를 들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다름. 과거에는 사람, 돈, 고기가 많았으나 현재는 한적함. 이유는 혼자 살려는 것 때문임. 나혼자의 잣대로는 않됨. 서로 힘을 모아 더불어 살아야 함.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서 토론에 참여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함. 한쪽의 일방적 희생은 않됨.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함. 우선 소형선망쪽에서 구체적 제안 부탁.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총무)

- 우리의 요구에 대해 자료를 드리겠음. 자료 이외에 특별한 요구는 선처를 바라는 것임. 현재 동해안의 선망은 20통으로 5통이 감척중임. 우리는 소수이나 이 어업으로 여러 사람이 살아감. 소형선망은 소형으로 트롤과 같이 싸쓸이하는 어업이 아님. 어선규모, 어망형태로 볼 때 타 어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함. 연안어업과 채낚기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소형선망쪽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함. 현형 11,000m인데 1안은 5,000m, 2안은 5,500m, 3안으로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외측임. 광력은 240~340kW를 사용하나 180kW으로 줄이겠다는 것임

### ◇ 이상로(소형선망협회장)

- 광력은 강원도의 채낚기와 분쟁이 우려되어 자체조정 하는 것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소형선망의 제안에 대해 정치망쪽에서 의견제시

###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5,000m인데 우리어장의 경우 감포기점에서 4,300m임. 뒤쪽에 1524호 어장이 있음. 오도기점 5,000m도 문제 있음. 정치망은 선망이 밤에 조업하여 불빛사용에 대해 모름. 어장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임. 실제 5,000m가 정치망과 얼마나 떨어지는 지 모르겠음. 따라서 제안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음.
- 정치망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2~3년전 4~5억이나 작년은 1억임. 자원보호측면에서 정치망은 고정식이고 불빛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장에 들어오는 고기만 잡음. 선망은 치어, 성어 모두 잡음. 따라서 선망은 감척을 해야 자원이 보호됨. 않되면 정치망이라도 감척을 해야 함. 영일만 신항부근 정치망은 1,000~2,000m에 있음. 구조물로 고기가 없어짐.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금 논의는 자원고갈 등 자원의 보호관리에 대한 논의는 아님.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구역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조정문제임. 여기에서 감척을 거론하면 복잡하고 본질에서 벗어남. 김회장의 의견 요지는 5,000m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임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회장)

- 오늘 세부적 논의로 짧은 시간에 결론이 도출되기 희망. 업종간 분쟁으로 경북의 대다수 어업인협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인정함. 이것이 인정되면 강원도 임원단이남에서 정치망 어장의 가장 바깥쪽 기점 몇마일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절실함. 임원단 쪽은 조류가 강해 선망이 않됨. 동해앞까지 오나, 북쪽은 없음. 강원도는 작은 유자망어선들임. 마을어장 안쪽에서 12마일까지 유자망, 계통발이 산적함. 따라서 임원단 이하를 조정하고, 이북은 현행대로 했으면 함. 정치망쪽에서 어느정도 인정하면 정치망에서 선을 정하면 됨.

### ◇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현재 분쟁이 발생되면 합의가 되지 않음. 금지구역은 수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점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편함. 그러나 어업특성상 수심을 고려해야 함. 정치망은 거리가 멀어도 수심이 깊지 않음. 따라서 최외측단으로 하면 거의 맞을 것임. 정치망을 기점으로 하면 3마일 안쪽도 있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3마일을 원칙으로 하여 밖으로 선을 그어 정치망에서 항상 1,500m를 떨어지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회장)

- 임원단 이남쪽은 정치망으로부터 1,000m밖 외측에서 조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음. 1,500~2,000m 등으로 조정하면 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임원단 이남해역은 기본적으로 3마일로하고, 정치망어장이 3마일 밖에 있으면 정치망어장 최동단 기점에서 1,500m로 하고 임원단 이북으로 현행유지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축산수협의 위판을 조사하였음. 2000년은 많고, 2001년은 줄었음. 2002년은 다시 오름. 경북도 같은 현상임. 자원보호를 위해 폐어망을 줄어야 하는데 선망이 안으로 들어오면 자망의 폐어망이 늘어난. 안으로 들어오면 폐어망 등 부산물로 자원이 고갈됨.

###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오도를 기점으로 하면 6마일 이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됨.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총무)

- 제안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음. 기점을 3마일로 하고, 어장안쪽은 어장기점 1,000~1,500m이면 정치망에 지장이 있음. 어장 1,000m에서는 조류관계로 작업이 않됨.

###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밤에 불빛을 내면 어장에 고기가 들지 않음. 소형선망이 집어하면 거기에 고기가 들어감. 기점의 문제가 아님. 현행 16,000m에서 1/2 또는 1/3정도로 조정해야 하지 3마일은 너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누구든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니 실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 최소한 기존어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않됨. 정치망쪽 의견 충분히 공감함.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아님. 양쪽에서 가능한한 중간선으로 했으면 함. 새로이 조업구역을 트라는 것은 아님. 생각을 바꾸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음. 현재까지 토론을 정리하면 최대 3마일로 하고, 정치망어장의 최동단에서 1,500m하자는 것으로 이해됨

### ◇ 이상로(소형선망협회장)

- 우리협회에서 일방적으로 5,500m를 그었으나 울포앞은 인공어초 등이 설치되어 더 나가야 함. 수심 40~50m밖으로 나가야 함.

###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오도기점 6마일이면 지장이 없음. 이해됨. 다만 어장에서 1,500~2,000m는 문제가 있음. 불빛 때문에 어장에 고기가 들지 않음. 임원단 하단쪽만 조정하면 될 것임. 오도 6마일도 내 이야기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임. 이 경우 영일만은 6마일 가까이 조업하는 것임(오도부분 상호 협의하기 위해 정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서로 입장을 고려해 주어서 감사함. 보람이 있음. 조업구역 문제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 ◇ 천준철(소형선망협회총무)

- 많은 배려에 감사함. 조업구역이 조정되면 다른 업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임. 현재까지 논의한 대로 선이 그어지면 좋겠음. 더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음. 우리는 소수로 법테두리안에서 범을 지킬 것을 약속드림. 양조망도 과거 선망임. 이들 어선이 양미리 어획을 위해 강원도에 조업한 적이 있음. 현재는 경북에서만 조업함. 우리는 정치망에서 최소 1마일을 떨어져 조업함. 우려가 없을 것임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이 자리의 책임이 큼. 축산에서 강구, 포항까지 안쪽으로 휘어짐. 1마일이면 수심이 50m임. 선망이 고기를 보고 조업을 함. 선망은 수심이 얕으면 조업을 못함. 현재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조정하면 더 들어옴. 분쟁이 더 있을 것임. 우리가 조정하면 자망도 문제가 발생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위원들이 조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달라는 것임

### ◇ 김선봉(정치망협회장)

- 영일만은 현재 16,600m이나 이것을 3마일로 하면 너무 들어옴. 분과위에서 3마일로 결정하면 소형어선, 자망, 채낚기에서 대표가 욱먹음. 정치망은 11,000m는 관계없음. 우리가 욱을 먹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대표자로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됨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지난 영덕회의에서 볼 때 참여하는 분들이 업종만 틀리지 상호 알고 있는 어업인들 이었음. 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형선망에서 목표치에 도달되면 1보 전진이고 반대면 1보 후퇴임. 다음 회의에서는 꼭 결정되어야 할 것임. 결정방법은 만약 3마일로 들어오면 야간 축산 등에서 조업시 유자망의 깃발을 파손하면 유자망협회와 선망협회간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의 경우 저인망이 고성 쪽에서 도루묵, 청어, 명태를 조업하는데 보통 저인망은 특정해역에서 주간에 조업하고, 폭풍주의보에도 조업가능하나 유자망은 않됨. 그때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사전에 속초에서 선명을 입수, 어구파손이 조류때문이 아니라면 저인망의 고의적 파손시 분쟁조정위에서 망자에 대한 보상을 해줌. 이러한 방법 등을 다음에서 협의하여 결론을 내야 함.

### ◇ 이상로(소형선망협회장)

- 남의 어구는 보호해야 함. 어구가 있으면 투망을 않함. 불가항력적으로 파손이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함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불법사실을 유자망어선들이 잘 알고 있음. 어느해구에서 어느어선이 조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유자망 어선들이 고발하면 이의 없나

### ◇ 이상로(소형선망협회장)

- 이의없음. 우리만 그물을 치는게 아니라 채낚기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음. 배 숫자를 보면 우리보다 채낚기가 많음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임원에서 원자력발전소사이 1~3마일, 수심 40~60m에 오징어가 많음. 꽃발임. 정치망도 있음. 채낚기는 20~30m에서 조상기를 돌림.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유자망임. 채낚기가 유자망 그물을 치는 것에 인정함. 그러나 선망이 했을 경우 법적 문제를 감수해야 함. 6마일을 3마일로 줄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협의해야 할 것임. 오도 기점은 16,600m에서 11,000m로 협의 가능함. 강원도청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겠음. 오도나 대진말 11,000m는 수궁됨.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하겠음.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음. 합의한 후 이를 어떻게 준수하느냐가 걱정됨. 현재까지 공식, 비공식 결과를 정리하여 말씀드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음회의에서 최종 합의하도록 하겠음.
- 먼저 조업구역에 대한 잠정안으로 경북지역 오도말, 대진말은 현재 9마일에서 6마일로 하고, 나머지 해역은 현재 평균 8마일이나 기본적으로 3마일로 하고, 3마일 밖에 정치망이 있으면 최소 1마일을 떨어지도록 한다. 강원도는 경북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므로 평균 6마일을 5마일로 한다. 광력기준은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과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에 대한 담보문제에 있어 양측에서 5명씩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어구파해, 단속, 합의사항 이행 등을 협의한다. 정치망, 소형선망에 대한 감척부분은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이것은 위원장이 잠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다음회의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으로 함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유자망 그물손실 보상 등에 대해 다음회의시 답을 부탁함

### ◇ 이상옥(경북도청 사무관)

- 실제 정치망과 연안어업자들은 조정안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으므로 소형선망 위원들이 이들에게 설명을 부탁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소형선망쪽에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설명을 부탁함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경북은 자망, 정치망이 많음. 자망은 부부간 조업함. 정치망이 합의하여도 유자망들이 5~6마일에서 조업하는데 그물을 자르는 경우가 많음. 우리가 허용을 하여도 감당하기 힘들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전적으로 위원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님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자원이용측면에서는 좋으나 조정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의 불씨만 남게 될것임. 경북, 강원은 소형어선이 수천척임. 어구분쟁이 우려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회의는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임. 현재 이해되는 선에서 상호 양보해야 함. 분쟁은 새로운 문제가 아님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다수의 소리도 중요함. 유자망, 정치망은 5만여명임. 배 척수로 보아 소형선망은 소수임. 다음회의에서 선이 그어져 합의되면 선망쪽에서 승리하였다 하여 무자비하게 폭군식으로 조업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

### ◇ 친준철(소형선망협회총무)

- 잘 알겠음. 자망이 있으면 가능한한 피함. 부이를 자를 입장이 되면 불가피하나 무지막지하게 조업하지 않음. 현재 분쟁은 양조망으로 생각함. 분쟁부분은 다음회의에서 답변하겠음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동경 128도는 별로 생각않함. 연안조업 어선으로 관심없음. 그러나 소형선망은 연안에서 조업하므로 128도보다 분쟁이 심함. 축산의 실정임.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128도를 허용하여 왕돌암에서 조업하면 고기가 없음. 이것을 연안어민들이 인식해야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이러한 마찰은 자율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임

### ◇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분쟁조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함. 조업위치발신기 부착도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로 감시가 가능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조정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 정부는 불법어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예년에 5. 10월을 집중단속 하였으나 현재는 연중 집중단속을 하고 있음. 참고바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김용복(강원도수협장협의회장)

- 조업하는 어업인에게 위반을 양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 다음회의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해야 함

### ◇ 이일원(강원도청 수산개발과장)

- 위원장이 제안한 잠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겠음. 의견수렴시 좋은 의견이 나오도록 소형선망에서 속초의 유자망협회 김성룡회장에게 설명부탁. 강원도는 20마일 안쪽에서 분쟁이 있어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상태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임

### ◇ 이상옥(경북도청 사무관)

- 소형선망에서 포항의 유자망 등에도 의견조율 부탁

### ◇ 이상로(소형선망협회장)

- 소형선망은 일몰후 집어를 하여 1~2시에 투망후 양망함. 광력은 어선규모에 관계없이 180kW로 조정했으면 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잠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회의시 최종협의 하겠음. 소형선망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부탁함.
- 회의종료.

3. 3차 회의록('03. 10. 15)

- 일 시 : 2003.10.15(수) 14:00~17:00(제3차)
- 장 소 : 울진수산종묘시험장 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9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였음. 제 판단으로 지난회의까지 서로 기본입장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봄. 대강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소형선망쪽에서 지난회의 의견에 대해 보완하기로 약속함. 이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임. 지난회의를 끝나고 돌아가 생각을 하였음. 협의·협상은 서로 목표가 다른 집단이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임. 서로 마주보고 앉아 현실을 보는 것이 불편할 것임.
- 소형선망은 소형선망대로 앞에 앉으신 일반어업자와 수협, 정치망도 동일한 입장으로 현실의 문제가 있을 것임. 그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앉음. 그러한 접점을 향해 합의도출에는 필연적인 전제가 필요함.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 입장은 약간 손해를 보고 불만이 있다 하여도 감수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함. 본격적인 협의이전에 마음에 새기면서 협의를 부탁함.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음. 이점 염두해 두기를 부탁함. 협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앓된다는 말씀을 하면 솔직히 이 회의가 필요 없는 것임. 좋은 방법은 정부가 알아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규정이나 법령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민간인 위원장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간 우리 어업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시·도가 만들어서 시달하는 것에 익숙해 있음.
- 앞으로 우리 수산업도 이러한 일방적 시달보다 자율적으로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동해안에서 더불어 사는 같은 어업인임. 나만 있다하면 절대 앓되는 것임. 이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기를 부탁함. 솔직히 본인이 적극 나설 이유는 없으나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던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음. 오늘 회의가 불편하고 모자람이 있다 하여도 좋은 방향으로 매듭될 수 있도록 피차 노력해 주기를 부탁함. 양쪽의 고리역할은 본인이 하겠음. 그간 협의과정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임.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98%는 되고 2%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함. 지난 회의이후 소형선망쪽에서 대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부탁함.

◇ 천준철(경북 소형선망협회 총무)

- 영일만 달갑만에서 3마일은 정치망어장이 가깝다 하여 이를 조정하였음. 신항만 방과제에서 3마일로 하면 정치망에서 2.5마일이 떨어짐. 이것을 수정하였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난회의에서 정치망에서 1마일로 하였는데 영일만 신항만끝 3마일이면 그전보다 멀리 나가는 것임. 다른 의견은

◇ 천준철(경북 소형선망협회 총무)

- 강원쪽은 지난회의에서 6마일에서 1마일정도를 양보한다고 했음. 경북에서는 3마일로 그었으니 강원도에도 3마일로 갖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부탁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큰 줄거리를 정리하면 경북연안 3마일의측으로 하고 영일만의 신항만의측은 3마일로 하며, 경북연안이 3마일이면 강원연안도 똑같이 3마일로 하여 달라는 것임

### ◇ 김선봉(경북 정치망협회장)

-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지난회의시 5,500m인데 500m차이임. 지난회의 이후 정치망회의를 함. 회장으로서 난감함. 16,600m에서 5,600m를 줄인다는데 회장으로서 어쩔수 없다고 했음. 회원들은 무조건 않된다는 것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수부와 도에 발송함. 제 생각으로 어민 설득이 어려움. 나는 해수부가 자꾸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함.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128도를 푼다, 선망이야기만 하고 있음. 실제 허가권을 남발하여 생긴 문제임. 영일신항만으로 정치망이 축소됨. 2년전부터는 오징어를 구경도 못함.
- 이전에는 오징어가 있었음. 자원보호 이야기를 하면서 금지구역을 축소하면 어찌되나. 6마일은 않되고 16,600m에서 이야기가 않됨. 사실 선망어업인의 입장을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하겠다, 못하겠다 이야기를 못하겠음. 우리 정치망도 어렵고 자망, 통발 등 반대하는 업종이 많음.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함. 차라리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좋겠음. 그간 선망의 금지구역 숫자를 몰랐음. 이 회의를 통해 알게 되었음.

### ◇ 김정구(축산수협감사)

- 더 이상 할말이 없음. 대표성이 문제임. 강원도는 수협장님이 나왔으나 우리는 정치망업자임. 경북의 자망대표는 없음. 자망은 정치망보다 수가 많음. 합의하면 자망에 문제가 생김. 자망대표도 합류해야 함. 사실 절반축소는 무리임.

### ◇ 김용복(강원수협장협의회장)

- 소형선망의 의견대로 하면 다시 잡고 가야 함. 이 문제는 빨리 마무리되어야 함. 이 보다 큰 128도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식구끼리 이러는지 답답함. 소형선망측에서 강원도 수원단 기점 3.4마일이라 했음. 거기는 유자망어선이 지천에 깔려 있어 도저히 않됨. 삼척과 동해에서 선망이 말썽을 일으킴. 외측 10마일밖에서도 문제임. 강원도 동해남쪽에서 선망이 조업을 하고 위쪽으로는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함. 향후 고기가 없으면 어군을 따라 북상할 수 있음. 이런 식의 합의를 하면 우리가 욕을 먹으니 소형선망에서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어느 적정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함. 먼저 위원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후 협의하면 좋겠음

### ◇ 이일원(강원도청 수산개발과장)

- 자망어업과 연관이 있음. 동해구기저와 자망은 25년간 분쟁을 하고 있음. 매년 연례행사로 싸우고 있음. 동해구기저의 특별금지구역은 4~6마일임. 이것에서 반으로 줄이면 분쟁중에 분쟁이 더욱 가중됨.

### ◇ 김선봉(경북 정치망협회장)

- 오도는 6,000m이나 우리어장은 기점에서 4,400m임. 6,000m는 않됨. 실제 북방과제에서 1,500~2,000m에 정치망어장이 있음. 이는 칠포해수욕장앞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이것은 소형선망에서 내어놓은 새로운 제안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천준철(경북 소형선망협회 총무)

- 칠포쪽 1,500m는 정치망이 있음. 여기에서 3마일이면 어장에서 멀리 떨어짐. 직선으로 하면 500m까지 떨어짐

### ◇ 이상로(경북 소형선망협회장)

- 16,000m에서 5,500m로 당겨 내어 놓은 제안에 대해 이해를 부탁함. 기점은 최돌단부이나 영일만은 많이 적음. 여기는 4마일도 않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대진말앞이 가깝다는 것임.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제가 조정안을 내도록 하겠음.(양측을 분리 도면상 개별 조정 : 14:30~16:30)
- 16:30 전체회의 속개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음. 장시간 양업계간 협의를 하였음. 양쪽의 의견을 들어 공통의 의견이라 생각되어 안을 제시함. 한쪽은 불만이겠으나 크게 어긋나지 않은 조정안으로 생각함. 확인하는 의미에서 낭독하겠음.
- 첫째, 현행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 금지구역을 강원도 연안중 강릉시 정동진 이남은 5해리, 그 이북은 4해리, 경북도 연안중 장기갑은 현행으로 하고 그 외수역은 1해리를 축소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수산업계 전체 신뢰가 문제가 되는데 신뢰회복의 수단으로 소형선망어선이 조업중 정치망 및 다른 어업의 어구피해 보상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협약체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북, 강원도에서 지도키로 한다. 셋째, 소형선망어선의 부속선중 등선의 광력은 210kW이하로 한다. 이것은 소형선망쪽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것임. 넷째, 상기 제1항의 구체적인 표시는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표시한다. 구체적인 표시는 양도의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중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것임. 이 협의결과에 대하여 양쪽이 조금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발언에서 한 것과 같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임. 어려우니 양보하여 동의해주면 고맙겠음

### ◇ 김선봉(경북 정치망협회장)

- 다만 장기갑의 3마일이 문제임.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장기갑은 현행대로 가는 것임.

### ◇ 김선봉(경북 정치망협회장)

- 협의결과는 인정하나 문서로 서명은 곤란함.

###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합의서가 아니고 협의결과인데 김선봉위원과 이상로위원이 서명을 않함. 기록으로 남기겠음. 목적대로 합의가 되지 않된 부분이 있어 서운하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여러차례 회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함. 미진하지만 소기의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어 약간 서운함. 3번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어업인간 불신이 문제임. 앞으로 우리 어업이 걱정됨. 가능하면 다른 업종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함. 이것은 첫 단추임.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음. 우리는 한발짝 진일보된 것으로 위안을 삼겠음. 특히 바쁘신 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김조합장님께 감사함.

◇ **천준철(경북 소형선망협회 총무)**

- 당초 선망은 3마일이었으나 어느 순간에 조정위원회에서 선을 잘못 그어 현재에 이름. 그때 부터 우리는 투쟁함. 10년을 소요하였음. 우리가 터무니없이 요구한 것이 아님을 이해바람.

◇ **위원장(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음. 그동안 수고- 하였음 (박수)
- 회의종료

## 제4장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 제1절 주요 협의내용

## 1.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가. 현 황

 어업허가 및 척수

- '99년이후 어선감척으로 인해 서남해구(외끌이, 쌍끌이) 어선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동해구 어선 세력은 변동이 없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서남구 외끌이	허가(건)	50	50	50	50	45	△5
	척수(척)	50	50	50	50	45	△5
서남구 쌍끌이	허가(건)	15	15	15	15	12	△3
	척수(척)	30	30	30	30	24	△6
동해구	허가(건)	42	41	42	42	42	-
	척수(척)	42	41	42	42	42	-

 생산동향

- 전체생산량 및 척(통)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 서남해기저어업은 '85년대비 외끌이어선의 경우 60%이상 감소, 쌍끌이어선은 10%이상 감소
  - 동해구기저어업은 '85년대비 76%이상 감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서남구 외끌이	생 산 량	26,096	19,057	23,335	15,298	9,362	△16,734 (△64.1%)
	척당생산	522	381	467	306	208	△314 (△60.2%)
서남구 쌍끌이	생 산 량	1,582	2,322	3,462	1,138	1,132	△450 (△28.4)
	통당생산	106	155	231	76	94	△12 (△11.3)
동해구	생 산 량	25,072	18,402	4,569	3,992	5,825	△19,247 (76.8%)
	척당생산	597	440	109	95	139	△458 (76.7%)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나.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함경북도 경흥군, 강원도 고성군,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 부산·울산광역시,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 전북도, 인천시의 1내지 13해리연안을 금지구역으로 설정('63.12.16)
- 경북 울릉도주변 1,800m이내 금지구역으로 추가설정('91.3.29)
-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설정('63.12.16)
  - 함경남도 연안(11.1~익년 2.15). 평북·평남연안(5월)
  - 강원, 경북연안(10.1~익년 6.15→12.1~익년 5.31일로 기간단축)
    - 강원연안은 5월로 기간단축('96.12.31)
-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73도선 이북수역은 동해구기선저인망, 이남해역은 서남해구기선저인망 조업구역으로 구분, 신설('76.7.9)
  - 이후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73도선에서 107도선 이북해역으로 확대('82.11.13)

### 다.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 등 의견

#### 제주도 의견

- 남해안 금지구역을 근해트롤어업 금지구역선까지 확대
  - 제주주변 금지구역내에서 야간 및 기상악화시 불법조업을 자행

#### 다른업계 의견

- 현행 조업구역 유지(부산, 서남구기저수협)
  - 한·중·일간 어업협정으로 조업장소가 축소되고, 5년전에 비해 어획량이 절반('98 : 14,250톤 → '02 : 6,455톤)으로 줄어 금지구역 확대시 동 어업 도산 및 분쟁이 더욱 가중됨

### 라. 검토사항

#### 한·중·일간 어업협정 전후 조업실태

- 협정이전의 서남해구기저어업은 제주도주변 및 서해안수역에서 주로 조업을 하였으나 '95년 이후 조업활동이 대폭 위축됨
  - '95년이전의 서남해안에서는 대형기선저인망, 안강망 및 중국어선 등과 어장이 대부분 중복되었으나 조업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었음
  - '95년이후에는 중국어선이 대폭 증가되고 위협적 조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협정이후의 서남해구기저어업은 대형기선저인망, 안강망어선의 대폭적인 감척과 서남해안의 우리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진입제한 등 요인에 의해 조업활동에 거의 지장이 없음
  - 다만, 일본수역의 입어척수는 제한(20척)되어 있으나 중국수역의 입어척수 등을 감안할 경우 당해 어업의 조업구역에 관하여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해구기저어업은 주변국과의 협정여부에 관계없이 현 조업구역에 변화가 없음

### □ 어선감척과 생산량과의 관계

- 서남해구기저어업은 '80년대중반이후부터 전체 및 척당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당시 어선세력을 거유 유지하고 있어 감척에 의한 생산효율을 파악하기 곤란
  -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2001년이후 13척(외끌이 7척, 쌍끌이 6척)을 감척(2척 추진중) 하였으나 감척기피로 구조조정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의 감척시점, 감척규모 등으로 보아 감척에 따른 척당 생산량의 향상은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다른 어업대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전체 및 척(통)당 생산량은 외끌이의 경우 '85년대비 60%이상 감소하고 있어 생산 효율성이 취약
    - ※ 타 어업의 감척효과(전체 생산량은 감소하나 척당 생산량은 증가)는 바람직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서남해구기저어업은 조업구역이 비슷한 대형기선저인망, 안강망 등 어선의 대폭적인 감척과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진입제한 등 요인으로 인해 어업생산성의 형상이 기대됨
  - 대형기선저인망, 안강망 등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자원증강으로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나 어구·어법상 일정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사료됨

### □ 조업(금지)구역 관련, 제시된 의견에 관한 사항

- 현 조업금지구역을 대형트롤어업 금지구역까지 확대하여 제주도 주변수역내 침범행위 방지
  - 당해 어업은 생산량의 감소, 인력확보, 어선규모 등 제반요인으로 인해 일부 어업인이 허가된 어구·어법보다는 위법한 어구를 사용하므로서 신뢰훼손 초래
- 과거 제주도주변수역은 제주지역 채낚기, 연승어업과 안강망, 대형선망 등 어업에서 분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어업분쟁이 거의 없는 실정임
  - '90년대중반이후 대형기저, 대형트롤, 안강망 등 어선의 대폭적인 감척으로 인해 조업분쟁이 감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기타 제도상 조업(금지)구역에 관한 사항

- 현 수산자원보호령상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 서남해구)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전국수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이 설정되어 어업인이 이해하기 난해
  -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함경남도, 평안남북도해역에서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설정은 불합리
  - 강원도연안에서 경북 울진군해역의 1해리내지 10해리내에서 특정기간에 어구사용의 금지와 전국의 조업금지수역과의 관계설정이 복잡
- 이에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을 서남해구와 동해구기선어업의 각각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업(금지)구역도 별도 구분 필요
  -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에 의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을 서남해구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으로 개편을 추진중임

## 2. 대형선망어업

### 가. 현 황

#### □ 어업허가 및 척수

- '90년대이후 어선감척으로 어선세력 감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허가(건)	48	48	47	35	35	△13
척수(척)	310	367	327	201	210	△100

#### □ 생산동향

- 전체 및 통당생산량은 '95년까지 상당량 감소하였으나 이후 감소폭이 둔화되거나 정체 상태임
  - 생산량은 '85년대비 전체 42.1%, 통당 20.6%가 감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생산량(톤)	314,154	358,993	227,995	229,927	181,849	△132,305 (△42.1%)
통당생산	6,545	7,479	4,851	6,569	5,196	△1,349 (△20.6%)

### 나.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경북, 전남, 충남 및 제주 일부연안의 900m내지 1,100m이내의 해역에서 삼치를 포획할 수 없도록 금지구역 설정('63.12.16)
- 선망어업은 당해어구를 일정기간 및 대상어종을 포획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91.3.28)
  - 경상남도 통영시, 전남도 여수시, 완도군 소안면의 연안해역에서는 12.1부터 익년 2월말까지 삼치를 포획할 수 없음
  - 경북도, 전남도, 제주도의 연안 1,000m내지 5,000m이내의 해역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수 없음
- 선망어업이 불빛을 이용하여 조업할 수 없도록 신설('91.3.28)
  - 전국연안 11,000m이내해역, 다만, 소형선망어업은 경북도 연안의 경우 5,500m내지 16,600m 이내 해역
  - 제주도 본도, 추자도와 전남 거문도 주위 7,400m이내 해역

### 다.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 등 의견

#### 대형선망 의견

-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주위 7,400m 불빛사용 금지구역중 5~8월사이는 예외 인정
  - 어업간의 분쟁최소화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고려, 수출용 고급전갱이 성어기에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른 업계 의견

- 금지구역을 거문도 10,000m로 확대(전남)
  - 거문도지선의 영세 갈치채낚기 조업시기이므로 관련 어업간 분쟁최소화 및 수산자원 보호
- 제주도 주변 및 추자도 영해 조업금지(제주)
  - 야간에 금지구역내 조업으로 지선 연안채낚기어업과의 조업분쟁 빈발
  - 갈치 치어(풀치) 다량혼획 및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태안반도 연안해역(164해구) 조업금지(충남도)
  - 멸치 등을 연안에서 포획하여 치어혼획율이 높고, 연안어업과 분쟁
  - 동 해역은 치·자어의 산란성육 장소로 세망을 사용하는 선망류의 어구설치시 남획 우려

### 라. 검토사항

#### 현행 조업(금지)구역과 해역별 조업실태 관련사항

- 동해안에서는 일시적으로 오징어, 정어리를 주로 어획하기 위하여 조업하나 오징어의 비중은 약 5.5%임
  - 동해안의 11,000m밖의 수역에서 등선을 이용, 조업가능
  - 어구·어법의 특성상 오징어의 대량생산이 가능
- 서·남해안(추자도 및 거문도의 7,400m이내수역 포함)의 불빛사용 조업금지구역에서는 불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추자도 및 거문도주변수역은 수심, 어장여건 등으로 보아 대형선망어선의 조업장소로서는 부적합한 수역임
- 제주도주변수역, 흑산도수역에서 고등어, 전갱이, 갈치 등을 어획하고 있는 동 어업의 주 조업장소임

#### 현 조업(금지)구역 설정등 제도의 합리성 여부

- 연안 일정수역에서 선망어업의 불빛사용금지구역 설정은 불합리
  - 동 구역은 불빛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업이 가능하나 동해안을 제외한 수역에서는 당해 어업의 어구규모, 어장여건으로 보아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수역임
  - 또한 동 어업의 야간조업시 금지구역에서 불빛사용 등 위법행위시 적절한 대응이 곤란
  - 이에 불빛사용 금지구역 설정보다는 조업금지구역으로 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사료됨
- 선망어구는 일정기간에 특정어종을 포획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동 어업의 특성상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시 제한된 어종도 포획될 수 있음
  - 경남 통영시, 전남 여수시, 완도군 소안면의 연안해역에서는 12.1부터 일년 2월말까지 삼치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포획 금지

- 경북, 전남, 충남 및 제주일부연안의 900~1,100m이내 해역에서 삼치포획 금지
- 경북도, 전남도, 제주도연안의 1,000~5,000m이내의 해역에서 멸치포획 금지구역 설정
- 동 규정의 금지구역,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소형선망어업을 고려한 규정으로 사료되나 대형 선망어선에도 적용되는 규정임. 이는 어선의 규모, 조업장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음

### 3. 근해안강망어업

#### 가. 현 황

##### 어업허가 및 척수

- '80~'90년대초반까지 과도한 어선세력을 축소하기 위해 업종전환 등 조치
- '90년대중반이후 어업구조조정 및 한·중어업협정에 의한 어선감축으로 어선세력 대폭 축소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허가(건)	923	858	786	666	385	△538
척수(척)	1,051	865	806	660	345	△706

※ '95년이전 허가건수와 어선척수가 부정확하여 일치하지 않음

##### 생산동향

- '85년이후 전체 및 척당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99년이후 척당생산량이 다소 증가되고 있음
- 전체 생산량의 감소는 '90년이후 중국어선의 대폭적인 증가로 우리어선의 조업활동 위축 및 '99년이후 어선세력 감소, 멸치 등 연안조업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사료됨
- '99년이후 대폭적인 어선감척, 한·중어업협정에 의한 중국어선의 조업제한 등 요인에 의해 척당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구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생산량(톤)	230,828	183,208	137,650	94,146	59,144	△171,684 (△74.4%)
척당생산	220	212	171	143	171	△49 (△22.3%)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나.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경남 및 부산의 일부연안 1,000~3,000m이내해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63.12.16)
  - 삼천포, 진해만, 거제도, 가덕도, 부산영도 및 울기등대 부근 연안해역
- 서해중부 이남의 해역 및 동해의 북위 35도40분 이남의 해역을 조업구역으로 신설('76.7.9)

### 다.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의견

#### 충남, 제주도 의견

- 태안반도 연안해역(164해구) 조업금지(충남도)
  - 멸치 등을 연안에서 포획하여 치어의 혼획율이 높고, 연안어업과 분쟁
  - 동 해역은 치·자어의 산란·성육 장소로 중요한 해역이나 세망을 사용하는 안강망 등 어구설치시 남획 우려
- 제주연안 8해리내에서는 6~12월중 20: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조업금지(제주도)
  - 연안에서 갈치치어 남획 및 지선 영세채낚기어선과 조업장소를 둘러싼 조업분쟁 심각

#### 안강망업계 등 의견

- 현행유지(인천, 충남, 전남, 경남, 안강망수협, 안강망협회)
  - 근해안강망어선은 어구통수를 제한(5통)하고 있으나 오히려 연안어선들이 무분별한 어구사용으로 자원을 남획하고 있음
  - 어업협정으로 기존어장이 축소되어 어업경영이 위축됨
  - 제주연안은 과거부터 안강망어업의 주 조업장소로 이의 금지는 일부 특정어업인에 의한 지역이기주의임
  - 이미 안강망업계와 제주어업인간 자율합의한 바 있어 이를 이행

### 라. 검토사항

#### 한·중·일간 어업협정전후 조업(금지)구역의 변화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협정이전은 동중국해를 포함한 중국영해이외의 수역(양자강 수역등)과 우리나라 서해안수역이 주 조업장소임
  - 일본영해외의 수역과 남·동해안의 수역은 조업장소이나 어업의 특성상 조업활동이 거의 없는 수역임
    - ※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조업하므로 동중국해 및 서해안수역이 주 조업장소임
- 협정이후 중국의 양자강 등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게된 반면,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에서의 조업이 제한됨에 따라 동 어업의 조업수역은 축소되었으나 조업활동은 활발
- 협정전후 조업활동과 어선세력의 변화
  - 협정이전인 '90년대초반까지는 어선세력 및 생산량의 비중이 큰 어업이었으나 중국어선의 대폭적인 증가, 과도한 어선세력에 의한 경쟁조업으로 조업장소 및 어업활동이 위축되어 어업경영이 매우 취약함
  - 협정이후 중국어선의 조업제한, 대폭적인 감척으로 서해안 및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활발한 조업으로 척당생산량이 증가추세임
    - ※ 현 어선중 약 270여척이 조업하나 제주도 주변수역 50여척, 전북·충남등 서해안연안수역 150여척, 경기, 인천수역 30여척, 기타수역 40여척이 조업함

### □ 현 조업(금지)구역 설정의 합리성 여부

- 경남 및 부산 일부연안(1,000~3,000m이내)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당해 어업의 특성상 실효성이 미흡
  - 동 어업의 어구·어법상 조류의 이동이 강한 수역에서 조업하므로 남부 동해안의 수역은 조업장소로 부적합
  - 또한 금지구역은 양식어장이 주로 분포하여 있고, 기선권현망 및 연안어업의 주 조업장소임
- 서해안 및 동해의 북위 35도40분이남의 조업구역중 일부 부적합
  - 상기 조업금지구역과 동 어업의 특성으로 보아 경남 사천지역 이동의 수역에서는 실제 조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별 어선세력 분포상 강원, 경북, 경남, 울산지역은 어선이 없고, 전남, 전북, 충남, 인천 지역으로 분포. 다만, 부산지역에 6척이 있으나 감척을 추진중에 있음

## 제2절 회의록

### 1. 1차 회의록('03. 8. 12)

□ 일 시 : 2003.8.12(화) 14:10~16:30(제1차)

□ 장 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남산동 별관)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3명

※ 근해안강망, 서남구기저 등 어업인 등 12명 배석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지난 7.31일 해양수산부에서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음. 오늘 회의는 안강망, 선망, 저인망 등 근해어업에 대한 제주주변수역의 조업구역 조정문제로 의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관인으로 참석하심.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힘을 합쳐 논의하고자 하니 협의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람. 그간 본 협의회 위원의 변동이 있었음. 쌍끌이협회장이 새로이 선임되고 해양수산부 인사이동으로 전문가인 남해수산업연구소 고태승과장이 수산과학원 김영섭과장으로 변경됨. 먼저 해양수산부 김이운과장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고가 있겠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후, 오늘 회의는 지역이 기주의적 의견을 자제하고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후세대가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견도출 요망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김이운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과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음. 본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의 주제는 3가지임. 먼저 저인망어업의 제주주변 금지구역 확대문제, 둘째 대형선망어업의 거문도, 제주도 추자도주변 불빛이용 조업금지 문제, 셋째 충남, 제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강망어업의 제주주변 금지구역 확대문제임. 이 모든 문제가 제주도와 관련이 있고 전남과 충남은 한가지씩 문제가 있음. 따라서 3가지 문제를 일괄상정하여 토의하거나 한가지씩 상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이 문제들은 지역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음. 각지역과 업체는 자기주장만 하고 있음. 먼저 요구의견을 듣고 상대방이 반론를 제기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음. 업종별로 하나씩 집어나가면 좋겠음(위원 동의)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그럼 관련업종별로 토의하도록 하겠음. 근해저인망어업과 관련, 제주도청과 생산수협, 제주대에서 의견을 내고 있음, 왜 금지구역선 확대가 타당한지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안장영(제주대학교 교수)

- 이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된 문제가 아님. 1990년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음. 근본적 원인은 자원보호와 직결됨. 각국의 EEZ선포로 어선들이 연안으로 들어오고 있음. 연안어업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에 문제가 출발함.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감소된 자원이 회복되면 분쟁을 해결됨. 서로 이익을 최소한 버리고 이를 해결해야 함.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과거 정상친장관시절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 고급치어의 방류사업을 많이 함. 저인망어업은 마라도남쪽 1마일까지 금지구역임. 방류사업과 연계할 때 자원보호에 영향이 있으므로 대형 트롤어선 금지구역선까지 나가야함. 자원을 우선 생각하여 서로 양보해야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안교수님은 자원과 분쟁문제를 들어 금지구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오복권 이사는 고급치어의 방류를 하는데 자원에 심각한 영향이 있으므로 금지구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이에 대립되는 업계의 의견은

### ◇ 김정문(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대리인)

- 제주의견은 지당한 이야기임. 그러나 현재 쌍끌이대형기저는 한중,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됨. 이전에도 조업장소가 적어 애를 먹음. 어업협정의 발효로 제주요구대로 트롤어업 금지구역으로 연장할 경우 일본측까지 어장이 없음. 일본 EEZ라인까지 조업금지구역이 되는 것임. 중국쪽에도 어장이 거의 없는 실정임.
- 만약 금지구역을 연장할 경우 쌍끌이어업은 설 자리가 없음. 저인망 업계별로 보면 97년부터 2002년까지 251척이 감척됨 그만큼 우리업종이 어렵다는 것임. 95년 464척이 2003년 7월말로 114척임. 350척이 줄어들었음. 잔존어선은 갈곳이 없음. 만약 제주주변수역이 금지구역으로 연장될 경우 정부차원에서 특별감척을 해야 함. 전체업종을 감척한후 자원을 보호해야 함.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제주어민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음. 어선이 3,200척임. 이중 10톤미만어선이 3,000척임. 이들은 제주연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제주도는 통발어업의 허가가 없음. 소형기저는 1척도 없음. 제주도 어민은 자원을 보호하면서 조업함. 최소한 마라도 남쪽 1마일이상 밖으로 나가야 함. 자원은 보호하면서 이용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금지구역을 확장하면 조업장소는 거의 없다. 464척이 현재 114척이 되고, 정부에서 특별감척을 해야 한다는 쌍끌이협회의 의견이고 오이사는 제주에는 3,200척의 어선이 있는데 이중 3,000척이 10톤미만어선이며, 통발어업을 금지하는 등 조업금지구역 조정의 당위성이 있다는 의견임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대형기저의 CPUE를 볼 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 ◇ 김정문(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대리인)

- 어법이 많이 바뀜. 어구가 커서 1회양망당 많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트롤금지구역선까지 연장하여야 하는 이유는 쌍끌이는 트롤과 같음. 제주도 남방은 월동장, 산란장임. 이것이 동해와 서해로 회유함. 어로장비가 발달되어 자원이 남획되고 있음. 장래 어업채산성은 WTO-DDA의 면세유, 영어자금 금지 등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전망임. CPUE는 높아지나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음. 과거에 비해 고령어보다 소형어가 많이 어획됨. 어획노력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남획의 징후가 있다는 것임.
- 통계에 의하면 대형기선저인망이 1991년도에 121,331톤, 2000년도에 109,019톤으로 감소하고 있음. 감소되는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허가유보, 휴어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자원이 회복된 후 조업을 해야 함. 자원이 풍부하면 문제가 없음. 이 지역은 제주도 어민만 잡는 것은 아님. 40%내외임, 나머지는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어획함. 자원이 없으면 전 어업에 타격이 있음. 밖으로 나가야 함. 성산포에는 광케이블이 있음. 저인망이 끌어 연 간 수리비가 10억 9,200만원이 듦. 광케이블은 국가기간통신망임. 이것이 끊어지면 모든 통신이 중단됨. 국가통신지도가 파괴되는 것임. 현 금지구역보다 확장되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CPUE는 줄고 있으나 양망당 낚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WTO-DDA 협상과정을 참작해야 한다. 자원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임. 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겠음

### ◇ 전영렬(국립수산물과학원 연구관)

- 현재 어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우리 과학원에서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새로운 어업 협정의 여파로 연근해어장이 축소된 것은 사실임. 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일정지역의 어선어업은 과도어획으로 자원이 감소함. 지역의 특성에 따라 증가 또는 유지되는 곳도 있으나 최근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자원은 자율갱신의 특성을 갖고 있음. 자체적으로 잘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 우리의 후대까지 생각을 해야함. 이에따라 법에서 자원보호를 강제하는 것임. 그러나 어업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음. 자원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는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자원감소는 전반적이다. 특성상 재생산이 가능하다. 생계유지차원에서 계속 이용해야 하는 양쪽 측면을 말씀하였음. 3개 의제중 첫 의제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2번째 의제인 선망어업의 불빛사용 제한구역 문제에 대하여 요구업계는 일정거리의 허용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더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대한 의견을 들겠음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불빛사용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채낚기어선과의 문제도 있음. 선망들이 상품가치가 없는 갈치치어까지 어획하고 있음. 갈치는 1년에 10cm자람. 연승어업은 선택적으로 어획을 하며 10kg상자에 10~20마리의 중형갈치가 5~6년생임 이것은 한상자에 150~200천원을 고가임. 선망에서 잡는 갈치는 2~3년생으로 식탁에 사용못함. 오뎅, 어묵용으로 쓰이고 있음. 이것들을 직접보고 안타까움이 많음. 갈치는 단년생이 아니고 7~8년을 삶. 점점 제주도 주변에 상품성 있는 갈치가 없음. 일본 EEZ밖에는 없는 실정임. 일본은 자원보호를 잘 하고 있음. 10kg당 40~50미를 잡고 있으며 이것은 식탁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가공됨. 고급품이 없음. 좀 멀리서 작업할 필요가 있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길생(거문도수협장)

- 저희 수협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리가 5,000m이나 이를 배로 늘려야 함. 우리지역은 그렇게 많이 선망이 조업을 하지는 않음. 치어를 남획하는 것은 선망보다 쌍끌이가 많이 함. 4~5월 거문도 근해에서 쌍끌이가 치어를 잡음. 안타까움. 갈치치어를 잡고 있음. 치어의 남획을 막아야 함. 분쟁의 소지는 약간 있음. 지금 불편은 크게 없음. 거문도는 7~11월 갈치성수기임. 동 기간동안 불빛사용은 멀리에서 해주기를 바람.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에 공감함. 업계의 어려움은 알고 있음.

### ◇ 김정문(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대리인)

- 전체 쌍끌이가 치어 등 불법어업으로 하는 것은 아님. 2~3통일 것임. 이들은 협회에 가입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업함. 멀리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협회자체에서 자체가 않됨. 우리어선들은 대부분 제주도 남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선망에서 불빛사용문제 이외에 태안반도 금지구역 설정요구가 있으나 이 지역은 현재에도 불빛사용 금지구역임을 참고 하시기 바람.

### ◇ 정은영(충남지역 어업인대표)

- 30년간 어업을 하고 있음. 충남도는 뺨뺨이허가로 치어를 싹쓸이 하고 있음. 태안은 뺨, 압초, 모래 3박자가 잘 맞는 황금어장임. 안강망이 치어를 마구 잡음. 가을에 멸치, 봄에 곤쟁이를 잡음. 안강망은 너무 연안에서 조업을 함. 해경과 협의하여 연안 5~6마일의측에서 조업을 하게 하면서 공히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원을 보호해야 함. 무작정 싹쓸이는 않됨. 태안 앞바다의 대하가 거의 없음. 어업인끼리 싸울수 없음. 행정부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함. 안강망이 연안에서 조업하는 것은 않됨. 또한 쌍끌이어선 몇 백척씩이 태안에서 조업을 하였음. 현재는 없음. 안강망이 대하까지 싹쓸이함. 정부의 방류사업이 필요가 없는 것임.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자원조사를 하여 결단을 내려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는 것 같음. 이해가 됨. 거문도수협장과 성산포수협에서는 큰 것을 잡아야 하나 불빛을 이용하여 치어까지 잡고 있다. 조금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임. 이에 대해 금영수산의 대표의 입장은

### ◇ 박상호(금영수산 대표)

- 선망어업의 포획대상은 회유성 어종임. 고등어 80~90%, 전갱이 10%, 기타임. 갈치는 전 어획량의 2~3%를 차지함. 선망은 45통에서 30통으로 줄는등 매우 어려움. 금년도에도 3통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음. 한일어업협정으로 망목을 전반적으로 30mm이상으로 교체함. 등선도 3척에서 2척으로 줄이고 불빛의 축광도 줄임. 현재 경영이 가장 어려운 시점임.
- 주 조업 대상으로 회유성 어종인 전갱이는 잡지 않으면 소실됨.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어종으로 5~7월 연안으로 회유함. 우리 업계가 연안에서 이를 잡아 경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지역 7,400m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음. 그곳을 들어가면 고발되고 있음. 제주도의 주장인 이곳 보다 나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5. 6. 7월을 배려하여 전갱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어획고 일부분을 제주도에 기금으로 내 놓을 용의가 있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이인곤(전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거문도지역의 갈치채낚기 주조업시기는 5~8월임. 선망의 불빛 때문에 갈치조업이 힘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망이 협조를 해야 함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고등어의 경우 1991년에 91,538톤, 95년에 90,481톤, 2000년에 145,908톤 임. 선망어업의 전체 생산량은 1991년에 361천톤, 1995년에 318천톤, 2000년에 232천톤임. 과거보다 덜 잡히고 있음. 회유성 어종이라 하나 자원이 감소됨.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구역을 넓혀야 함. 이것은 제주도의 욕심이 아님. 자원회복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갈치채낚기어업에 타격이 있고 제주의 자원상태는 제주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원보호 차원이라는 의견임. 박상호 선망어업 대표는 주로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 전갱이를 잡고 갈치는 2~3%이며, 전갱이는 일정시기에 회유하며 이를 잡지 못하면 소멸되니 수출용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임. 상호 이익을 위해 기금조성의 용의도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근해안강망어업의 164해구 및 제주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설정문제임. 우선 보령에서 오신 안강망어업인 대표의 말씀부탁

### ◇ 정지인(보령안강망협회 대표)

- 164해구는 충남어업인이 모두 수용하는 지역이며 174해구에 충남의 연안개량안강망과 근해안강망이 조업을 하고 있음. 충남의 근해안강망은 멸치를 잡음. 밖에는 고기가 없음. 물론 다른 업종이 조업하는데 불편해서 안강망이 없으면 조업하기에 편할 것임. 그러면 안강망은 어업을 포기해야 함. 천수만과 시화지구, 새만금은 산란장인데 이것이 없어져서 치어 발생장이 적어진 것임. 안강망 때문에 치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산란장소가 없기 때문임. 안강망의 조업을 위해 다른 어업을 하지 말라 하면 하겠는가. 164해구 조업금지를 절대 수용하지 못함.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람

### ◇ 정은영(충남지역 어업인대표)

- 전국의 안강망이 다 태안연안에서 조업함. 충남어선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음. 수산과학원에서 자원을 평가하여 결론을 내야 함. 공청회에서 논쟁만 있음. 정지인 위원의 의견과 같이 현재 천수만 등 산란장이 없어짐.

###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 대표)

- 목포지역 안강망은 충남지역이 가지 않음

### ◇ 신동건(충남도청 사무관)

-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음. 조업구역 문제는 업종간 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경영어 어려워 더 대립되고 있는 것임. 안강망, 자망, 통발어업간 대립되고 있음. 현재 상태에서 조정은 어려우니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여야 함.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안강망은 제주연안에서 6~10월중 조업을 하고 있음. 이곳에 채낚기는 3,000여척이 조업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모범사례로 안강망어선은 제주도 본도 외측 8마일 이내에서 6~10월 조업시 20시에서 새벽 04시까지 조업을 금지하도록 합의하였음. 그러나 현재 통제가 안되고 있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음. 약속을 어기고 있음. 잘 지키고 있는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자율협의 내용을 법제화 하여 달라는 것이 희망사항임. 그중 몇척의 채낚기어선이 안강망과 분쟁사례가 있음. 잘 해나가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 해 줄 것을 희망함.

###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 대표)

- 2001,6.30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어장을 잃음. 제주의 요구는 이율배반적임. 제주도민의 요구에 분통이 터짐. 제주지역 조업시 분쟁없이 조업을 하여음. 법으로 막는 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임. 이는 형평성이 파괴되어 절대 수용할 수 없음. 정부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드리면 다른 도서지역도 모두 요구할 것임. 갈치남획과 산란문제에 있어 회유도를 보면 제주주변은 월동장이 없음. 따라서 제주도의 주장은 맞지 않고 96.1월 합의된 자율협약의 무효화를 요구함. 많은 어선이 줄어들어 현재 제주주변에서는 3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제주의 오복권이라는 산란장에 문제가 있다. 현재 자율협약을 법제화 해야한다는 의견이며, 안강망 쪽은 제주도의 의견대로 수용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것임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희망사항이라고 했음. 이것을 법으로 하자는 희망사항임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5~10월이 문제임. 현재까지 어업인간 잘 자율규제를 준수함. 광케이블이 성산포에서 고흥까지 이어짐. 광케이블이 6회나 안강망으로 파손되었음. 자율규제 범위안에서 이를 법제화 하자는 것임

### ◇ 정지인(보령안강망협회 대표)

- 낭장망부터 시작하여 25년간 안강망에 종사함. 갈치가 있으면 오징어가 있음. 여기에 또한 멸치가 있는 것임. 조업해역을 조정하면 현재 영역 밖은 고기가 없음. 어군은 이동, 회유함. 격렬비열도 밖까지 채낚기가 조업함. 우리는 치어를 잡는게 목적이 아님. 제주도는 8해리를 주장하나 우리는 그곳에서 조업을 하지 않음. 164해구를 주장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음. 고기가 있는 곳에 조업을 하는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수산업은 지속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수산업의 목적임

### ◇ 이인곤(전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근해안강망어선은 1998년에 600여척이나 현재 30여척이 제주도 주변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음. 제주도는 102건 허가에 22척의 채낚기가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없음. 자율협약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 법으로 하자는 것인데 현재 잘 지켜지고 있음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어업허가는 겸업이 가능하고 복합어업이 있어 현재 1,000척이 채낚기조업을 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지금까지 요구의견과 대립의견을 들었음. 이 모든 3가지 문제를 포함, 종합하여 안교수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겠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안장영(제주대학교 교수)

- 같이 살기 위해 조정을 하는 등 조정방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함. 결국 공존을 위해 자원을 이용하는데 자원의 증가가 어려우면 유지되어도 좋은 것임. 자원의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매우 어려운 문제임. 현재 자원이 없다. 감소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음. 현 위치에서 양보하는 준비를 해야 함. 어획강도가 강한데에서 약한 쪽을 보호하여야 함. 즉 대형이 소형에게 양보하여 함.
- 현재보다 어선세력을 줄이는 것과 정부가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잘되고 있는 자율협약을 법제화해서는 않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음. 다른 지역에서 제기하는 우려도 이해됨. 이런 조정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님. 지역이기주의나 하는 문제는 아님. 모든게 그 연안의 소형어선을 보호하는 데에서 나옴. 모든 업종의 경영이 악화되는데 어느 한 업종만 살면 않됨. 제주에는 감척어선이 많음. 어려워서 감척을 하는 것임. 소형어선도 매우 어려움. 큰배 1척이 작은배 수십척이 잡는 논리가 성립됨. 대형은 멀리가서 조업을 하라고 허가해 줌, 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 선망어선이 제주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함. 연구실에서 불빛이 보임. 물론 안강망도 제주연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낚시어구는 낚시의 크기를 조정하면 되나, 망어구는 들어온 이상 죽게됨. 근본적으로 배를 줄여야 함.

### ◇ 전영열(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자원상태는 48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자원중 적정이용 자원량은 125만톤이어야 하나 현재 160만톤을 이용하고 있어 과도어획 상태임. 업종간 문제는 있으나 자원의 특성상 도서주변은 자원재생산의 조건이 매우 좋음. 산란장과 먹이생물이 많음. 은신처도 많음. 또한 성육조건도 좋음. 남해안은 보호가치가 있음. 자원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옴. 70년대 명태자원이 많이 잡힘. 지금은 없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여야 함.

### ◇ 박상호(금영수산 대표)

- 연근해수산업의 현실은 안타까움. 제주주변수역의 조업에 대해 좋은의견 부탁

### ◇ 정은영(충남지역 어업인대표)

- 안강망은 멀치 등 치어를 잡음. 낭장망은 정부에서 보상을 함. 이후 개량안강망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를 해수부에서 조정을 해야 함. 치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함. 치어가 없으면 연안어업은 않됨. 안강망의 망목조정과 시기조정을 해야 함.

### ◇ 김정문(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대리인)

- 선망어업의 제주쪽 조업에 대하여 이해됨. 갈치치어를 쌍끌이가 모두 남획한다고 하여서는 아니됨. 저인망은 망목이 54mm임. 치어는 빠지고 있음. 갈치치어는 쌍끌이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선망, 안강망 등 망어구 어법이 다 어획하고 소형고데구리와 권현망에도 치어가 들어감. 쌍끌이는 연안보다 근해에서 조업을 함. 갈치치어 고갈이 쌍끌이 때문은 아님. 제주도 피항시 중국어선 때문에 피항을 못함.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중국어선은 12마일 영해나 추자도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음. 금지구역선 안까지 중국어선이 조업을 함. 우리 배보다 중국어선이 몇 천척임. 자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중국어선의 행태를 염두해 두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회의는 계속될 것임. 어떠한 형태든 합의를 하고, 결론을 도출할 책임이 있음. 오늘 회의는 양쪽의 입장을 듣고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회의서 할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충남의 정은영 위원이 제기한 개량안강망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님을 이해바람. 낭장망, 연안안강망의 감척은 세망을 써서 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이므로 이를 감척하였고 이후 25mm의 그물을 쓰는 것을 조건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신설된 것임. 충남 근해안강망어업의 164해구 조업여부 때문에 협의하는 것임, 중국어선은 협정에 의해 우리와 상호 입어를 하고 있음. 약 2,500척임. 중국어선도 우리의 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금번 조정회의는 크게 보아야 함. 자원보호측면에서 100년대계를 생각해야 함

###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 대표)

- 제주도에서 거론하고 있는 광케이블 문제는 KT에서 충분히 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제주도 주변의 금지구역 조정문제, 새로운 금지구역 설정 문제에 대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음. 금일 하루에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님. 자원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음.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 갈 것임.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람. 그러한 대안이 오늘 발언이 없었다면 다음회의가 어려워 질 것임. 구체적인 심의는 다음회의부터 하겠음. 지금 시점에서 어느쪽에 손을 들지 않음. 총괄협의회에서 다수결이 아니라 했음. 콘센서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만장일치는 아니나 이에 거의 접근하는 것임. 다음회의의 일정을 정해야 함.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여기는 이동하기가 불편함. 목포나 제주에서 했으면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목포 등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협의해서 통보하겠음.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종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2. 2차 회의록('03. 9. 2)

□ 일 시 : 2003.9.2(화) 14:00~16:20(제2차)

□ 장 소 : 남해수산연구소 목포분소 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5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금번 새로 선임된 서남구수협 노순기이사와 근해통발어업인 대표 박부원위원을 소개하겠음. 그리고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섭 자원관리과장임.

####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대표)

- 제주대학교의 안장영교수는 어느 자격으로 참가하는지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에 있어 자원문제 등에 대한 자문역할임. 또한 수산과학원의 김영섭과장도 같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음

####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대표)

- 두분은 자문역할을 해야 함. 특정업체를 대변하면 않됨. 자문으로서 전문가의 위치를 부탁 드림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지난 8.12일 여수회의에서 근해안강망어업은 기존 자율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의 됨. 제주측은 꼭 범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음. 충남연안 164해구에 대한 금지구역 설정은 충남어업인간 문제로 생각됨. 이것은 양쪽에서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정은영위원은 본 내용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하였음. 대형선망의 제주도 추자도 및 거문도주변 불빛사용 금지문제에서 대형선망쪽은 수출어종인 전갱이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기금을 내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제주측은 입장표명이 없었음.
- 또한 대형기저, 근해통발 등 많은 업종에 대하여 금지구역의 확대를 요구하나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상실된 현실에서 이를 확대시 갈곳이 없는바, 기존 구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서해특정해역 협의회시 기타통발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은 본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관련 위원을 추가 선정하였음. 오늘 진행은 지난번 의견을 다시 들으면 시간이 낭비되므로 기타통발어업에 대한 제주측 입장을 듣고 이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들겠음. 이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요구업계의 의견을 먼저 듣고 대립업계의 의견을 들겠음.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바람.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제주도는 '84.9.27일부터 미끼를 사용하여 정착성 치어를 남획하는 그물통발어업을 금지함. 80년대중반 게통발, 장어통발 등 특히 게통발이 연안쪽에서 조업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자원보호를 위해 통발어업을 금지하였는데 근해통발이 조업한다는 민원이 많았음.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자원이 고갈되면 수산업 전업종이 도산됨. 자원이 회복될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제가 필요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박부원(근해통발어업인)

- 제주에서 12해리를 금지하자는데 제주주변의 어장보호에 대하여는 공감함. 우리는 법상 장어통발과 게통발이 있으며, 제주 12해리에는 꽃게어장이 없음. 장어는 법상 35cm는 포획금지임. 또한 우리는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35cm이하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획시 통발속에 장어외는 다른 어종은 없음. 제주도 해역의 작업선을 확인하면 됨. 미끼로 유인하므로 들어갈 수 있으나 99% 없음. 위판실적도 없음. 문어, 갯장어 몇 마리가 듦. 갯장어는 연승으로 어획함. 우리 업종과 제주주변수역 조업은 관련이 없음.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이해는 되나 연안 1~2마일 가까이에서 조업하여 지역어민이 문제를 거론함

### ◇ 박부원(근해통발어업인)

- 현재 장어통발어선은 74척이 남아 있음. 성산앞, 추자도근해에서 소수어선이 작업을 함. 5~6월중 조업을 하나 어구어법으로 현지인과 마찰이 없었음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피해가 없다는 것은 모르겠음. 피해사례등 확인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음. 자원을 고갈한다면 논의를 해야 함.

### ◇ 박부원(근해통발어업인)

- 우리는 그간 많은 량의 통발을 사용함. 그러나 현재 자율적으로 어구수를 제한하고, 앞으로 휴어기를 생각하고 있음. 어장보호에 노력함. 제주와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음.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봉장어와 관련한 민원은 없음. 추자부근에서 불법어선을 검거할 경우 게통발을 변형하여 다금바리 치어를 잡고 있음. 양식장에 판다고 함.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음.

### ◇ 박부원(근해통발어업인)

- 우리의 66척 기타통발어선이 각 지역에 분산하여 조업함. 기타통발은 철선으로 냉동선임. 서해안쪽과 관련이 없고, 통영어선과는 마찰이 없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이 문제는 다음회의시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로 논의하겠음. 서남구기저쪽에서 현행 금지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부탁

### ◇ 노순기(서남구수협이사)

- 서남구기저어선은 제주도에 있는 수협에 위판함. 530억원중 150억원이 됨. 또한 선원들이 제주에서 지출을 하는 등 더불어 살고 있음. 제주도의 소형어선인 연승, 유자망은 개발된 PE합성섬유를 사용함.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함. 이러한 폐어구는 바다에 빠져 매장되고 있음. 저인망은 바다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음. 유자망, 연승이 그 위에서 조업을 하므로 상호 보완적 업종으로 더불어 삶.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우리도의 위판고는 3,585억원이며 제작년은 3,784억원임. 외지어선의 위판고는 200억원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서남구기저는 제주에 경제적 기여를 하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함. 지난 회의 발언이 외 추가 말씀이 없으면 그룹회의로 진행하겠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제주쪽에서 저인망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음. 우리는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감통을 하였음. 현재 1/3이 남음. 쌍끌이는 50통으로 인천의 14통을 빼고 비조합원이 많음. 제주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실제 30통임. 결국 면적이 줄어들었고 불법어업을 인정함. 협회에서 주의를 주고 있음. 현행법을 준수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봄. 쌍끌이는 한번 조업에 77일이 소요됨. 제주에서 3~4일 정박함.
- 우리는 제주에 기여를 하고, 부식 및 쌀구입도 제주에서 함.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함. 몇척은 거문도 주변에서 삼치, 갈치를 어획하나 전체 어선을 매도하면 않됨. 이는 비조합원들이 하는 것으로 가슴이 아픔. 조업구역 위반시 40일 조업금지, 면세유는 80일 공급이 금지됨. 따라서 가급적 불법을 않함. 제주의 요구는 인정함. 어장이 줄어든 업계 사정을 이해바람. 트롤어업 금지구역선까지 나가라면 우리는 설곳이 없음. 양쪽으로 금지되어 꼼짝도 못함. 너그럽게 서로 이해를 부탁함. 서로 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협정의 피해는 모든 어선의 문제임. 안강망과 제주 3,000여척 전체문제로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할 수 있음. 다만 조업장소와 자원을 연결할 때 양보로 될 것이 아님. 50년전의 금지구역인데 그 당시는 물반, 고기반인 시절임. 자원은 많았으나 이를 잡을 줄 몰랐음. 남해안 모든 어선들이 제주에 집결됨. 금지구역이 마라도 남쪽 1마일임. 많이 침범하는 것이 쌍끌이임. 저인망은 기관마력이 좋아 연승을 갈라놓음. 제주도는 치어방류사업으로 자원을 증강하였으나 부산이 쌍끌이가 5~7kg짜리 넙치를 400~500kg씩 잡고 있음. 이후 3년만에 없어짐. 마라도 남쪽 1마일에서 좀더 나가야 함. 어업분쟁은 양보되나 자원보호측면에서 않됨. 현행 유지의 설득력이 없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우리는 어획강도가 높음 어업임. 현재는 중층을 하고 있음. 제주근해에서 갈치가 날 때 문제임.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쌍끌이어선은 금지구역안에서 선명을 은폐하고 조업함. 또한 폭풍등으로 화순항에 피항시 정박후 조업을 나갈 경우 마라도부터 중국어선과 같이 끌고 감. 방류사업이 필요없음. 치어가 어묵공장으로 들어감. 제주도의 수협중 옥돔치어가 무한정 올라오는 수협은 한림수협임. 저인망이 잡음. 이러한 치어가 어묵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음. 이것이 현실임. 금지구역선만큼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업계가 모두 어려움. 부정어업자 색출이 필요함. 현 상태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효과적임. 부정어업자 양산은 바람직하지 않음. 가급적 서로 노력하고 자율적으로 해야 함.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자원이 없으면 서로 공멸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더 이상 발언이 없으면 그룹회의를 진행하겠음. 요구업체 먼저 30분간 함. 단 수산과학원의 전문가는 양쪽 모두 참석함. 요구업체의 자문을 들겠음

### (그룹회의 : 요구업체)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협상에는 안이 있어야 함. 국제회의에서는 1, 2, 3안 등이 있으며 여기까지로 고사하는 경우가 있음. 끝까지 고집하면 성사가 되지 않음. 전체를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 확실한 안을 주어야 진행이 가능함. 저인망 금지구역 설정문제에서 제주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미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현재 자원보호를 위한 접근인지, 이것을 제기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함. 자원보호측면에서의 협의는 않됨. 이것이라면 수산과학원, 시도 등의 의견을 들어 자원보호려개정안을 마련하면 됨. 이것은 어업조정임. 어업조정을 협의하면서 일방적이면 곤란함. 양쪽 의견이 팽배하면 협의가 불가함. 서로 Win-Win작전으로 이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함.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부는 어느 안을 가지고 있는지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처음부터 거론된 문제라면 어느 안이 있을 것이나 현재 각 시도를 통해 받은 요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임. 이것을 모두 들어준다면 곤란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마라도 1마일은 누가 들어도 의미가 있다고 인정할 것임.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제주도의 요구이나 상대방은 청천병력일 것임.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안강망어업은 사양산업으로 현행 자율규제로 양보할 수 있음. 저인망중 서남구기저가 문제임. 전부 전개판을 사용하고 있음. 40마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정착성 어류를 방류하고 있는데 저인망이 넙치를 400~500kg씩 잡음. 자연산 넙치가 작년부터 없음. 자원이 갑자기 없어짐. 현재 돌돔위주로 방류함. 연안어업인을 위해 40마일이 않되면 12해리는 금지를 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안강망은 현행 자율규제로 하고, 저인망은 마라도 12마일로 제시함. 선망의 불빛사용금지구역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전갱이는 5~6월중 연안산이 상품가치가 높음. 회유성으로 자원이 소실되는 것은 아님. 선망들은 밖에서 불빛을 밝히고 집어하여 조업함. 수중등 사용으로 주변의 채낚기가 조업이 않됨. 채낚기어선에 돈으로 흥정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현행을 유지하는 것 더 이상의 금지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 않됨.

### ◇ 이인곤(전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거문도주변을 10,000m로 확대하여 달라는 것은 거문도 주민의 요구임

### ◇ 김길생(거문도수협장)

- 5,000m는 절대 않됨. 우리는 10,000m로 하면 좋겠음. 양보한다 하여도 현행 7,400m를 유지해야 함.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기타통발이 문제가 있으므로 통발어업은 2~3마일이라도 규제를 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안강망어업의 164해구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충남도내의 문제이므로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164해구만 금지구역으로 할 경우 다른 지역도 문제임. 현행유지쪽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음.

### ◇ 신동건(충남도청 사무관)

- 조정을 하여 다음회의에서 제시하겠음

### ◇ 김수완(제주도청 해양수산과장)

- 제주도는 저인망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음

### ◇ 안장영(제주대학교 교수)

- 좀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원이 있다면 어획강도를 계속 유지하여도 문제가 않됨. 현재는 어획강도를 줄여 나가야 함. 협상도 중요하나 상당히 물러서는 감이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어업에서 자원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나 어업 현실도 생각해야 함.

### ◇ 안장영(제주대학교 교수)

- 자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실습에서 전에는 많은 고기가 저인망에 들어왔으나 현재는 없음. 그물어구에 의한 자원문제가 심각함.

### ◇ 김영섭(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장)

- 협정이후에 조업어장이 축소됨. 자원을 회복해야 다툼이 없음. 자원회복이 선결되어야 함. 어획강도를 줄여줄 것을 요구함. 자원문제에 대해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현재까지의 논의는 참고하는 것임. 현재 논의한 것으로 해수부에서 조정할 경우 참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그룹회의 : 대립업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지금까지 요구업계의 의견을 들었음. 논의결과는 설명을 하지 않겠음. 다만, 제주, 전남, 충남의 요구에 대해 주고 받는 식의 의견이 아니고 끝까지 않된다는 주장을 하면 협의는 불가함. 지금까지 요구업계의 솔직한 입장을 들었음. 시간이 많지 않음. 10월까지의 결론을 내야 함. 따라서 다음회의에서 결론을 내려고 함. 대립업계쪽도 자원이 줄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임. 어업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임. 이점을 염두해 두어야 함.
- 저인망의 마라도 1마일에 대해 자원보다는 지역적 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어업을 하는 입장에서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있는지.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서남구외끌이에서 오타를 달고 조업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이는 트롤과 같음. 그래서 트롤어업과 같이 동일하게 하여 달라는 것 등 예민함.

#### ◇ 노순기(서남구수협이사)

- 우리는 다른 업종과 달리 톤수, 마력에 제한을 받고 있음. 소형기저도 현재 800마력까지 거치함. 수차 건의를 통해 동지나해 조업시 합법적으로 전개판을 허용하도록 요구함. 현재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원보호를 위해 그물코, 금어기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전개판 없이 작업이 않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오타보드를 허용하는 용역이 아님.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저인망어업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임.

#### ◇ 노순기(서남구수협이사)

- 금지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함. 다만 마라도 주변수역만 조정한다면 수용할 수 있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부산지역의 19척은 전개판 없이 정상조업함.

#### ◇ 노순기(서남구수협이사)

- 중형기저 50척때문인지 묻고 싶음.

#### ◇ 김영섭(국립수산물과학원 자원관리과장)

- 현재 자원수준이 낮음. 앞으로도 20~30%를 더 낮추어야 함. 이는 모든 업종을 종합하여 그렇다는 것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1994년부터 감척을 하여 국제감척까지 2,580척을 함. 이중 1,980척이 근해어선임. 70%가 근해어선이며 당시 연안 5만여척, 근해어선은 6,000~7,000척으로 현재 근해어선은 4,100척임. 그간 근해어선 위주로 감척을 하였고, 연안어선은 낭장망, 안강망, 혜선망임. 현재까지 8,300여억원을 투자하였음. 저인망과 선망이 어획강도가 높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안강망어업에서 현행 자율규약을 유지할 것인지, 법으로 이를 강제해야 하는 것인지.

###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대표)

- 현재 잘 지키고 있음.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은 반대함. 당시 어선은 800여척이었고 대형이었음. 그러나 제주의 연승은 30톤미만의 소형이었음. 지금은 우리를 능가하여 현대화 되었음. 현재 자율규약은 수용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이를 무효화 하든지, 제5항 금지한다는 자제한다로 개정요망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태안반도 164해구 문제는 다른 지역과는 관계가 없고 태안반도만 지정하면 연쇄반응이 있음. 다음회의시 충남도에서 조정하여 제시하고 다만, 금지구역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통발어업은 장어통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 다만, 기타통발이 문제임. 장어통발도 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문제가 있는지.

### ◇ 박부원(근해통발어업인)

- 통발의 그물길이는 50km임. 제주주변수역 12마일 밖에서 조업하므로 어장분쟁이 없음. 주로 제주 성산포에서 추라도 앞에서 조업하고 한림으로 들어갈 경우 7시간 걸림. 55km이상 벗어난 해역에서 조업함. 장어통발은 문제가 없으나 기타통발이 작업을 하였다면 장어가 아닌 잡어를 어획한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임. 제주 12해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소흑산도 등도 오늘의 협의와 같이 계속 요구할 것임. 제주도는 우리영토로 섬이 아님. 이러면 결국 연안어업만 조업해야 함. 이런 기본틀을 만들면 선례가 되어 되풀이 될 것임. 어업인 스스로 자원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제주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자율규제로 피해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임. 다음 회의시 한번더 협의했으면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영향이 크다 적다보다는 법제화하여서는 않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심. 12해리에 영향이 있다면 자율협의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임.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를 갖자는 것임. 이것은 제주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선망어업에서 현행 제주주변 7,400m를 5,000m로 하되, 5~8월중 야간 불빛사용을 허용하고, 전남 거문도도 마찬가지로 10,000m로 나가자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12마일밖으로 나가라는 것임. 또한 선망쪽은 지나가는 고기이고, 수출하는 자원이니 필요하다는 것임.

### ◇ 박상호(부산 금영수산 대표)

- 90년대 어획고는 1,000만이었음. 우리는 어획량이 늘었고 고등어가 90%임. 제주도 어업인이 하는 조업방법으로는 고등어를 못잡음. 공동어시장 위판량의 67%가 선망임.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부대산업이 많음. 이러한 비중 있는 업종을 자원 보호 명목으로 보면 않됨. 우리는 자원보호를 스스로 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박대표는 현행유지가 아니고 5,000m로 들어가자는 것인지.

### ◇ 박상호(부산 금영수산 대표)

- 현행유지가 최선임. 자원보호 측면만 보면 않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사실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 ◇ 박상호(부산 금영수산 대표)

- 채낚기어선이 먼저 요구하고 있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제주도 어업인들은 불배에서 수중집어등으로 고기를 모으고 어군을 끌고 나가서 조업을 한다고 함.

### ◇ 박상호(부산 금영수산 대표)

- 금년부터 메가리 조업을 못함. 단속이 심함. 우리가 밖에서 조업을 한다하여 제주 연안어선에 이익이 없음. 지나가는 고등어, 메가리를 잡지 못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완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규제는 않된다는 것이며, 현상유지라는 것이 요지임.

### ◇ 노순기(서남구수협이사)

- 제주는 단속이 심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함. 선망, 쌍끌이, 트롤은 다층망을 사용함. 표. 중층을 대상으로 조업함. 순수 저인망은 아귀, 서대, 등 저서어종을 잡음. 우리는 60~70%가 39톤의 어선이고 마력의 제한을 받고 있음. 감척을 하였다 하나 실제 제주도는 어선이 늘어남. 자원이 고갈된다면서 제주어선은 팽창하고 있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1995년부터 감척사업으로 200통이 50통만 남았음. 명목상 쌍끌이 어업허가만 있고 조업을 못하는 어선이 있어 현재 30통이 조업함. 쌍끌이가 위반하면 고발을 하고 어구피해에 대해 고발함. 법대로 시행하여 불법어선을 중하게 다루면 됨. 조업구역을 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협상은 주고 받는 것임. 현상을 고수한다하면 진전이 없음. 저인망은 마라도주변이 문제임. 결론은 아니라도 이정도로 양보한다는 선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한 협의 부탁.

### ◇ 노순기(서남구수협이사)

- 연구하겠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큰배가 1마일부근까지에서 조업한다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음

### ◇ 김영섭(국립수산물과학원 자원관리과장)

- 선망어업은 자원평가를 위한 자료축적이 잘 되어 있음. 자원은 감소되고 있으나 선망은 TAC요구량의 95% 수준으로 어획하고 있음. 회유성 어종이기는 하나 적정톤수를 잡고 있음. 저인망은 CPUE가 떨어지고 있음. 자원상태가 우려됨. 200통이 50통으로 줄었다 하나 CPUE측면에서 보면 자원이 남획되고 있음. 따라서 어획강도를 더 낮추어야 함.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마라도 1마일은 자원학적 측면에서도 핑장이 연안임. 문제가 있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정리를 하겠음. 마라도 주변해역의 금지구역 조정은 더 협의를 하여 해수부에 의견을 제시 하고 통발은 장어통발은 이견이 없으나 일부 기타통발의 조정을 검토하고, 충남도 태안반도의 안강망어업 금지구역은 충남도에서 다음회의때까지 조정을 하고, 사실 법보다 무서운 것이 자율규제인데 목포안강망은 책임감을 갖고 현행 자율규약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전체회의)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전체회의를 속개함. 양측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음.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건설적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함. 상당히 희망이 있음. 다음회의에서는 이해의 폭이 좀더 좁아질 것으로 기대함. 오늘 각자 의견을 바탕으로 각 구성원과 협의를 하여 보다 더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해수부에 사전에 통보하면 다음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음. 우리의 목표에 대해 상당부분 오늘 협의한 것 같음. 양측의 좋은 의견에 감사함.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다시 제시하면 시간이 낭비됨. 조정하는 의미에서 양측에 연락을 드리겠음. 저인망측에서는 업계간 협의하여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통발측의 의견도 부탁함. 다음회의는 마지막 안을 가지고 위원장이 중재를 하였으면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마지막에는 위원장이 의장안을 낼 수도 있음. 공평한 입장에 서서 양측의 무리한 부분은 조정을 하겠음.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는 아님. 우리는 콘센서스 방식으로 협의함. 이것은 거의 찬성이 가까운 것임. 한사람이 반대를 하여도 곤란한 것임. 가능한한 의장안까지 앓가고 합의되었으면 함.
- 회의종료

### 3. 3차 회의록('03. 10. 20)

□ 일 시 : 2003.10.20(월) 14:00~17:30(제3차)

□ 장 소 : 전남도청 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3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대형선망 박상호위원 및 충남어업인 정은영위원 불참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다시 만나 반가움. 아침저녁 기온차가 매우 심함.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나, 봄, 가을이 짧음.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멀리 전남까지 와서 광주항쟁의 현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본 건물은 역사에 기록될 건물로 알고 있음.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회의가 되었으면 함.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현재 조업구역조정 협의회중 소형선망과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문제는 매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자주 모이는 것도 어렵고, 현재까지 많은 토론을 하였으므로 우리 협의회도 오늘중으로 끝낼 계획임.
- 우선 요구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업계쪽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제주쪽과 회의를 한후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하겠음. 따라서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를 부탁하고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회의가 되기를 부탁함. 오늘 회의한 결과는 총괄협의회에 넘겨질 것임. 먼저 대형기저쌍끌이와 서남구기저와 이야기하고, 제주쪽과 회의를 진행하겠음.

#### (제주측과 상반되는 업계와 회의진행)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저인망에 부담을 주어서 미안하게 생각함. 제주측은 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그간 회의이후 해양수산부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여러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압. 업계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음. 제주측에서는 현재까지 거론된 모든 업종을 일괄하여 합의하려고 함. 중형기저와 대형기저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함. 앞으로 후속회의는 생각을 앓하고 있음. 솔직한 의견을 부탁함.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해양수산부는 양보할 수 있는 선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음. 중형기저와 협의를 하였음. 물러설 길이 없다고 봄. 개인적으로는 양보해야할 딱한 사정이나 복안을 가지고 간다고 했음. 우리업계, 조합과 여러번 상의를 했음. 쌍끌이는 180통에서 50통으로 줄어 들었음. 제주쪽으로 가는 배는 25통 정도임.
- 여기마저 양보를 하라하면 우리는 갈곳이 없음. 중국수역, 일본 EEZ도 못감. 현재 선에서 트롤선까지 물러서라고 하나 회의결과 일본 EEZ는 킬타량이 적어 하루 조업도 안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역신고, 허가표지판 부착 등 각종제한으로 경제성이 없어 조업이 불가함. 양보하라 한다면 금지구역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영해선까지로 한다면 생각해 보라고 했음. 우리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이니 금지구역을 전국 영해선으로 하면 좋겠음. 이제는 조업구역 재편차원에서 논의를 해야함. 제주주변만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음. 전반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말씀은 이해하겠음. 현재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은 문제된 것만 축소하여 5개분과협의회에서 논의중에 있음. 전체적인 것은 총괄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모든 조업구역에 대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 노순기(서남구기저수협이사)

- 맥락은 쌍끌이와 같음. 제주도에서는 자꾸 해수부나 도에 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하나 이것을 무작정 받아 줄수는 없음. 저인망쪽의 양보를 요구하나 고민스러움. 이 회의 이전에 업계 자체적으로 여수에서 회의를 함. 회의결과를 전남도에 제출했음. 전회원이 현행유지를 하자는 의견이었음. 개인적 의견으로 생각하여 마라도 주변수역은 제주도 어민이 성역이라 하니 지역특성을 이해 할 필요는 있다고 봄.
- 이 협의회 이전에도 여수해양수산청에서 유사한 자율협의를 한바 있음. 제주도 어민과 저인망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사정함. 우리업종의 전개판 무착에 대하여 제주어민은 반대하고 있음. 이것은 해수부의 법개정 문제임. 우리는 마라도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안함. 마라도 주변만 한정하여 3~5마일을 특정금지구역으로 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음. 다만, 단서로 다른 분과협의회에 명분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됨. 우리가 불법을 한다고 제주의 연승, 채낚기 어선들이 캤코터를 가지고 다님. 옆에 기다리고 있음. 사법경찰처럼 그물을 확인하고 있음. 이런 사례가 있음. 제주도 소속 지도선에 의해 영해밖에서 많이 단속을 당함. 영해밖까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피해를 주고 있음. 제주는 중형기저의 마지막 보류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두분의 말씀을 잘 들었음. 이회장의 말씀은 당연할 것이나 다시 시작은 않됨. 이 문제는 제주도 주변수역에 국한을 하여야 함. 다른 분과위도 마찬가지임. 주어진 과제만을 축소하여 협의를 해야 함. 회의과정중 느낀 것이나 제주도는 보수적이고 배타적임. 모두 금지를 하면 어장이 없음. 특별한 지역만 금지를 해야 함. 현재 제주도 요구는 영해 12마일을 요구하고 있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마라도는 섬임. 섬주변에서 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않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유엔해양법에서도 선을 긋는 것은 매우 복잡함. 이 시점에서는 양쪽이 모두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선을 찾아야 함.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쌍끌이는 180통에서 30통으로 줄음. 그전에는 무엇을 하고, 이에와서 왜 이것을 거론하는지. 앞으로 그물코 등 어자원 보호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함. 보호를 해야 할 곳은 하고 넓은 곳은 좁히고 해야 함. 실제 제주도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해서 자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제주도는 거의 채낚기와 연승으로 낚시어업임. 저인망은 끄는 어업임. 따라서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우리는 제주주변에서 갈치, 삼치 등 흘러가는 회유성 어종만 잡고 있음. 자원에 큰 영향이 없음. 대한민국 영해선까지를 금지구역으로 하면 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전체적인 조업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총괄협의회에 올라 갈 수 있음. 제주도의 의견은 패키지로 안망, 선망 등을 전체로 했을 때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임. 선망, 안강망, 저인망, 통발을 포괄적으로 타결을 하자는 것임.

###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 대표)

- 제주도는 단독의 제주공화국이 아님.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제주도는 낚시만으로 조업을 하는지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 주변수역 문제만 논의하여야 함. 128도 등의 문제는 다른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음.

###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128도 회의는 회의자체가 매우 험악함. 우리 협의회는 신사적으로 하니 주고 받아야 함. 같은 대한민국 수역인데 제주도는 밀어 내려고만 하고 있음. 그렇다면 모두 영해선을 기준으로 해야함.

### ◇ 박부원(근해통발어업인)

- 기타통발어업은 서해특정해역에 들어 갈려고 함. 이 자리에서 그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겠음. 우리는 80년대 300척이었으나 현재는 통영지역 60척임. 10일전 입법예고를 통해 장어통발은 90척만 남긴다고 했음. 저의지역 60척중 제주도 주변 작업선은 30척, 거제와 동해안은 20척, 나머지는 소흑산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 우리는 거의 70톤급이나 제주주변은 20~30톤급 어선 6~7척이 조업을 함. 제주측 요구가 어자원보호와 자원조성이라 한다면 제주도 연안어선을 감척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추라도, 한림, 성산포 쪽에서 5~6척이 조업을 하나 현재까지 분쟁은 없었음. 지난회의 이후 업계의 의견을 들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해수부는 양보선을 요구하나 서해특정해역 문제도 있으니 저의 입장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음. 타 업종도 양보하여 일괄타결을 한다면 기본선을 생각하고 있음. 12해리는 너무 멀음. 생각하는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음

### (제주측과 회의진행)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지난회의까지 2가지 문제는 거의 의견이 접근되어 있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마라도 주변 수역과 통발어업의 금지구역 문제임.

(제주측과 도면상으로 구체적인 협의 진행)

(제주측 및 상반되는 업계와 구체적 교차회의 진행)

(양측 주장을 토대로 협의결과 문안초안 작성 및 조정)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전체회의 속개 16:30)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최종 협의결과 문안을 작성하는 동안 각 위원의 소감 등 지금까지 못다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김길생(거문도수협장)

- 거문도는 외지의 배를 유치해야 살아가는 섬임. 쌍끌이어선이 조업구역을 침범하고 있음. 거문도 지역에서는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있으나 분쟁을 줄이면서 조업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금어기 및 치어기때는 조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람.

◇ 정지인(보령안강망협회 대표)

- 그동안 고생을 하였음. 결과가 나와서 뜻깊음. 앞으로 어업을 하자는 분들이 만나서 이러한 협의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임. 탁상공론이 아닌 이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김재현(목포안강망선주 대표)

- 이 회의를 통하여 지역간 갈등만 증폭시킨 것 같음. 제주도지역과 같이 한계를 정하면 어디에도 갈곳이 없을 것임. 근해어업에 대한 새판을 짜야 함

◇ 안장영(제주대학교 교수)

- 업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선박을 우선 줄여야 함. 자원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수부는 125만톤이라 주장함. 부산의 학회회의시 수산과학원은 자원관계의 조사를 잘 된다고 했음. 경영의 악화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생기는 것임. 국가적으로 자원량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함. 치어의 보호가 필요함

◇ 이경현(대형기저쌍끌이협회장)

- 자원의 변동은 수온, 해황, 해양오염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있음. 어업인들의 남획만이 원인은 아님

◇ 노순기(서남구기저수협이사)

- 작년 9월경 제주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음. 제주도에서 특정업종에 대하여 과잉단속을 하고 있음. 특정업종을 타케트로 하는 단속은 지양되어야 함. 자원감소를 이야기하나 소흑산도 근해까지 시화호의 공장폐수가 내려와 빨리 덥혀 있음. 바다가 썩었음. 생물이 살수 없는 지경임. 지난 태풍 루사로 정화가 많이 됨. 금년의 매미는 강우를 동반함. 에너지가 다름. 시장에 가면 80%이상이 수입산임. 국내산 어가하락은 이러한 원인임. 어획량이 줄은 것은 아님. 옛날 40일 조업이나 현재는 20일로 만선이 됨.

◇ 이인곤(전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임. 안강망은 현행을 유지하고, 거문도 문제도 다행임. 쌍끌이저인망에서 합의서 말미에 영해를 기준으로 금지구역으로 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넣자고 하나 이것은 제주도와 상관관계 문제임. 다른 어업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건의사항으로 넣으면 안되는 것임.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지금까지 양측과 고민하여 협의한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음. 근해어업(안강망어업, 대형선망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어업, 통발어업, 저인망어업)에 대한 제주주변수역 등에서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대하여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위원간에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조업구역 조정 총괄협의회에 상정키로 함

1.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설정(8해리) 요구는 2001.6.30 한·중어업 협정이 발효되어 정부의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이 감소되고 현재 제주도 연안어업인과 조업분쟁이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 이를 설정하지 아니함. 다만, 근해안강망어업인과 제주도어업인간에 기존 합의된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서」를 양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함
2. 근해안강망어업의 충남 태안반도 연안해역(164해구)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설정요구는 충남도내 업계간 문제로서 특정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다른 연안에 대하여도 확대 요구 등의 문제제기가 대두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분쟁발생시 충남도가 이를 조정키로함
3. 제주도·추자도 및 거문도 연안의 대형선망어업 불빛사용금지구역은 쌍방간 확대·축소 및 유지를 상호 주장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함
4. 근해통발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12해리) 요구는 제주도(본도) 주변수역 1.5해리를 통발어업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키로함.
5. 기선저인망어업(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확대(대형트롤 금지역선까지)요구는 현행대로함. 다만, 마라도 남서해역에서는 현행 1해리에서 동 도 등대에서 반경 3해리로 조정키로함

- 이상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시간이 많이 지남. 만족하지는 못하나 양쪽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협의결과를 조정한 것임. 마지막 문제로 지적되어진 쌍끌이 조업금지구역을 전국 영해 12해리로의 조정건의는 우리 분과위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의장이 건의사항으로 총괄협의회에 건의하겠음. 질서를 잡아 조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협의를 함.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와주심에 감사함. 마지막까지 언쟁은 협의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함. 대단히 수고 하였음 (박수)
- 회의종료

## 제5장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

### 제1절 주요 협의내용

#### 1. 잠수기어업

##### 가. 현황

##### 어업허가 및 척수

- '90년대이후 지자체정비, 어업구조조정으로 어선세력 감소
  - 강원도 13척(어업구조조정), 제주도 24척(지자체 정비)

구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허가(건)	273	273	251	236	236	△37
척수(척)	273	273	251	236	236	△37

- 조업구역 설정·운영
  - 조업구역별로 허가정수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허가정수와 처분건수의 차이가 있는 강원은 현재 조정추진중

구분	계	제1구	제2구	제3구		제4구	제5구			
		강원	경북	부산	경남	전남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정수	249	20	11	7	122	52	11	4	14	8
허가	236	7	11	7	122	52	11	4	14	8
조업구역		강원	경북	부산·경남·울산		전남	인천·경기·충남·전북			

##### 생산동향

- 총생산량은 '97년까지 약 16~20천톤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전체 및 척당생산량이 감소
  - 2000년이후 11~13천톤으로 생산량이 매년 감소추세임
  - 키조개의 지속적 생산 등을 위한 TAC실시 및 자체적으로 생산제한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구 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생산량(톤)	18,568	20,391	16,944	18,065	11,446	△7122 (△38.4%)
척당생산	68	75	68	77	49	△19 (△27.9%)

### 나.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별첨 조업구역도①)

- 제주도는 잠수기조업구역에서 폐지('96.12.31)
- 경남과 전남경계 일정수역을 전남과 경남어선의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98.8.27)
-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서해특정해역내 조업금지

### 다.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의견

#### 충남 및 전남잠수기업계 의견

-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을 허용하고 북위 36도이남 전북수역은 제4구와 제5구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
  - 잠수기어업인간 반목과 갈등을 초월한 잠수기어업 발전을 위해 제4구(전남)과 제5구(서해안) 잠수기어업인간 합의한바, 전북연해를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
  -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허용

#### 다른업계 등 의견

- 현행유지(인천지역 자망, 안강망, 낭장망, 형망 등 어업인)
  - 자원이 고갈되고 자망, 낭장망 등 밀집조업으로 어구분쟁 상존
- 제5구중 전북해역은 조업구역에서 제외(전북)
  - 어업인 스스로 지역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묘방류, 어초시설, 육성수면 지정 등 자율관리형어업을 추진중이므로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북수역은 조업구역에서 제외
- 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여부와 연계 검토(경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라. 검토사항

#### 현 조업구역별 허가정수의 구분에 관한 사항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은 전국수역이나 잠수기, 형망 및 권현망어업은 동일업종이면서 구역을 구분하여 조업토록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동일업종은 조업구역을 별도 구분하기 보다는 동일조건에서의 조업활동이 바람직함
- 조업구역별 허가정수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조업구역의 면적에 비해 조업척수간에 불균형 및 조업구역의 명확성 결여
  - 경남·부산 122척(3구), 전남 52척(4구)에 비해 인천·경기·충남·전북 37척(5구), 경북 11척(2구), 강원 7척(1구)이 조업
  - 다만, 현 조업구역별 조업척수는 당해 지역의 패류자원을 이용하는 자원관리채취선, 근해형망 등 다른 업종간의 관계에 의해 허가정수를 설정·운용되는 결과임
  - 당해 어업은 구역별 패류 등 자원량에 분포에 불구하고 조업구역의 제한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조업구역이 구역별 시·도의 해역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별 관할수역의 경계표시가 없는 실정임

#### 근해어업인 잠수기어업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 잠수기어업은 어선의 규모는 소형이나 어업경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업종으로 평가됨
  - '53년 수산업법 제정당시 어선의 규모, 당해 어업의 특성보다는 어업경영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근해어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사료됨
  - 연안의 정착성 패류를 주로 어획하므로 조업구역 측면을 고려할 경우 연안어업의 형태임
- 현 수산업법령상 연안과 근해의 기본적 분류체계는 어선의 규모(통상 8톤)에 의해 분류되고 있음
  - 법률상 총톤수 8톤미만 어선의 경우도 근해어업으로 할 수 있으나 연안과 근해어업의 기본 분류체계와는 부적합

#### 잠수기어업과 패류양식어업등 먼허어업과의 관계

- 패류양식어업 등 먼허어장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연안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의 조업장소가 축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양식어장이 개발되어도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방식이 기존의 잠수기 허가어선으로 규정되어 있음(키조개는 제외)
- 이는 잠수기어업의 조업을 보장하는 측면은 있으나 면허어업권자에게 양식어장의 포획·채취수단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게 됨
- 기본적으로 재산권인 양식장의 양식물에 관한 포획·채취수단을 어업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임

### □ 서해특정해역의 조업과 잠수기어업 조업구역과의 관계

- 잠수기어업은 구역별로 조업, 별도 조업금지구역이 없음
  - 현재 인천·경기·충남·전북의 37척(제5구)이 서해특정해역을 포함한 전북이북수역이 조업구역임
- 다만, 안전조업을 위하여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서해특정해역에서 어업별 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하여 어로행위를 제한
  - 대청도어선어업구역, 저인망어업구역 및 덕적도서방어업구역(안강망, 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어업)에서 정하지 아니한 어업은 조업을 금지하고 있음
- 근해형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은 동일패류를 경쟁조업 할 것이나 제5구의 잠수기 37척중 10여척이 서특에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

### □ 조업(금지)구역관련, 제시된 의견에 관한 사항

-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을 허용하여도 조업척수, 근해형망어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조업분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님
  - 당해 어업의 어구·어법상 서해특정해역내의 자망, 안강망, 낭장망어업과는 어구분쟁 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패류자원의 남획은 포획·채취할 어획량의 자율적 제한 등으로 관리 가능
- 제5구중 전북해역을 조업구역 제외 주장은 기존 전북의 잠수기 허가정수를 제외하는 문제와 동 어업을 연안어업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종합검토 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제외수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역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전북해역을 제4구와 제5구의 잠수기어업인간에 합의,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전북지역 육성수면 지정어업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함

## 2. 근해(기타)통발어업

### 가. 현 황

#### 어업허가 및 척수

- '90년대중반이후 어업구조조정 및 국제규제 감척사업에 의해 어선세력 대폭 감소

구 분	1985	1990	1995(A)	1999	2002(B)	B-A
허가(건)	467	418	579	560	331	△248
척수(척)	392	351	384	344	162	△222

#### 생산동향

- 기타통발어업 및 장어통발어업은 양업종 생산량이 구분되지 않으나 '90년대중반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꽃게는 대부분 기타통발에서 어획되나 '95년이후 생산량 급격 감소
  - 홍게(붉은대게)는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기타통발어선(58척)에서 대부분 어획되고,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장어는 장어통발(92척)에서 대부분 어획되고 '00년이후 안정상태임

구분	1985(A)	1990	1995	1999	2002(B)	B-A
생산량(톤)	9,805	24,327	51,371	28,323	23,783	+13,978 (243%)
- 꽃 게 (%)	-	558 (2.8)	6,568 (12.8)	292 (1.0)	478 (2.0)	△80 (△14.3%)
- 홍 게 (%)	1,122 (11.4)	13,310 (54.7)	33,147 (64.5)	22,003 (77.7)	8,980 (37.8)	+7,858 (+800%)
- 장 어 (%)	7,031 (71.7)	9,690 (39.8)	3,266 (6.4)	2,876 (10.2)	11,061 (46.5)	4,030 (+157%)
척당생산	23	69	134	82	147	+124 (+639%)

나. 조업(금지)구역 및 변천과정

-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없음. 다만, 강원도 일부연안의 37,000m이내의 해역에서 4.1~7.31, 10.31~익년 1.31까지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계를 포획할 수 없도록 신설('91.3.28)
-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서해특정해역내 조업금지

다. 조업구역에 대한 업계의견

기타통발업계 의견

- 기타통발어업 서해특정해역에서 8.16~11.30까지 허용
  - 중국 양쯔강수역 등 꽃게통발의 조업어장 상실 및 이동조업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경쟁적 밀집조업과 생산성 저하로 경영악화에 있음
  - 서해특정해역내 조업어선과 다소 분쟁이 예상되나 우선 한시적 조업을 허용하되 어구사용 규모 및 TAC실시

다른업계 의견

- 현행유지(인천지역 자망, 안강망, 낭장망, 형망어업인)
  - 동 수역조업이 허용된 자망도 어장이 좁아 포화상태로 업종간 대립이 되고 있으며, 통발어구 미회수로 바다오염 및 꽃게자원 남획
- 제주도 주변 영해내는 조업금지(제주도)
  - 제주도 및 추자도연안에 근접하여 어구(장어통발, 게통발 등)를 부설하고, 지선 정착성어류의 치어까지 포획하여 자원고갈 조장

라. 검토사항

한·중·일간 어업협정 전후 조업(금지)구역의 변화

- 협정이전의 통발어업은 일본, 중국영해이외의 수역과 우리나라의 동·서·남해해역 광범위한 어장에서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었음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일본수역에서는 꼴뱅이, 장어통발 및 기타통발어업
- 중국수역에서는 꽃게통발어업이 어로활동에 지장없이 조업하였으나 '95년 이후 중국어선세력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업위축
- 협정이후의 일본수역에서는 조업이 제한되고, 중국수역에서는 조업제한은 없으나 조업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일본수역과 동중국해수역에서 제한받은 대부분의 꽃게통발 및 장어통발어선은 대부분 감척수용
  - 잔여 어선중 동해안의 홍게통발어선(58척)을 제외하면 꽃게 등을 포획하는 어선은 약 100여 척에 불과하므로 조업수역이 충분한 실정임

### □ 기타통발어선과 꽃게생산량과의 관계

- 기타통발어선의 꽃게생산량은 '95년 이후 거의 어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실태분석은 곤란
  - 당해 어선이 꽃게를 포획하지 않는다면 서해특정해역 조업요구는 부당한 주장으로 사료됨
  - 동 업계의 꽃게어획량 통계가 누락되는 등으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통발어업의 전체생산량중 장어, 홍게(동해안 생산어종)를 제외한 생산량을 기타통발어업의 생산량으로 볼 경우 어업경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되므로 이의 정확한 내용을 동 업계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서해특정해역의 조업과 통발어업의 조업구역과의 관계

- 수산업법령상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없으나 일정시기에 일정구역에서 제한된 어종(게)을 어획하지 못하도록 규정
  -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삼척시의 연안으로부터 37,000m 이내의 해역에서 4.1~7.1 및 10.31~익년 1.31까지 어구사용 금지
  - 동 규정은 게 이외의 어종을 포획할 경우에는 제한규정에 아니므로 분쟁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규정임
- 서해특정해역은 어업별 조업구역과 조업기간을 정하여 어로행위를 제한(선박안전조업규칙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제19조제3항)

- 현재 대청도어선어업구역, 저인망어업구역 및 덕적도서방조업구역(안강망, 자망 및 낭장망, 연승, 형망어업)에서 정하지 않은 어업은 조업을 금지하여 운용되고 있음
- 서해특정해역에서 근해통발어선의 조업을 허용할 경우 저인망조업구역과 덕적도서방어업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분쟁이 예상
  - 당해 어업은 꽃게를 주 대상으로 조업할 것이므로 덕적도서방해역의 근해자망어업과 분쟁이 클 것임
  - 저인망어업 조업구역은 인천지역 저인망어선 대부분이 감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조업구역의 면적으로 보아 일정수역은 허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 제주도주변 영해내를 근해통발어업의 금지구역 설정관련

- 장어통발어업은 대부분 사니질의 해저형태가 발달된 수역에서 시기에 따라 조업함
  - 당해 어업은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연중조업하나 어구·어법상 장어이외의 어종은 어획하지 않음
- 기타통발어업은 어구·어법상 제주도 주변수역에 근접조업시는 제주도 연안어업과의 분쟁이 예상됨
  - 당해 어업은 서해안에서 꽃게, 동해안에서는 홍게를 주로 포획하는 어선을 제외할 경우 경남의 약 60여척이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됨
  - 당해 일시적으로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주년조업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주연안어업과의 분쟁 발생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당해 어구·어법의 특성상 어획강도가 크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구의 제한」과 연계되므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제2절 회의록

### 1. 1차 회의록('03. 8. 14)

- 일 시 : 2003.8.14(목) 14:00~16:10
- 장 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별관)
- 참석자 : 협의회의원 12명  
※ 수협중앙회, 기타통발어업인 등 2명 배석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음. 여러분은 문제를 제기한 업종의 전문가들임. 요구업계와 대립업계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함. 지금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함. 먼저 이 협의회의 간사인 해양수산부 김이운 어업정책과장의 회의안건 보고후 회의를 시작하겠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토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내용은 2가지임. 먼저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과 전북수역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임. 두 번째로 기타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문제와 제주 주변수역 조업금지 문제가 있음. 2가지를 동시에 협의하면 협의가 곤란하므로 우선 잠수기어업의 요구의견을 듣고 대립업종의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통발업계의 양해를 바램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오늘 조업구역조정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장과 해수부 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조정안은 제5구역 잠수기가 덕적도서방 특정해역에 사장된 키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것임. 현재 잠수기어업의 실정은 제5구는 37척임, 전북 8, 충남 14, 경기 4, 인천 11척임. 37척중 30척이 주로 키조개, 개조개를 채취하고 있음. 태안하단에서 전북 고군산해역까지 어장이 형성됨. 9~11월 3개월간 인천지역에서 조업을 하나 유속이 빠르고, 시계가 불량하며, 수심이 깊어 잠수기어업의 여건이 불리함.
- 키조개 자원은 고군산에서 경기까지 분포함. 저인망이 불법어업을 하고 형망이 가리지 않고 채취하여 감소추세임. 특정해역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조업이 금지됨. 우리는 8톤미만의 어선이나 400마력의 고속어선임. 모항에서 덕적도까지 1시간이면 진입이 가능함. 잠수기는 심해에서 조업이 불가하고 40m 이내 수심이 가능함. 덕적도에서 북위 37도20분, 동경 125도30분 특해까지 9~11월중 매 조금에 4~6일정도 조업이 가능함. 1개월에 13일 조업함. 현재 조업척수는 30척이나 20척이 조업에 임할 것임. 특정해역의 키조개는 사장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윤채를 하면 자원이 조성될 것임. 인천과 경기도에 15척이 있음. 가능하면 서특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함. 전북도의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재 조합의 경영이 어려움. 조업을 활성화하여 경영을 정상화해야 함.

- 또한 우리 지도선으로 불법어업의 단속이 가능함. 키조개는 TAC어종으로 정책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전북지역 경계 36도이남에서 4구어선이 1일 15척씩 조업하는 조건으로 37명이 동의를 함.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우나 조합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결단을 함. 전북도를 제4. 5구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함. 지난 5.16일 최조합장이 서해안을 방문, 이 문제를 협의하여 5.19일 의견을 교환하였음. 31명이 동의, 불참 2, 거부 4명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음.
- 잠수기조합은 경영이 악화되어 12억의 적자가 있음.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4구의 52척이 여수지역에서 집중조업하면 자원이 고갈되나 이것을 분산할 수 있음. 현재 TAC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생산을 조절하면서 관리할 수 있음. 4구의 행정선 1척을 서해에 배정하여 불법어업단속에 의한 질서유지가 가능하고 조합원의 인화단결을 위해 요구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잠수기쪽에서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및 전북지역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 일부 동의를 받았고, 최대 15척으로 제한하며 TAC 정책으로 남획방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서특에는 37척중 30척이 키조개, 개조개를 일정기간동안 운채를 하겠다는 것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들겠음

### ◇ 김광익(인천닷자망대표)

- 잠수기어업의 이야기를 잘 들었음. 만약에 153해구에서 조업을 한다면 153해구는 닻자망, 유자망, 낭장망 등 모든 업종이 산재하여 조업하고 있음. 9~11월중이라고 하나 사실 그 장소에 잠수기가 조업시 면적이 적음. 당 지역은 고정자망, 안강망 어선의 어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조업하는 유자망은 조류에 따라 그물이 흘러가고 있음. 바다밑에 그물이 있어 잠수기어업이 않됨. 키조개 자원과 형망어업과의 관계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형망어업도 조업을 하고 있어 고려해야 함.
- 키조개를 잡겠다는데 과연 량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함. 153해구는 조류가 강하여 잠수작업 시 어망 등이 있어 잠수기어업이 될지 궁금함. 꽃게자원과 키조개자원은 별개이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음. 유자망 등 타업종이 밀집되어 있음. 그곳에 잠수기어업이 할 수 있을시 의문시됨. 또한 어기가 9~11월로 중복되고 있어 불가능한 것임.

### ◇ 장성모(안강망수협 어업인대표)

- 이 문제에 있어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이 매우 중요함. 당사자가 있어야 함. 잠수기는 안강망보다 형망이 중요함.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저인망, 연승, 형망이 빠짐. 잘못된 결정을 안강망과 자망이 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경우 문제가 있음. 잠수기측 이야기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나 3월1일, 9월1일 자망어선이 진입하면 안강망도 투망할 자리가 없어 작업을 포기하고 회항함 인천지역 어선도 장소가 좁아 조업을 못하는데 잠수기, 통발이 들어올수 있겠는가.
- 발상 자체가 현실인식을 못하고 있음. 특정해역은 인천지역 어업의인 사활과 생존권이 달려 있음. 여기에 새로운 업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같이 죽자는 것임. 서해특정해역은 자원이 유지되고 있음. 강도 높은 통발이 들어온다면 1년도 못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통발과 잠수기, 관계기관은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해야 함. 같은 수산업자로 같이 살 길과 죽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협의를 해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우선 잠수기어업과 대립되는 업종이 형망인데 이해업종인 형망이 위원에서 빠졌으므로 형망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서해특정해역에는 닻자망, 유자망, 안강망으로도 장소가 부족하여 여력이 없고 강도 높은 통발어선이 들어오면 자원이 고갈된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전북해역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의견에 대하여 전북도에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 김광철(전북도청 수산자원담당)

-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으로 전북해역을 설정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함. 당초 5.7일 시도 의견의 조정안에는 우리지역의 권현망만 있었는데 7월 이문제가 대두됨.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임. 이해가 되지 않음. 우리도의 잠수기어업허가는 8건이나 충남지역으로 이전됨. 전남과 충남을 공동조업구역으로 하지 왜 북위 36도이남인 전북수역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만약 공동조업구역을 한다면 4. 5구 전부를 공동조업구역으로 해야 할 것임. 왜 잠수기어선이 없는 전북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도는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음. 제4구는 52건, 제5구는 37건임.
- 이 어선들이 공동조업구역으로 전북도에 조업할 경우 어패류는 없어지고 어장은 황폐화됨. 4. 5구 어업인의 요구는 잠수기어업인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임. 과연 이것이 전북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우리도는 자원관리어업으로 16개소가 있음. 20억 원을 들여 종묘방류, 양식사업을 함. 이런데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이해가 않됨. 우리도의 형망어업은 정한수가 260건임, 이중 40건이 현재 조업을 하고 있음. 유사업종과 분쟁이 있고 또한 집단 반발하고 있음. 우리는 자망 1,358건, 안강망 10건, 개량안강망 159건, 양조망 20건이 있으며 해상종묘생산어업인 274ha임.
- 우리는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종묘를 방류하며 어초시설, 육성수면, 보호수면 등 마 을단위로 관리하고 있음. 제 5구중 전북의 허가건수를 삭제하고 조업구역 제외를 요구함. 지방의견이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제5구의 허가정수를 재심사하여 희망하는 시도에 허가를 해주기 바람. 우리는 8,700만미의 종묘를 방류하고 312억원으로 인공어초 57,192개를 투 하함.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 어장황폐화를 방지하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음. 전북해역에 대한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절대 반대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회의의 진행은 요구업계의 의견과 반대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임. 감정싸움을 할 필요가 없음. 서로 양보하면서 갈길을 찾아 보는 것임. 회의가 있다하여 무너지는 것은 아님. 전북도 의견은 왜 전북수역만 공동조업구역으로 해야 하는냐 할려면 4. 5구 다터야지 하는 의견과 5구를 전북수역에서 제외하고, 재허가시 전북도는 허가불허를 요망한다는 의견임. 이 문제에 대한 충남과 인천의 의견을 들겠음

### ◇ 고석준(충남도청 해양수산과장)

- 작년 10월 부산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에 대해 숙박을 하면서 협의를 한바 있음. 잠수기는 다른 어업과 달리 잠수해서 키조개를 주로 잡음. 여타 어업과 어업방법, 포획어종이 한정되므로 다른 어업과 큰 문제는 없을 것임. 3. 4구 수협과 5구역의 조합원 전부가 일치하여 의견이 나옴. 특정해역은 인천시의 닻자망, 안강망이 있음. 어구어법이 다른 업종과 틀려 이동하면서 조업하는 것이 아님. 일정지역에 잠수를 하여 조업하므로 큰 무리가 없음.
- 서해특정해역은 보호되어 있어 키조개가 다량 서식함. 이 자리에 적정시기에 적정량을 포획하여 소득을 거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특정해역에 잠수기를 허용하여 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협의 부탁.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북도에서 발언을 하고 있음. 전북도 허가 어선 8척은 전북도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저희도에서 조업함. 공동관계를 유지하자는데 양소장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의 의견임. 특정해역에서 소득을 거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음.

- 이는 조합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전북도를 공동조업구역으로 하여도 자원에 영향이 없다는 것임. 현재 키조개는 적정가격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포획을 하고 있음. 또한 TAC를 실시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함.

### ◇ 김종만(인천시청 수산과장)

- 업계간 조업이 중복되어서는 않됨. 충남에서는 자원이 있으니 허용을 하여 달라는 것임. 그렇다면 자원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협의를 해야 함. 자원이 있다면 정확한 자원량에 따라 배척수가 얼마이니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야함.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하여 건의를 하겠음. 서해특정해역을 관할하는 곳은 해경임. 조업허용, 교육, 선단편성 등을 하고 있음. 해경은 제외되고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잠수기어업 문제에 대하여 충남과 전북에서 이야기를 함. 인천지역의 의견도 있었음. 충남 잠수기쪽에서 추가로 말씀이 있으면 부탁함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어업분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충남에 자망 등이 많음. 지금까지 잠수기와 어업분쟁이 없었음. 잠수기는 자망어구가 있으면 조업을 않 함. 분쟁을 염려할 필요는 없음. 형망에서는 키조개를 잡지 않음. 피조개를 잡고 있음. 키조개는 망가져서 상품성이 없음. 이 문제가 형망어업자에게도 통보가 갔을 것임. 무관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한 것임. 특정해역의 자원량은 백아도 인접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특히 전지역이 아니고 수심 40m이내수역임. 특해는 어장의 굴곡이 심함. 형망어업이 실제 조업하기 어려움. 인천지역의 우려는 이해함.
- 그러나 인천의 허가는 11건이 있으며 인천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여야 함. 사장되는 자원을 방치하면 않됨. 기득권을 주장하고 넘비현상이 팽배되어 있음. 구조개편으로 미래의 수산을 만들자는 것으로 마음부터 터 놓고 협의하였으면 함. 말도부근과 고군산에서 키조개를 채취하면 운채를 할 수 있음. 충남에서 잡고 이어서 전북에서 작업을 함. 이렇게 하면 자원보호에 유리함 금을 그어 나누어 가지자는 개념이 아님.
- 4. 5구어민이 잠수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원을 이용하자는 것임. 공동조업구역에서는 1일 15척만 조업하도록 각서를 받음. 4구를 트는 이유는 서해안을 개발하는 것임. 한쪽 자원만 채취하면 어장이 망가지고 불안해 하는 것임. 전북도 육성수면을 지정할 때 37척이 반대도 있었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를 한 것임. 더불어 살자는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특정해역에서의 유희자원을 이용하자는 것으로 과학적인 조사가 않되어 있으니 인천에서는 과학적 조사를 하자는 것임. 전북도의 공동조업구역 설정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함. 오늘 회의는 결론을 내는 회의는 아님. 양업체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2. 3차회의를 하는 것임.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님. 오늘 발언을 한 것이 불리한 것도 아님. 찬반 등 다수결이 아니고 콘센서스 방식으로 함.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음. 주어진 시간에 충분한 자기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임. 두 번째로 서해특정해역의 통발어업 허용에 대하여 경남에서 요청하였으니 경남도 과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김석상(경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조업구역 조정협의회는 지난 1953년 수산업법 제정이후 변화 없이 이어져온 조업구역을 현 여건으로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고, 어구어법이 발전, 변천되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임. 육지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 잘 관리되나 바다는 경계가 불분명함. 수산자원은 경계를 왕래하고 있음. 어업은 한 배를 탄것임. 상호 공생할 수 있는 점을 찾아 상호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임. 통발업계가 서해특정해역에 입어하려는 취지는 협정이전 조업하던 양쯔강어장과 제주 동남방 동중국해는 2003.6월까지 출어가 완전 불가하고 많은 어선이 감척되었으며 어장이 축소됨.
- 수산업법상 근해어업은 전국해역이나 서특은 선박안전조업규칙의 해양수산부 고시로 통발어업 조업을 금지함. 이러한 취지에서 통발업계는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자는 것임. 추가진입이 허용되면 전체어선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2~3개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TAC실시 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임. 통발어업은 선택성이 없고 유실된 어구로 어장이 오염되었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임. 양업계가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면 함.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우리업계의 현황은 1999년 121척이였음. 산동성까지 북위 27도에서 35도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조업이 불가함. 다른 곳에서 조업할 장소가 없어 해외수역에 9척이 진출하였으나 모두 도산됨. 조업장소가 없으니 공생을 위해 같이 조업을 하자는 것임. 앞으로 세 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 서원열(근해통발수협장)

- 그간 서해특정해역의 조업허용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 요구하면 모두 해수부를 거쳐 답변이 옴. 인천시에도 서해특정해역은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기존 어업과의 분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임. 밀집조업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꽃게자원이 남획된다는 것임. 해경은 경비세력 부족으로 원활한 경비가 불가함. 모든 자원은 관리하면서 잡아야 함. 자원관리는 어느 한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하고 있는 것임.
- 우리는 요구업계이니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닻자망의 금어기는 7~8월임. 현재 겸업으로 허가된 안강망어선들이 통발어업으로 돌아옴. 전국적으로 300여척이 있으나 앞으로 정한수를 100건으로 결정한바 있음. 한중어업협정 체결시 국익을 위해 통발어업이 양보를 하였음.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김과장은 해양수산부 고시의 규정으로 통발어업의 서특조업을 제외하였다고 했음. 또한 들어간다면 일정기간, 일정척수가 들어가고 TAC실시, 어구유실에 대한 청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음. 통발업계가 어렵고 어장을 잃었으니 서특에서 조업을 한다는 것임. 관련업계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하겠음

### ◇ 김광익(인천닷자망대표)

- 30년간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함. 따라서 서해특정해역의 문제는 잘 알고 있음. 서해특정해역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통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덕적도 서방어장, 연평도지선어장, 대청도 A, B, C어장, 백령도 주변어장, 저인망조업구역이 있음. 통발업계의 요구는 덕적도 서방어장인데 151, 152, 153해구가 약 2/3임. 북위 37도를 시작으로 북위 37도 25분까지임. 덕적서방어장의 면적은 1,670km<sup>2</sup>임.
- 여기에 조업하는 업종은 6개 어업임. 안강망, 닻자망, 유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어업으로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선박안전조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음. 한 업종에서 몇 척씩만 조업한다면 가능하나 6개업종 중 연승, 형망어업을 빼고 4개업종이 주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고 있음. 전체 생산량의 95%가 꽃게임. 꽃게작업은 시기에 따라 약간 다르나 200여척의 어선이 출어등록 후 교육을 받고 조업하므로 전쟁임. 어장공간은 협소하고 배 척수는 많고 유자망은 어구어법이 달라 어구분쟁이 있으며 현 업종간에도 분쟁이 있음.

- 현재 유자망과 닳자망은 자율적으로 어장을 정하여 어구분쟁을 감소시키고 있음. 서해특정해역의 꽃게자원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한바는 없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나 결국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100% 납득할 수 없음. 이러한 어장에 통발이 진입할 경우 첫째 어장이 협소해 지고, 자원은 남획될 것임. 꽃게는 TAC실시 어종으로 인천의 특해와 연평, 대청도를 포함하여 13,000톤임. 140척의 어선이 TAC를 하고 있음. 자원량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그해 작업을 종료해야 어획량과 대략적인 자원량을 산출함.
- 과거 3년간 통계를 보면 2002년에 제일 많아 9,500톤, 2001년에 약 5,000톤, 2000년도에 5,000톤임. 작년에 왜 갑자기 많이 잡혔는지 과학적인 조사가 없음. 바다청소를 해야 함. 서해특정해역은 인천시, 수협이 공동으로 매년 청소를 하고 있음. 특히 2001년에는 해수부에서 10억원을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음. 인천시는 연간 1억원이상 투자함. 통발어업이 서해특정해역에서 왜 조업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음.
- 과거 동중국해와 양쯔강어장에서는 꽃게를 제한하면서 조업함. 그런 작업을 계속3~4년간 하다보니 꽃게가 많이 감소됨. 동중국해의 통발어업 어장은 서특의 20배임. 한중어업협정으로 갈곳이 없으니 서특으로 올려고 하고 있음. 서특의 어장사정으로 보면 통발어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결국 같이 서특에서 조업을 한다면 같이 공멸되는 것임

### ◇ 장성모(안강망수협 어업인대표)

- 서해특정해역은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이해 조업구역과 기간이 정해짐. 인천지역의 어민의견은 분명히 협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임. 공존할 방법이 없음. 이것은 공멸임. 지난 3년간 안강망과 닳자망이 싸웠음. 3월1일과 9월1일 자망이 출어를 하면 안강망은 자리가 없음. 인천지역 안강망어선은 한중어업협정으로 감척되어 현재 24척임. 안강망어업의 마지막 어장이 서해특정해역임.
- 마지막 생명줄을 통발이 같이 하자고 하고 있음.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것이 공존은 아님.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음. 현실을 같이 인식하여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야 함, 통발이 들어오면 1년이내에 공멸함.

### ◇ 김종만(인천시청 수산과장)

- 통발어업의 입장은 이해감. 그러나 현실과 떨어짐. 100여척이 들어 온다고 했음. 현재 특해지역은 200여척인데 근해통발 65척과 인천지역 230척에 대하여도 이를 풀어야 함, 200척에 230척, 65척은 모두 공멸함. 서해특정해역의 담당은 해경임. 해경에 등록을 하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하나 이러한 선행대책이 나와야 함. 해경은 인천시 출어선과 백령도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을 모두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
- 지도, 선단편성, 교육 등 어떻게 이를 관리할 수 있나. 즉, 현실성이 없음. 자원량이 얼마인데, 현실성 있게 과학적으로 자원이 조사되어야 함. 지방비와 국비로 종묘방류, 인공어초, 어장정화를 수십년 실시함. 이것은 공통사항임. 입장을 바꿔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공감하나 이대로 하면 1~2년내 공멸함.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본인은 공무원을 30년함. 여수에서의 회의와 여기회의는 외국과의 회의보다 어려움. 3면이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바다이나 어장이 비좁고, 자원은 감소됨. 상대방의 입장은 이해되나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임. 잠수기어업에 대하여는 더 할 말씀이 있는지

### ◇ 김광철(전북도청 수산자원담당)

- 양쪽의 입장은 공감함. 어려운 여건에서 자원관리를 하면서 조업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함. 소득거양을 위해 전북해역에서 공동조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충남지역안 않고 전북지역만 한다는데는 도저히 이해가 않됨. 형망에서 키조개를 못잡는다고 하나 상처가 30%정도 발생하나 형망어업의 실적이 있음. 98년도에 300톤, 2000년도에 150~160톤을 생산함. 2001년과 2002년은 형망위판량이 미미함. 자원관리에 영향이 있음. 전남도는 52척, 제5구는 37척임. 이러한 어선이 일주일만 작업을 하여도 자원이 고갈될 것임. 키조개 보호를 위하여 개야도에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음. 충남에서도 전북과 같이 자원보호를 하는지 4. 5구 공동조업구역을 해서는 않됨. 전라북도도 대립업체인데 위원을 포함해야 함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전북해역에 관심이 많음. 형망에 의해 키조개를 잡으면 60%는 폐사함. 가치가 없는 키조개가 되는 것임. 고데구리는 바로 형망업자임. 잠수기어업에서 전북해역 육성수면을 지정할 때 서로 공존하면서 작업을 하자고 찬성을 했고 노력을 했음. 현재 육성수면의 관리선은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것임. 공존을 위해 서해안을 개방하자는 것임. 어업인의 실정상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지금까지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통발어업에 대하여 토론을 함.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전북의 입장을 잘 들었음. 형망과 잠수기어업과의 관계에서 대립되는 것은 없음. 현재 전북지역에서의 조업은 부정어업임. 여수지역 어업인에게 개조개를 무작위로 유통시키고 있음. 경남과 전남은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이 있어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면 전북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원고갈은 염려가 없음

### ◇ 서원열(근해통발수협장)

- 제주주변수역 분과위원회에 통발업계 1명 추가를 요구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크게 두가지 흐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 서해특정해역 조업문제에서 조업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음. 관련업계에서 조업기간 설정, TAC실시 등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음 다음 회의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임. 전북지역의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있어 서로 이해 않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전북의 허가 8건이 모두 충남에서 조업하는데 4. 5구의 잠수기어업계간 이해가 된 것 같음.
- 그러나 다른 업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음. 오늘 회의는 좋은 진전으로 봄. 향후 회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겠음. 해경 및 자원관리에 있어 서해연구소 참여 문제, 형망어업 참여문제 등은 본부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음. 이해관계 업계가 참여하여 서로 승복이 되는 것이 좋겠음. 자원문제를 위해 서해수산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 김광철(전북도청 수산자원담당)

- 전라북도 위원으로 키조개 관련 위원 추가 요망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그러면 형망어업자를 인천과 전북에서 위원 1명씩 추가하고 자원문제를 다룰 서해수산연구소 전문가 1명을 다음 회의부터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음.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위원회에 통발업종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함. 다음 회의의 구체적인 장소, 일시는 본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함. 다음회의는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하여 요구업체 측에서 좀더 발전적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람. 저희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음. 이것으로 회의를 마칩. 수고하셧음.
- 회의종료

### 2. 2차 회의록('03. 9. 30)

□ 일 시 : 2003.9.30(금) 14:10~17:00(제2차)

□ 장 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5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지난 인천회의에 이어 오늘 마산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하게 되었음. 사실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기로 하였으나 태풍피해로 인해 오늘로 연기함. 현재 복구가 완료되지는 않음. 많은 어업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경남지역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 이의 복구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재기해야 함. 재기의 의욕이 있기를 기대하고 결단을 당부드림. 오늘은 두 번째 회의임. 지난 인천회의의 결과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였음. 인천형망협회장 김진권, 전북의 육성수면 관리위원 최서권 씨가 새로이 임명됨(인사).
- 우리의 협의 안건은 크게 3가지임. 서해특정해역에 통발어업과 잠수기어업도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것과 제4.5구 잠수기어선이 전북수역에서는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임. 지난 회의시 요구업체와 대립업체라 표현했으나 대립업체란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임.
- 오늘의 회의방식은 그간 대부분 입장을 피력하였으므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새로이 임명된 두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요구측과 30분 협의하고, 이에 상반되는 인천쪽 위원들과 30분 협의를 한후 양측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음.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같은 이야기의 반복은 피해주시기 바람. 먼저 김진권위원의 이야기를 들은후 최서권위원의 의견을 들겠음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형망은 약 30년전부터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함. 70년대초부터 특해에서 피조개를 채취함. 형망은 틀로 바닥을 끌고 있음. 빨망을 끄는 것임. 회의 자체가 유감스러움. 형망틀에 통발이 꽂히면 끌지 못함. 4~5년전부터 통발어선이 우리의 조업구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못하고 있음.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야 조업이 가능함. 결국 하루는 통발을 수거하고 하루는 조업을 하는 실정임. 통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 피조개는 국내에서는 잘 모르나 일본에 100%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있음. 통발 때문에 조업이 불가능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형망업체의 의견도 다른 업체의 의견과 대동소이한 것 같음

#### ◇ 최서권(부안 육성수면관리위원)

- 전북의 잠수기어업의 허가는 모두 8건인데 충남지역에 돈을 받고 모두 팔았음. 허가는 군산 허가인데 배는 충남에 있고 전북지역에서도 작업을 함. 본인은 전북어장에서 40년간 조업함. 우리는 허가가 없어 18년전에 128척의 임시 잠수기를 받아 조업함. 바다의 자원이 고갈되어 충청도의 배는 작업을 못함. 충남에는 물량이 많아 현재 전북에서 작업을 안함. 생업 때문에 양식장 관리선 면허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벌금을 물고 조업을 하였음. 그러하니 전북지역을 별도로 하여 전북에 어업허가를 주기를 희망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협의 본질을 벗어난 의견임. 현재 협의하고 있는 문제와 다름. 충남도를 포함하여 업계의 요구내용은 북위 36도이남에서 전남경계까지 전북수역을 잠수기어업 제4. 5구의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하여 달라는 것임.

### ◇ 최서권(부안 육성수면관리위원)

- 그것은 충남과 전남이 합의하여 우리수역에서 조업을 하려는 것으로 말도 않됨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답답한 심정임. 방송에서 송도울교수의 신병처리 문제가 이슈로 되어 있음. 이것은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 시대가 변화되어 기소유에 처분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하는 것임. 특정해역은 적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규칙으로 규정함. 시대가 변화되고 남북관계가 변화되어 적으로부터 위협이 완화되었음. 특정어업에 대하여도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이 이루어져야 함. 옛날 잠수기어업은 선박조건이 열악하여 특정해역의 조업을 규제하였음.
- 그러나 현재 잠수기어선은 400마력의 선박이며, 안전조업을 할 여건이 구비되어 있음. 작년 가을 형망업계로부터 서해특정해역 부근에 키조개가 형성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공받음. 이후 500톤을 생산하였음. 형망에서 정보를 주는 것은 형망은 형망들에 키조개가 끼이면 조업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키조개가 있는 지역에서는 형망은 조업을 않함. 북위 36도이남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4. 5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 5구는 경기, 인천, 충남, 전북이며, 4구는 전남임. 4. 5구 어업인간 키조개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논의하여 협의를 통해 조업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를 함. 전라북도해역은 육성수면 관리선 20척이 조업을 하고 있음. 자원상태도 모르고 전북지역 임의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우리 조합에서는 자원관리를 위해 하루에 척당 2,500미이상 잡지 않음. 그러나 전북지역은 불법어선이 40여척 있음. 자원관리를 위해 이러한 어선을 단속해야 함. 우리는 본소에 어업지도선이 있음.
- 이런 장비를 지원받아 불법어선을 감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자 함. 전북지역에서는 15척이상 조업을 하지 않을 것임. 내규로 합의를 하였음. 현재 우리 수협의 여건이 어려움. 서해의 신어장을 개발할 경우 육성수면 지정업자와 협조할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충남의 잠수기어업계는 153해구 즉, 덕적도서방어장에 사장되고 있는 키조개를 이용하기 위해 여기의 조업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부정어업 단속, 척수조정 등 조건을 달아 충남, 전남어업인이 북위 36도이남의 전북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4. 5구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하여 달라는 것임. 이것은 충남의 어업인 31인이 공동으로 결의하여 건의한 것임.
- 이에 대해 특해관련 자망, 안강망, 낭장망, 형망 어업자들은 요구조건을 이해하나 기존어업도 좁은 어장에서 밀집조업으로 문제가 있는데 추가어업은 불가하다는 것임. 전북해역에 대해 4. 5구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전북수역만을 공동조업구역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종묘방류, 어초시설, 육성수면 지정에 의한 자원관리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전북수역만 공동조업구역으로 하는 것은 않된다는 것임. 이것이 잠수기어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장임. 우선 요구업계와 회의를 진행 하겠음

(요구업계와의 협의)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제주주변수역 분과협의회도 힘들었으나 양쪽을 분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접점을 찾았음. 서해특정해역의 문제는 제주주변수역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음. 현재 서특에서 조업하고 있는 업종은 오랫동안 특수사정을 가지고 조업을 함. 새롭게 진입을 시키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음.
- 의견을 좁히기 위해 이런 방식을 채택함. 먼저 서해특정해역의 잠수기 문제에 있어 형망쪽에서 피조개 이야기를 함. 잠수기가 꼭 153해구에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형망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안강망, 닛자망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153해구 이외에 대안이 없는지 이것 아니면 아니다 하지 말고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면 접점이 있을 것임. 이회의에서는 의견만 듣고 다음회의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음.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형망은 잠수기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형망쪽에서 물동량을 제시함. 백야도와 특정해역이 물리는 선에서 우리가 조업을 함. 수심은 20~30m임. 우리는 해경과 이해가 되는 선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조업가능 해역을 형망이 제공하고 배려함. 형망협회쪽에 어장개척비로 약 2%를 지원한바 있음 서해특정해역의 자원조사는 아직 못했으나 20~30m선상에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함. 다른 어업은 키조개를 채취하지 못함. 생산량에 대한 개발비를 일부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 우리는 153해구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조정이 가능함.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서해특정해역은 통발과의 문제이지 잠수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음.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잠수기쪽은 문제가 없으나 통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함. 김진권 협회장등과 협의를 하였음. 근해통발과 연계되니 잠수기를 트면 통발도 이것이 붕괴된다는 것임. 명분이 있어야 함. 우리는 잡는 어종이 틀려 근해통발과 같이 참여한 문제는 없음.

### ◇ 박종화(서해수산업연구소 연구관)

- 서해특정해역에서의 키조개 자원과 어장성의 문제와도 연계되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제주도는 제주어민을 위해 최소한도 어느선까지 가야 하느냐 하고 질문하였음. 잠수기어업에서 153해구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일부 줄일 수 있다면 중점어장만 하면 않되는 것인지.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수심 20~30m만 가능함. 해도상 적정수심 계측은 않하였으나 일부 줄일수 있는 의향이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어장의 전체면적은 줄어도 중심어장만 하면 될 것임.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그러한 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 도면을 작성하여 조업가능 수역을 제시하겠음. 조정할 의사가 있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에 대한 문제는 현재 협의대로 하고, 다음은 4. 5구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임.

###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우리는 꼭 관찰해야 함. 전북지역은 불법 잠수기어선이 50~100여척이 있음. 위도, 말도, 연도, 군산, 격포, 장항과 일부 충청도어선이 전라북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분사기를 달아 개불을 잡음. 우리는 TAC를 하여 적정량만 잡고 있음. 전북은 불법으로 하여 물량이 많음.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에 15척 정도의 잠수기가 조업을 해야 함.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우리 수협의 현실이 열악함. 전남의 자원상태를 보면 한쪽만 너무 치우쳐 조업을 하여 가까운 지역에는 자원이 없고 먼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임. 서해안의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북위 36도선이남의 전북수역을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해야 함. 전북도의 반대이유는 현재 육성수면은 3건에 20척인데 야간에 불법어업이 있고 육성수면 관리선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임. 20건을 더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임. 우리는 어업인끼리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임. 우리 5구의 허가어선 37척은 전북의 육성수면에도 조업이 가능하나 그 지역에 않감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육성수면으로 지정되어도 당해지역에는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은 조업이 가능함. 현재 육성수면 관리선은 20척임. 현재 잠수기어업 허가된 37척이 육성수면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전남의 15척이 교대로 조업을 하겠다는 것임.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우리는 현재 키조개에 대하여 TAC를 하는데 TAC보다 덜 잡음. 이것은 어가유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임. 1,200원 선으로 스스로 관리함. 불법어업의 단속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고 단속도 되지 않는데 제도적으로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면 육성수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전북에서는 정서적인 문제로 왜 전북만 공동수역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음. 전북지역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서적인 문제와 결부됨. 차라리 4. 5 구를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지.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전남은 개조개를 개발하고, 충남은 키조개를 개발함. 이를 조정하면 어가문제를 조절할 수 있음. 전북에 자원이 많으면 충남의 배를 사면 됨. 따라서 전북지역의 자원이용은 15척이 적정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전북의 수산행정은 어려움이 있음. 배를 사서 조업을 하면 된다 하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부정어업은 별개의 문제임. 4. 5구를 터도 되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임.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키조개는 현재 과잉생산임. 4. 5구를 합치면 전남어선이 키조개를 잡을 것임. 따라서 현행 체제로 유지해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김석상(경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수산행정가의 입장에서 볼 때 충남, 전남어업인끼리 전북에 대하여만 허용한다는 것은 전북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 4, 5구를 트는 것보다 공동조업구역으로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은 안이 될 것임.
-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통합을 하면 더 지키기 어려울 것임. 각 도별로 허가를 주어야 하는데 전북지역은 마구잡이로 유통되어 가격이 40% 하락함.
- ◇ 김석상(경남도청 어업생산과장)
  - 지역마다 서식자원이 다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조업구역을 통합한다면 어느 쪽의 어선이 많이 오겠는가.
-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키조개는 내수보다 수출이 단가가 좋기 때문에 5구어선이 많이 올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트는 것도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장)
  - 5구의 지소장으로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어렵게 합의를 도출함. 37명중 31명이 합의를 하였음. 어렵게 결정함. 통합은 불가함. 선박관리가 오천항이 유리하여 이리로 옴. 통합을 하면 전남어선이 키조개를 잡으로 오천항으로 이동할 것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결국 4, 5구를 통합하는 대안은 불가하다는 것인지.
-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4구의 업자들은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다음은 통발어업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통발어업의 문제는 2가지임. 먼저 서해특정해역에서도 조업을 허용하여 달라는 것이며, 제주도 주변해역에도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제주도 주변수역 분과협의회에 넘김. 특정해역 문제에 있어 경남측은 8.16일부터 11.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요망하는 것임. 그 이유는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을 상실하였고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것임.
  -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을 허용한다면 어구규모를 제한하고 TAC실시 등의 조건을 달고 있음. 그러나 인천의 자망, 안강망 등은 반대를 하고 있음. 그 지역은 현재 자망어선들이 조업하는 153, 152해구임. 그러면 153 및 152해구와 조업기간 8,16~11.30일은 고정된 의견인지 입장을 설명바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8.16~9.30일로 줄일 수 있음.

### ◇ 서원열(근해통발수협장)

- 지난 8월 인천회의시 양쯔강유역에서 3년간 계속하여 조업을 하므로써 꽃게가 멸종되었다고 했음. 그런 주장이 맞다면 2003년 현재 시점에서 꽃게는 나지 않아야 함.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겠음. 반대만 부르짖으면 않됨. 그쪽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함. 덕적도 서방어장은 현재 닻자망의 조업구역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역에 통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음. 우리는 현재 저인망조업구역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함. 조업구역을 잘 지키기 위해 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하고 어구숫자를 제한하며, TAC에 적극 동참하겠음. 자원조성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위판항구를 지정하면 지키겠음.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시기의 조정은 가능한 부분이 있음. 자망과 우리의 어법은 다름. 꽃게만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 수온이 상승하면 그물쪽에 가고 내려가면 통발쪽으로 꽃게가 모임. 그물에 꽃게가 드는 시기는 통발어업의 자제가 가능함. 따라서 봄어기는 피했음. 8.16~10.30일까지로 하면 됨. 현 금어기는 늦음. 법테두리안에서 조업을 하겠음. 하루는 어구를 수거하고 하루는 조업을 한다는 형망업계의 피해는 인정함.  
- 불법을 하다보니 경비정을 피하기 위해 이런 현상이 일어남. 합의가 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불법어업은 불가피함. 해양수산부는 한중어업협정이후 해준다고 했음. 공간이 없으면 대안을 세워 들어가게 해야 함. 지난 5월 서해특정해역의 입어를 신청함. 그러나 불가 통보를 받음. 7월중 행정소송을 제기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살아보자는 취지임. 소송이 송달되니 해수부는 우리의 자금내역을 긴급연락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런 규정이 있는지. 또한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 못들어 가게 한다고 했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통발어업의 자금사용문제는 조업구역 조정문제와 무관함. 어떤 의미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나 우리부는 지원된 자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임. 통발어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어업허가는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님.  
- 근해어업의 허가는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해 시·도에 위임되어 있음. 만약 해양수산부에 어업허가를 신청한다면 이는 반려임. 어업허가는 전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을 정할 수 있음. 고시로 정할 수 있고 법으로 정하는 것도 있음. 고시로서 지키기 어려우면 이것을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이런 상황을 설명하였을 것임. 소송과 관련된 것은 아님.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정부의 연근해분야 자금은 수협을 통해 지원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통발업계는 조업구역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닻자망어업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하고 몇가지 조건을 정해 잘 지킨다고 했음. TAC를 실시하고, 자원조성금을 모은다고 했음. 강제상장은 연구대상임. 기간조정 문제에 있어 8.16~11.30일을 8.16~10.30이라고 했음. 지금까지 토론한 이론대로 하면 앞의 기간이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152, 153해구는 꽃게어장이니 작업을 하게 하면 좋음. 우리는 다른 어업과 밀집조업이 되니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임. 꽃게는 9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남. 봄어기에 통발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니 9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면 논의가 가능함. 서해특정해역은 어선세력이 많음. 기득권 어업은 사용통수가 정해짐. 해수부, 해경으로 관리가 않됨. 어업별로 정한 수보다 몇배 작업을 함. 지역이기주의임.

### ◇ 박종화(서해수산연구소 연구관)

-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어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은 7.1~8.31 일임. 이것은 요지부동임. 업계와 우리의 생각이 다름. 자원이 있다하여 너무 자원을 남획하면 곤란함. 서해특정해역은 자원의 보호관리가 상당히 유지됨. 그러나 일정시기에 집중조업을 하면 몇 년 안감.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꽃게는 회유하는 어종임. 봄에 동지나해쪽 남부에서 산란하여 위로 올라가 6월에 북한에서 잡히고 다시 내려옴. 고착된 어종이 아님. 겨울에는 꽃게가 없음.

### (대립업계와의 협의)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밝혀주기 부탁함. 이 자리에서 협의된 사항은 어느 쪽에도 이야기를 않함. 불문률임. 각자 별도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조정을 하여 다음회의에서 결론을 내고자 함. 먼저 잠수기어업에 대하여 논의하겠음. 잠수기가 153해구에서 조업하려는 것은 키조개를 채취하려는 것임. 여기는 닻자망, 안강망, 유자망 등이 조업을 하는 수역임. 잠수기어업의 특성상 형망과 관계가 많음. 서로 어려우니 양쪽이 양보를 못하는 것 같음. 여러 조건을 붙여 조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잠수기에 자료제공은 같은 어업인이기 때문에 한 것임. 우리를 피해 조업을 한다면 가능함. 잠수기는 척당 호스가 200m이기 때문에 모든 해역이라면 않됨. 어느 일정한 해역이 키조개가 있다면 가능하나 키조개를 찾기 위해 모든 해역을 탐색한다면 피해가 발생되고 이것을 책임질 수 없음.

### ◇ 김왕배(안강망수협 인천지소장)

- 안강망 7척이 백령도해역에서 조업함. 공동수역 개념에서 같은 어업인끼리라면 합의될 수 있으나 공동수역으로 하면서 서해특정해역에 들어오려고 함. 잠수기어선이 키조개를 잡으려는 것보다 최근 생성된 덕적도 및 백아도 주변에 서식하는 해삼, 전복을 잡으려는 것임. 여름에 다이버들이 잡고 있음. 잠수기는 키조개보다 실제 해삼, 전복을 생각하고 있음. 잠수기는 호스가 길어 형망과 같이 조업할 경우 이것이 끈기면 인명피해와 직결됨. 강화쪽에서 나오는 배와 잠수기간 마찰이 있음. 허용된다면 다른 어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분쟁이 초래될 것임.

### ◇ 김광익(인천닷자망협회장)

- 5구의 37척이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겠다하여 반대하였음. 잠수기는 키조개가 목적이 아님. 백아도, 울도에 서식하는 해삼, 전복이 주 목적임. 백아도와 울도사이의 강화도의 새우잡이 어선이 밀집되어 있음. 이런 장소에 잠수기가 조업하면 인명사고가 나고 위험함. 잠수기쪽에서 다시 재고를 해야 함.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최재만(인천유자망어업인)

- 4년전 잠수기가 장고도앞 모섬에서 해삼,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확인함. 이는 주민의 소득임. 잠수기가 채취하여 피해를 주고 있음. 덕적서방어장은 새우배의 조업장소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지선어민이 조업하는 백아도, 울도주변은 마을어장 범위인지. 만약 마을어장이라면 잠수기 어업 불가지역임. 수심 5m까지는 마을어장임. 잠수기어선은 이 외측에서 조업하여야 함. 잠수기어선들이 해삼, 전복을 어획한다고 한다면 키조개만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업을 하게 하면 어떠한지, 협의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153해구는 마을어장에서 떨어짐. 안강망은 해삼, 전복과 직접 관계가 없고 형망도 아님. 새우배도 이를 잡지 않으니 직접 관계가 없으나 광범위하게 조업하면 기존업자와 분쟁이 있다는 것임.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임. 넓은 어장을 허용하면 다른 어업과 분쟁이 있으니 어장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 김왕배(안강망수협 인천지소장)

- 그 해구는 해삼, 전복이 서식하는 해역이고 북위 37도선인데 안강망, 유자망, 닛자망은 잠수기어업이 요구하고 있는 해역에 이미 어망을 투망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4개업종과 마찰이 발생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일부 조정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어야 조업을 하는 것임,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 ◇ 김광익(인천닛자망협회장)

- 일부구역을 허용해도 어구설치가 되지 않는 금지기간에만 가능할 것임. 꽃게철은 피해야 함. 어망과 어망사이에는 매우 좁음. 이 좁은 수역에 조업은 불가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기존 업계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안을 만들면 어떠한지 153해구는 너무 넓은.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키조개 자원이 있다면 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른 어업과 문제가 없고 만약 있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지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업종간, 지역간 협의는 매우 어려운 것임. 제일 적은 구역을 정하여 허용할 용의는 있는지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일부해역을 지키면 관계 없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 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업할 것임. 4. 5구의 공동조업구역 설정 문제는 2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음. 자원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있음. 어민과 공무원이 견딜 수 없을 것임. 차라리 4. 5구를 트는 것이 가 능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김광철(전북도청 수산자원담당)

- 군장산업기지와 새만금으로 어장이 많이 축소됨. 자원이 많이 줄었음. 이렇게 전북해역은 좁음. 1997년 용역당시 자원이 일부 있으나 전북 전체에 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옴, 공동 조업구역으로 하면 전남의 51척, 충남의 37척, 전북의 관리선 20척 등 100여척이 조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북의 키조개는 말살됨. 충남의 잠수기는 잡기만 하지 자원조성은 않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4. 5구를 트는 체제는 어떠한지

### ◇ 최서권(부안 육성수면관리위원)

- 전북해역의 면적이 100이면 새만금으로 35가 줄고 영광원전으로 패류가 모두 죽음. 이렇게 자원이 고갈되었는데 4. 5구를 트면 전북해역은 망가짐. 육성수면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맞지 않음

### ◇ 김종만(인천시청 수산과장)

- 잠수기가 인천지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충남지역에서 조업한다면 우리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 ◇ 최서권(부안 육성수면관리위원)

- 현재 충남에 판 8건의 허가를 전북에 넘겨야 함. 현재 이 배들은 충남에서 조업함. 이런 어장에 전남어선이 오면 자원이 완전히 소멸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지금 이론대로 하면 37척도 오지 않는데 52척이 올라오는 것인지

### ◇ 최서권(부안 육성수면관리위원)

- 허가를 받아 조업을 허용 한다면 칼부림이 날 것임.

### ◇ 김왕배(안강망수협 인천지소장)

- 기존에 있는 것으로 현행을 유지해야 함. 어민간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않됨. 서해안 어업 인들은 99% 부도직전임. 어민들이 흥분하여 데모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153해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반대를 하는 것인지

### ◇ 최재만(인천유자망어업인)

- 서해특정해역 자체는 우리가 다 조업을 하고 있으니 않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회 부회장)

- 다음은 통발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음. 자망 등 그물어업과 통발은 수온에 따라 어기가 다른 것인지.

### ◇ 최재만(인천유자망어업인)

- 꽃게를 잡는 시기는 같음. 동지나해어장은 3년만에 모두 작살남. 통발이 잡는 시기는 9~10월 2개월임. 들어오는 시기가 금어기이며 8월초부터 불법어업을 함. 5천개를 투망하면 회수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는 2천개임. 3천개는 바다에 버리는 것임. 통발이 들어오면 서해특정해역의 꽃게는 1년만에 없어짐.

### ◇ 김광익(인천닷자망협회장)

- 서해특정해역이외에 연근해어장중 꽃게가 잘 나는 곳은 없음. 이북과 대치하고 있어 비무장 지대에서 꽃게가 번식하여 서해특정해역의 꽃게가 유지되는 것임. 현재 연평지선에서부터 통발이 깔려 있음. 예년에 비해 꽃게가 10%밖에 안남. 어장이 많이 오염되어었다는 것임. 어장을 청소하면 통발어구가 올라오고 있음.
- 우리는 그물을 버리지 않고 마대를 공급받아 절반은 가지고 오는 등 수거를 함. 이런 어장 관리를 12년전부터 하고 있음. 통발은 어장을 쓰레기장화하고, 황폐화시키고 있음. 잠수기는 우리와 잡는 어종이 틀리고 어장오염을 시키지는 않음. 따라서 이를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그러나 통발은 규정상 6.5cm를 쓰도록 하고 있고 꽃게의 금지체장은 5cm임. 그런데도 3.5cm의 통발을 쓰고 있고 치어까지 남획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잠수기는 형망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안강망, 자망쪽에서 양해가 가능한 것인지.

### ◇ 김광익(인천닷자망협회장)

- 일정수면으로 한시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임.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본인은 통발을 7척 가지고 있음. 근해통발허가도 있음. 약 5~6천개를 바다에 깔고 있음. 이것은 회수가 않됨. 겨울에는 2~3만개를 소유함. 멀지 않아 3년안에 서해특정해역은 통발로 모두 깔릴 것임. 그러면 어장은 끝나는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덕적도서방어장 외측으로 저인망조업구역이 있음. 이구역을 허용하면 어떠한지.

### ◇ 최재만(인천유자망어업인)

- 저인망어업구역을 허용한다는 것은 도둑놈을 키우는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형망은 잠수기어업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부탁함

### ◇ 김종만(인천시청 수산과장)

- 백아도부근의 해삼, 전복이 문제임. 그곳은 마을어장이 있음. 마을어장을 피해야 함. 조업을 허용하면 비정상적으로 조업을 할 것임. 특히 울도부근은 넓어 어민이 이를 다 지킬 수 없음. 이런 부분도 감안하여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양쪽 이야기를 많이 들음. 잠수기어업에서 전복수역을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4.5구를 통합하는 것에 동의하면 될 줄 알았으나 이것도 불가하다고 함. 거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을 해야 함. 오늘까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은 해수부에서 조정하여 다음 회의에서는 끝을 내려고 함.
- 전체회의 16:50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전체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업계와 먼저 회의를 개최하였고, 요구의견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쪽과 회의를 마칩니다. 양쪽에서 유익한 말씀을 많이 주십시오. 굉장히 유익한 회의였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오늘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해수부와 다음회의 이전에 협의하여 어떠한 형태든 결론을 내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해수부에서 통보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회의를 토대로 의견을 좁혀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닻자망 업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안강망업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공존한다는 입장에서 통발어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현재 통발어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조정 분과협의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회의종료

### 3. 3차 회의록('03. 10. 22)

- 일 시 : 2003.10.22(수) 14:00~17:20(제3차)
- 장 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별관)
- 참석자 : 협의회위원 14명 및 간사(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서해수산연구소 연구관 박종화위원 불참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날씨가 많이 추어짐. 제3차 제주주변수역에 대한 분과협의회가 광주에서 개최됨.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하여 원만한 타결을 이루고 종결함. 저의 바람은 서해특정해역의 조업구역 문제도 오늘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여 안을 내는 등 결실이 되기를 희망함. 멀리 경남에서 여기까지 참석을 하였음.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다시 양측과 협의를 하겠음. 서해특정해역에 대한 우리 분과협의회는 통발어업과 잠수기어업 문제임, 작게는 3가지로 전북수역에 대한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임. 하나하나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음. 먼저 통발과 잠수기어업쪽의 의견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인천쪽과 협의를 하겠음.

#### (통발 및 잠수기어업쪽과 개별회의)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통발업계 또는 잠수기어업계에서 그간 인천의 닻자망, 안강망 등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협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닻자망과 형망협회장을 만남. 이해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나눔.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닻자망 뿐만아니라 안강망을 포함하여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임. 제주주변 수역에 대한 조업구역 문제는 상호 노력하여 타결됨. 해양수산부에서도 절충안을 내었음. 통발어업과 잠수기는 서특조업 허용이고, 또 잠수기측은 전북과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해 협의를 해 보았는지. 최종입장은 무엇인지.

####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3.4구는 옛날에는 공동조업구역이었음. 해수부에서 힘을 주시기 바람.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닻자망과 형망은 우리와 무관함. 같은 어종을 잡는 어업이 아님. 사장되는 자원의 채취가 이루어져 좋음. 153해구 전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줄여서 허용해도 좋음. 소해구로 5. 6. 8. 9해구를 원하나 수용여부는 모르겠음. 5. 6해구는 조업이 가능함. 키조개는 부분적으로 분포함. 닻자망에 자원개발에 협조를 부탁하였음. 5. 8해구가 어려우면 6. 9해구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6. 9해구는 굴업도와 연계됨. 지선어민 보호을 인천시에서 우려하고 있음. 해삼은 6~7월에 생산됨. 이것이 우려된다면 어업시기의 조정이 가능함. 6~8월은 빠지고, 9~11월이라도 넣어야 함. 우리는 5~8해구도 원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정리를 하면 해삼이 우려된다면 조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해삼, 전복 채취시기를 피하여 키조개만 채취하겠다는 것임.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키조개의 위판은 어디서 하는지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보령으로 가지고 갈 것임. 모항에서 위판도 함. 특정항을 지정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음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전북수역에 대한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해 현재 제5구 어선이 조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음. 그러나 제4구 어선 52척이 넘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임. 왜 전북만을 공동구역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왜 4구어선만을 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음.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15척만 올라오려는 것임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지금까지 감으로 보아 풀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설령 15척이라도 그런 것 같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잠수기어업 전체를 통합하는 방법이 있음.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지난회의에서 거부된 사항임. 15척도 못하겠다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항임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육성수면 관리선으로 20척이 있음. 육성수면 이외에서 조업을 하고 다른 선박도 불법으로 많이 잡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임. 우리는 TAC를 하고 있음. 공동조업구역으로 할 경우 이러한 불법을 막을 수 있음. 사실 어업인끼리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전북도는 허가가 8건 있으나 현재 충남에서 한다고 했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음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부정어선에서 생산된 것이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 서해지소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입장임. 전라북도는 전혀 피해가 없음. 전북에 잠수기어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전북지역에 일반 어민이 키조개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음.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부회장)

- 다시 한번 최선을 다 하겠음. 전북 어업인을 만났음. 서로 좋은 의견을 남기자는 의견이 있었음. 15척이 올라오면 줄 것이 있는지 또한 육성수면을 더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이 회의는 어업조정 회의임. 한계선을 정해야 함.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면 조정이 어려움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부회장)

- 상대가 있음.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것임.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현재 어업별 조업구역은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를 개정하려면 당연이 외부에 표출되는 것임.

### ◇ 최승만(3.4구잠수기수협장)

- 15척도 같지 안같지 모르겠음. 만약에 같 수 있다는 것임. 전북의 무허가를 막아 보자는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부회장)

- 정리를 하겠음. 지금까지 잠수기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음. 다음은 통발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함. 통발에 대하여 인천쪽은 굉장히 강함. 잠수기는 일부 우군으로 형망이 있음. 지금까지 통발을 이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은 없음. 지난번 서조합장이 제시한 저인망어업구역도 이를 허용할 경우 선을 넘어온다는 것임. 사실 불법어업은 단속의 문제임. 그러나 염려를 하고 있음. 덕적도서방어장은 안되고 저인망어업구역으로 다시 협의를 해보겠음. 해수부의 조사에 의하면 저인망어업구역은 5통이 조업을 한다고 함. 문제는 저인망쪽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임. 강력히 주장을 해보고, 동의가 없으면 합의는 못하나 해수부가 조업조건과 대책 등을 정하여 총괄협의회에 상정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

### ◇ 서원열(근해통발수협장)

- 2차회의시 제시한 것이 저인망어업구역임. 염려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자동위치발 신기를 부착하도록 하겠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부회장)

- 당해구역의 저인망 조업시기가 9월부터 익년 5월까지임.

### ◇ 서원열(근해통발수협장)

- 조업시기를 9월부터 익년 6월30일까지로 하면 됨.

### ◇ 유정호(기타통발선주협회장)

- 153해구는 가을에 2~3개월만 가려고 함. 이것을 제외해 보면 좋겠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자망과 통발은 동 해역에서 꽃게라는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충남과 경남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 ◇ 옥광수(경남도청 어업생산과 사무관)

- 통발축이 원하는 대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문제는 경남의 주장에 대해 인천의 자기들도 기존 업종간 경쟁이 심하다는 것임. 그것을 염려하는 것임. 회의를 통하여 느낀 것인데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매우 배타적이란 느낌을 받고 있음.

### ◇ 신동건(충남도청 해양수산과 사무관)

- 서해특정해역에서 잠수기어업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음. 전 북지역에 대한 공동조업구역 설정도 위원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어업세력을 볼 때 전북은 다른 도에 비해 약함.

### (인천쪽 어업인과 개별회의)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지난번까지 협의를 토대로 통발과 잠수기쪽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통발어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것임. 인천쪽에서는 닻자망, 안강망 등 기존 조업어선끼리도 분쟁이 있는데 통발이 들어오면 더욱 심화되고 통발은 어구·어법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단호한 입장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발업계의 요구는 덕적도서방어장이 153. 152. 151해구 인데 염려가 된다면 153해구에서만 꽃게만 잡도록 하고 가을에만 허용하여 달라는 것임. 여기를 넘나 드는 문제는 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한다는 것임. 또한 어구수를 제한하고, 양륙항을 지정한다고 했음. 그래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임. 조건을 엄하게 달아서라도 허용을 하여 달라는 것임.

### ◇ 김광익(인천 닻자망협회장)

- 통발의 요구는 153해구와 152. 151해구 일부인데 153해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꽃게생산은 153해구부터 가을어기가 시작됨. 우리 자망어선들이 중점적으로 조업하는 장소이며, 9~10월에 잡는다는 이야기임. 현재 꽃게를 350톤 잡았음. 예년에 19%수준임. 그러므로 1척도 수용할 수 없음. 또한 신도부근에서 잠수기어선이 5척 조업한 것을 확인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151해구에서 한다면 수용은 가능한지

### ◇ 김광익(인천 닻자망협회장)

- 그것은 명분일 뿐임. 153해구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잡으려 하는 것임. 꽃게는 추어지면 깊은 바다로 간다고 하나 이것은 유자망과 닻자망을 조업하지 말라는 것임. 자동위치발신기 부착은 구실에 지나지 않음. 어구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어떤 조건으로든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 ◇ 장성모(인천 안강망어업인)

- 자망의 의견과 같이 안강망도 마찬가지임. 기존어업간 분쟁이 많음. 어떤 주장이든 현실에 맞지 않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닳자망, 유자망, 안강망어업의 염려에 대해 근해통발수협장은 저인망조업구역으로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 ◇ 김광익(인천 닳자망협회장)

- 대청도지선어장은 실제 저인망어선 등 여러 업종을 합쳐 80여척이 꽃게 작업을 함. 저인망어업구역을 허용한다면 지선어업인과 분쟁이 심할 것임. 어장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넘어올 것임. 여러 조건을 부여한다고 해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임. 덕적도서방어장과 대청도어장에 오려는 구실에 불과한 것임.

### ◇ 장성모(인천 안강망어업인)

- 여기에서 저인망어업구역에 대해 거론할 필요는 없음.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이 문제는 총괄협의회에 올리는 것이 좋겠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잠수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음. 2가지 문제임. 서해특정해역조업 허용과 전북지역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임. 잠수기쪽의 마지막 입장은 153해구중 5. 6. 8. 9소해구만 해 달라는 것임. 시기를 지정해도 좋다고함. 5월부터 11월을 이야기함. 염려되는 부분이 키조개를 잡는다 하고 해삼, 전복을 잡으니 우려된다는 것임. 그러나 특정항에서만 위판을 하겠다는 것임.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음. 잠수기호스 등으로 마찰이 있을 수 있음. 이를 책임지면 가능함. 피조개는 깨진 것까지 수출하고 있음.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 피조개에 대해 해수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 형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잠수기만 생각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그런 문제는 잠수기가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한다는 전제가 되면 가능하다고 봄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그 지역만 들어가는게 아닐 것임. 불법으로 다른 곳도 감.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본인은 중간자의 입장임. 사심이 전혀 없음. 있을 이유도 없음. 따라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하는 것임. 우리는 불신을 깨야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이 상태로도 어업인들은 매우 어려움. 앞으로 서해안은 80~90%가 부도날 것임. 이 자리 자체가 어려움. 잠수기도 키조개를 일본에 수출함. 자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님.

### ◇ 김광익(인천 닻자망협회장)

- 잠수기는 꽃게와는 관계가 없으나 조업하려는 장소가 우리어장인 153해구임. 5. 6. 8. 9해구만 하여 달라는 것이나 실제 5. 6. 8해구는 키조개가 서식하는 썰이 없음. 키조개는 썰이 70%가 되어야 서식함. 9해구 부근의 마을어장에 대해 72년부터 42억원을 들여 자원을 조성함. 키조개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우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논의되어도 153-9해구는 지선어민을 생각할 때 인천시가 양보할 재량이 없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인공어초 주변은 보호수역이고 마을어장은 배타적 권리가 있어 다른 어업은 들어와 조업을 못하는 것임.

### ◇ 김광익(인천 닻자망협회장)

- 153-5.6.8해구는 자원조사를 한후에는 이의를 달지 않겠음. 다만, 인명사고 등 조건을 만들어야 함.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작업중 키조개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조업을 하면 됨.

### ◇ 김광익(인천 닻자망협회장)

- 인천거주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 11건과 경기 4건을 가지고 온다면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여기 주민은 한사람도 없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전북도의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해 이야기 하겠음. 마지막 의견을 전달함. 전북도는 4. 5구의 공동조업구역은 불가하고 4. 5구 통합도 반대함. 다시한번 확인을 부탁하겠음. 공동조업구역 설정시 15척만 조업하여도 안되는 것인지

### ◇ 최서권(부안 육성수면관리위원)

- 안 됨. 전북은 어장을 알지 못하여 어선을 모두 충남에 팔음. 현재 척당 5~6억씩 하고 있음.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사고 있음. 한번에 다이버가 잡는 양을 2,000~2,500개로 제한하면서 잡고 있음. 따라서 허가가 있는 어선이 조업하는 것은 좋으나 허가 있는 다른 지역의 어민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됨. 우리는 새만금 등으로 어장이 축소됨. 아주 않되는 것으로 합의되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물회 부회장)

- 잠수기쪽은 전북의 육성수면지정시 기여를 했다고 함. 그러나 52척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15척만 오겠다는 것임. 대안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인지

### ◇ 최서권(부안 육성수면관리위원)

- 키조개는 감소하고 있음. 작업시 해삼, 전복이 있으면 그냥 놔두겠는지

## 제2편 조업구역조정 분과별 협의내용

### ◇ 김광철(전북도청 해양수산과 사무관)

- 1. 2차회의시와 같은 의견으로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도 불가한 것임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문안을 작성하는 동안 오늘 회의주제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부타함.

### ◇ 장성모(인천 안강망어업인)

- 우리 협의회는 시작부터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음.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임. 현재 모든 어업이 어려운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

### ◇ 김용현(인천 유자망협회장)

- 서해특정해역은 중국어선까지 침범하고 있음. 통발어업인의 의견에 의하면 어장이 한번 훼손되면 10년이 걸린다고 함.

### ◇ 장성모(인천 안강망어업인)

- 안강망은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일본처럼 해파리를 제거하는 선박이 있으면 좋겠음.

### ◇ 김이운(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그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수산과학원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음.

(문안초안 작성 배포후 전체조정회의 속개 16:50)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제2번에 잠수기어업 부분에서 자원조사 이후 해수부가 허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해야 함.

### ◇ 장성모(인천 안강망어업인)

- 1번도 해수부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임. 타 업종인 안강망, 저인망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함.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결정을 해수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협의회에서 하는 것임

### ◇ 장성모(인천 안강망어업인)

- 저인망을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수부가 하는 것인지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총괄협의회에 저인망 및 인천지역 대표가 참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정한다는 의미이며, 허용여부를 해수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업시기 등 조업조건을 해수부가 정하여 총괄협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임.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잠수기는 자원조사부터 해야 하므로 해양수산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님.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자원조사 결과 조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임.

### ◇ 김진권(인천 형망협회장)

- 자원이 있다하더라도 다시 협의하는 것임.

### ◇ 양석우(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장)

- 사실 자원조사를 하려면 예산관계 등 어려움이 있음. 자원이 있다면 해수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장성모(인천 안강망어업인)

- 통발이든, 잠수기든 현재 업종마다 힘든 상황임. 우리쪽의 의견은 자원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음. 저의 의견대로 해야 함

### ◇ 김종만(인천시청 수산과장)

-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자율관리규약을 만들면 의미가 없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지금까지 이해하기는 자원이 있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문제가 있다면 양쪽과 다시 협의하여 문안을 다시 작성하겠음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지금까지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음. 서해특정해역의 조업허용(근해통발어업·잠수기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하여 「서해특정해역 등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위원간에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조업구역 총괄협의회에 상정함.

1.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요구와 관련하여 동 해역중 「덕적도서방 어업구역」은 현재 자망, 안강망, 형망어업 등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다른 어업의 새로운 진입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다만, 동 해역 중 「저인망어업구역」을 대상으로 허용여부를 검토하되, 당해 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표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업시기 및 조업조건 등을 해양수산부가 정하여 허용여부를 총괄협의회에 상정기로 함.
2.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153해구) 조업허용 요구는 동 해역이 근해자망어업의 2중이상자망 승인구역이며, 형망어업과 경쟁조업이 있는 점을 감안, 153해구(4~8 소해구)를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선행한후 기초개 자원에 대한 조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조업 및 분쟁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에 자율규약 등을 논의하여 허용여부를 정하기로 함.
3. 전라북도 해역에 대한 잠수기어업의 제4구 및 제5구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요구는 다른 조업구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 당해구역에 육성수면이 지정되어 있고, 형망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기로 함. 이상임 (양측위원 서명)

### ◇ 위원장(김민중 한국수산업회 부회장)

- 장기간 회의에 고생을 많이 하였음. 그동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였음 (박수).  
- 회의종료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제1장 분과협의회

## 제1절 업종별 분과협의회

## 1. 1차 개최결과('03. 8. 7~14)

## □ 목 적

- 기존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하여 이해관계 업계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에서 조정 논의, 공통적 공감대 형성

## □ 일 시 : 2003.8.7~8.14

## □ 장 소 : 울산, 포항, 여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 □ 참석자 : 분과협의회 위원 62명, 방청어업인 71명 등 137명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등 4명 간사 및 서기로 참여

협의회별	위원장 (위원수)	일시 및 장소	참 석 현 황			
			계	위원	방청자	해수부
동경128도 이동조업분과협의회	한규설 (17명)	'03.8.7(목) 14:00~16:00 울산해양수산청	47명	16명	29명	3명
소형선망 조업구역분과협의회	오순택 (9명)	'03.8.8(금) 14:00~16:20 영덕수산관리소	21명	9명	9명	3명
기선권현망 조업구역분과협의회	오순택 (12명)	'03.8.11(월) 14:20~17:30 여수해양수산청	34명	12명	19명	3명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분과협의회	김민중 (13명)	'03.8.12(화) 14:10~16:30 여수해양수산청	28명	13명	12명	3명
서해특정해역 등 조업구역분과협의회	김민중 (12명)	'03.8.14(목) 14:00~16:10 인천해양수산청	17명	12명	2명	3명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회의결과

#### [ 총 평 ]

- 대형트롤 등 10개 어업의 조업구역조정 요구에 대하여 이해관계 업계의 반대의견 개선 등 당사자간 기존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일부 어업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함
- 어업별 조업구역의 조정은 어업자원, 어획량 등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합리적 타당성 검증에 의해 도출 필요

#### [ 위원회별 회의내용 ]

-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8.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동해안 어업인과 대형트롤 등 업계간 기존입장을 고수하였으나, 향후 회의시 업계간 구체적 대안 등 의견을 개선키로 함
    - ※ 2차회의는 8월말 또는 9월초 포항에서 개최키로 합의
  - 대형트롤 등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동해안 어업인 약 70여명이 집결 → 29명 방청 허용
-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8.8, 영덕수산물기술관리소)**
  - 소형선망과 정치망, 연안어업인간에 상호 어려운 어업현실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기존입장에 대한 의견을 고수
  - 향후 회의시 양 업계간 조정안을 제시하여 논의키로 함
    - ※ 2차회의는 8월말, 9월초순경 개최 장소는 별도 통지키로 합의
-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8.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전남권현망 등에서는 기존 조업구역 통합 또는 공동조업구역 설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 경남 권현망업계는 양 지역의 업계 통합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한 멸치자원 관리, 수급, 소비, 적정 가격유지 등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주장
  - 향후 회의시 연안어업 등 피해업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등 양 업계의 조정안을 제시하

여 논의키로 함

- 전남 권현망, 연안어선 등이 통합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회의직전 여수 구항에 약 60척 집결후 자율적, 평화적 즉시 해산

※ 2차회의는 금년 추석이후로 하고 개최장소는 별도 통지키로 합의

- 울산연안 금지구역 추가설정 문제는 현재 구성되어 협의중인 자율협의회에서 별도 논의하되, 위원장이 참여하여 중재키로 함

#### ○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8.1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기존 자율협의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상호 공감대 형성
  - 제주도 어업인은 기존 자율협의사항의 법제화를 희망한 반면, 근해안강망 업계는 분쟁도 없는데 법제화는 불가함을 주장
-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의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충남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간 기존 입장 고수
- 대형선망어업의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주변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 확대 또는 축소문제에 대해 양측 기존 입장 고수
- 대형·중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제주도 주변수역 금지구역 확대 문제는 주변국과의 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된 현실에서 불가함을 주장하는 등 양측 기존 입장 피력

#### ○ 서해특정해역등 조업구역분과협의회(8.1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기타통발어선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시 꽃게 TAC 실시, 어장 정화사업비 부담 등을 제시한 반면, 자망·안강망 등 업계는 기존 조업어선이 과다하여 조업분쟁 및 통발어구의 특성상 꽃게 남획 등 요인에 의해 반대 입장 고수
- 잠수기어선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은 대립관계인 형망어업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동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하고, 전북수역에 대한 공동조업구역 문제는 양측 입장 고수
- 기타통발 어선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분과위원회를 조정(제주주변수역 분과위원회)하고 통발업계 위원을 추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기타사항 ]

- 각 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총괄협의회 결과 설명
  - 의결방식은 만장일치, 다수결 등으로 할 경우 위원수 배분관계가 있으므로 다수결정보다는 업계간 공유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콘센서스방식 채택)
  - 분과협의회 위원은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공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회의에 반드시 참석,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당해 업종에 대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함.

### □ 향후 추진계획

- 분과협의회별 회의내용(회의록)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차기 회의 진행시 참고토록 조치
- 제주주변수역에 대한 기타통발어업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서특해역분과협의회에서 제주주변수역 분과협의회로 이관, 논의
- 분과협의회별 위원 조정
  - 서해특정해역 분과협의회에 전북, 인천 형망어업인 각 1인을 추가하고, 꽃게자원 전문가 1인 위촉(서해수산연구소)
  - 제주주변수역 분과협의회에 통발어업관련 위원 1명 추가
    - ※ 부산시의 요구에 위해 제주주변수역 분과협의회에 서남구기저 대표 1명을 위원으로 추가 검토(총괄협의회 1명 추가 건의)

## 2. 2차 개최결과('03. 8. 27~30)

## 가. 회의개요

- 일 시 : 2003.8.27~9.30
- 장 소 : 동해, 포항, 마산지방청 및 지도선사무소, 목포분소
- 참석자 : 분과협의회 위원 95명 및 우리부 4명 등 99명

협의회별	위원장 (위원수)	일시 및 장소	참석 현황		
			계	위원	해수부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오순택 (9명)	'03.8.27(수) 14:00~16:00 동해해양수산청	12명	9명	3명
울산지역 권형망어업 자율협의회	오순택 (11명)	'03.8.28(목) 15:00~18:20 어업지도선사무소	14명	11명	3명
동경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	한규설 (17명)	'03.8.29(금) 14:00~17:30 포항해양수산청	20명	17명	3명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김민중 (15명)	'03.9.2(화) 14:00~16:20 남해연구소목포분소	18명	15명	3명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오순택 (12명)	'03.9.29(목) 14:00~16:40 마산해양수산청	14명	11명	3명
서해특정해역 등조업구역 분과협의회	김민중 (15명)	'03.9.30(금) 14:10~17:00 마산해양수산청	18명	15명	3명
동경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3차)	한규설 (17명)	'03.9.25(금) 14:00~16:30 경북 경주	20명	17명	3명

※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3차)시 동해안 수협장 등 18명 방청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나. 회의결과

#### □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제2차,8.29 포항청, 제3차 9.25 경주)

- 트롤어업측은 동해안 조업금지는 구 한·일어업협정('65.6.22)에 의해 제한된 것이므로 동협정이 파기된 이상 원상회복 주장
- 동해측은 동해안 어업인의 불법어업 근절의지 등을 제시하면서 반대입장 고수(다만,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
- 3차 회의시 트롤측이 조정에 따른 지원방안 제시(<표 3-1> 참조)
  - 트롤 등 업계는 지원금액·TAC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대형기저(쌍끌이, 외끌이) 문제는 우선 트롤어업을 해소한후 협의기로 제시

#### □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8.27, 동해지방청)

- 현행 6~9마일의 불빛사용 금지구역을 강원연안은 5마일로 하고, 경북연안은 원칙적으로 3마일로 하되, 정치망어장 동단끝에서 1마일 외측으로 잠정합의(단, 경북 영일만은 6마일을 기준)
- 동 잠정합의 내용에 대해 어업인 설득 등 의견수렴후 다음회의에서 합의기로 함
  - ※ 3차협의회는 9월말경으로 위원장이 결정, 통보기로 함

#### □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9.2, 남해수산연구소 목포분소)

-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업계간 자율규제를 유지하기로 잠정합의

#### [양측 업계간 자율규제 합의내용(1996.1월)]

- ① 상호분쟁 예방을 위한 어민 지도계몽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안강망어선은 제주연안 조업시 제주연안 근접조업을 자제한다
- ③ 연안채낚기어선이 어장을 선점 조업시 안강망어선은 채낚기어선 밑에 투망하지 않는다
- ④ 채낚기어선은 안강망어구의 이동, 양·투망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방어조업을 실시한다
- ⑤ 제주도 본도 외측연안의 8마일이내 해역에서는 매년 6월에서 10월사이에 근해안강망어선은 20:00부터 익일 04:00까지 조업을 금지한다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⑥ 조업시 불가항력적으로 어구사고가 발생시 상호신뢰와 협동정신으로 당해 선장들은 현장에서 피해확인을 필하고 각각 소속조합을 통한 피해보상을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 단, 합의결렬시 양측 3명으로 구성된 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수협에서 이를 행한다.

- 선망어업의 제주, 추자도, 거문도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의 확대는 현행(7,400m내 금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함
-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에 대한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은 충남도에서 연안어업자와 근해어업인간 조정토록 함
- 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은 제주도 마라도수역에 한하여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회의시 논의키로 함
- 기타통발어업의 제주연안 2마일 금지구역 설정의 수용여부를 다음회의에서 논의키로함
  - ※ 3차협의회는 9월말경으로 위원장이 결정(제주), 통보키로 함

### □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자율협의회(8.28,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울산연안의 조업금지구역 설정 및 어구피해 등 분쟁조정은 그간 양측간 협의된 조정(안)을 토대로 협의, 자율규약으로 함
  - 정치망 어업권 및 수하식 양식어장 외측 250~500m을 기준으로 자율 금지구역의 설정방안을 쌍방대표간 별도 협의키로 함
  - 부산에서 쌍방간 협의(9.5)한바, 8.28일 협의의견과 배치되어 결렬(울산측에서 이득·울기등대를 기준으로 외측 500m점에서 직선을 새로이 주장)
- 경남도·울산시 등 직원간에 사전 협의(9.29),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본 위원장이 조정안을 제시하되, 쌍방어업인이 반대할 경우 현행 유지

### □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9.29, 마산지방청)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표 3-1> 대형트롤 및 대형기저업계 제시의견

항 목	대형트롤 및 대형기저쌍끌이	대형기저외끌이
준법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허용될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법조업으로 어로분쟁 방지 및 자원관리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허용될 경우 관계법령에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법조업</li> </ul>
조업기간 및 어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징어 단일어종에 한하여 TAC제도를 도입, 적정 배정량을 준수하여 자원관리에 노력</li> <li>9월부터 익년 2월까지 한시적인 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월부터 7월까지(6개월) 한시적 기간에만 조업</li> <li>- 중형기저는 9.1일부터 익년 5.31일까지 일본EEZ에서 조업하여 어로분쟁이 없을 것임</li> </ul>
어로분쟁 해소조정 기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안 어업인과 간혹 불의의 어로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이고 원만한 수습을 위해 쌍방 합의하에 “어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의의 어로분쟁이 야기될 경우 합리적이고 원만한 수습을 위해 어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노력</li> </ul>
양 료 항 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징어는 계절성, 다확성 어종으로서 동해안 위판장에서 판매할 경우 어가 하락 방지를 위해 부산항이동 위판장에서는 판매를 금지한다. 단, 동해안 지역경제를 위해 동해어업인이 판매를 요구할때는 제외한다.</li> </ul>	
감척사업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트롤어선과 대형기선저인망어선(쌍끌이)을 정부에서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여 어업인들에게 감척(현행 조업척수의 20%)이 되도록 하여 적정 어선세력으로 조업 하므로써 연근해어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어업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이 진행되도록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기저 외끌이는 착지끌이어법이 아니고 후리어법으로 강제예망이 아닌 자원관리형 어로방식임</li> </ul>

## 3. 3차 개최결과('03. 10. 14~24)

## 가. 회의개요

- 일 시 : 2003.10.14~10.24
- 장 소 : 동해연구소, 지도선사무소, 전남도, 인천지방청 등
- 참석자 : 분과협의회 위원 81명 및 우리부 4명 등 85명

협의회별	위원장 (위원수)	일시 및 장소	참석현황		
			계	위원	해수부
동경128도 이동조업 협의회(4차)	한규설 (17명)	'03.10.14(화) 14:00~16:35 동해수산연구소	18명	15명	3명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오순택 (9명)	'03.10.15(수) 14:00~17:00 울진종묘배양장	12명	9명	3명
울산지역 권형망어업 자율협의회	오순택 (11명)	'03.10.16(목) 15:00~18:30 어업지도선사무소	14명	11명	3명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김민중 (15명)	'03.10.20(월) 14:00~17:30 전라남도 도청	16명	13명	3명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오순택 (12명)	'03.10.21(화) 14:40~17:20 구례한화리조트	14명	11명	3명
서해특정해역 등조업구역 분과협의회	김민중 (15명)	'03.10.22(수) 14:00~17:20 인천해양수산청	17명	14명	3명
동경128도 이동조업 소위원회	한규설 (8명)	'03.10.24(금) 14:00~16:35 울산지방해양청	9명	8명	1명

※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4차)시 동해안지역 수협장 10명 방청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나. 회의결과

#### □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제4차 10.14 동해수산연구소, 제5차 10.24 울산청)

- 대형트롤·채낚기문제와 대형기저외끌이 문제를 분리하여 논의하도록 제안하여, 대형기저외끌이어업의 소위원회를 구성함.
- 대형트롤과 채낚기어업간 공조조업 문제에 관하여 논의
  - 대형트롤측은 현재 불법인 공조조업 문제도 포함하여 동해안 조업 허용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 동해안 어업인은 공조조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공조조업 없이 동해안 오징어 조업이 불가하고, 자망, 통발 등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동해안 조업허용을 반대함.
  - 다만, 일부 업종(채낚기)에서는 대형트롤측에서 동해안 어업인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하고, 공조조업을 양한다는 조건으로 동해안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특히, 동해측은 현재 대형선망에 의한 동해안에서의 오징어 조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대형기저외끌이어업에 대한 소위원회 개최결과(10.24)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진전이 없었음
  - 대형기저외끌이는 서남구기저보다 열악한 어업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동 어업과 같이 동해 남부수역(방위각 107도선 이남) 허용요구
  - 이에 대해 서남구기저, 동해구기저, 자망, 통발업계는 좁은 어장에서의 조업분쟁 및 자원남획을 우려로 반대
    - ※ 제6차 협의회는 11월초로 위원장이 결정, 통보키로 함

#### □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10.15 울진수산종묘시험장)

- 현행 6~9마일의 불빛사용 금지구역을 강원연안중 정동진 이남은 5해리, 그 이북은 4해리로 하고, 경북연안은 각 1해리를 축소(다만 장기잡은 현행 유지)하기로 협의
  - 상기 합의된 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율협의체 구성 합의
- 특히, 소형선망은 정치망, 연안어업 등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선의 광력을 210kW 이하로 자율적으로 제한키로 함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자율협의회(10.16 어업지도선사무소)

- 울산연안의 정치망, 수하식양식어장 등에서 약 250~500m까지(연안 기점에서 약 500~2,500m)를 권현망어업 조업자율 규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키로 합의함
  - 상기 조업자율규제구역의 성실한 준수, 분쟁조정, 어구피해 보상 등의 절차이행을 위해 양측이 「자율관리협약서」를 작성·시행

### □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10.20 전남도청)

-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양측간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서」를 상호 성실히 이행키로 합의(합의서 내용 별첨)
-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에 대한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은 현행을 유지하되, 분쟁발생시 충남도가 조정키로 합의
- 선망어업의 제주, 추자도, 거문도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의 확대(또는 축소)는 현행(7,400m 내 금지)을 유지키로 합의
- 제주(본도)연안 1.5해리를 근해통발어업의 금지구역으로 설정
- 저인망어업의 제주도 마라도수역 금지구역은 현행 1해리에서 마라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3해리로 조정하기로 합의

### □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10.21 전남 구례 한화리조트)

- 경남 권현망측에서 조업구역 통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
  -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전남지역에 지원함
  -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현망수협의 본소를 여수로 이전함
- 이에 대해 전남 권현망 등 어업인은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
  - 경남이 권현망어선 세력을 전남과 같이 16통으로 해야 함
  - 기금조성은 전남권현망의 통당 연간수익(2~3억원)의 10년분과 기타 피해업종을 위해 일정 금액(a)을 추가로 조정하여야 함
  - 권현망어업의 금어기를 현행 4~6월에서 2~5월로 조정하고, 멸치를 잡는 모든 업종이 금어기를 준수하여야 함.
  - 멸치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북한지원, 급식, 군납, 홍보 등)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상호 의견접근이 어려워 양측 제안에 대해 다음회의에서 다시 논의기로 함

### □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10.22 인천지방청)

-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은 현행 저인망어업구역에 한하여 조업조건을 정한 후 허용여부를 총괄협의회에서 논의기로 함
-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은 자원조사를 실시한후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약을 정하는 등 허용여부를 논의기로 함
- 전북해역에 대한 4·5구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다른 조업구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 수역은 육성수면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 다. 향후 추진계획

- 각 분과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총괄협의회에 상정, 최종결정
  - 다만, 울산지역의 권현망어업 조업자율규제구역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양측에서 「자율관리 규약」을 합의토록 한후 즉시 시행토록 조치
-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경 128도 이동조업 문제와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통합문제는 그간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최종협의를 한후 그 결과를 총괄협의회에 상정
- 분과협의회별 회의내용(회의록)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차기 회의 진행시(총괄 및 분과협의회) 참고토록 조치

### ※ 관련자료(제3편 제2장 제2절 3. 합의사항란 별첨 ①~⑤ 참조)

- ① 울산지역 권현망 조업구역 조정 협의결과
- ②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 조정 협의결과
- ③ 제주주변수역 등의 조업구역 조정 협의결과
- ④ 근해안강망어선과 제주지선어선간 합의서(1996.1.31)
- ⑤ 서해특정해역 등의 조업구역 조정 협의결과

4. 4차 개최결과('03. 11. 6~7)

가. 회의개요

- 일 시 : 2003.11.6~11.7
- 장 소 : 우리부 회의실
- 참석자 : 분과회 위원 26명, 우리부 6명 등 32명(위원 2명불참)

협의회별	위원장 (위원수)	일시 및 장소	참석현황		
			계	위원	해수부
동경128도 이동조업 협의회(6차)	한규설 (17명)	'03.11.6(목) 14:00~18:00 우리부회의실(8층)	19명	16명	3명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협의회(4차)	오순택 (11명)	'03.11.7(금) 14:00~18:00 우리부회의실(8층)	13명	10명	3명

나. 회의결과

1)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제6차 11.6 해양수산부)

- 대형트롤, 대형기저 어업의 동해안 조업 허용여부는 업계간에 의견이 있어 각 업계의 입장을 총괄 협의회에 상정기로 함.

< 동해안 관련 업계의견 >

- 연안업계(지구별수협)는 채낚기어선과 트롤 어선간의 공조조업은 위법·부당하고, 근해통발 등 업계는 어구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은 반대.
- 채낚기업계는 대형트롤의 동해안 조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기타 공조조업 등을 이유로 동해안 조업을 반대.
- 동해구기선저인망업계는 타 업종과 타협이 될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을 매입하고 동해구트롤 어선의 조업구역을 전국수역으로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대형트롤 업계의견 >

- 동해안 조업금지는 구 한·일어업협정('65.6.22)에 의해 정부에서 제한한 것이므로 동 협정이 파기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 현재의 조업구역은 대통령령에 의해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수역이나, 하위법령인 해양수산부령의 허가제한 조건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함.
- 아울러, 동해안 조업이 허용될 경우 동해안 어업인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소방안을 제시.
  - 오징어 어종에 한하여 TAC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어획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고 조업시기를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제한.
  - 가칭 「어로분쟁해소 조정기구」를 쌍방이 합의하여 구성, 설치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시 지원.
  - 기타 양륙항을 지정하여 어획 감시체계 구축과 감척 등 제시.

### <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업계의견 >

- 당해 어업의 조업구역은 '53년 제정된 수산업법상 제1구에서 제6구로 구분, 전국수역 이었으나 개정된 동법시행령('63.11.15)에 의해 대형 및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분할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전국 수역임.
- 이와 관련, 구 한·일어업협정('65.6.22)에 의해 정부에서 동해안 조업을 제한한 것이므로 동 협정이 파기된 이상 원상회복을 주장
- 아울러, 동해안 조업이 허용될 경우 동해안 어업인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소방안을 제시.
  - 오징어 어종에 한하여 TAC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어획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고 조업시기를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제한.
  - 가칭 「어로분쟁해소 조정기구」를 쌍방이 합의하여 구성, 설치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시 지원 등.

### < 기타 논의된 사항 >

- 대형선망 및 동해구트롤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조업에 대한 대량어획에 따른 자원남획·어가하락 등에 관한 우려를 표명.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트롤어선의 어구·어법상 채낚기어선과의 공조조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오징어의 어획이 가능하나, 경제적 채산성을 감안, 공조조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쌍방간에 일치된 견해임.

□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어업의 동해안(경북, 울산시의 경계선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남)조업구역 조정은 업계간에 의견이 있어 각 업계의 입장을 총괄 협의회에 상정기로 함.

#### < 서남해구기저업계 등 의견 >

- 서남해구 업계는 매년 한·일간 입어 교섭에 의해 일본 수역 입어가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입어불가가 예상되므로 대기(외끌이)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반대, 보완 의견은 추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 근해통발 등 업계는 대기(외끌이)어선의 동해안 조업시 조업장소가 협소하고 통발 등 어구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조업분쟁과 자원의 남획이 우려되므로 반대.

#### <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업계의견 >

- 당해 업계의 어선은 91척(85)에서 43척이 감척 등으로 감소되어 현재 48척이 잔존하고 있어 구조조정(어선감척)이 완료된 상태임.
- 또한 어업경영, 어선규모, 선령 등 모든 면에서 서남해구 어선보다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 조업구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 이와 관련, 부산시 선적 대기(외끌이)어선 27척중 20여척이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게 되고, 현재 서남해구어선은 19척이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조업분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해소방안을 제시.
  - 서남해구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기간(9.1부터 익년 5.31)을 감안, 조업시기를 2월부터 7월까지 제한.
  - 가칭 「어로분쟁해소 조정기구」를 쌍방이 합의하여 구성, 설치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시 지원.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2)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제4차 11.7 해양수산부)

- 제1·2구 기선권현망 어업 조업구역 조정은 양측간 의견 차이로 합의되지 않아 양측 입장을 총괄협의회에 상정기로 함.

#### < 제1구(경남) 업계의견 >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수산물수입 자유화 및 무관세화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동 업계의 적극적 대처방안 필요
  - 즉 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생산량 및 생산시기 조절, 단일유통체계 마련 및 중도매상인 육성 등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조업구역 통합 필요
- 권현망어업은 어획량중 멸치가 9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멸치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정도에 불과, 수급 등 기능이 취약.
  - 멸치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 확대를 위해서도 1·2구 통합 필요
- 경남 등 권현망어선이 70년대 200통, 80년대 132통, 현재는 85통으로 감축, 어선세력측면에서도 통합 여건이 성숙되어 졌음.
- 또한 조업구역 조정시(통합 또는 공동조업구역 설정)어선세력의 차이로 인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 연차적으로 어업발전기금을 조성, 전남측 관계어업인들을 지원하고
  - 권현망수협(1·2구통합)을 전남(여수)에 설치, 통영·마산은 지소 설치

#### < 제2구(전남) 업계의견 >

- 권현망 어선척수 및 규모의 차이(경남 85통, 전남 16통)로 인해 조업구역 통합시 전남해역의 멸치자원남획에 따른 어장황폐화는 물론 먹이사슬의 파괴로 다른 어업자원에도 영향 초래
- 전남 전체 멸치어획량('02년 61천톤)중 권현망의 어획량이 30%정도에 불과하여 멸치를 어획하는 여타 연안어업인 설득 불가
- 그러나 경남권현망 어선 85통을 전남과 같이 16통으로 감축하고, 통합에 따른 전남권현망 업계, 여타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경남·북과 전남·북간에 통합이 된다면 조업구역 통합 가능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조업구역 조정문제와는 별도로 권현망어업의 발전을 위해 멸치금어기조정(4~6월 → 2~5월), 멸치소비확대를 위한 대책 등 현안사항은 양 업계가 공동노력 필요.
- 상기 입장 차이로 인해 조업구역 통합은 합의되지 않았으나, 공동 관심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기로 합의.
  - 현 어업여건, 어업실태 등으로 보아 제1구 권현망어선세력의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함.
  - 양측 업계간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멸치 소비확대 방안 등 현안사항의 해결 등 공동 관심 사항 등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측 업계대표로 협의체(공동위원회 등)를 구성, 운영하기로 함.

### 다. 향후 추진계획

- 분과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총괄협의회에 상정, 최종 결정.
- 분과협의회별 회의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총괄협의회시 참고토록 하고, 11월중 분과협의회 위원장 간담회 추진.
-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 개최.
  - 일시 : 2003.12. 초순경
  - 참석자 : 총괄협의회 위원 34명

### □ 참고자료(제2장 제2절 3. 합의사항란 참조)

- ① 동경 128도 이동조업 조업구역 조정 협의결과
- ②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조정 협의결과

## 제2절 분과위원장회의('03.10.2)

### 1. 회의개요

- 목적 : 조업구역조정 총괄 및 분과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중간 점검 및 각 협의회 위원장간 의견 교환
- 일시 : 2003.10.2(목) 14:00~16:00(한국수산회 회의실)
- 참석 : 총괄 및 분과협의회 위원장(4명), 해수부 관계관(2명)
- 내용 : 조업구역 조정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2. 추진상황

- 협의회 구성(2003.7.18)
  - 총괄협의회(34명) : 수산단체, 연구기관, 학계, 업계 등
  - 분과협의회(68명) : 동경128도 등 5개 분과협의회
- 협의회 기능
  - 「분과협의회」는 이해 관련 업종간에 심층 논의·조정
    - 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자원관리 등 보완대책 마련 등
  - 「총괄협의회」는 분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결론 도출
    - 분과협의회의 쟁점사항 논의, 합의된 조정(안) 확정 등

### 3. 회의결과(2003.8.7~9.30, 연 223명 참석)

-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8.7 울산청, 8.29 포항청)
  - 동해안 어업인은 자원남획, 오징어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트롤 등 어업의 동해안 조업 반대 주장
  - 트롤어업의 동해안 조업금지는 구 한·일어업협정('65.6.22)에 의해 제한된 것이므로 동 협정이 파기된 이상, 원상회복 주장
  - 트롤업계에서 동해 어업인에게 지원방안 제시(별첨①), 논의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8.8, 영덕수산물리소, 8.27 동해청)

- 경북 3마일, 강원 5마일을 기준으로 금지구역 축소(안)을 논의키로 잠정 합의(기존 금지구역은 대부분 6~9마일임)

### ○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8.11, 여수청, 9.29 마산청)

- 전남 권현망업계 등은 기존 조업구역의 통합 또는 공동조업구역 설정시는 자원남획, 연안어업 붕괴 등 주장
- 경남 권현망업계는 멸치 자원관리, 수급, 소비, 적정 가격유지 등을 위하여 조업구역 통합의 필요성 주장
- 다음 회의시 지원방안 등과 조정(안)을 제시, 논의키로 함
- 울산연안의 금지구역 설정은 협의회시 도출된 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자율규약으로 정하기로 함(8.28 부산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정치망 어업권 및 수하식 양식어장 외측 250~500m을 기준으로 자율 금지구역의 설정방안을 쌍방대표간 별도 협의키로함
    - ※ 쌍방 부산에서 협의(9.5)한바, 8.28일 협의한 의견과 배치되어 결렬(울산측에서 이득등대와 울기등대를 기준으로 외측 500m점에서 직선으로 새로이 주장)

### ○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8.12, 여수청, 9.2 목포)

- 근해안강망어업의 금지구역 설정은 기존 자율합의로 잠정 합의
  - 제주연안 8마일내 6~10월(20:00~04:00)기간중 야간조업 금지
-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의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은 충남도에서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간에 조정토록 함
- 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은 제주도 마라도 수역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회의시 논의키로함
- 기타통발은 제주연안 2마일 금지구역 설정의 수용여부를 논의키로 함
- 근해선망어업의 제주도 주변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의 확대는 현행 금지구역(7,400m)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논의키로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분과협의회(8.14, 인천청, 9.30 마산청)

- 기타통발어업과 근해자망·안강망 등 양 업계는 기존 입장 고수

※ 기타통발어업에서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을 요구한 행정소송 제기

- 잠수기어선은 서해특정해역에서 포획할 패류종이 불분명, 전북수역의 공동조업구역 문제는 양측 입장 고수

## 4. 분과위원회별 회의추진 현황 및 금후계획

### 가.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

#### □ 주요 내용

○ 3차례(8.7 울산, 8.29 포항, 9.25 경주)의 분과협의회 개최하였으나, 합의점 도출하지 못함

○ 동해안 어업인은 자원남획, 오징어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트롤/대기저어업의 동해조업 반대

○ 이에 대해 트롤 등 업계에서는 동해안 조업금지는 구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제한된 것이므로 동 협정이 파기된 이상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동 해역에서의 조업허용을 요구

#### □ 금후 계획

○ 차기 회의 이전에 분과위원장이 조정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4차회의(10월중순경)에서 합의 도출 노력

### 나.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 □ 주요 내용

○ 2차례(8.8 영덕수산물관리소, 8.27 동해청)회의를 통해 동해안 불빛사용 조업금지구역 완화문제 논의

○ 경북 3마일, 강원 5마일을 기준으로 금지구역 축소(안)을 논의키로 잠정 합의도출을 추진코자 함

※ 기존 금지구역은 대부분 6-9마일임

□ 금후 계획

- 10월 중순경에 제3차회의시 합의 완료를 위해 노력코자함

다.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 주요 내용

- 2차례(8.11 여수청, 9.29 마산청)회의를 통해 기선권형망어업 제1,2구 공동조업구역 설정문제 및 울산연안 금지구역 설정논의
- 제1,2구 공동조업의 경우, 경남측에서 멸치자원관리, 수급, 소비, 적정가격유지를 위해 조업 구역 통합이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업구역 통합을 주장하였으나 전남은 자원남획과 연안어업 붕괴의 위험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하는 입장이 대립됨
- 울산연안이 금지구역 설정은 정치망 어업권 및 수하식 양식어장 외측 250~500m를 기준으로 자율 금지구역 설정방안을 쌍방간 별도 협의하기로 함

□ 금후 조치

- 10월 중순경 제3차회의시 제1,2구 공동조업 구역설정문제와 관련 위원장의견제시 후 합의 유도

라.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 주요내용

- 2차례(8.12 여수청, 9.2 목포)회의 개최
- 근해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기존의 자율합의(제주연안 8마일내 6월에서 10월 (20시~04시)동안 야간조업 금지)로 잠정합의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의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조정문제는 충남도에서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간 조정토록 유도

### □ 금후조치

- 차기 3차회의(10월 중순)시 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 기타통발 금지구역, 근해선망 제주도 주변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 건을 사전협의
- 사전협의 실패시 위원장의 조정안 제시후 이를 기초로 최종합의 도출

### 마. 서해특정해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 □ 주요내용

- 2차례 협의회(8.14 인천청, 9.30 마산청)의 회의를 통해 기타통발어업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문제, 잠수기어업 전북해역 공동조업 구역 설정문제를 논의
- 서해특정해역조업 어선과 기타통발어선간의 합의 도출 실패, 전북해역의 4.5구잠수기어선의 공동구역 문제 또한 기존의 반대입장 고수

#### □ 금후조치

- 차기회의(10월 중순)시 이전 위원장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 가능 여부 판단

## 제2장 총괄협의회

### 제1절 1차회의('03. 7. 31)

#### 1. 개최결과

##### 목 적

- 주변국간 어업협정으로 기존 조업구역의 축소, 어선세력의 감소 등 여건변화에 적합한 근해 어업 조업구역을 민간 협의회에서 조정
  - 협의회 운영방향, 전략, 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 및 논의

일 시 : 2003. 7. 31(목) 14:00~16:30

장 소 : 우리부 대회의실

참 석 자 : 조업구역총괄협의회 위원 30명(부산시 위원 불참)

회의주제 : 조업구역총괄협의회 위원장 박규석(한국수산회 이사장)

##### 회의결과

###### [총 평]

- 1953년 제정된 어업별 조업구역은 변화된 어업여건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경쟁력 있는 어업을 위해 현행 조업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통인식
- 향후 어업별로 제시된 조정의견에 대하여는 분과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결과 도출 필요

###### [위원회 구성관련 합의사항]

- 총괄협의회 위원에 수협중앙회 지도관리상임이사 및 경북, 강원도의 어업인 대표자격으로 당해 지역 지구별수협장 각 1인씩 추가 위촉(동해안 수협장 협의회에서 추천)
-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에 동해구기저수협장(하대훈) 및 대형기저수협에서 추천하는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자 1인을 추가 위촉

-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에 대형기저쌍끌이 및 외끌이어업인 대표 1명씩 추가 위촉(대형기저수협에서 추천)
-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에 울산연안 권현망어업 금지문제도 포함, 협의하기 위해 울산어업인대표 1인 추가(울산시 추천)

### [위원회 운영관련 합의사항]

- 분과협의회시 참고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토록 함
  - 과학적 자료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에 대한 전문가와 개별 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과거 업무담당자 등 초청
- 업종별 분과협의회 개최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10개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업종별 분과협의회에서 장소 선정, 운영
- 업종별 분과협의회 개최횟수를 신중적으로 운영
  - 분과협의회별 회의는 기본적으로 10월말까지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하되, 협의가능한 분과협의회는 신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의결방식은 만장일치, 다수결 등으로 할 경우 위원수 배분과 관계가 있으므로 다수결정 보다는 업계간 공유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각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객관적,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전반적인 흐름에서 결정하는 등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결
  - 또한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본 협의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정부에서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완성되는 것임
- 분과협의회 위원은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공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분과협의회에 반드시 참석, 의견을 개진하여야 함
  -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당해 업종에 대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

## 2. 회의록

- 일 시 : 2003.7.31(목) 14:00~16:30
- 장 소 : 해양수산부 회의실(12층)
- 참석자 :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 위원 30명(부산시위원 불참)
- 진 행 : ① 차관보 인사 ② 위원장 인사 ③ 추진상황 및 안건설명  
④ 협의안건 토의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오늘 협의안건 상정에 앞서 총괄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현재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초 구성은 학계, 전문가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위촉하고, 각 업계대표는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함. 동해안쪽 업계에서 어업인 대표로 강원, 경북에 각 1명씩 지구별수협장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함. 해양수산부는 협의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지역 수협장을 참여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함. 따라서 전체대표로 수협중앙회의 지도관리상임이사를 포함할 수 있는 지를 협의하고 동해안지역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지난 7.25일 논의를 한바 있음. 동해안어업인은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당해 지역 지구별수협장은 위원이 한명도 없음. 따라서 강원, 경북에서 각 1명씩 총괄협의회에 참여를 시키고, 동경 128도 이동수역 분과협의회에 동해구기저수협은 없음. 동해구기저수협장도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에 참여 요망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문제만 염두해 볼 때 요구쪽인 대형기저는 1명이며, 반대입장에 있는 위원은 동해구기저, 서남해구기저, 채낚기연합회를 들 수 있음. 숫적인 균형으로 볼 때 반대쪽이 충분히 포진하고 있음 분과협의회에도 김삼만 조합장, 서남해구조합장, 염창선 채낚기협회장이 있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우리 조합원들은 대형트롤의 동해안 조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동해구기저수협장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많은 불만임. 김삼만 조합장은 채낚기어업쪽임.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동해구기저는 빠져 있음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총괄협의회 구성시 추천을 받았는지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학계와 정부측, 전문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위촉하고, 업계는 각 지역별로 안배함. 총괄협의회는 모든 지역에 균형있게 하여야 함. 하조합장이 제의한 총괄협의회에 강원 및 경북 지구별수협장 각 1명씩 포함하고, 동해구기저수협장을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에 포함하여도 되는지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황윤욱(울산시수협장)

- 강원, 경북이 빠지면 오징어 문제를 논의하기 곤란, 동해구기저수협장 의견에 동의함

### ◇ 위원장(한국수산물협회 박규석 이사장)

- 상식적으로 동해안수협에 오징어 문제가 없는 곳은 없음. 총괄협의회에 강원, 경북의 지구별수협장 추천은 동해안수협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동경 128도 이동수역 분과협의회에 동해구기저수협장 추가는 숫자면에서 균형이 없는 것 같으므로 현재 위원중에서 다른 위원과 교체하는 것이 어떤지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교체없이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중재 안으로 양쪽업계에서 1명씩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

### ◇ 위원장(한국수산물협회 박규석 이사장)

- 총괄협의회에 수협중앙회 지도관리상임이사과 강원, 경북 수협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합장 각 1인을 추가로 위촉하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에 동해구기저 하대훈 조합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음. 현재 일정으로 총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10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고, 11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총괄협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앞으로 각 협의회의 추진 전략, 일정 등 개별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할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기 바람. 앞으로 협의회 운영절차, 분과협의회에 당부할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부탁함

### ◇ 이주희(부경대학교 교수)

- 분과협의회서 각종 데이터, 과학적인 자원관련 자료 등을 위원이 요구시 적기에 제시할 수 있는지

### ◇ 위원장(한국수산물협회 박규석 이사장)

-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어느 정도 기초자료는 있을 것임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자료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음. 이번 협의회는 총괄협의회로서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분과협의회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으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음

### ◇ 조효식(대형선망조합장)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은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며, 이를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임. 조정이 되어야 함. 설정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음. 조업구역 조정이후에 문제점은 나열되지 않음. 이를 분과협의회에서 상세히 거론, 업종간 불균형이 있으면 않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53년이면 모든 업계가 기초적인 단계인데 이것을 현재까지 지속된 것이 문제점임. 21세기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업계간 문제점은 조금씩 양보하고,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이 되도록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 희망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 소수용(근해안강망수협장)

- 분쟁조정은 총괄협의회보다는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직에 있는 우리들이 조정을 하여야함. 안강망어업은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자원고갈, 일반감척, 국제감척으로 1/10수준으로 축소됨. 96년 제주와 자율협정이후 여건이 변화되어 제주수역에는 현재 30~40여척이 조업함. 현재 하등의 분쟁이 없다고 봄. 분과협의회에서 분쟁을 논의하고, 과거 자율협정을 무시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함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멸치업계의 요구 등 현재의 실정을 한 번쯤 재정립하여야 함. 허심탄회한 논의를 분과협의회에서 하기를 희망함. 100년대계를 위해 심층 논의부탁

### ◇ 서원열(근해통발수협장)

- 인천에서 개최될 분과협의회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함.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최대 피해자는 근해통발어업임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대형기저쌍끌이는 1허가, 2어법으로 동해안에서 조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트롤어업은 저층, 중층 다할 수 있는 어업임. 대통령령인 수산업법시행령에서 대형기저는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트롤어업은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트롤어업은 노르웨이, 러시아에서 발달됨. 이는 저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양쪽을 다 할 수 있으므로 인망으로 규정된 것임. 다만 대형기선저인망은 저인망으로 못박고 있음

### ◇ 이주희(부경대학교교수)

- 어구어법상 쌍끌이도 중층이 가능함. 트롤어업은 중층, 저층의 구분이 없음

### ◇ 하대훈(동해구기저수협장)

- 저인망은 저층만 되는데 1허가, 2어법의 체제로 쌍끌이는 중층을 한다는 것인지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이 문제를 본 협의회에서 길게 거론하는 것은 곤란, 현 규정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분과협의회에서 심층 논의

### ◇ 황윤옥(울산시수협장)

- 분과협의회 구성의 시정을 부탁함. 권현망어업의 울산지역 분쟁은 그간 양 업계간 자율협의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실마리를 찾지 못함. 13페이지에 울산지역의 반대의견이 있음. 권현망어업은 연안 2,000m는 금지구역인데 이는 울기등대 끝까지임. 울산지역은 빠져있음. 따라서 울산지역 어업인대표 1명을 권현망어업 분과협의회에 포함하여 이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건의함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지역별로 안배하여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음. 현재 10개어업 문제가 상정되어 있으므로 동 문제는 분과협의회 위원장과 상의해서 결정하였으면 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정세현(기선권현망수협장)

- 울산지역 문제는 1년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업계로서 받아드리기 힘든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기에 시간이 필요함. 거의 합의에 도달되었으며 이 문제를 분과협의회에 삽입할 사안이 아님. 분과협의회 개최이전에 자율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임

### ◇ 김성남(전남정치망수협장)

- 어선세력이 큰 업종에서 조업구역 조정요구를 하고 있음. 전남은 영세한 어업임. 반면 권현망은 대규모임. 전남의 정치망, 소규모의 채낚기, 연승어업에서 볼 때 엄청난 문제임. 대형어선이 여수연안에서 1허가 2어법으로 증충에서 삼치를 대량어획하여 위관함. 원시적 어법인 정치망은 지선에 회유하는 삼치를 잡고 있음. 밖에서 멸치를 싹쓸이하고 있음. 멸치자원이 감소하면 삼치는 들어오지 않음. 이것은 어선세력이 큰 업종의 살기 위한 방법임.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하겠으나 이를 총괄협의회에서 충분히 참작하였으면 함

### ◇ 김수완(제주도 해양수산과장)

- 협의회 구성문제임. 총괄협의회에 자원학을 전공한 교수를 위촉할 것을 요망함.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자원이 고갈됨. 자원수준에 맞는 어획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라파는 대구자원의 포획을 금지함. 자원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감척사업도 함. 70년대초반 제주도와 독도, 울릉도는 3중자망을 허용하였으나 제주도는 이를 금지하였고, 80년대는 그물로 잡는 어업을 제한하였음, 90년도에는 잠수기어업을 폐지하였음. 2000년대초반은 어업협정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음. 모든 업종에서 자기업종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자원은 차세대까지 이어져야하고, 자원회복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함. 따라서 자원학 교수를 위촉하여야 함.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참고로 총괄협의회 위원인 수산과학원의 박영철부장은 자원을 연구하는 박사임. 또한 대학의 조교들이 박부장에게 배우고 있음. 자원의 전문가임

### ◇ 김석상(경상남도 어업생산과장)

- 총괄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함. 지난해 자율협의회시 대립업계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아 무산됨. 분과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염려됨. 상호양보하면서 자리에 모여 협의를 하여야 함. 모두 분과협의회 참여를 독려하여야 함

### ◇ 이상욱(경상북도 어업지도담당 사무관)

- 어업인들이 분과협의회에 관심이 많음. 대형트롤어업 문제를 울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최장소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 이인곤(전라남도 어업생산과장)

- 일정이 너무 급박한 것 같음. 여유있게 논의하여야 함. 자율협의회 불참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 불참한 것임. 앞으로 분과협의회에 참석하여 논의하도록 독려 필요

### ◇ 정만균(전라북도 수산과장)

- 일정에 구애 없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함. 가급적 만장일치로 하고 과반수 또는 2/3 찬성 등은 문제가 발생됨. 잠수기어업의 4구와 5구의 전북연안 공동조업구역은 반대함. 우리도는 기초개의 자원관리를 위해 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에 참석 요망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 조한중(충남도 어업지도담당)

- 분과협의회 위원과 충분한 대화로 정부계획대로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노력 하겠음

### ◇ 이일원(강원도 수산개발과장)

- 분과협의회에서 집중토의하여 합의되면 좋으므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였으면 함.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앙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인지

### ◇ 김영훈(울산시 어업지도담당 사무관)

- 울산지역의 권현망어업 조업금지 문제에 대해 수차협의한바 있음. 권현망은 접근이 되었다 하나 현재 원점에서 맴돌고 있음. 현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울산지역 대표 1명을 추가요망함

### ◇ 정용희(인천시 어업지도담당 사무관)

-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양자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공무원이 양자간 잘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겠음

### ◇ 오복권(성산포수협이사)

- 상대지역 어업인간 분쟁이 문제임. 각각 의견이 다름. 1953년은 50년전으로서 바다에 고기 반, 물반이 시대임. 그러나 현재는 자원을 생각하면서 재조정 하여야 함. 지역이기주의는 배제되어야 함. 사심을 버려야 하며, 인기발언을 하면 않됨. 자원을 생각하는 분쟁조정이 되어야 함. 자원을 보호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함. 제주이기 때문에 않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함

### ◇ 김종래(여수들망어업협회장)

- 분과협의회에서는 찬반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 ◇ 최영항(여수수산인협회장)

- 경남어선들이 동해안 강원도와 서해안으로 약진하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권현망어업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저의가 무엇인지.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바 있음. 김대중 정부에서도 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전에 경남에서 전남에 양보하여야 한다고 했음. 전남은 영세 어민임. 4만여명의 어업인이 낙지, 문어 등을 잡고 있음. 이러한 영세민의 자리를 경남의 124통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30마일 밖이라고 하나 이것은 않됨. 멸치는 먹이사슬임. 뺀한 이치를 가지고 문제로 다루는 것은 않됨. 분과협의회에서 상세히 이야기 하겠음. 김영삼시대에 전남이 약하니 경남에서 영세민을 보호하여 주라고 했음. 현재 멸치는 포화상태임. 강원, 서해안 등 전국적으로 멸치가 생산되어 7,000내지 10,500원임. 울산은 막고 전남은 트라고 하는 것은 모순임

### ◇ 김광익(인천닷자망협회장)

- 업종별로 10내지 20년된 문제가 있고 최근의 문제도 있음. 시한을 정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10개사안에 대하여 분과협의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그 결과를 총괄협의회에서 논의하면 됨. 만약 조정이 된다면 상대업종과 동시에 지속적 생산과 경쟁력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서해특정해역은 넓어지지도 좁아지지도 않은 상태임. 153해구에서 잠수기가 조업을 한다면 거기에서 조업할 자원이 무엇인지 의문시됨. 통발은 분과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겠지만 현재 동해안의 암대게는 산란을 위해 법으로 포획이 금지되고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있음. 꽃게도 암수비율로 볼 때 암컷이 줄고 있음. 서해안 꽃게는 TAC를 실시하고, 암수비율과 체장 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토의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함. 과거 통발은 서특에서 조업을 하라해도 않함. 동중국해에서 만선을 하였기 때문임. 현재 서특에서라도 조업을 하자는 것임. 서해특정해역에서 통발이 꽃게를 어획하면 2~3년이면 결단이 될것임. 95%가 꽃게임. 현재 조업하는 5~70톤급의 300여척에 통발 100여척이 같이 조업하면 동시에 도산됨. 따라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함

### ◇ 염창선(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

- 대형트롤하면 동해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 조정계획 자체에 불만이 있음. 대형트롤과 정부가 공모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여야 함. 동해안 어업인의 설득은 시기상조임. 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함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지금까지 각 위원별로 거론된 문제는 ①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제공 ② 대형기선저인 망어업의 1허가 2어법문제 ③ 울산지역 권현망 추가문제 ④ 자원을 전공한 교수의 참여문제 ⑤ 개최장소 선정시 신중 ⑥ 추진일정에 구애 없이 논의 ⑦ 의결시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문제 ⑧ 대화와 타협을 통해 끝까지 상대방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 등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 김민중(한국수산회 부회장)

-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이는 자원문제를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또한 잠수기어업이 서해특정해역에서 어떤 자원을 이용할 것인지 등 충분한 검토 필요. 금번 협의회는 그간의 문제를 최종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인에게 위원장을 맡긴 것으로 생각됨. 모든 협의는 민간인에게 맡기고 선입견 없이 논의할 것임. 임무 수행시 중용을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 한규설(어촌문제전문가)

- 동경 128도 문제는 예민한 문제임. 위원장직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하였음. 이 문제는 수년간 된 문제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함. 결국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함. 어법문제와 오징어자원을 발언함.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을 것임. 내 주장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음.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함. 자원은 다음세대에도 이용하여야 함. 자원보호만 주장하면 아무 어업도 하면 않됨. 보호만은 곤란하고 또한 방종도 않됨. 128도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국내적 분쟁문제도 있음. 여러 의견을 조정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함. 협조를 부탁함

### ◇ 오순택(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조업구역 조정에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않됨. 상호 열린 마음으로 대립업계와 요구업계가 논의를 하여야 함. 결과가 어느 쪽이든 받아 드리면 결과도출이 되는 것임. 울산지역의 권현망문제는 울산쪽 어업인대표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고 봄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이 협의회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민간중심으로 협의하는 것임

### ◇ 김영규(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본 조업구역 조정협의회는 민간에 협의하도록 위원을 위촉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측면

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임. 본 협의회 위원들은 지역과 업종의 대표로서 한국의 수산업을 이끌고 고민하는 공적인 측면도 있음.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으로 조업수역이 조정되었음. 이는 피부로 느끼는 것임. 이러한 영향으로 근해어선의 경우 6,500여척에서 2,000여척이 감적으로 줄어들음. 이것으로 인하여 조업수역의 변화가 있었음.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어업질서 확립, 자원조성 등 어업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또한 기상이변, 해어황 변동으로 서해안에서 오징어, 멸치 등이 어획되고 이로 인해 가격하락 등의 문제도 발생됨. 이것들은 전체의 문제이지 지역문제는 아님. 의사결정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할 것임.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우선 1차계획은 그대로 추진하여 중간점검을 하면 될 것임. 일반적으로 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국제회의 등에서도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자기주장을 하고 참석을 하는 것임.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림

### ◇ 조동길(대형기저수협장)

- 제주도주변수역에 쌍끌이 및 외끌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회에 우리 대표 1명씩 포함 요망(제주도 동의)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분과협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 과거 업무담당자 또는 자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으면 됨. 총괄협의회의 자원전문가는 수산과학원 박영철 부장이 있음. 추진일정 문제, 신축적 운영문제 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0월말까지 일정목표로 가지고 진행하며, 12월 총괄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보이콧하여 불참하면 모르나 열심히 토의하는 문제는 신축성 있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 좋겠음. 의사결정시 만장일치, 찬반투표 등은 각 협의회 인원수 배분과 관계가 있음. 이 문제는 자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수결의 성격은 아님. 반대가 객관적,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면 전반적인 흐름으로 결정을 하여야 함. 본 협의회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가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 마지막으로 제도화 하여야 매듭되는 것임. 우리는 분위기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이를 결정하여야 함. 다수결, 만장일치 방식은 아님

### ◇ 박영철(국립수산과학원 어업자원부장)

- 업종별 금지구역은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설정된 것임. 자원의 상태에 따라 이를 보호하는 측면과 또한 업종간 조정문제를 고려하였고, 공동규제 등 국제적인 문제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임. 과거에 된 조업구역을 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일, 한중어업협정 등 새로운 어업질서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결국 어업인을 위한 것임. 조업구역 조정이 업종간 양해만으로 조정될 수는 없음. 자원문제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여러 수반되는 문제를 병행하여 TAC실시, 양륙항 관리, 어선관리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앞으로 분과협의회에서 자원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밝히겠음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협조를 하여야 함. 분과협의회에서는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의가 되기를 기대함. 끝.

## 제2절 2차회의('03. 12. 11)

### 1. 개최결과

#### 가. 회의 개요

- 목적 : 각 분과협의회에서 논의된 협의의견에 대한 결론 도출
- 일시 : 2003.12.11(목) 14:00~(한국원양어업협회 회의실)
- 참석 : 총괄 및 분과협의회 위원장(4명) 및 총괄협의회 위원 등
- 안건(세부자료 별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건
  - 근해통발어선의 서해특정해역내 조업 협의건
  -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전남·경남 등) 조정 협의건
  - 대형트롤 등 동경 128도 이동조업관련 협의건

#### 나. 회의결과

##### [ 총 평 ]

- 수산관련단체, 업계대표 등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총괄 및 분과협의회에서 그간 업종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대형트롤·대형기선저인망·통발 등 근해어업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심층·논의하고, 그 결과의 도출은 민주적 의사 결정임.
- 아울러, 정부에서 업종간·지역간 분쟁의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업계간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준데 대하여 어업인에게 매우 뜻 있는 일이었으며, 어업발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음.

##### [조업구역 조정 합의사항]

- 울산 연안의 권현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은 경남(제1구)권현망업계와 울산 어업인간에 자율관리규약에 의하기로 함.
  - 울산연안의 정치망어장등에서 250~500m를 자율규제 구역으로 설정.
  - 자율규제구역·분쟁조정·보상등 「자율관리협약서」 시행('03.11.1)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소형선망의 동해안 불빛사용 금지구역을 일부 축소하기로 함
  - 현행 6~9마일의 금지구역을 강원연안중 정동진이남은 5해리, 이북은 4해리로 하고, 경북연안은 각1해리(단, 장기잡은 현행 유지) 축소.
  - 특히, 소형선망에 의한 정치망, 연안어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선의 광력을 210kW이하로 자율적으로 제한기로 함
-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양측간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기로 함.
  - 제주연안 8마일내 6~10월 기간중 야간조업 금지(20:00~04:00)
-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에 대한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은 현행을 유지하되, 분쟁 발생시 충남도가 조정기로 함
- 제주(본도)연안 1.5해리를 근해통발어업의 금지구역으로 설정 함.
- 대형선망어업의 제주, 추자도, 거문도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의 확대(또는 축소)는 현행(7,400m내 금지)을 유지기로 함
- 중·대형 저인망어업의 제주도 마라도수역 금지구역은 현행 1해리에서 마라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3해리로 확대 조정하기로 함
-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은 자원조사를 실시 한후,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약을 정하는 등 허용여부를 논의기로 함.
- 전북해역에 대한 4·5구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다른 조업구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 수역은 육성수면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 [조업구역 조정 미합의사항]

- 대형트롤, 대형기저(쌍끌이)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및 대형기저(외끌이)어업의 동해안(경북·울산시 경계선 방위각 107도선 이남) 조업 조정문제는 양측간 미합의로 현행 유지하되, 금후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의 변화시 재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을 하기로 함.

- 전남과 경남의 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은 현행을 유지하되, 권현망 업계의 공동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
  - 현 어업여건, 어업실태 등으로 보아 제1구 권현망어선세력의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함.
  - 양측 업계간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멸치 소비확대 방안 등 현안사항의 해결 등 공동 관심사항 등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측 업계대표로 협의체(공동위원회 등)를 구성, 운영하기로 함.
- 근해통발어선의 서해 특정해역내 저인망어업구역 조업은 저인망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함.

### [금후계획]

- 총괄협의회에서 의결된 조업구역조정 건은 관계법령 개정('04년)
- 총괄협의회에서 미합의 된 조업구역의 문제는 해당 업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

## 2. 회의록

- 일 시 : 2003.12.11(목) 14:00~16:30
- 장 소 :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 위원 30명(부산시위원 등 4명 불참)
- 진 행 : ① 위원장 인사 ② 추진경과보고(어업정책과장) ③ 분과협의회 결과보고(분과위원장) ④ 안건상정 ⑤ 안결의결 및 폐회

### ◇ 위원장(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 그동안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 협의회에서 의논된 사항들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의결내용을 정부에 건의(제출)하여 향후 추진될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먼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이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겠음

### ◇ 어업정책과장 : 추진경과 보고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 회의안건 상정(박규석 이사장)

- 제1호로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건임
- 의결주문, 의결내용 등 설명. 제1호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모아서 제1안으로 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 안강망 지도상무

-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안강망 업계가 제주도 연안어업인간의 분쟁으로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문제가 있음. 지선 어업인과 합의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요망

### ◇ 박규석 위원장

- 분과위원회에서 법제화 등으로의 언급은 없었음

### ◇ 제주도(김창선)

- 협의서의 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이 마라도에서 반경 3마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자체적인 토의결과 1마일에서 3마일로 하는 것은 별반 효과가 없으므로 남서 3해리의 직선으로 조종했으면 함

### ◇ 김민중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시 제주도에 동 의견이 되었으나 동 협의내용은 제주도가 참여하여 합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

### ◇ 염창선 위원

- 소형선망의 광력제한 상한선을 210kw로 하기로 했는데 톤급별로 광력기준 설정이 필요. 채낚기의 경우 100톤이상 어선만 210kw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연안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 박규석 위원장

- 소형선망 등선의 광력제한이 없던 것을 210kw이하로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울러, 채낚기와 선망이 사용하는 집어등은 사용시간이 다르며, 동 문제는 소형선망과 연안어업간 합의사항임

### ◇ 오순택 분과위원장

- 소형선망 광력제한은 시·도, 연안어업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없었으며, 현재는 훨씬 초과한 광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선망 업계에서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임. 채낚기어선의 경우 톤급별로 제한하는 것은 톤급의 차이가 많아 제한하는 것이나 소형선망은 톤급이 20톤미만이며 동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었던 것임.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곤란함

### ◇ 염창선 위원

- 분과위원회에 채낚기업계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

### ◇ 박규석 위원장

- 오징어 채낚기에서 광력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법제화 여부는 알수 없으니, 법제호가 논의된다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될 것으로 사료됨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 염창선 위원

- 법제화시에는 업계가 합의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음

### ◇ 박규석 위원장

- 제1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다음으로 제2,3,4호 안건을 상정함

### <제4호 안건 : 근해통발의 서해특정해역 저인망 어업구역 건>

### ◇ 분과위원장(김민중, 우순택)이 협의사항 중 특이사항 설명

### ◇ 조동길 위원

-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내용이 총괄협의회에 상정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음. 인천지역 대부분의 어선들이 동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지역으로 이해당사자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분과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 됨

### ◇ 박규석 위원장

-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어떤 조건으로 논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 했음

### ◇ 서원열 위원

-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조업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더 이상의 할 말은 없음

### ◇ 박규석 위원장

- 서해특정해역은 인천을 근거로 조업하는 어선세력이 있으므로 이들의 주장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고 종결하는 것이 어떤지

### ◇ 김민중 분과위원장

- 조동길 위원의 말이 맞음. 당초 통발어업은 저인망어업구역이 아닌 덕적도 서방구역의 조업허용을 요구하여 양 업계가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동 구역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통발측에서 저인망어업구역으로 조정을 요망하게 된 것임. 따라서 당초 위원 중에 저인망어업계의 위원은 없었던 것이지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님을 이해 바람. 따라서 협의 당사자가 없어 논의가 되지 않아 총괄협의회에서 논의토록 된 것임.

### ◇ 박규석 위원장

- 근해통발 문제는 계속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제4호 안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음

### <제3호 안건 : 전남·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업 조업구역 건>

### ◇ 김동수 위원

-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업계간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 김성남 위원

- 권현망의 협의체 구성을 전·경남 업계 양자간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관련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5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음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 오순택 위원장

- 오해가 있는 것 같음. 기선권현망 업계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권현망에 한정된 것임

### ◇ 박규석 위원장

- 권현망 감척 등 업계발전을 위해 1·2구간 논의는 바람직함. 여건개선시 확대가능한 것은 아닌지. 공동협력사항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이해하기 바람

### ◇ 이인곤 위원

- 경남·전남 업계의 조업여건이 상이함. 전남에서 권현망어업이 채포하는 멸치는 30%미만으로 분과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박규석 위원장

-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 종결

### <제2호안건 : 대형트롤 등 동경 128도 이동조업 건>

### ◇ 박규석 위원장

- 미합의된 안건임. 개관적 또는 당사자로서 의견개선 요망

### ◇ 하대훈 위원

- 협의회시 동해구기저어선의 감척을 누차 강조했음. 용자·자부담에 의한 감척은 어업인이 회피하고 있는 바, 국익차원에서 안되는 어업은 감척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박규석 위원장

- 안전과는 거리가 있음. 동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람

### ◇ 서원열 위원

- 근해통발도 전국 조업수역이므로 128도 이동조업 논의시 당사자로 포함 요망

### ◇ 박규석 위원장

-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현안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의견접근, 연구, 검토 등의 기반마련이 필요함. 오늘 회의를 종합해 보면, 제1안은 총괄협의회에서 합의되었으며, 미합의된 동경 128동 문제는 업계, 정부, 민간이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문제해결 노력하고, 권현망어업계가 구성하여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해통발어선의 서해특정해역 조업은 관계 당사자의 협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당사자간 지속적의 협의 추진

### ◇ 염창선 위원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또 양 업계간 만남은 정부가 주선하는 것인지

### ◇ 박규석 위원장

- 오늘로써 협의체는 종결됨. 다만, 연근해 어업의 현안문제들이므로 구속력은 없으나 권유차원에서 업계간 지속적 노력 필요. 양 업계간 만남은 수산회 등이 주선할 수 있으며 중재 및 협력할 수도 있음. 동 협의체가 결정권은 없으나 어업제도 운영 역사상 전국적으로 수산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수산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는 것이 중요함. 민주적인 방법이 시간적, 비용적인 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할 때 보람이 있는 것으로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하겠음

### 3. 협의사항

#### 가. 동경 128도이동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대형트롤·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외끌이)어업에 대한 동경 128도이동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대하여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 위원간에 협의하였으나, 쌍방 업계간에 합의되지 아니하여 본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각 업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 상정함.

#### 1) 대형트롤·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의 동해안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이해관련 업계간에 제시된 의견

##### □ 동해안 관련 업계의견

- 연안업계(지구별수협)는 채낚기어선과 대형트롤 어선간에 오징어 어획을 위한 공조조업은 위법한 행위이며, 이를 묵인하고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근해통발 및 자망 업계는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할 경우 근해통발·자망어업 특성상 어구피해로 어업이 곤란하여 조업이 불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동해안 채낚기업계는 대형트롤측에서 동해안 조업을 하고자 하는 충분한 이유가 없고 채낚기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에도 조업구역조정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됨. 아울러 동해개방을 반대하는 이유에 관한 견해를 별첨자료로 제시함.
- 동해구기선저인망업계는 대형트롤어선(대형기저쌍끌이어선 포함)만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동해구트롤 어선의 조업구역(울산시와 경북도의 경계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해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동해안의 타업종과 타협이 될 경우 대형트롤측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을 매입하여 구조조정(어선감척) 하고 동해구트롤 어선에 대한 오징어 어획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며 조업구역을 전국수역으로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

##### □ 대형트롤 업계의견

- 대형트롤어업의 동해안 조업금지는 구 한·일어업협정('65.6.22)에 의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동 협정이 파기된 이상 동해안 조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은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수역 임에도 하위법령인 해양수산부령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의 허가제한 조건으로 동해안의 조업제한은 부당하므로 동해안 조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이 허용될 경우 동해안 어업인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오징어 단일어종에 한하여 TAC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어획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고 조업 시기를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제한
  - 가칭 「어로분쟁해소 조정기구」를 쌍방이 합의하여 구성, 설치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시 지원
  - 기타 양륙항을 지정하여 오징어자원관리의 확행, 감시체계 구축 및 정부지원하에 적정어선의 감척 필요성 등 제시

### □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업계 의견

-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의 조업구역은 1953년 9월9일 제정된 수산업법에 의거 제1구에서 제6구로 구분되어 전국수역 이였으나 1963년 11월 15일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에 의거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 및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설정한 바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조업구역도 근본적으로 전국수역임을 주장.
- 1965년 6월22일 체결된 구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제한한 것으로서 동 협정이 파기된 이상 동해안 조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
- 아울러,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어선의 동해안 조업이 허용될 경우 동해안 어업인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오징어 단일어종에 한하여 TAC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어획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고 조업 시기를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제한
  - 가칭 「어로분쟁해소 조정기구」를 쌍방이 합의하여 구성, 설치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시 지원
  - 기타 양륙항을 지정하여 오징어자원관리의 확행, 감시체계 구축 및 정부지원하에 적정어선의 감척 필요성 등 제시

### □ 기타 논의된 사항

- 대형선망 및 동해구트롤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조업에 대한 대량어획에 따른 자원남획·어가하락 등에 관한 우려를 표명.
- 트롤어선의 어구·어법상 채낚기어선과의 공조조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오징어의 어획이 가

능하나, 경제적 채산성을 감안, 공조조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쌍방간에 일치된 견해임.

2)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어업의 동해안(경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선에서 방위각 107도선이 남)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이해관련 업계간에 제시된 의견

□ 서남해구기저업계 등 의견

- 서남해구기선저인망업계는 매년 한·일간 입어조건 교섭에 의해 일본 EEZ수역 입어가 제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수역 입어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어선의 서남구수역의 조업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보완할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해양수산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동해안의 근해통발·자망 업계는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할 경우 당해 조업장소가 협소하고 통발·자망어업 특성상 어구피해로 어업이 곤란하여 조업이 불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조업분쟁과 자원의 남획이 우려되므로 허용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업계의견

-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은 91척('85)에서 43척이 어선감척 등으로 감소되어 현재 48척이 잔존하고 있어 당해 업계의 구조조정(어선감척)이 완료됨.
  - 이와 관련, 조업구역 조정 요구수역인 동해안에서는 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선 19척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당해 어장이 허용될 경우 부산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 어선 27척 중 20여척이 조업을 하게 되므로 조업분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또한 어업경영, 어선규모, 선령 등 모든 면에서 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선보다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 조업구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
  - 아울러,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어선의 동해안 조업이 허용되어 조업분쟁의 발생·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선의 일본수역 입어기간 9.1부터 익년 5.31인 점을 감안, 조업시기를 2월부터 7월까지 제한
    - 가칭 「어로분쟁해소 조정기구」를 쌍방이 합의하여 구성, 설치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분쟁시 지원.
- ※ 첨부 : 동해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2003.11.6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분과협의회 위원장 한규설

[참 부]

## 동해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 (오징어채낚기 등 어업을 대변하는 염창선, 김의남, 김삼만위원 주장)

1. 대형트롤선(쌍끌이선 포함)으로 인하여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로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생산에 악영향을 미침.
2. 트롤선이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오징어 조업을 할 경우 경제성이 없으므로 트롤선은 오징어채 낚기선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밖에 없음. 이때 오징어채낚기선과 분쟁이 발생함. 이 어업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트롤선은 오징어채낚기선에게 돈을 주고 공모조업(이를 공조조업이라고 해 왔다)을 함. 이는 위법임.
3. 대형트롤선은 공모조업을 해 왔고, 공모조업으로 연간 150억원~180억원을 오징어채낚기선에게 지불하였다고 대형트롤업계 대표들은 소명한바 있음. 또한 동해를 개방한다해도 공조조업(공모조업)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소명한바 있음.
4. 오징어채낚기선주들은 위 돈 150억원~180억원을 받은 바 없음. 돈은 주로 선장들이 받았을 것이고, 선주들 중에 자선(自船)의 선장들로부터 소액을 받은 경우는 있었을 것으로 봄. 하지만 이를 고발할 경우 선주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선장을 고발할 수 없는 처지임. 그 부정어업을 근절할 방법이 없음.
5. 대형쌍끌이선은 어법상 저인망이기 때문에 중층에서 오징어를 포획하는 것은 위법임.
6. TAC제도만으로 대형트롤선의 자원남획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임.
7. 정부는 오징어채낚기업의 생산감소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과 분쟁을 해결의 대책을 강구치 않았음.
8. 동경 128도선은 오징어채낚기선의 생명선이므로 오히려 월선감시의 강화가 절실함.

그러므로 동해개방을 반대함.

2003.11.6

김삼만 · 김의남 · 염창선

나.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전남·경남 등)조정 협의결과

1) 1·2구 기선권현망 어업인 대표, 전문가, 시도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 협의회」에서 그간 4차에 걸쳐 1·2구로 나뉘어져 있는 조업구역을 1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방안 또는 조업구역경계선 인근해역을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양측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않아 그 결과를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 상정함.

□ 1구(경남)어업인 제시의견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수산물수입 자유화 및 무관세화 추진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권현망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즉 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생산량 및 생산시기 조절, 단일유통체계 마련 및 중도매상인 육성 등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조업구역 통합 필요
- 권현망어업의 어획량중 멸치가 9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멸치어획량에서 권현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정도에 불과하여 멸치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이 매우 취약함
  - 따라서 멸치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1·2구 통합 필요
- 경남지역 권현망어선이 70년대 200통에서 80년대에는 132통으로, 현재는 85통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어선세력측면에서도 조업구역 통합여건이 성숙되어졌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조업구역 조정시(통합 또는 공동조업구역 설정)어선세력의 차이로 인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 경남업계가 연차적으로 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전남측 관계어업인들을 지원하고
  - 권현망수협(1·2구통합)을 전남(여수)에 설치하고 통영, 마산에는 지소 설치

□ 2구(전남)어업인 제시의견

- 권현망 어선척수 및 규모의 극심한 차이(경남 85통, 전남 16통)로 인해 조업구역 통합시 전남해역의 멸치자원남획에 따른 어장황폐화는 물론 먹이사슬의 파괴로 다른 어업자원에 도 심각한 영향초래
- 전남의 전체 멸치어획량(2002년 61천톤)중 권현망어선의 어획량이 30%정도에 불과하여 멸치를 어획하는 여타 연안어업인 설득 불가
- 그러나 경남권현망 어선척수를 85통에서 전남과 같이 16통으로 사전 감축하고, 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전남어업인의 피해보전을 위해 권현망어업인은 물론 여타 연안 어업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경남·경북과 전남·전북간 조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조업구역 조정 방안 협의 가능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 조업구역 조정문제와는 별도로 권현망어업의 발전을 위해 멸치금어기조정(4~6월 → 2~5월), 멸치소비확대를 위한 대책 등 현안사항은 양업체가 공동노력 필요

### 2) 전남·경남 등 권현망업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양측 업체는 현 어업여건 및 어업실태 등으로 보아 제1구 권현망어선세력의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음.
- 양측 업체간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멸치 소비확대 방안 등 현안사항의 해결이 긴요하여 이에 대한 양측 업체의 공동 관심사항 등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측 업체대표로 협의체(공동위원회 등)를 구성, 운영하기로 함.

### [협의체 구성·운영(안)]

- 협의체의 명칭 : 별도 협의결정
- 협의체 구성 : 1·2구 어업인대표 각 5인(요청시 해양수산부 및 시·도 관계관 참석)
- 개최시기 : 정기회의(년 2회(4, 10월), 수시회의 : 필요시)
- 협의사항
  - 생산량(TAC) 및 생산시기 조정방안
  - 어업구조조정 방안
  - 어획물 수급 및 수급조절방안(포장·품질개선, 홍보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 협의체 운영 : 정기회의는 전남(여수), 경남(통영)에서 각 1회씩 개최하고 개최지의 수협장 또는 협회장이 주관

2003.11.7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위원장 오순택

다. 서해특정해역 등의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1)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은 현행 저인망어업구역에 한하여 조업조건을 정한 후 허용여부를 총괄협의회에서 논의기로 함

- 서해특정해역중 「덕적도서방 어업구역」은 현재 자망, 안강망, 형망어업 등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근해통발어선의 새로운 진입은 바람직 하지 않음
- 다만, 동 해역중 「저인망어업구역」을 대상으로 근해통발어선의 진입허용을 검토하되, 동 위 원중 저인망업계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조업시기, 조업조건 등을 해양수산부가 정하여 총괄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2) 조정(협의)방향

- 서해특정해역의 「저인망어업구역」에 근해통발어선의 조업허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조업시기, 조건 등을 제시함
  - 서해특정해역중 저인망어업구역인 북위37도30분 이남해역에서 조업시기를 9월~12월로 하며, 주간에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어구량(통발수량), 입어 허용 척수 등 기타 제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제한하도록 함
  - ※ 인천지역 저인망(쌍)어선은 5통에 불과하고 서특의 저인망조업구역에서의 조업시기(9월~익년5월)를 감안하여 통발어업 조업시기, 조건을 정함

3) 저인망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사간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함

서해특정해역의 조업허용(근해통발어업·잠수기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하여 「서해특정해역 등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위원간에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조업구역 총괄협의회에 상정함.

1.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요구와 관련하여 동 해역중 「덕적도서방 어업구역」은 현재 자망, 안강망, 형망어업 등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다른 어업의 새로운 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동 해역중 「저인망어업구역」을 대상으로 허용여부를 검토하되, 당해 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표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업시기 및 조업조건 등을 해양수산부가 정하여 허용여부를 총괄협의회에 상정기로 함.
2.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153해구) 조업허용 요구는 동 해역이 근해자망어업의 2중이상자망승인구역이며, 형망어업과 경쟁조업이 있는 점을 감안, 153해구(4~8 소해구)를 대상으로 자원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조사를 선행한후 키조개 자원에 대한 조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조업 및 분쟁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에 자율규약 등을 논의하여 허용여부를 정하기로 함.

3. 전라북도 해역에 대한 잠수기어업의 제4구 및 제5구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요구는 다른 조업구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 당해구역에 육성수면이 지정되어 있고, 형망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2003.10.22

서해특정해역 등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위원장 김민중

라. 근해어업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1) 의결주문

- 가) 수산관련단체, 업계대표, 시·도공무원 등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총괄 및 분과협의회에서 2003.7.31~2003.12.11까지 업종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참여하게 대립되었던 대형트롤·대형기선저인망·근해통발 등 13개의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심층·논의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것은 우리나라 어업발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 이에, 총괄협의회에서는 금번 4개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하여 합의되었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어업별 조업(금지)구역 조정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 의결내용

- 가) 울산연안에서의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경남의 기선권현망 업계와 울산어업인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별첨①]의 자율관리규약에 의하도록 함.
- 나) 소형선망어업의 동해안 불빛사용금지구역 조정에 대하여 소형선망업계와 강원·경북어업인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별첨②]의 내용은 양측간에 공유된 의견이므로 동 조정원안대로 추진 하기로 함.
- 다)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근해안강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제주도 어업인과 근해안강망업계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별첨③]의 내용과 같이 기존 합의된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서 : 별첨④」에 의하기로 함.
- 라) 충남 태안반도 연안해역(164해구)에 대한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충남 어업인과 근해안강망업계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별첨③]의 내용과 같이 현행대로 유지하되, 분쟁 발생시 충남도가 이를 조정하기로 함.
- 마) 제주도, 추자도 및 거문도연안에서의 대형선망어업 불빛사용금지구역 조정에 대하여 제주

##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ing Group 운영

---

도·전남어업인과 대형선망업계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협의한 [별첨③]의 내용과 같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바)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제주도어업인과 근해통발업계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협의한 [별첨③]의 내용과 같이 제주도(본도)주변 1.5해리를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함.

사) 제주도 마라도주변수역에서의 대형·중형기선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대하여 제주도어업인과 기선저인망업계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협의한 [별첨③]의 내용과 같이 마라도 등대에서 반경 3해리를 금지구역으로 조정하기로 함.

아)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153해구)내 조업허용에 대하여 제4·5구 잠수기업계와 인천지역 안강망·자망·형망업계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협의한 [별첨⑤]의 내용과 같이 자원조사를 선행한후 이해 당사자간에 자율규약 등을 논의하여 허용여부를 정하기로 함.

자) 전라북도해역에 대한 제4 및 제5구의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하여 잠수기업계와 전북도어업인간에 「분과협의회」에서 협의한 [별첨⑤]의 내용과 같이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3) 협의결과 : 업종별 조업구역조정 분과협의회 결과(별첨)**

[ 별첨 ① ]

## 울산지역 권현망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현행 기선권현망어업 제1구 조업구역인 울산연안에서의 조업자율규제구역 설정에 대하여 「울산지역 권현망 조업구역 조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결과를 조업구역조정 총괄 협의회에 상정키로 함.

1.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육지쪽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금지한다
  - ①정치망(제2141호)어장 동단 북쪽 끝의 연장선으로부터 500m에 이르는 점에서 정북으로 경북·울산의 경계선까지 직선으로 이르는 점
  - ②정치망(제2141호)어장 동단 북쪽 끝의 연장선으로부터 500m에 이르는 점
  - ③이득등대에서 정동으로 500m에 이르는 점
  - ④울산 미포동 앞의 홍락도 외측에서 정동으로 250m에 이르는 점
  - ⑤울기등대외측 대왕암으로부터 정동으로 500m에 이르는 점
2. 제1항의 조업자율규제구역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쌍방 대표간에 「자율관리규약」 협약서를 작성하며, 동 협약서에는 기선권현망어업에 의한 울산어업인의 어업시설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와 어장표시 방법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상기 제1항의 구체적인 표시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상기 합의사항은 자율적으로 준수키로 한다.

2003.10.16

울산지역 권현망어업 자율협의회 위원장 오순택

[ 별첨 ② ]

##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

현행 소형선망어업의 동해안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에 대하여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 상정기로 함

1. 현행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 금지구역을 강원도 연안중 강릉시 정동진 이남은 5해리, 그 이북은 4해리, 경북도 연안중 장기잡은 현행으로 하고 그 외수역은 1해리를 축소함
2. 소형선망어선이 조업중 정치망 및 다른 어업의 어구피해 보상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북, 강원도에서 지도키로 함
3. 소형선망어선의 부속선중 등선의 광력은 210kW이하로 함
4. 상기 제1항의 구체적인 표시는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표시함

2003.10.15

소형선망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위원장 오순택

[ 별첨 ③ ]

## 제주주변수역 등의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근해어업(안강망어업, 대형선망어업, 통발어업, 저인망어업)에 대한 제주주변수역 등에서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대하여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위원간에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조업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 상정키로함

1.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설정(8해리) 요구는 2001.6.30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정부의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이 감소되고 현재 제주도 연안어업인과 조업분쟁이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 이를 설정하지 아니함. 다만, 근해안강망어업인과 제주도어업인간에 기존 합의된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서」를 양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함
2. 근해안강망어업의 충남 태안반도 연안해역(164해구)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설정요구는 충남도 내 업계간 문제로서 특정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다른 연안에 대하여도 확대 요구 등의 문제제기가 대두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분쟁발생시 충남도가 이를 조정키로함
3. 제주도·추자도 및 거문도 연안의 대형선망어업 불빛사용금지구역은 쌍방간 확대·축소 및 유지를 상호 주장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함
4. 근해통발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12해리) 요구는 제주도(본도) 주변수역 1.5해리를 통발어업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키로함.
5. 기선저인망어업(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제주주변수역 금지구역 확대(대형 트롤 금지역선까지)요구는 현행대로함. 다만, 마라도 남서해역에서는 현행 1해리에서 동도 등대에서 반경 3해리로 조정키로함

2003.10.20

제주주변수역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위원장 김민중

[ 별첨 ④ ]

## 근해안강망어선과 제주지선어선간 합의서

---

---

제주연안에서 근해안강망어선과 제주 지선어선간 현장조업시 상호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조업이 되도록 쌍방 대표자간 자율적으로 다음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1. 상호분쟁 예방을 위한 어민 지도계몽에 최선을 다한다
2. 안강망어선은 제주연안 조업시 제주연안 근접조업을 자제한다
3. 연안채낚기어선이 어장을 선점 조업시 안강망어선은 채낚기어선 밑에 투망하지 않는다
4. 채낚기어선은 안강망어구의 이동 양·투망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방어조업을 실시한다
5. 제주도 본도 외측연안의 8마일이내 해역에서는 매년 6월에서 10월사이에 근해안강망어선은 20:00부터 익일 04:00까지 조업을 금지한다
6. 조업시 불가항력적으로 어구사고가 발생시 상호신뢰와 협동정신으로 당해 선장들은 현장에서 피해확인을 필하고 각각 소속조합을 통한 피해보상을 성실히 이행기로 한다. 단, 합의결렬시 양측 3명으로 구성된 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수협에서 이를 행한다.

1996. 1. 31

### 제주대표

한림수협장	정승필
제주시수협장	홍성보
모슬포수협장	장근호
서귀포수협장	김봉훈
성산포수협장	강유삼

### 안강망대표

안강망수협장	이성수
안강망수협이사(인천)	박경훈
안강망수협이사(목포)	허홍
안강망수협이사(여수)	정종훈
목포어민회장	김상현

[ 별첨 ⑤ ]

## 서해특정해역 등의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서해특정해역의 조업허용(근해통발어업·잠수기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하여 「서해특정해역 등 조업구역 분과위원회」 위원간에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조업구역 총괄협의회에 상정함.

1. 근해통발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요구와 관련하여 동 해역중 「덕적도서방 어업구역」은 현재 자망, 안강망, 형망어업 등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다른 어업의 새로운 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동 해역중 「저인망어업구역」을 대상으로 허용여부를 검토하되, 당해 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표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업시기 및 조업조건 등을 해양수산부가 정하여 허용여부를 총괄협의회에 상정기로 함.
2.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153해구) 조업허용 요구는 동 해역이 근해자망어업의 2중이상자망 승인구역이며, 형망어업과 경쟁조업이 있는 점을 감안, 153해구(4~8 소해구)를 대상으로 자원 조사를 선행한후 키조개 자원에 대한 조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조업 및 분쟁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에 자율규약 등을 논의하여 허용여부를 정하기로 함.
3. 전라북도 해역에 대한 잠수기어업의 제4구 및 제5구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요구는 다른 조업구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 당해구역에 육성수면이 지정되어 있고, 형망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2003.10.22

서해특정해역 등 조업구역 분과협의회 위원장 김민중

[ 별첨 ⑥ ]

보 도 자 료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해양수산부</p> 	<p>■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 장 김이운 / 사무관 정용균 Tel 02-3148-6913 jongyg@momaf.go.kr</p>
<p>■ 2003. 12. 배포 ■ 사진없음 ■ 총 3 쪽</p>	
<p style="text-align: center;"><b>근해어업, 9개 조업(금지)구역 조정 합의</b></p> <p>■ 소형선망·근해통발 등 10개 어업, 13개조업구역중 제주주변수역 등 9개 조업 구역의 조정을 합의</p> <p>■ 수산단체·업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에서 최초 합의로 업계간 갈등 해소</p> <p>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 등 인근해어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장기간 업계간, 지역간에 분쟁이 발생되거나 잠재되어 있던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업구역의 조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수산단체·업계대표·학계등 민간이 주관하도록 구성된 총괄 및 업종별 5개 분과협의회에서 심층·논의하여 9개 조업구역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12. 11 종결하였다고 밝혔다.</p> <p>금번, 총괄협의회에서 어업별로 합의한 조업구역 조정의 세부 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연안의 권현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은 경남(제1구)권현망업계와 울산 어업인간에 자율관리규약에 의해 울산연안의 정치망어장 등에서 250~500m를 멀치잡이 권현망어선의 자율규제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분쟁조정·보상 등 「자율관리협약서」를 작성, 시행토록 하였으며,</li> <li>○ 소형선망어선의 동해안 불빛사용 금지구역은 현행 6~9마일에서 강원연안중 정동진이 남은 5해리, 이북은 4해리로 하고, 경북연안은 각1해리(단, 장기갑은 현행 유지)를 축소토록 하고, 소형선망에 의한 정치망, 연안어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선의 광력을 210kW이하로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li> <li>○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 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1996. 1.31 양측간 합의한 제주 연안 8마일내에서 6~10월기간중 야간조업(20:00~04:00)을 금지하기로 한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기로 하고,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에 대한 근해안강망어업의 새로운 금지구역의 설정은 현행 대로 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분쟁이 발생시는 충남도가 자체 조정기로 하였음</li> <li>○ 제주(본도)연안 1.5해리를 근해통발어업의 새로운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고, 선망어업의 제주, 추자도, 거문도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의 확대(또는 축소)는 현행(7,400m내 금지)을 유지하기로 한 반면, 중·대형 저인망어업의 제주도 마라도수역 금지구역은 현행 1해리에서 마라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3해리로 확대 조정하기로 하였음</li> </ul>	

### 제3편 조업구역조정 협의결과

-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은 당해 수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한후, 그 필요성에 따라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약을 정하는 등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음
- 전북해역에 대한 4·5구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 수역은 전북도 어업인이 육성수면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공동조업 구역설정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또한 금번에 합의 되지 아니한 조업구역의 조정은 업계간 자율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 대형트롤, 대형기저(쌍끌이)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및 대형기저(외끌이)어업의 동해안(경북·울산시 경계선 방위각 107도선 이남) 조업 조정문제는 양측간에 입장 차이로 합의되지 않아 현행 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의 변화시 재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하도록 권고 하고
- 전남과 경남의 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은 현행 대로 유지하되, 현 어업여건, 어업실태 등으로 보아 경남의 권현망어선세력이 대폭 감축이 필요하고 양측 업계간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멀치 소비확대 방안 등 현안사항의 해결 등 공동 관심사항 등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측 업계대표로 협의체(공동위원회 등)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음
- 근해통발어선의 서해 특정해역내 저인망어업구역 조업은 저인망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간 지속적인 협의를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금번 대형트롤과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허용,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통합, 선망, 안강망, 통발, 잠수기어업 등 10개업종 13개 조업구역에 대하여 5개 업종별 분과협의회에서 2003.8.7부터 11.7일까지 심층·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총괄협의회에서 제주주변 수역, 서해특정해역 등 9개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이해관련 업계간에 최종 합의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합의 결과를 민간 협의회에서 주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업계간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준데 대하여 어업인에게 매우 뜻있는 일이며, 어업발전에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렴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